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078-01

www.mafr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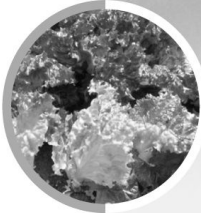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2013. 7



생산자를 "잘 살게"



소비자를 "행복하게"



자연을 "건강하게"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목 차

I.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1
<별표 및 별지 서식> .....	137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139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 .....	142
II. 관련고시 및 기준 등 .....	277
1.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업무 위임 규정 .....	279
2.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	282
3.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303
4.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	387
5.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기준 .....	421
6.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	440
7. 목초액의 규격과 품질 .....	454
8. 토양·수질기준 등 .....	461





# 목 차

## Ⅲ.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법률 해설 ..... 493

### Ⅲ-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연혁 .... 495

- 1. 법률 ..... 498
- 2. 시행령 ..... 500
- 3. 시행규칙 ..... 501

### Ⅲ-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요 .... 503

- 1. 목 적 ..... 505
- 2. 연혁 ..... 505
- 3. 구성 ..... 506
- 4. 주요내용 ..... 506
- 5. 기타 ..... 511

### Ⅲ-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별 해 설 ..... 513

- 1. 제1장 총칙 ..... 515
- 2. 제2장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육성·지원 ..... 519
- 3. 제3장 유기식품 등의 인증 및 관리 ..... 525
- 4. 제4장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 538
- 5. 제5장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 540
- 6. 제6장 보칙 ..... 552
- 7. 제7장 벌칙 등 ..... 556
- 8. 부칙 ..... 560

**I.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목 차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장 총칙 ..... 11		제1장 총칙 ..... 11
제1조 목적 ..... 11	제1조 목적 ..... 11	제1조 목적 ..... 11
제2조 정의 ..... 11		제2조 정의 ..... 11
		제3조 허용물질 ..... 13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4		
제4조 사업자의 책무 ..... 15		
제5조 민간단체의 역할 ..... 15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5		
제2장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의 육성·지원 ..... 16		제2항 친환경농업의 육성·지원 ..... 16
제7조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 16		제4조 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6
제8조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 18		
제9조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 18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0조 농어업 자원보전 및 환경 개선 ..... 19		
제11조 농어업 자원과 농어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 19		제5조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 19
제12조 사업장에 대한 조사 ..... 21		제6조 실태조사·평가기관 ..... 20
제13조 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22		제7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 21
제14조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 23		
제15조 친환경농어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 등 ... 23		
제16조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23	제2조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 23	
제17조 국제협력 ..... 24		
제18조 국내 친환경농어업의 기준 및 목표 수립.. 24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 25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 25
제1절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 ..... 25		제1절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 ..... 25
제19조 유기식품등의 인증 ..... 25	제3조 유기식품등 인증의 소관 ..... 25	제8조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 ..... 25
제20조 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 26		제9조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 26
		제10조 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 26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1조 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 절차 등 ..... 27
		제12조 재심사 신청 등 ..... 28
		제13조 인증서의 발급 ..... 29
		제14조 인증 변경 승인 등 ..... 30
		제15조 인증서의 재발급 ..... 31
제21조 인증의 유효기간 등 ..... 32		제16조 인증의 갱신 등 ..... 32
제22조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 34		제17조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 34
제23조 유기식품등의 표시 등 ..... 35		제18조 유기식품등의 표시 ..... 35
제24조 인증의 취소 등 ..... 36		제19조 인증취소 등의 처분기준 및 절차 ..... 36
제25조 동등성 인정 ..... 37		제20조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 ..... 37
		제21조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절차 ..... 38
		제22조 동등성 인정 대상품목 범위 ..... 39
		제23조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의무와 사후관리 ..... 39
		제24조 동등성 인정내용 게시 ..... 40
		제25조 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한 유기표시 ..... 41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절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 41		제2절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 41
제26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 41	제4조 인증기관 지정 등의 평가 ..... 41	제26조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 41
		제27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42
		제28조 유기식품등 인증업무의 범위 ..... 42
		제29조 인증기관의 지정심사 등 ..... 43
		제30조 인증기관의 지정갱신 절차 ..... 44
		제31조 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 46
		제32조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 46
		제33조 인증기관등의 준수사항 ..... 48
제27조 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 48		제34조 인증업무의 휴업·폐업신고 ..... 49
제28조 인증업무의 휴업·폐업 ..... 49		제35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 ... 50
제29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 50		제3절 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 52
제3절 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 52		제30조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 52
제30조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 52		제31조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 54
제31조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 54		제36조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 54
		제37조 인증표시 제거등 처분의 기준 ..... 55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2조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 56		
제33조 인증기관 등의 승계 ..... 57		제38조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승계 ..... 57
제4장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 59		제4장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 59
제34조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 ..... 59		제39조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대상 ..... 59
		제40조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기준 ..... 59
		제41조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의 신청 ..... 60
		제42조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 등 ..... 60
제35조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 61		제43조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업무의 범위 ..... 61
		제44조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기관 지정 등 .. 61
제36조 무농약농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 61		제45조 무농약농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 61
제5장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 62		제5장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 62
제37조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 62		제46조 유기농어업자재공시 또는 품질인증 대상 .. 62
		제47조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등 기준 ..... 63
제38조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등의 신청 및 심사 등 ..... 64		제48조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등의 신청 등 ..... 64
		제49조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등의 심사 등 ..... 66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50조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의 재발급 ..... 67
제39조 공시등의 유효기간 등 ..... 67		제51조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갱신 ..... 67
제40조 공시등사업자의 준수사항 ..... 69		제52조 공시등사업자의 준수사항 ..... 69
제41조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 70		제53조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 70
		제54조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등 ..... 70
		제55조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 71
제42조 공시등의 표시 등 ..... 72		제56조 유기농업자재의 표시 ..... 72
제43조 공시등의 취소 등 ..... 73		제57조 공시등의 취소처분 등의 기준 ..... 73
		제58조 공시등의 품질관리 ..... 74
제44조 공시등기관의 지정 등 ..... 74		제59조 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 ..... 74
		제60조 공시등기관의 지정 신청 등 ..... 74
		제61조 공시등기관의 지정갱신 절차 등 ..... 76
		제62조 공시등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 77
제45조 공시등기관의 준수사항 ..... 78		제63조 공시등의 신청·심사 서류보관 등 ... 78
		제64조 공시등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보고 ... 80
제46조 공시등업무의 휴업·폐업 ..... 82		제65조 공시등 업무의 휴업·폐업 신고 ..... 82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7조 공시등기관의 지정취소 등 ..... 83		제66조 공시등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83
제48조 공시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 86		
제49조 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등사업자의 사후관리 ..... 87		제67조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등사업자의 사후 관리 ..... 87
제50조 공시등기관의 사후관리 ..... 89		제68조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등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의 기준 ..... 88
제51조 공시등기관 등의 승계 ..... 90		제69조 공시등기관 등의 승계 ..... 90
제52조 「농약관리법」 등의 적용 배제 ..... 92		
제6장 보칙 ..... 92		제6장 보칙 ..... 92
제53조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92		제70조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92
제54조 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 93		
제55조 우선구매 ..... 94		
제56조 수수료 ..... 95		제71조 수수료 ..... 95
제57조 청문 등 ..... 97		
제5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97	제5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97	제72조 업무위탁 민간단체의 지정 ..... 97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5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 116		
제7장 벌칙 등 ..... 117		
제60조 벌칙 ..... 117		
제61조 양벌규정 ..... 122		
제62조 과태료 ..... 122	제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122	
부칙 ..... 125	부칙 ..... 125	부칙 ..... 12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정 2012.6. 1 법률 제11459호 개정 2013.3.23 법률 제11705호</p>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친환경농어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이하 “농어업”이라 한다)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p>	<p>대통령령 제24560호 2013.5.31</p> <p>제1조(목적) 이 영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호, 2013.6.12</p>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중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축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p> <p>2. “친환경농축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p> <p>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유기농수산물</p> <p>나.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수산물(이하 “무농약농수산물등”이라 한다)</p> <p>3. “유기”[Organic]란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p> <p>4. “유기식품”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p>		<p>가.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및 유기임산물(이하 “유기농축산물”이라 한다)</p> <p>나. 무농약농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이하 “무농약농산물등”이라 한다)</p> <p>3. “유기식품등”이란 유기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며, 유기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p> <p>4. “유기농업자재”란 유기농축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p> <p>5. “비식용유기가공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용기·포장,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p> <p>6. “유기농어업자재”란 유기농수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p> <p>7. “허용물질”이란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수산물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p>		<p>제3조(허용물질) 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용물질은 별표 1과 같다.</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질을 말한다.</p> <p>8. “취급”이란 농수산물, 식품, 비식용가공품 또는 농어업용자재를 저장, 포장 [소분(小分)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p> <p>9. “사업자”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 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p> <p>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에 관한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에 관한 육성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훈련·기술개발·경영지도 등을 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한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표시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p> <p>제2장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의 육성·지원</p> <p>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p> <p>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어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li> <li>2. 농어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li> <li>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li> </ol>		<p>제2장 친환경농업의 육성·지원</p> <p>제4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7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경지의 보전·개량 및 비옥도의 유지·증진 방안</li> <li>2. 농업 용수의 수질 등 농업 환경 관리 방안</li> <li>3. 병해충의 친환경적 관리 방안</li> <li>4. 환경친화형 농업·축산업·임업(이하 “농업”이라 한다) 자재의 개발 및 보급과 농업 폐자재의 활용 방안</li> <li>5. 농산물의 부산물 및 축산분뇨 등의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방안</li> </ol>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4.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보급·교육 및 지도 방안</p> <p>5. 친환경농어업의 시범단지 육성 방안</p> <p>6. 친환경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유기식품 등의 생산·유통·수출 활성화와 연계강화 및 소비 촉진 방안</p> <p>7. 친환경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p> <p>8.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p> <p>9. 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p> <p>10.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육성 방안</p> <p>11.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운 육성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p>		<p>6. 유기식품등 또는 무농약농산물등의 품질관리 방안</p> <p>7. 유기식품등 또는 무농약농산물등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p> <p>8. 임업의 친환경적 육성 방안</p> <p>9. 국내 친환경농업의 기준 및 목표에 관한 사항</p> <p>10.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8조(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①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도 실천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군·자치구 실천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p> <p>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가축분뇨, 폐농어업자재 및 폐수 등 농어업</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가축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폐농어업자재의 투기(投棄) 방지 및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p> <p>제10조(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농어업 용수, 대기 등 농어업 자원을 보전하고 토양 개량, 수질 개선 등 농어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어업 용수 오염 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와 제16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p> <p>제11조(농어업 자원과 농어업 환경의 실태 조사 및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p>		<p>제5조(농업 자원과 농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①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자원보전과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영양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li> <li>2. 농어업 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li> <li>3. 농약·비료·항생제 등 농어업투입재의 사용 실태</li> <li>4. 수자원 함양(涵養), 토양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실태</li> <li>5. 축산분뇨 퇴비화 등 해당 농어업 지역에서의 자체 자원 순환사용 실태</li> <li>6. 그 밖에 농어업 자원 보전 및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p>		<p>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업 자원과 농업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항목별 조사·평가 방법, 조사·평가의 시기 및 주기 등이 포함된 조사 및 평가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사·평가를 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의 결과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태조사 및 평가의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농업환경자원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제6조(실태조사·평가기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다음 각</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평가하게 할 수 있다.</p> <p>제12조(사업장에 대한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농어업 자원과 농어업 환경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잇닿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게 하거나 조사 및 평가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 시료(試料)를 채취</p>		<p>호의 자에게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평가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립환경과학원</li> <li>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li> <li>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li> <li>4. 「농촌진흥법」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li> <li>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연구기관 또는 조사전문업체</li> </ol> <p>제7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하게 할 수 있다.</p> <p>② 조사 대상 사업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제1항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p> <p>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교육·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거나 교육·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4조(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친환경농수산물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p> <p>제15조(친환경농어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사업자는 친환경농어업의 기술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p> <p>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p>	<p>제2조(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1.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 또는 친환경농수산물</p> <p>2.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p> <p>제17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친환경농어업 관련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 공동조사, 연구·개발 등에서 서로 협력하며, 환경을 위해(危害)하는 농어업 활동이나 자재 교역을 억제하는 등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p> <p>제18조(국내 친환경농어업의 기준 및 목표</p>	<p>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1. 농어업 환경의 유지·개선 실적</p> <p>2. 유기식품 또는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유통·수출 실적</p> <p>3.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농약농수산물등”이라 한다) 또는 유기식품등의 인증 실적 및 사후관리 실적</p> <p>4. 친환경농어업 기술의 개발·보급 실적</p> <p>5.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p> <p>6. 농약·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량 감축 실적</p> <p>7. 축산분뇨를 퇴비 및 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한 실적</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 여건, 국내 자원, 환경 및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국내 친환경농어업의 기준 및 목표를 세워야 한다.</p> <p>제3장 유기식품 등의 인증 및 관리</p> <p>제1절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3조(유기식품등 인증의 소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하는 경우 유기농산물·축산물·임산물과 유기수산물이 섞여 있는 유기식품등의 소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유기농산물·축산물·임산물의 비율이 유기수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p> <p>2. 유기수산물의 비율이 유기농산물·축산물·임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 해양수산부장관</p> <p>3. 유기농산물·축산물·임산물의 비율과 유기수산물의 비율이 같은 경우 :</p>	<p>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p> <p>제1절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 제8조(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가. 유기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p> <p>나. 유기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자다.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제조·가공하는 자</p> <p>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p> <p>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① 유기식품등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p>	<p>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p>	<p>여 고시하되, 농축산물과 수산물이 함께 사용된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및 그 취급자에 관하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p> <p>제9조(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은 유기식품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i> <li>제24조제1항 또는 제31조제4항에 따라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인증품의 판매금지 명령을 받아서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li> <li>제6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i> </ol>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그 기준에</p>		<p>서,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표 4의 경영 관련 자료</li> <li>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li> <li>생산, 제조·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li> </ol> <p>제11조(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 절차 등)</p> <p>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거나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갱신 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인증심사원 명단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류심사: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제9조에 따</li> </ol>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맞는 경우에는 인증을 해 주어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심사를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p> <p>⑤ 제3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인증을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⑥ 그 밖에 인증의 신청, 제한, 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1.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p> <p>2. 현장심사: 사업장(시설물을 포함한다)이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직접 방문하여 심사</p> <p>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2조(재심사 신청 등) ① 인증을 받지 못하여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인증심사를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는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서만 실시하며, 인증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거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과정에 변경된 사항이 없는 등 추가적인 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인증심사한 자료로 재심사 결과를 판정할 수 있다.</p> <p>제13조(인증서의 발급)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 인증심사</li> <li>2.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 재심사</li> <li>3. 제16조에 따른 인증 갱신 신청 또는 인증품의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 인증 갱신심사 또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li> </ol> <p>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증</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을 받은 유기식품등(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가 별표 3 제7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인증품의 대량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거래품목, 거래물량 등 거래내역이 적힌 별지 제10호서식의 거래인증서(Transaction Certification)를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에게 발급할 수 있다.</p> <p>제14조(인증 변경승인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증 품목(별표 3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인증 품목을 같은 호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li> <li>2. 인증 사업장 규모(축소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li> <li>3. 인증사업자의 주소 또는 인증 부가조건</li> </ol> <p>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인</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증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증서 원본</li> <li>2.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이유를 적은 서류</li> </ol> <p>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제15조(인증서의 재발급)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사유서를 그 인증서를 발급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을 때에는</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1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제20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p> <p>②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인증을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갱신신청을 하여 그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다른 인증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려는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인증품이</p>		<p>그 혈어 못 쓰게 된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16조(인증의 갱신 등)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 갱신 및 인증품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신청서 또는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li> <li>2. 별표 4의 경영 관련 자료</li> <li>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li> <li>4. 생산, 제조·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li> </ol>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인증품에 대하여만 그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하된 인증품은 그 제품의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그 인증표시를 유지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제3항에 따른 인증품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다)</p> <p>② 인증사업자는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 갱신 신청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다른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인증 갱신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 인증을 한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인증의 신청 및 심사 등에 관한 일체의 서류와 사후관리비용 정산액(사후관리비용을 미리 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반환받아 인증업무를 새로 맡게 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다른 인증기관의 장에게 낼 수 있다.</p> <p>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 절차와 해당</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2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인증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p>		<p>기간까지 갱신·연장을 받지 아니하면 인증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할 수 있다.</p> <p>제17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전년도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법 제53조에 따른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인증사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재·원료의 사용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그 생산년도 다음 해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3조(유기식품등의 표시 등) ① 인증사업자는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이하 “포장등”이라 한다)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시판 또는 풋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에게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농수산물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면서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에 대하여는 사용한 유기농수산물의 함</p>		<p>한다.</p> <p>제18조(유기식품등의 표시) ① 법 제23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유기표시를 하려는 인증사업자는 유기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및 생산지를 별표 6의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이하 “포장등”이라 한다)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판 또는 풋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p> <p>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유기농축산</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기표시에 필요한 도형이나 글자, 세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li> <li>2.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li> <li>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li> <li>4. 전업(轉業),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li> </ol>		<p>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기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9조(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처분의 기준·절차 등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인증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③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처분의 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25조(동등성 인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 인증과</p>		<p>제20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p> <p>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조제1항에 따른 허용물질</li> <li>2. 제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li> <li>3. 제11조에 따른 인증심사 절차</li> <li>4.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li> <li>5. 제36조에 따른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li> </ol> <p>② 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기준에 관</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품목 범위, 동등성을 인정한 국가 또는 인증기관의 의무와 사후관리 방법, 유기가공식품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1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절차)</p> <p>① 외국의 정부는 자국이 시행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로부터 동등성 인정을 받으려면 자국의 인증제도가 제20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국가의 인증제도가 제20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임이 인정되는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 그 동등성이 인정되면 해당 국가의 정부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제2항에 따른 동등성 검증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2조(동등성 인정 대상품목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품목 범위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중에서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등성 인정을 신청한 해당 국가의 정부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p> <p>제23조(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의무와 사후관리)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정부는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유기가공식품이 동등성 인정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동등성을 인정받아 국내에 유통되는 유기가공식품(이하 “동등성 인정제품”이라 한다)이 제</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할 수 있다.</p> <p>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동등성 인정제품이 제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되면 제21조제3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법 제24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4항을 준용하여 그 인증표시 제거·정지·변경, 인증품의 판매금지,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동등성 인정 지위의 정지 또는 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제24조(동등성 인정 내용 게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게시하여야 한다.</p> <p>1. 국가명</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절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p> <p>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4조(인증기관 지정등의 평가) 법 제2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li> <li>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li> </ol>	<p>2. 인정 범위(지역·품목 및 인증기관 범위 등)</p> <p>3. 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p> <p>4. 동등성 인정의 제한조건 등 협정 전문(全文)</p> <p>제25조(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등성 인정제품의 유기표시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p> <p>제2절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p> <p>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지정 신청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유기식품등의 인증업무를 계속하려는 인증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업무와 제3항에 따른 지정갱신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기관 지정 및 갱신 관련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p> <p>⑤ 인증기관은 지정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그 소속 법인</p> <p>4.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p> <p>5.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 또는 유기식품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p>	<p>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p> <p>2.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제27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8조(유기식품등 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인증 종류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p> <p>가. 유기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및 취급하는 자에 대한 인증</p> <p>나. 유기가공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제조·가공하는 자 및 취급하는 자에 대한 인증</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업무의 범위, 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 관련 절차, 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과 인증기관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2. 인증대상 지역에 따른 인증업무 범위가. 대한민국에서 하는 제1호 각 목에 따른 인증. 전국 단위 또는 특정 지역 단위로 정한다.</p> <p>나. 대한민국 외의 지역(해당 국가명)에서 하는 제1호 각 목에 따른 인증</p> <p>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심사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서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외국에서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하는 인증기관(이하 “외국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인증업무에 관하여 법 및 이 규</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그 외국인증기관과 약정할 수 있다.</p> <p>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증기관의 명칭, 인력 및 대표자</li> <li>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li> <li>3. 인증업무의 범위 및 인증업무규정</li> <li>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li> <li>5. 약정사항(외국인증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li> </ol>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심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0조(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관</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li> <li>2.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3. 인증기관 지정서</li> </ol> <p>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이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지정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인증기관 지정 갱신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p> <p>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갱신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갱</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p> <p>제31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 및 갱신 관련 평가업무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2조(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증기관 명칭, 인력 및 대표자</li> <li>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li> </ol> <p>② 인증기관은 지정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이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증업무의 범위</li> <li>2. 인증업무규정</li> </ol> <p>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를 수리한 때와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7조(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증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인증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li> <li>2.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26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 및 갱신 관련 평가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요청할 때에는 인증기관의 사무소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거나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것</li> <li>3. 인증 신청, 인증심사 및 인증사업자</li> </ol>		<p>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제33조(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호에 따라 인증신청서와 첨부서류, 인증심사보고서와 심사자료,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자료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p> <p>②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 및 문서와 수수료 중 사후관리비용 정산액을 지정 취소일 또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인증사업자에게 해당 자료·문서와 사후관리비용 정산액을 돌려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4호에</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에 관한 자료를 농림축산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것</p> <p>4.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할 것</p> <p>5. 인증사업자가 인증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불시(不時)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할 것</p> <p>제28조(인증업무의 휴업·폐업) 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인증</p>		<p>따라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할 때에는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p> <p>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여 불시(不時)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증기준 위반을 이유로 신고·진정·제보된 인증사업자</li> <li>2. 최근 6개월 이내에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인증사업자</li> </ol> <p>제34조(인증업무의 휴업·폐업 신고) ① 법 제28조에 따라 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6호서식의 인증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에 인증기관 지정서를</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인증사업자에게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p> <p>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p>		<p>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서가 수리되면 7일 이내에 그 인증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인증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p> <p>제35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 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지정을 받은 경우</p> <p>2.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p> <p>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경우</p> <p>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p> <p>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등을 인증한 경우</p> <p>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및 재심사의 처리 절차·방법 또는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인증품의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p> <p>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p> <p>8. 제26조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p> <p>9.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이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3절 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p> <p>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3절 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을 받거나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는 행위</li> <li>2.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li> <li>3.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li> <li>4.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여 주는 행위</li> <li>5.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li> <li>6.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에 따른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li> </ol>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하는 행위</p> <p>7.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p> <p>8.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p> <p>제31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하게 하거나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p>		<p>제36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증품 판매장 또는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정기조사</li> <li>2. 특정업체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실시하는 수시조사</li> <li>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특별조사</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인증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23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때에는 인증사업자 또는 그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정지·변경, 인증품의 판매금지,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증품에 대한 인증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⑤ 제4항 후단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증</p>		<p>1.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잔류물질 검정조사</p> <p>2.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p> <p>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조사의 주기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7조(인증표시 제거 등 처분의 기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정지·변경, 인증품의 판매금지,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8과 같다.</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p>⑥ 제4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32조(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이 제20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지,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는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9조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p> <p>1. 제20조에 따른 인증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제26조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p> <p>3.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p> <p>제33조(인증기관 등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증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제품 등을 계속하여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려는 상속인</li> <li>2. 인증사업자나 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li> <li>3. 인증사업자나 인증기관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li> </ol> <p>② 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인증심사를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의 장(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신</p>		<p>제38조(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승계)</p> <p>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심사를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li> <li>2. 승계 사실 증명자료</li> <li>3. 승계받은 인증서</li> </ol> <p>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고하여야 하고,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에 한 제24조제1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인증기관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li> <li>2.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3. 인증기관 승계사실 증명자료</li> <li>4. 승계받은 인증기관 지정서</li> </ol> <p>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을 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p> <p>제34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대상과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③ 무농약농수산물등을 생산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p> <p>때에는 제2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p> <p>제39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대상)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무농약농산물</li> <li>나. 무항생제축산물</li> </ul> </li> <li>2.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40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기준)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다만,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제한,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수산물등”으로 본다.</p> <p>⑤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수산물등”으로 본다.</p>		<p>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표 11과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41조(무농약농산물등 인증의 신청 등)</p> <p>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등”으로 본다.</p> <p>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정지 등 처분의 절차·기준 등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p> <p>제42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5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유효기간·갱신·지정변경, 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인증업무의 휴업·폐업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수산물등”으로 본다.</p> <p>제36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p>		<p>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등”으로 본다.</p> <p>제43조(무농약농산물등 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증 종류에 따른 인증업무 범위: 무농약농산물등을 생산하는 자 및 취급하는 자에 대한 인증</li> <li>2. 인증대상 지역에 따른 인증업무 범위: 대한민국에서 하는 제1호에 따른 인증. 전국 단위 또는 특정 지역 단위로 정한다.</li> </ol> <p>제44조(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갱신·지정변경, 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인증업무의 휴업·폐업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등”으로 본다.</p> <p>제45조(무농약농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①</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①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무농약농수산물 등에 직접 또는 그 포장등에 무농약, 무항생제(축산물 또는 수산물만 해당한다), 활성처리제 비사용(해조류만 해당한다)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를 표시(이하 “무농약농수산물등표시”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시판 또는 풋말에 표시할 수 있다.</p> <p>②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생산방법 등에 관한 정보의 표시, 그 밖에 표시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표시”는 “무농약농수산물등표시”로 본다.</p> <p>제5장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37조(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p>		<p>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등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무농약농산물등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등표시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표시”는 “무농약농산물등표시”로 본다.</p> <p>제5장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46조(유기농어업자재 공시 또는 품질인증</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중)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농어업자재가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농어업자재의 개발을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효능이 우수한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시 또는 품질인증(이하 “공시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등을 하기 위한 공시등의 대상 및 공시등에 필요한 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대상)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또는 품질인증(이하 “공시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토양 개량용 또는 작물생육용 유기농어업자재</li> <li>2. 병해충 관리용 유기농어업자재</li> </ol> <p>제47조(유기농어업자재 공시등 기준)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등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8조(유기농어업자재 공시등의 신청 및 심사 등) ①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공시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이하 “공시등기관”이라 한다)에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시등을 신청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i> <li>2. 제43조제1항 또는 제49조제4항에 따라 판매금지 또는 공시등의 표시 제거·정지 또는 사용정지의 명령을 받아서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li> <li>3. 제6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i> </ol>		<p>제48조(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신청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시료를 첨부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이하 “공시등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별지 제20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생산계획서</li> <li>2. 별표 14에 따른 제출서류 및 시험·검사성적서</li> <li>3. 시료 500g(ml). 다만, 병해충관리 시료는 100g(ml)으로 한다.</li> </ol> </li> <li>② 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에 사용되는 수입원료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li> <li>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시등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심사 결과</li> </ol>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공시등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 등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고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공시등을 해 주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공시등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라 공시등을 받은 자(이하 “공시등사업자”라 한다)가 공시등을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기관의 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등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⑤ 그 밖에 공시등의 신청, 제한, 심사, 재심사 및 공시등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 21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p> <p>④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받은 자(이하 “공시등사업자”라 한다)가 공시등을 받은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시료(사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를 첨부하여 그 공시등을 한 공시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이하 “공시서등”이라 한다)</li> <li>2. 변경 사유서</li> <li>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li> </ol>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는 시험·검사성적서</p> <p>4. 시료 500g(ml). 다만, 병해충관리 시료는 100g(ml)으로 한다.</p> <p>제49조(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심사 등)</p> <p>① 공시등기관의 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심사일정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p> <p>② 공시등기관의 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47조에 따른 공시등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이에 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서(품질인증서)를 발급하고, 이 사항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관리대장에 적은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9조(공시등의 유효기간 등) ① 공시등의 유효기간은 공시등을 받은 날부터 3</p>		<p>시(품질인증) 공고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와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기준·심사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p> <p>④ 제48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공시등의 신청, 심사 절차와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p> <p>제50조(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의 재발급) 공시등사업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사유서를 그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을 발급한 공시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을 때에는 그 헐어 못 쓰게 된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제51조(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갱신) ①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갱신하려는 공시</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년으로 한다.</p> <p>② 공시등사업자가 공시등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공시등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공시등을 한 공시등기관에 갱신 신청을 하여 그 공시등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등을 한 공시등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공시등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공시등의 갱신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등사업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6호 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시료를 첨부하여 공시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별지 제20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생산계획서</li> <li>2.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li> <li>3. 별표 14에 따른 제출서류 및 시험·검사성적서</li> <li>4. 시료 500g(ml). 다만, 병해충관리 시료는 100g(ml)으로 한다.</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갱신 신청에 대한 심사기준, 방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후단, 제49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p> <p>③ 공시등기관의 장은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유효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공시등사업자에게 갱신 절차와 해당 기간</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0조(공시등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공시등사업자는 공시등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공시등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등 심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p>		<p>까지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p> <p>제52조(공시등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사업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업자재의 종류별로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생산·수입 및 판매 실적을 작성하여 그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시등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서류를 그 생산연도 다음 해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신청 및 심사 관련 자료 또는 서류</li> <li>2. 공시등의 갱신을 위하여 신청한 자료 또는 서류</li> </ol>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1조(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학 및 민간연구소 등을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p>		<p>3. 유기농업자재 공시등 표시에 관한 자료 또는 서류</p> <p>4. 별지 제28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원료 수급대장과 원료 종류별 구입서류 등 원료 사용에 관한 자료 또는 서류</p> <p>5. 유기농업자재의 생산·수입·판매에 관한 자료 또는 서류</p> <p>6.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서류</p> <p>제53조(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54조(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신청서</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li> <li>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시험성적서</li> <li>나. 원제(原劑)의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li> <li>다. 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li> <li>라. 중금속 및 이화학적 분석 결과를 적은 서류</li> <li>마. 그 밖에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시험·분석과 관련된 서류</li> </ul> </li> </ol>		<p>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직 및 인력 현황</li> <li>2. 시설 및 장비 현황</li> </ol>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제5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li> <li>2.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ol> <p>제55조(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p> <p>4.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p> <p>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p> <p>④ 그 밖에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42조(공시등의 표시 등) 공시등사업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포장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등을 나타내는 도형 또는 글자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등의 번호, 유기농어업자재의 명칭 및 사용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p>		<p>업무정지 등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p> <p>제56조(유기농업자재의 표시) 공시등사업자는 법 제42조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의 포장등에 별표 17의 유기농업자재의 표시기준에 따라 도형, 글자 및 공시등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3조(공시등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등기관은 공시등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시등을 취소하거나 판매금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공시등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시등을 받은 경우</li> <li>2.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li> <li>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li> <li>4. 전업·폐업 등으로 인하여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5.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 지도 결과 공시등의 제품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등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시</p>		<p>제57조(공시등의 취소처분 등의 기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시등의 취소처분 등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등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공시등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공시등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③ 공시등기관의 장은 직접 공시등을 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관리 지도를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공시등의 취소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처분의 기준,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44조(공시등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시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공시등기관으로 지정하여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등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공시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공시등기관의 지정</p>		<p>제58조(공시등의 품질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시등기관의 장은 직접 공시등을 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일정·지도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9조(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8과 같다.</p> <p>② 공시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60조(공시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공시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등의 업무를 계속하려는 공시등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p> <p>④ 공시등기관은 지정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⑤ 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신청, 지정갱신 및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공시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공시등기관 지정 신청기간 등 공시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시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직 및 인력 현황</li> <li>2. 시설 및 장비 현황</li> <li>3. 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규정</li> <li>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공시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서류</li> </ol> <p>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59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신청인을 공시등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33호</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제61조(공시등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등)</p> <p>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공시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받으려는 공시등기관의 장은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갱신 신청서에 제60조제2항 각 호의 서류와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갱신기준, 심사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59조 및 제60조를 준용한다.</p> <p>③ 농촌진흥청장은 공시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공시등기관의 장에게 갱신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p> <p>제62조(공시등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① 공시등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44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34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서</li> <li>2. 변경 사유서</li> <li>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ol>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시등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34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사항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1항 각 호</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5조(공시등기관의 준수사항) 공시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시등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공시등의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li> <li>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할 때에는 공시등기관의 사무소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거나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것</li> <li>3. 공시등의 신청·심사 및 유기농어업</li> </ol>		<p>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규정</li> <li>2. 제46조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대상</li> <li>③ 법 제44조제4항 단서에 따른 변경승인의 기준, 심사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0조제3항을 준용한다.</li> </ol> <p>제63조(공시등의 신청·심사 서류 보관 등) ① 공시등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공시등사업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서류를 법 제39조제1항에서 정한 공시등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등이 갱신되었을 때에는 종전의 유효기간 동안 보관하던 서류도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신청, 재심사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 등을 위하여 공시등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 또는</li> </ol>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자재의 거래에 관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것</p> <p>4.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등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할 것</p> <p>5. 공시등사업자가 공시등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등사업자에 대하여 불시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할 것</p>		<p>서류와 이와 관련된 심사 자료 또는 서류</p> <p>2. 공시등의 갱신 신청을 위하여 공시등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 또는 서류와 이와 관련된 심사 자료 또는 서류</p> <p>3. 공시등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에 대하여 제출한 자료 또는 서류</p> <p>② 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공시등기관의 장은 공시등의 취소, 품질관리 지도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서류를 법 제39조제1항에서 정한 공시등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p> <p>1. 공시등사업자의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취소 또는 판매금지 처분과 관련된 자료 또는 서류</p> <p>2. 공시등을 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지도한 자료 또는 서류</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공시등의 결과 및 불시 심사에 관한 자료 또는 서류</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은 문서로 할 수 있다.</p> <p>④ 공시등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 및 서류와 수수료 중 사후관리비용 정산액을 지정취소일 또는 유효기간 만료일 부터 1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농촌진흥청장은 공시등사업자가 지정하는 다른 공시등기관의 장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시등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서류와 사후관리비용 정산액을 돌려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64조(공시등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보고) ① 공시등기관의 장이 법 제45조제4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 및 보고방법은 다음 각 호와</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사업자가 통보한 사항은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li> <li>2. 공시등의 신청, 심사, 공시등 현황 등은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li> <li>3.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시등을 한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법 위반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치 후 1개월 이내 보고</li> <li>4.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공시등의 신청, 재심사 신청, 변경승인 신청 또는 공시등의 갱신 신청 등을 한 신청인이 법 제37조제4항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신청내용과 부적합 사유를 즉시 보고</li> </ol> <p>② 공시등기관의 장은 직접 공시등을 한 공시등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45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불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시 심사</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6조(공시등업무의 휴업·폐업) 공시등기관은 공시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공시등기관이 공시등을 하여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공시등사업자에게는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p>		<p>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서류 보관</li> <li>2.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적합성</li> </ol> <p>제65조(공시등 업무의 휴업·폐업 신고)</p> <p>① 공시등기관은 공시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5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등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등기관이 공시등사업자에게 직접 돌려준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자료 등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공시등의 신청·심사 및 유기농업자재의 거래에 관한 자료(휴업의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한다)</li> </ol>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7조(공시등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시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p>		<p>2. 공시등기관의 지정서(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p> <p>3. 수수료 중 사후관리비용 정산액</p> <p>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휴업(폐업)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③ 휴업을 한 공시등기관이 공시등업무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휴업기간이 끝나기 10일 전에 제59조에 따른 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시등기관의 휴업 및 폐업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66조(공시등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 기준) 법 제47조제1항 및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공시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li> <li>2. 공시등기관이 파산, 폐업 등으로 인하여 공시등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li> <li>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공시등의 업무를 한 경우</li> <li>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시등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li> <li>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공시등을 한 경우</li> <li>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8조에 따른 공시등 심사 및 재심사의 처리 절차·방법 또는 제39조에 따른 공시등 갱신의 절차·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li> </ol>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7.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p> <p>8.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p> <p>9.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공시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공시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8조(공시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공시등을 받거나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기관으로 지정받는 행위</li> <li>2. 공시등을 받지 아니한 자재에 제42조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등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li> <li>3.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li> <li>4.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시등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여 주는 행위</li> <li>5.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에 따른 자</li> </ol>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재임을 알고도 그 자재를 판매하는 행위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하거나 진열하는 행위</p> <p>6. 공시등이 취소된 자재임을 알고도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판매하는 행위</p> <p>7. 공시등을 받지 아니한 자재를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광고하거나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를 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p> <p>8.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 또는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물질 등을 유기농어업자재에 섞어 넣는 행위</p> <p>제49조(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등사업자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p>		<p>제67조(유기농업자재 및 공시등사업자의 사후관리)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시판품조사,</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하게 하거나 공시등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유기농업자재의 생산·유통 과정을 확인하여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공시등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p>		<p>생산·유통 과정 확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확인이 중복되지 않도록 미리 협의하여 각각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조사 또는 확인을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확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조사·확인 공무원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할 때에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p>제68조(유기농업자재 및 공시등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의 기준)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사업자 또는 유기농업자재의 유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7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 또는 제 42조에 따른 공시등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공시등 사업자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유통업자에게 해당 유기농어업자재의 판매금지, 공시등의 표시 제거·정지·변경 또는 사용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시등을 한 공시등 기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⑤ 제4항 후단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공시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p>⑥ 제4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50조(공시등기관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시등기관이 제 38조에 따라 공시등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등</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지, 제45조에 따른 공시등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는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공시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47조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8조에 따라 공시등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li> <li>2. 제44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li> <li>3. 제45조에 따른 공시등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li> </ol> <p>제51조(공시등기관 등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시등사업자 또는 공시등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시등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기농어업자재를 계속하여 생산하거나 수</li> </ol>		<p>제69조(공시등기관 등의 승계)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기관의 장(공시등기관의</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입하여 판매하려는 상속인</p> <p>2. 공시등사업자나 공시등기관이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p> <p>3. 공시등사업자나 공시등기관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p> <p>② 제1항에 따라 공시등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기관의 장(그 공시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공시등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공시등기관 또는 공시등사업자에게 한 제43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 내에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p>		<p>지정의 취소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별지 제20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생산계획서</p> <p>2. 공시등의 승계사실 증명자료</p> <p>3. 승계받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공시등기관의 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서(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때 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52조(「농약관리법」 등의 적용 배제) ①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하여는 「농약관리법」 제8조 및 제17조, 「비료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공시등을 받았을 때에는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칙</p> <p>제53조(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p>		<p>1. 제59조에 따른 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2. 공시등기관의 승계사실 증명자료</p> <p>3. 승계받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서</p> <p>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⑤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등기관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승계사항을 농촌진흥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칙</p> <p>제70조(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증기관 지정·등록, 인증 현황, 수입 증명서 관리 등에 관한 업무</li> <li>2. 인증품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업무</li> <li>3. 인증품 등의 사업자 목록 및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관련 정보 제공</li> <li>4. 인증받은 자의 성명, 연락처 등 소비자에게 인증품 등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li> <li>5. 인증기준 위반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인증취소 등의 정보 공표</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54조(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p>		<p>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유기식품등 인증 및 무농약농산물등 인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증사업자의 성명, 연락처, 인증번호, 인증 유효기간 및 인증 품목</li> <li>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 인증번호 및 인증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법 제24조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 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자</li> <li>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정지·변경, 인증품의 판매금지,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처분을 받은 자</li> </ul> </li> <li>3. 인증기관의 명칭,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인증업무의 범위</li> <li>4. 법 제29조에 따른 지정취소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받은 인증기관의 명칭과 그 행정처분의 내용</li> </ol>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이 법에 따른 인증제도의 홍보에 관한 사항</p> <p>2.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p> <p>3.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계획서의 견본문서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품질관리체제 구축 또는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어업인 또는 민간단체</li> <li>2. 제품 등의 인증사업자, 공시등사업자,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li> <li>3. 인증제도 관련 교육과정 운영자</li> <li>4. 인증품 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관련 표준모델 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자</li> </ol> <p>제55조(우선구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p>		<p>②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등록·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장은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장 및 농어업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그 인증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농어업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56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0조제1항 또는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li> <li>2. 제21조제2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을</li> </ol>		<p>제71조(수수료) ①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9와 같다.</p> <p>② 신청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되, 출장비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에 대한 수수료 납부방법은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③ 제1항에 따른 납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갱신하려는 자</p> <p>3. 제21조제3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p> <p>4.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p> <p>5.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시등을 갱신하려는 자</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p>1.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p> <p>2. 제26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p> <p>3. 제44조에 따라 공시등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공시등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p>		<p>으로 할 수 있다.</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57조(청문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9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②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이 제24조제1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나 공시등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줄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으로 본다.</p> <p>제5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p>	<p>제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p>	<p>제72조(업무위탁 민간단체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5조제6항에 따라</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식품연구원의 원장 또는 민간단체의 장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은 그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거나 민간단체에 재위탁 할 수 있다.</p>	<p>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농업, 축산업, 농산물 및 축산물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li> <li>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예의 출입 및 조사 시료(試料)의 채취</li> <li>3. 법 제13조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교육·지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지원</li> <li>4. 법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li> <li>5.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또는 품질인증(이하 “공시등”이라 한다)</li> <li>6. 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li> <li>7.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시등의 취소 및 판매금지 처분</li> <li>8.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시등 취소의 통지 및 그 취소 사실 보고의 수리</li> </ol>	<p>업무를 위탁할 친환경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장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기식품등 또는 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단체</li> <li>2. 친환경농업 분야에서 생산·유통·수출 및 교육 등의 활동실적이 3년 이상인 법인</li> </ol>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9. 법 제44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이하 “공시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지정 갱신, 변경신고 수리 및 변경승인</p> <p>10. 법 제45조제2호에 따른 공시등기관에 대한 접근 허용의 요청 및 정보·자료 제공의 요청</p> <p>11. 법 제45조제4호에 따른 공시등 결과 등에 대한 보고의 수리</p> <p>12. 법 제46조에 따른 공시등기관의 공시등업무 휴업·폐업 신고의 수리</p> <p>13.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등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및 그 처분 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p> <p>14.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 자재에 대한 시판품조사, 공시등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 무상으로 제공받은 시료 검사 및 공시등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p> <p>15.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사업</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자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 명령 및 공시등기관에 조치 요청</p> <p>16. 법 제50조에 따른 공시등기관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명령,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p> <p>17.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공시등사업자 및 공시등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p> <p>18. 법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시등사업자 또는 공시등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p> <p>19. 법 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p> <p>20.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시등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p> <p>21.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법 제38조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2조, 제44조제4항, 제4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6조,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의 위반행위에</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의 부과·징수</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임업 및 임산물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li> <li>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예의 출입 및 조사 시료의 채취</li> <li>3. 법 제13조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교육·지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지원</li> <li>4. 법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li> <li>5.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우수 사례의 발굴·홍보</li> <li>6. 법 제16조에 따른 유기식품등,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에 대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의 지원</li> <li>7. 법 제55조에 따른 우선구매의 요청</li> </ol>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농업·축산업·임업,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림축산물”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물 가공품(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li> <li>2. 법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심사, 인증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li> <li>3.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의 갱신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li> <li>4. 법 제22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에 대한 보고 수리</li> </ol>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5. 법 제23조제2항(법 제3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 표시의 권고</p> <p>6.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한적인 유기표시의 허용</p> <p>7. 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명령</p> <p>8. 법 제24조제2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 취소의 통지 및 인증기관의 취소 사실 보고의 수리</p> <p>9. 법 제25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외국 정부와의 동등성 인정 관련 협정 체결은 제외한다) 및 동등성 인정 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p> <p>10.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p> <p>11. 법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법 제35</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수리, 지정 갱신, 평가업무의 위임·위탁, 변경신고의 수리 및 변경 승인</p> <p>12. 법 제27조제2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접근 및 정보·자료 제공의 요청</p> <p>13. 법 제27조제4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에 대한 보고의 수리</p> <p>14. 법 제27조제5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불시(不時) 심사 및 그 결과의 기록·관리</p> <p>15. 법 제28조(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휴업·폐업 신고의 수리</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6.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법 제3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및 그 처분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p> <p>17. 법 제31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조사, 사업장에 대한 조사, 무상으로 제공받은 시료 검사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p> <p>18. 법 제31조제4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 및 인증품의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 명령 및 인증기관에 필요한 조치 요청</p> <p>19. 법 제32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p> <p>20. 법 제32조제2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인증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p> <p>21. 법 제33조제2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p> <p>2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에 대한 인증</p> <p>2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p> <p>24.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시판품조사, 공시등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 무상으로 제공받은 시료 검사 및 공시등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p> <p>25.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사업자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 명령 및 공시등기관에 조치 요청</p> <p>26.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7. 법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p> <p>28.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p> <p>29.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p> <p>30.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법 제20조제5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1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2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제23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행위를 포함한다), 제26조제5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8조(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1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6조(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의 부과·징수</p> <p>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수산업, 수산물 및 그 가공품(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li> <li>2. 법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li> </ol>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심사, 인증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p> <p>3.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의 갱신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p> <p>4. 법 제22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에 대한 보고 수리</p> <p>5. 법 제23조제2항(법 제3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 표시의 권고</p> <p>6.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한적인 유기표시의 허용</p> <p>7. 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명령</p> <p>8. 법 제24조제2항(법 제34조제4항에서</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 취소의 통지 및 인증기관의 취소 사실 보고의 수리</p> <p>9. 법 제25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외국 정부와의 동등성 인정 관련 협정 체결은 제외한다) 및 동등성 인정 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p> <p>10.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p> <p>11. 법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수리, 지정 갱신, 평가업무의 위임·위탁, 변경신고의 수리 및 변경 승인</p> <p>12. 법 제27조제2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접근 및 정보·자료 제공의 요청</p> <p>13. 법 제27조제4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인증기관의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에 대한 보고의 수리</p> <p>14. 법 제27조제5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불시 심사 및 그 결과의 기록·관리</p> <p>15. 법 제28조(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휴업·폐업 신고의 수리</p> <p>16.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및 그 처분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p> <p>17. 법 제31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조사, 사업장에 대한 조사, 무상으로 제공받은 시료 검사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8. 법 제31조제4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 및 인증품의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 명령 및 인증기관에 필요한 조치 요청</p> <p>19. 법 제32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p> <p>20. 법 제32조제2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p> <p>21. 법 제33조제2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p> <p>2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에 대한 인증</p> <p>2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p> <p>24.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인증관리</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p> <p>25. 법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에 대한 자금지원</p> <p>26.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p> <p>27.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p> <p>28.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법 제20조제5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1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2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제23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행위를 포함한다), 제26조제5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제35조제2</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1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6조(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의 부과·징수</p> <p>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수산업 및 수산물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li> <li>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예의 출입 및 조사 시료의 채취</li> </ol>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법 제13조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교육·지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지원</p> <p>4. 법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p> <p>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식품연구원의 원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장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다.</p> <p>1. 법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 중 농어업인 및 친환경농수산물 소비자에 대한 교육·훈련</p> <p>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우수 사례의 발굴·홍보</p> <p>⑦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6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li> <li>2.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시등기관의 임직원</li> <li>3. 제26조제4항 또는 제5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임직원</li> </ol>	<p>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벌칙 등</p> <p>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6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업무를 하거나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시등업무를 한 자</li> <li>2. 제26조제3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인증업무를 하였거나 제44조제3항에 따라 공시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공시등업무를 한 자</li> <li>3. 제29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인증업무를 하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li> </ol>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공시등업무를 한 자</p> <p>4. 제30조제1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등을 받거나 공시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p> <p>5. 제30조제2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 등을 한 자</p> <p>6. 제48조제2호를 위반하여 공시등을 받지 아니한 자재에 공시등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 등을 한 자</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7. 제30조제3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제3호를 위반하여 인증품 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인증 또는 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p> <p>8. 제30조제4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또는 공시등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p> <p>9. 제30조제5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p> <p>10. 제30조제6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것임을 알거나 인증품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것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p> <p>11.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공시등을 받지 아니한 자재에 공시등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것임을 알거나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것임을 알고도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p> <p>12. 제30조제7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제6호를 위반하여 인증이 취소된 제품 또는 공시등이 취소된 자재임을 알고도 인증품 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판매한 자</p> <p>13. 제30조제8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인증을 받은 내</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p> <p>14. 제48조제7호를 위반하여 공시등을 받지 아니한 자재를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광고하거나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p> <p>15. 제48조제8호를 위반하여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이나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물질 등을 유기농어업자재에 섞어 넣은 자</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29조(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7조에 따른 인증 또는 공시등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인증 또는 공시등 업무를 한 자</p> <p>2. 제31조제4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제</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4항에 따른 인증품 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업자재의 표시 제거·정지·변경 또는 판매금지,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p> <p>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20조제5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p>	<p>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 또는 공시등을 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p> <p>2. 제22조제1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품 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p> <p>3. 제22조제2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제3호 또는 제5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0조제2항, 제45조제3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관련 서류·자료 등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p> <p>4.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제23</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자</p> <p>5. 제23조, 제36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p> <p>6. 제26조제5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p> <p>7. 제27조제4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5조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또는 공시 등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p> <p>8. 제28조(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증업무 또는 공시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p> <p>9.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1항(제34</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1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p> <p>10. 제33조(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를 위반하여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이나 인증사업자 또는 공시등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별표 3 제2호가목3), 같은 표 제3호</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다.</p> <p>제2조(저농약농산물의 유효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친환경농업육성법」(법률 제9623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저농약농산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4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의 유효기간을 계속 연장하더라도 그 유효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저농약농산물에 대한 인증의 표시, 승계, 보고, 벌칙 등은 종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p> <p>제3조(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p>	<p>제2조(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고 그 내용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5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임하고 그 내용을 고시한 것으로 본다.</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가목8), 별표 8 제1호가목·나목, 별표 11 제2호가목3) 및 같은 표 제3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기사료 인증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사목에 따라 종전의 별표 3 제2호의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생산된 사료[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수입된 사료를 포함한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제9조제1항 및 별표 3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생산된 유기사료로 본다.</p> <p>제3조(인증 신청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규정,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이 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법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인증 또는 공시등을 받은 사업자는 제20조, 제34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인증 또는 공시등을 받은 사업자로 본다. 이 경우 인증 또는 공시등의 유효기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또는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부여된 유효기간으로 한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은 제26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으로 본다. 다만,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의 인증업무 또는 공시등업무</p>	<p>다.</p> <p>제13조제5호를 삭제한다.</p> <p>②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6.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농수산물(수산물 및 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p> <p>제18조제1호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 등의”로 한다.</p> <p>제19조제1항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기</p>	<p>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 재심사 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10조부터 14조까지, 제16조, 제38조, 별표 3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신청, 변경신청, 재심사 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별표 13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조(시험성적서 등 발급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험성적서 등의 발급기관은 2014년 6월 1일까지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으로 본다.</p> <p>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험성적서 등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시험·검사성적서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이 발급한 것으로</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의 범위는 당초 지정받은 범위로 한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부여된 유효기간으로 한다.</p> <p>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등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④ 종전의 제17조 또는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 또는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또는 친환경수산물의 인증기준은 제19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으로 본다.</p> <p>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p>	<p>준”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으로 한다.</p> <p>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1.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이행할 수 있을 것</p> <p>2.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이행할 수 있을 것</p> <p>제22조 단서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p>	<p>본다.</p> <p>제5조(인증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부령 제1395호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서로 간주된 환경농산물품질인증서는 제13조제1항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유기식품등 인증서 및 무농약농산물등 인증서로 본다.</p> <p>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는 제13조제1항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유기식품등 인증서 및 무농약농산물등 인증서로 본다.</p> <p>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서 및 품질인증서는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 인증서로 본다.</p> <p>④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기관지정서는 제29조</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법에 따른 처분·절차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5조(행정처분 및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다.</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 10889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p> <p>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전통식품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p> <p>제23조를 삭제한다.</p> <p>제24조제1항 본문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으로,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3</p>	<p>18조의2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같은 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 또는 무농약농수산물등의”로 한다.</p> <p>제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같은 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 또는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p> <p>③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 중 “법 제16조, 제23조 및 제31조”를 “법 제16조 및 제31조”로, “품질인증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을 “품질인증품”으로 한다.</p> <p>제42조제6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품질인증품, 친환경수산물인</p>	<p>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기관 지정서로 본다.</p> <p>⑤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는 제6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서로 본다.</p> <p>⑥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서는 이 규칙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유기식품등 인증서로 본다.</p> <p>제6조(표지 및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236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사용 중인 친환경농산물의 표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p> <p>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항”을 “제22조제2항”으로 한다.</p> <p>제25조제2호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전통식품이나 유기가공식품으로”를 “우수식품으로”로 한다.</p> <p>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p> <p>제29조제1호의2 및 제2호 중 “제22조제2항이나 제23조제3항”을 각각 “제22조제2항”으로 한다.</p> <p>제3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제33</p>	<p>증품”을 “품질인증품”으로 한다.</p> <p>별표 1 제2호마목을 삭제한다.</p> <p>④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제6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수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p> <p>제12조제3항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로 한</p>	<p>른 친환경농산물 표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18조,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p> <p>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유기농자재 표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p> <p>④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 7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 표시 및 유기가공식품 인증 도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18조,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p> <p>제7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8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 행위자 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3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p> <p>② 법률 제1088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p> <p>제4조제2호 중 “수산물품질인증·친환경수산물인증”을 “수산물품질인증”으로 한다.</p> <p>제2장제4절(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을 삭제한다.</p> <p>제29조제1항 중 “품질인증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을 각각 “품질인증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p>	<p>다.</p> <p>⑤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p> <p>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행정처분은 별표 10 제1호나목 본문 및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p> <p>제8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농자제공시등 변경승인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9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이던 서식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p> <p>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품질인증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을 각각 “품질인증품”으로 한다.</p> <p>제113조제6호를 삭제한다.</p> <p>제114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품질인증품·친환경수산물인증품”을 “품질인증품”으로 한다.</p> <p>제119조제1호 중 “품질인증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을 각각 “품질인증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라목을 삭제한다.</p> <p>③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8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으로 한다.</p> <p>제21조제2항 중 “「식품산업진흥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9조, 제20조 및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p> <p>제25조제1항제1호 중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법 제23조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으로 한다.</p> <p>별표 4부터 별표 7까지,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p> <p>별지 제14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의4서식 앞쪽 중</p> <p>“[ ] 식품 산업표준인증”을 각각 “[ ] 식품 산업표준인증”으로 한다.</p> <p>[ ] 전통식품 품질인증 [ ] 전통식품 품질인증</p> <p>[ ] 유기가공식품 인증</p> <p>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5호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⑤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 등 인증을 받은 제품</p> <p>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 및 제7조”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p>		<p>제12조제12항제11호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3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 인증 및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 정보</p> <p>④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5조의6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품질검사성적서 사본 1부(「</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로 한다.</p> <p>⑦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5조제1항제5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p> <p>⑧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28호다목 및 제6조제25호다목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각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⑨ 법률 제11098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p>		<p>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p> <p>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p> <p>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친환경농업육성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 칙&lt;제11705호, 2013.3.23&gt;</p> <p>이 법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 < 별표 및 별지 서식 >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139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 ..... 142



#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0조제5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법 제62조 제1항제1호	50	100	150
나. 법 제22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알리지 않은 자	법 제62조 제1항제2호	10	20	30
다. 법 제22조제2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않은 자	법 제62조 제1항제3호	10	30	50
라.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제하여 재포장한 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자	법 제62조 제1항제4호	100	300	500
마. 법 제23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62조 제1항제5호	10	30	50
바. 법 제26조제5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않고 변경한 자	법 제62조 제1항제6호	100	300	500
사. 법 제27조제3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자	법 제62조 제1항제3호	100	300	500
아. 법 제27조제4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62조 제1항제7호	100	300	500
자. 법 제27조제5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불시 심사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자	법 제62조 제1항제3호	100	300	500
차. 법 제28조(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법 제62조 제1항제8호	100	300	500
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제1항 법 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62조 제1항제9호	100	300	500
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 법 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62조 제1항제9호	100	300	5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파. 법 제33조(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기관이나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자	법 제62조 제1항제10호	100	200	300
하.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자	법 제62조 제1항제4호	100	300	500
거. 법 제36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62조 제1항제5호	10	30	50
너.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시등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공시등을 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법 제62조 제1항제1호	100	200	300
더.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알리지 않은 자	법 제62조 제1항제2호	50	100	150
러.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않은 자	법 제62조 제1항제3호	50	100	150
며. 법 제42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62조 제1항제5호	100	300	500
며. 법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않고 변경한 자	법 제62조 제1항제6호	100	300	500
서. 법 제45조제3호를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자	법 제62조 제1항제3호	100	300	500
어. 법 제45조제4호를 위반하여 공시등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62조 제1항제7호	100	300	500
저. 법 제45조제5호를 위반하여 관련 불시 심사 결과물 기록·관리하지 않은 자	법 제62조 제1항제3호	100	300	500
처.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공시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법 제62조 제1항제8호	100	300	500
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62조 제1항제9호	100	300	500
터.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62조 제1항제9호	100	300	500
퍼.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공시등기관이나 공시등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자	법 제62조 제1항제10호	100	200	300

##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

[별표 1]

### 허용물질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 1. 유기식품등에 사용가능한 물질

##### 가.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 1)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堆廐肥) ○ 퇴비화 된 가축배설물 ○ 건조된 농장 퇴구비 및 탈수한 가금 퇴구비	○ 별표 3 제2호다목5)에 적합할 것
○ 식물 또는 식물 잔류물로 만든 퇴비 ○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서 생긴 퇴비	○ 충분히 부숙(腐熟: 썩다)된 것일 것 ○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 사용되는 자재는 이 목 1)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물질만을 사용할 것
○ 지렁이 또는 곤충으로부터 온 부식토	○ 지렁이 및 곤충의 먹이는 이 목 1)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물질만을 사용할 것
○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혈분·육분·골분·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	○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고,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것
○ 대두박, 미강 유박, 깻묵 등 식물성 유박(油粕)류	○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 ○ 최종제품에 화학물질이 남지 않을 것
○ 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비나스(Vinasse), 식품등급의 설탕, 포도당 포함]	○ 유해 화학물질로 처리되지 않을 것
○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 오줌	○ 충분한 발효와 희석을 거쳐 사용할 것
○ 사람의 배설물	○ 완전히 발효되어 부숙된 것일 것 ○ 고온발효: 50°C 이상에서 7일 이상 발효된 것 ○ 저온발효: 6개월 이상 발효된 것일 것 ○ 엽채류 등 농산물·임산물의 사람이 직접 먹는 부위에는 사용 금지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 벌레 등 자연적으로 생긴 유기체	
○ 구아노(Guano: 바닷새, 박쥐 등의 배설물)	○ 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짚, 왕겨 및 산야초	○ 비료화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톱밥, 나무껍질 및 목재 부스러기 ○ 나무 숯 및 나뭇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 외 1등급에 해당하는 목재 또는 그 목재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것일 것
○ 황산칼륨, 랑베나이트(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 또는 광물염 ○ 석회소다 염화물 ○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 마그네슘 암석 ○ 사리염(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황산칼슘) ○ 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 ○ 점토광물(벤토나이트·펄라이트 및 제올라이트·일라이트 등) ○ 질석(Vermiculite: 풍화된 흑운모) ○ 붕소·철·망간·구리·몰리브덴 및 아연 등 미량원소	○ 천연에서 유래하여야 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危害)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예: 석면광, 수은광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 천연에서 유래하여야 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염소함량이 60퍼센트 미만일 것
○ 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	○ 천연에서 유래하여야 하고 단순 물리적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인을 오산화인( $P_2O_5$ )으로 환산하여 1kg 중 카드뮴이 90mg/kg 이하일 것
○ 자연암석분말·분쇄석 또는 그 용액	○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이 포함된 암석은 사용할 수 없음
○ 광물을 제련하고 남은 찌꺼기 [메이직 슬래그, 광재(鑛滓)]	○ 광물의 제련과정에서 나온 것 (예: 비료 제조시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규산질 비료)
○ 염화나트륨(소금)	○ 채굴한 암염 및 천일염 (산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일 것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 목초액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20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규격 및 품질 등에 적합할 것
○ 키토산	○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미생물 및 미생물추출물	○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이탄(泥炭, Peat), 토탄 土炭 peat moss), 토탄 추출물	
○ 해조류, 해조류 추출물, 해조류 퇴적물	
○ 황	
○ 스틸리지(stillage) 및 스틸리지 추출물 (암모니아 스틸리지는 제외한다)	

## 2)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 제충국 추출물	○ 제충국( <i>Chrysanthemum cinerariae folium</i> )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데리스(Derris) 추출물	○ 데리스( <i>Derris spp.</i> , <i>Lonchocarpus spp.</i> 및 <i>Terphrosia spp.</i> )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쿠아시아( <i>Quassia</i> ) 추출물	○ 쿠아시아( <i>Quassia amara</i> )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라이아니아( <i>Ryania</i> ) 추출물	○ 라이아니아( <i>Ryania speciosa</i> )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님(Neem) 추출물	○ 님( <i>Azadirachta indica</i> )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해수 및 천일염	○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것
○ 젤라틴(Gelatine)	○ 크롬(Cr)처리 등 화학적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난황(卵黃, 계란노른자 포함)	○ 화학물질이나 화학적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식초 등 천연산	○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누룩곰팡이( <i>Aspergillus</i> )의 발효 생산물	○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 목초액	○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규격 및 품질 등에 적합할 것
○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	○ 물로 추출한 것일 것
○ 키토산	○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밀납(Beeswax) 및 프로폴리스(Propolis)	
○ 동·식물성 오일	○ 천연유화제로 제조할 경우에 한하여 수산화칼륨은 동물성·식물성 오일 사용량 이하로 최소화하여 사용할 것. 다만, 인증품 생산 계획서에 등록하고 사용할 것.
○ 해조류·해조류가루·해조류추출액	
○ 인지질(lecithin)	
○ 카제인(유단백질)	
○ 버섯 추출액	
○ 클로렐라(담수녹조) 추출액	
○ 천연식물(약초 등)에서 추출한 제재 (담배는 제외)	
○ 구리염 ○ 보르도액 ○ 수산화동 ○ 산염화동 ○ 부르고뉴액	○ 토양에 구리가 축적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량을 사용할 것
○ 생석회(산화칼슘) 및 소석회 수산화칼슘	○ 토양에 직접 살포하지 않을 것 ○ 석회보르도액 및 석회유황합제 제조용, 버섯 재배사 등 소독용에만 사용할 것
○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	○ 천연에서 유래하거나, 이를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만 사용할 것
○ 규산나트륨	○ 천연규사와 탄산나트륨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일 것
○ 규조토	○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 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	○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예: 석면광 및 수은광 등)은 사용할 수 없음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 인산철	○ 달팽이 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만 해당함
○ 파라핀 오일	
○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 과망간산칼륨	○ 과수의 병해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
○ 황	○ 액상화할 경우에 한하여 수산화나트륨은 황 사용량 이하로 최소화하여 사용할 것 .반드시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등록하고 사용할 것
○ 미생물 및 미생물 추출물	○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천적	○ 생태계 교란종이 아닐 것
○ 성 유인물질(페로몬)	○ 작물에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것 텃에만 사용할 것)
○ 메타알데하이드	○ 별도 용기에 담아서 사용하고 ,토양이나 작물에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것(텃에만 사용할 것)
○ 이산화탄소 및 질소가스	○ 과실 창고의 대기 농도 조정용으로만 사용할 것
○ 비누(Potassium Soaps)	
○ 에틸알콜	○ 발효주정일 것
○ 허브식물 및 기피식물	○ 생태계 교란종이 아닐 것
○ 기계유	○ 과수농가의 월동 해충 구제용에만 허용 ○ 수확기 과실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것
○ 용성불입곤충	

## 나. 유기축산물 및 비식용유기가공품

### 1)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단미사료

구분	세분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식물성	곡물류	가) 옥수수·보리·밀·수수·호밀·귀리·조피·트리트케일·메밀·루핀종실 및 두류나) 가)항 곡물의 1차 가공품 및 전분 알파과 전분을 포함한다)	○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일 것
	곡물 부산물(강피류)	곡쇄류·밀기울·말분·보릿겨·쌀겨·쌀겨탈지·옥수수피·수수겨·조겨·두류피·낙화생과면실피·귀리겨·아몬드피 및 해바라기피	○ 유기농산물 부산물로 만들어진 것일 것 다른 제품과 섞이지 않았을 것)

구분	세분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식물성	제약 부산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제약 부산물	
	유지류	옥수수유, 대두유, 면실유, 채종유, 야자유, 해바라기유, 팜유 및 미강유	
	박류 (단백질류)	대두박(전지대두를 포함)· 들깨묵· 참깨묵· 채종박· 면실박· 낙화생박· 고추씨박· 아마박· 야자박· 해바라기씨박· 피마자박· 옥수수배아박· 소맥배아박· 두부박· 케이폭박, 팜유박, 글루텐 및 주정박	
	근괴류	고구마, 감자, 돼지감자, 타피오카, 무 및 당근	○ 곡물류와 같음
	식품가공부산물	두류 가공 부산물, 당밀 및 과실류 가공부산물	○ 곡물 부산물류와 같음
	해조류	해조분	○ 천연에서 유래한 것일 것
	섬유질류	목초, 산야초, 나뭇잎, 곡류 정선 부산물, 임산 가공 부산물, 볏짚, 보리짚, 그 밖의 농산물 고간류, 풋베기 사료작물, 옥수수 속대, 사탕수수박, 사탕무우박, 감귤박 및 발효사료	○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일 것. 다만, 야생의 것은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것
동물성	단백질류	어분·어즙흡착사료, 유·유제품 및 육분·육골분(반추가축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양식하지 않은 것일 것(어분·어즙 흡착사료에 한함)이거나 유기수산물일 것
	무기물류	골분·어골회 및 패분	○ 순도 99퍼센트 이상인 것일 것
	유지류	우지 및 돈지(반추가축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순도 99.9퍼센트 이상인 것일 것
광물성	식염류	암염 및 천일염	
	인산염류 및 칼슘염류	인산1칼슘·인산2칼슘·인산3칼슘 및 석회석분말	
	광물질 첨가물	나트륨·염소·마그네슘·유황·가리·망간·철·구리·요오드·아연·코발트·불소·셀레늄·몰리브덴 및 크롬의 화합염류(유기태화한 것을 포함한다)	○ 천연의 것일 것
	혼합 광물질	2종 이상의 광물질을 혼합 또는 화합한 것으로서 사료에 첨가하는 형태로 제조한 것만 해당함	

## 2)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보조사료

구 분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산미제	젓산, 개미산 등 천연 산미제	○ 천연의 것 및 천연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다른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것일 것 .다만, 배합사료에 1퍼센트 미만 사용되는 보조사료 중 화학물질의 함유량이 해당 보조사료 내 10퍼센트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 가능
항응고제	활성탄	
결착제	천연 결착제	
유화제	천연 유화제	
항산화제	천연 항산화제	
항곰팡이제	천연 항곰팡이제	
향미제	천연 향미제	
규산염제	제올라이트·벤토나이트·카오린 및 일라이트와 그 혼합물	
착색제	천연 착색제	
추출제	유기추출물·타우마린·목초 추출물·해초 추출물 및 과일 추출물	
완충제	중조·산화마그네슘 및 산화마그네슘혼합물	
올리고당류	갈락토 올리고당, 플라토 올리고당, 이소말토 올리고당, 대두 올리고당, 만노스 올리고당 및 그 밖의 올리고당	
효소제	아밀라제, 알카리성 프로테아제, 키시라나아제, 피타아제, 산성 프로테아제, 리파아제, 셀룰라아제, 중성 프로테아제, 프로테아제, 락타아제 및 그 밖의 효소제와 그 복합체	
생균제	엔테로кок카스페시움, 바실러스코아글란스, 바실러스서브틸리스, 비피도박테리움슈도롱검, 락토바실러스아시도필루스, 효모제 및 그밖의 생균제	
아미노산제	아민초산, DL-알라닌, 염산- 라이신 황산- 라이신 L-글루타민산나트륨, 2-디아미노-2-하이드록시메치오닌, DL-트립토판, L-트립토판, DL메치오닌 및 L트레오닌과 그 혼합물	
비타민제 (프로 비타민제 포함)	비타민A, 프로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6, 비타민B12, 비타민C, 비타민D, 비타민D2, 비타민D3, 비타민E, 비타민K, 판토텐산, 이노시톨, 콜린, 나이아신, 바이오틴, 엽산과 그 유사체 및 혼합물	

## 3) 축사·농기계 및 기구의 소독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물질만 사용할 수 있다. 반드시 가축 또는 사료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다. 유기가공식품

1)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

명칭(한)	명칭(영)	국제 분류 번호 (INS)	식품첨가물로 사용 시		가공보조제로 사용 시	
			허용 여부	허용범위	허용 여부	허용범위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		○	식품 표면의 세척· 소독제
구아검	Guar gum	412	○	제한 없음	×	
구연산	Citric acid	330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구연산삼 나트륨	Trisodium citrate	331 (ii)	○	소시지, 난백의 저온 살균, 유제품, 과일음 료	×	
구연산칼륨	Potassium citrate	332	○	제한 없음	×	
구연산칼슘	Calcium citrate	333	○	제한 없음	×	
규조토	Diatomaceous earth		×		○	여과보조제
글리세린	Glycerin	422	○	제한 없음 (가수분해로 얻어진 식물 유래의 글리세린 만 사용할 수 있음)	×	
퀼라야추출물	Quillaia Extract	999	×		○	설탕 가공
레시틴	Lecithin	322	○	제한 없음 (다만, 표백제 및 유기 용매를 사용하지 않 고 얻은 레시틴만 사 용할 수 있음)	×	
로커스트콩검	Locust bean gum	410	○	식물성제품, 유제품, 육제품	×	
무수아황산	Sulfur dioxide	220	○	과일주	×	
밀납	Beeswax	901	×		○	이형제
백도토	Kaolin	559	×		○	청징(clarification) 또는 여과보조제
벤토나이트	Bentonite	558	×		○	청징(clarification) 또는 여과보조제
비타민 C	Vitamin C	300	○	제한 없음	×	
DL-사과산	DL-Malic acid	296	○	제한 없음	×	
산소	Oxygen	948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산탄검	Xanthan gum	415	○	지방제품, 과일 및 채소제품, 케이크, 과자, 샐러드류	×	

명칭(한)	명칭(영)	국제 분류 번호 (INS)	식품첨가물로 사용 시		가공보조제로 사용 시	
			허용 여부	허용범위	허용 여부	허용범위
수산화나트륨	Sodium hydroxide	524	○	곡류제품	○	설탕 가공 중의 산도 조절제, 유지 가공
수산화칼륨	Potassium hydroxide	525	×		○	설탕 및 분리대두 단백 가공 중의 산도 조절제
수산화칼슘	Calcium hydroxide	526	○	토르티야	○	산도 조절제
아라비아검	Arabic gum	414	○	식물성 제품, 유제품, 지방제품	×	
알긴산	Alginic acid	400	○	제한 없음	×	
알긴산나트륨	Sodium alginate	401	○	제한 없음	×	
알긴산칼륨	Potassium alginate	402	○	제한 없음	×	
염화마그네슘	Magnesium chloride	511	○	두류제품	○	응고제
염화칼륨	Potassium chloride	508	○	과일 및 채소제품, 비유화소스류, 겨자 제품	×	
염화칼슘	Calcium chloride	509	○	과일 및 채소제품, 두류제품, 지방제품, 유제품, 육제품	○	응고제
오존수	Ozone water		×		○	식품 표면의 세척· 소독제
이산화규소	Silicon dioxide	551	○	허브, 향신료, 양념류 및 조미료	○	겔 또는 콜로이드 용액제
이산화염소 (수)	Chlorine dioxide	926	×		○	식품 표면의 세척· 소독제
차아염소산수	Hypochlorous Acid Water		×		○	식품 표면의 세척· 소독제
이산화탄소	Carbon dioxide	290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인산나트륨	Sodium phosphate (Mono-,Di-,Tribasic)	339 (i)(ii)(iii)	○	가공치즈	×	
젖산	Lactic acid	270	○	발효채소제품, 유제품, 식용케이싱	○	유제품의 응고제 및 치즈 가공 중 염수 의 산도 조절제
젖산칼슘	Calcium Lactate	327	○	과립음료	×	
제일인산칼슘	Calcium phosphate, monobasic	341 (i)	○	밀가루	×	

명칭(한)	명칭(영)	국제 분류 번호 (INS)	식품첨가물로 사용 시		가공보조제로 사용 시	
			허용 여부	허용범위	허용 여부	허용범위
제이인산칼륨	Potassium Phosphate, Dibasic	340 (ii)	○	커피화이트너	×	
조제해수염화 마그네슘	Crude Magnesium Chloride (Sea Water)		○	두류제품	○	응고제
젤라틴	Gelatin		×		○	포도주, 과일 및 채소 가공
젤란검	Gellan Gum	418	○	과립음료	×	
L-주석산	L-Tartaric acid	334	○	포도주	○	포도주 가공
L-주석산 나트륨	Disodium L-tartrate	335	○	케이크, 과자	○	제한 없음
L-주석산수소 칼륨	Potassium L-bitartrate	336	○	곡물제품, 케이크, 과자	○	제한 없음
주정 (발효주정)	Ethanol (fermented)		×		○	제한 없음
질소	Nitrogen	941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카나우바왁스	Carnauba wax	903	×		○	이형제
카라기난	Carrageenan	407	○	식물성제품, 유제품	×	
카라야검	Karaya gum	416	○	제한 없음	×	
카제인	Casein		×		○	포도주 가공
탄닌산	Tannic acid	181	×		○	여과보조제
탄산나트륨	Sodium carbonate	500 (i)	○	케이크, 과자	○	설탕 가공 및 유제품의 중화제
탄산수소 나트륨	Sodium bicarbonate	500 (ii)	○	케이크, 과자, 액상 차류	×	
세스퀴탄산 나트륨	Sodium sesquicarbonate	500 (iii)	○	케이크, 과자	×	
탄산마그네슘	Magnesium carbonate	504 (i)	○	제한 없음	×	
탄산암모늄	Ammonium carbonate	503 (i)	○	곡류제품, 케이크, 과자	×	
탄산수소 암모늄	Ammonium bicarbonate	503 (ii)	○	곡류제품, 케이크, 과자	×	
탄산칼륨	Potassium carbonate	501 (i)	○	곡류제품, 케이크, 과자	○	포도 건조



명칭(한)	명칭(영)	국제 분류 번호 (INS)	식품첨가물로 사용 시		가공보조제로 사용 시	
			허용 여부	허용범위	허용 여부	허용범위
탄산칼슘	Calcium carbonate	170 (i)	○	식물성제품, 유제품 (탄산칼슘을 착색료 로는 사용하지 말 것)	○	제한 없음
d-토코페롤 (혼합형)	d-Tocopherol concentrate, mixed	306	○	유지류 (d-토코페롤은 산화방지제로만 사용 할 것)	×	
트라가칸스검	Tragacanth gum	413	○	제한 없음	×	
퍼라이트	Perlite		×		○	여과보조제
펙틴	Pectin	440	○	식물성제품, 유제품	×	
활성탄	Activated carbon		×		○	여과보조제
황산	Sulfuric acid	513	×		○	설탕 가공 중의 산도 조절제
황산칼슘	Calcium sulphate	516	○	케이크, 과자, 두류제 품, 효모제품	○	응고제
천연착향료	Natural flavoring substances and preparations		○	제한 없음(다만, 「식품위생법」 제 20 제1항에 따라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 격에 관하여 고시한 천연 착향료로서 물, 발효주정, 이산화탄소 및 물리적 방법으로 추출한 천연 착향료 만 사용할 수 있다)	×	
미생물 및 효소제제	Preparations of Microorganisms and Enzymes		○	제한 없음 ( 식품위 생법」 제 20제 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 여 고시한 미생물 및 효소제제만 사용할 수 있다)	○	제한 없음 ( 식품위 생법」 제 20제 항 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식품첨 가물의 기준 및 규 격에 관하여 고시한 미생물 및 효소제제 만 사용할 수 있다)

명칭(한)	명칭(영)	국제 분류 번호 (INS)	식품첨가물로 사용 시		가공보조제로 사용 시	
			허용 여부	허용범위	허용 여부	허용범위
영양강화제 및 강화제	Fortifying nutrients		○	「식품위생법」 제7 조제1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 2항에 따라 사용이 의무화된 제품 (「식품위생법」 제 7 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에 관하여 고시한 영 양강화제 및 강화제 만 사용할 수 있다)	×	

2) 기구·설비의 세척·살균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제1호다목1)에 따른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고시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만 사용할 수 있다.

2. 무농약농산물등에 사용가능한 물질

가. 무농약농산물: 제1호가목2)에 따른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 가능한 물질만 사용할 수 있다.

나. 무항생제축산물: 일반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1 제3호마 목3)의 물질을 사료에 첨가해서는 안 된다.

3. 유기농업자재 제조 시 보조제로 사용가능한 물질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 미국 환경보호국(EPA)에서 정하는 농약제품에 허가된 불활성 성분 목록(Inert Ingredients List) 3 또는 4에 해당하는 보조제	○ 제1호가목2)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단순히 PH조정 등과 같은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첨가하는 것으로만 사용할 것 ○ 유기농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보조제가 주원료의 투입비율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공시(품질인증) 생산계획서에 기록·관리하고 사용할 것 ○ 불활성 성분 목록 3의 식품등급에 해당하는 보조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된 물질일 것

##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제3조제2항 관련)

### 1.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 가. 해당 제품 생산에 필수적이며 가장 적합할 것
- 나. 천연에서 유래한 것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거나 재생 가능한 자원일 것(재생불가능한 자원을 이용한 화학물질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 환경에 대하여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 라. 사람의 건강과 식품 안전을 증진할 것
- 마.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등,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개선 및 품질보존에 도움이 될 것
- 바. 소비자의 저항이나 반대가 없어야 하며 소비자의 일반적인 의견을 반영할 것
- 사. 유전자변형 기술을 적용한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가 아닐 것
- 아. 방사선조사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것

### 2. 허용물질의 신규 선정, 개정 또는 폐지 절차

- 가. 허용물질은 유기농업 등의 원칙 및 예방 원칙(어떠한 활동이 인간 건강·환경을 위협할 경우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더라도 예방조치를 한다)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며,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 나. 모든 이해관계자는 유기적 취급 물질의 선정·개정·폐지를 농촌진흥청장(유기농업자재 제품 생산에 필요한 물질만 해당한다)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물질만 해당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접수된 신청 물질에 대해 유기농업 원칙, 농업환경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7명 이상의 분야별 학계,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한 자체 전문가심의회를 각각 구성하여 기초평가를 진행하며, 그 결과가 인체 및 농업환경 위해성이 없어 유기농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접수된 신청물질의 분야가 중복될 경우에는 신청받은 기관에서 분야가 중복된 다른 기관의 협조를 받아 평가를 수행한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보고한 기초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7명 이상의 분야별 학계,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한 전문가심의회를 구성하여 최종 평가하며, 이 경우 기초평가를 실시한 기관의 책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인체 및 농업환경 위해성이 없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1을 개정할 수 있다.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등(제9조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재배포장”이란 작물을 재배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 나. “화학비료”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중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 다. “유기합성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기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 라. “윤작”이란 동일한 재배포장에서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작물을 순차적으로 조합·배열하는 방식의 작부체계를 말한다.
- 마. “관행농업”이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일반 관행적인 농업형태를 말한다.
- 바.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 사. “유기사료”란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생산된 사료를 말한다.
- 아. “유해잔류물질”이란 항생제·합성항균제 및 호르몬 등 동물의약품의 인위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동물에 잔류되거나 또는 농약·유해중금속 등 환경적인 요소에 의한 자연적인 오염으로 인하여 축산물 내에 잔류되는 화학물질과 그 대사산물을 말한다.
- 자. “동물용의약품”이란 동물질병의 예방·치료 및 진단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 차. “사육장”이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축사시설이나 방목, 운동장을 말한다.
- 카. “휴약기간”이란 사육되는 가축에 대하여 그 생산물이 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 타. “경축순환농법”(耕畜循環農法)이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가 경종과 축산을 겸업하면서 각각의 부산물을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에 활용하고, 경종작물의 퇴비소요량에 맞게 가축사육 마리 수를 유지하는 형태의 농법을 말한다.

- 파. “시유”란 원유를 소비자가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단순살균 처리한 것을 말한다.
- 하. “생산자단체”란 5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 작목회 등 영농조직, 협동조합 또는 영농 단체를 말한다.
- 거. “생산지침서”란 인증품을 생산하는 전체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영농방법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를 의미한다.
- 너. “생산관리자”란 생산자 단체 소속 농가의 생산지침서의 작성 및 관리, 영농 관련 자료의 기록 및 관리, 인증을 받으려는 신청인에 대한 인증기준 준수 교육 및 지도,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심사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농자재의 제조·유통·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 더. “식물공장(Vertical Farm)”이란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통제된 시설 공간에서 빛(LED, 형광등), 온도, 수분, 양분 등을 인공적으로 투입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을 말한다.

## 2.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경영관리 및 단체관리	1) 별표 4 제1호가목에서 규정한 경영 관련 자료를 같은 목에 따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심사를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 생산계획서와 필요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생산자단체로 인증받으려는 경우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이행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가)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소속 농가에게 최신의 인증기준과 인증농가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 다) 소속 농가의 인증품 생산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생산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심사 사항	구비 요건
나. 재배포장, 용수, 종자	<p>1) 재배포장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지역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잔류농약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p> <p>2) 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정을 실시하여 토양 비옥도가 유지·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3) 재배포장은 인증받기 전에 다음 가) 또는 나) 외 전환기간 이상 다목에 따른 재배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인의 이전의 농장사용 경력을 감안하여 전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전환기간은 최소한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가) 다년생 작물(목초를 제외한다): 최초 수확 전 3년의 기간</p> <p>나) 가) 외의 작물: 파종 또는 재식 전 2년의 기간</p> <p>4)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용식물의 포장은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자재 외의 자재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지역이어야 한다.</p> <p>5) 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하천·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총 인 및 총 질소 항목과 지하수의 수질기준 중 질산성 질소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하천·호소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항목은 해당 작물 생육기의 평균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을 기준으로 하며,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와 콩나물 및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의 재배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6) 종자는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관리된 종자 (이하 “유기종자”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유기종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7)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 1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8) 재배포장 주변에 공동방제구역 등 오염원이 있는 경우 이들로부터 적절한 완충지대나 보호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재배포장 입구나 인근 재배포장과의 경계지 등 잘 보이는 곳에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 재배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p> <p>9)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재배지 (해당 재배지의 위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가 아니어야 한다.</p>

심사 사항	구비 요건
다. 재배방법	<p>1)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2)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따라 두과작물 · 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하여야 한다.</p> <p>3) 토양에 투입하는 유기물은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p> <p>4) 2) 및 3)에 따른 방법으로 작물의 적절한 영양공급 또는 토양의 영양상태 조절이 불가능한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 1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p> <p>5)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 · 액비 (이하 “가축분뇨 퇴비 · 액비”라 한다)는 유기농축산물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에서 유래된 것만 사용할 수 있으며,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농축산물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 및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하지 아니한 농장에서 유래된 퇴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p> <p>가) 퇴비화 과정에서 퇴비더미가 55~75℃를 유지하는 기간이 15일 이상 되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5회 이상 뒤집어야 한다.</p> <p>나) 퇴비에 항생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유해성분 함량은 「미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비료 공정규격 중 퇴비 규격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6) 병해충 및 잡초는 다음의 방법으로 방제 · 조절하여야 한다.</p> <p>가) 적합한 작물과 품종의 선택</p> <p>나) 적합한 윤작체계</p> <p>다) 기계적 경운</p> <p>라) 재배포장 내의 혼작 · 간작 및 공생식물의 재배 등 작물체 주변의 천적활동을 조장하는 생태계의 조성</p> <p>마) 멀칭 · 예취 및 화염제초</p> <p>바) 포식자와 기생동물의 방사 등 천적의 활용</p> <p>사) 식물 · 농장퇴비 및 돌가루 등에 의한 생체역학적 수단</p> <p>아) 동물의 방사</p> <p>자) 덫 · 울타리 · 빛 및 소리와 같은 기계적 통제</p> <p>차) 병해충 등이 기계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2)의 물질만을 사용</p>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p>1) 유기농산물 · 유기임산물의 저장 및 수송 시 저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p>



심사 사항	구비 요건
	<p>2) 병해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p> <p>가) 병해충 서식처의 제거,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p> <p>나) 예방책이 부적합한 경우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p> <p>다) 병해충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표 1 제 1호가목 2외 물질을 사용 할 수 있으나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에는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사용</p> <p>3) 저장구역 또는 수송컨테이너에 대한 병해충 관리방법으로 물리적 장벽, 소리·초음파, 빛·자외선, 텃(뚫로몬 및 전기유혹 텃을 말한다), 온도조절, 대기 조절(탄산가스·산소·질소의 조절을 말한다) 및 규조토를 이용할 수 있다</p> <p>4) 저장장소와 컨테이너가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만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전에 별표 1 제 1호가목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약이나 다른 처방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p> <p>5)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은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이 아닌 농산물과 혼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일반농산물과 함께 저장 또는 수송하는 경우에는 그 구별을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다른 농산물과의 혼합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6)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p> <p>7)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 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p> <p>8)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되, 그 허용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임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하고, 같은 고시에서 해당 농산물·임산물에 대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고시에서 설정된 다른 농산물·임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중 최저인 농산물·임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여야 한다.</p> <p>가) 인근 관행농업의 포장으로부터 바람에 의한 비산</p> <p>나) 관개 또는 이웃 포장의 배수 등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p> <p>다)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요인</p>
<p>따. 기타</p>	<p>1) 콩나물과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임산물은 그 원료가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이어야 한다.</p>

심사 사항	구비 요건
	2) 짝을 띄워 직접 먹는 농산물·임산물은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작업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토양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농산물·임산물은 수분공급 외에는 어떠한 외부투입 물질도 허용이 금지된다. 4) 에틸렌은 키위, 바나나와 감의 숙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5)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

### 3. 유기축산물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일반원칙 및 단체관리	1) 별표 4 제1호나목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2) 초식가축은 목초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밖의 가축은 기후와 토양이 허용되는 한 노천구역에서 자유롭게 방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축 사육두수는 해당 농가에서의 유기사료 확보능력, 가축의 건강, 영양균형 및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4) 전통적인 사양체계의 농장구조가 초지에 접근이 용이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유기사료 제공으로 가축을 생산할 수 있다. 5) 가축의 생리적 요구에 필요한 적절한 사양관리체계로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면서 질병예방과 건강유지를 위한 가축관리를 하여야 한다. 6) 가축 질병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축의 건강과 복지유지를 위하여 수의사의 처방 및 감독 하에 치료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심사를 위하여 축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 생산계획서와 필요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8) 생산자단체로 인증받으려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이행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가)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소속 농가에게 최신의 인증기준과 인증농가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 다) 소속 농가의 인증품 생산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심사 사항	구비 요건
	<p>라) 가)부터 다)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생산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p>
<p>나. 사육장 및 사육조건</p>	<p>1) 사육장 및 사료작물 재배지는 주변으로부터의 오염우려가 없는 지역으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지역의 토양 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2) 축사 및 방목에 대한 세부요건은 다음과 같다.</p> <p>가) 축사 조건</p> <p>(1) 축사는 다음과 같이 가축의 생물적 및 행동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p> <p>(가) 사료와 음수는 접근이 용이할 것</p> <p>(나) 공기순환, 온도·습도, 먼지 및 가스농도가 가축건강에 유해하지 아니한 수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고, 건축물은 적절한 단열·환기시설을 갖추는 것</p> <p>(다)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될 수 있을 것</p> <p>(2) 축사의 밀도조건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사육두수를 유지하여야 한다.</p> <p>(가) 가축의 품종·계통 및 연령을 고려하여 편안함과 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p> <p>(나) 축군의 크기와 성에 관한 가축의 행동적 욕구를 고려할 것</p> <p>(다) 자연스럽게 일어서서 앉고 돌고 활개칠 수 있는 등 충분한 활동공간이 확보될 것</p> <p>(3) 축사·농기계 및 기구 등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소독함으로써 교차감염과 질병감염체의 증식을 억제하여야 한다.</p> <p>(4) 축사의 바닥은 부드러우면서도 미끄럽지 아니하고, 청결 및 건조하여야 하며,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휴식공간에서는 건조깔짚을 깔아 줄 것</p> <p>(5) 번식돈은 임신 말기 또는 포유기간을 제외하고는 군사를 하여야 하고, 자돈 및 육성돈은 케이지에서 사육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돈 압사 방지를 위하여 포유기간에는 모돈과 조기 이유한 자돈의 생체중이 25킬로그램까지는 케이지에서 사육할 수 있다.</p> <p>(6) 가금류의 축사는 짚·톱밥·모래 또는 야초와 같은 깔짚으로 채워진 건축공간이 제공되어야 하고, 가금의 크기와 수에 적합한 쉼의 크기 및 높은 수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산란계는 산란상자를 설치하여야 한다.</p> <p>(7) 산란계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부여한 시간의 범위에서 자연일조시간을 인공광으로 연장할 수 있다.</p>

심사 사항	구비 요건
	<p>나) 방목조건</p> <p>(1) 포유동물의 경우에는 가축의 생리적조건 ·기후조건 및 지면조건이 허용하는 한 언제든지 방목지 또는 운동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수소의 방목지 접근, 암소의 겨울철 운동장 접근 및 비육 말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p>(2) 가금류의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p> <p>(가) 가금은 개방조건에서 사육되어야 하고, 기후조건이 허용하한 야외 방목장에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케이지에서 사육하지 아니할 것</p> <p>(나) 물오리류는 기후조건에 따라 가능한 시냇물 ·연못 또는 호수에 접근이 가능할 것</p> <p>3) 유기가축과 비유기 가축의 병행사육은 다음 가 부터 다 까지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할 수 있다</p> <p>가)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을 농장의 가축은 일반가축(무항생제육 가축 포함)과 동일 축사 내에서 사육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나) 유기가축, 사료취급, 약품투여 등은 비유기가축과 구분하여 정확히 기록 관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p> <p>다) 인증가축은 비유기 가축사료, 금지물질 저장, 사료공급 ·혼합 및 취급 지역에서 안전하게 격리되어야 하며, 사육장 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유기축산물 사육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p>
다. 자급 사료 기반	<p>1) 초식가축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 재배지(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확보하여야 한다.</p> <p>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축종별 가축의 생리적 상태, 지역 기상조건의 특수성 및 토양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재배·생산된 조사료를 구입하여 급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p> <p>3) 목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는 유기농산물의 재배·생산기준에 맞게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멸강충 등 긴급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의 사전승인 또는 사후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4) 가축분뇨 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5)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사료작물은 유기농산물 허용물질 외의 물질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사료)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유기사료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p>

심사 사항	구비 요건																																						
<p>라. 가축의 선택, 번식 방법 및 입식</p>	<p>1) 가축은 유기축산 농가의 여건 및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사육하기 적합한 품종 및 혈통을 골라야 한다.  가) 산간지역·평야지역 및 해안지역 등 지역적인 조건에 적합할 것  나) 축종별로 주요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특정 품종 및 계통에서 발견되는 스트레스증후군 및 습관성 유산 등의 건강상 문제점이 없을 것  다) 품종별 특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내병성이 있을 것</p> <p>2) 교배는 종축을 사용한 자연교배를 권장하되, 인공수정을 허용할 수 있다.</p> <p>3) 수정란 이식기법이나 번식호르몬 처리, 유전공학을 이용한 번식기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p> <p>4)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 가축은 이 호에 따른 유기축산의 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이어야 한다. 다만, 이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반 가축을 입식할 수 있다.  가) 이유 직후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인 경우 (원유 생산용 알 생산용 및 녹용 생산용 가축의 경우 육성축 및 성축 입식 가능)  나) 번식용 수컷이 필요한 경우  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폐사로 새로운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p>																																						
<p>마. 전환기간</p>	<p>1) 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하거나 라목4) 단서에 따라 유기가축이 아닌 가축을 유기농장으로 입식하여 유기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여야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448 1473 1406 2054"> <thead> <tr> <th>축종</th> <th>생산물</th> <th>최소 사육기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한우·육우</td> <td>식육</td> <td>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12개월 이상)</td> </tr> <tr> <td>송아지식육</td> <td>6개월령 미만의 송아지 입식 후 6개월</td> </tr> <tr> <td>젖소</td> <td>시유</td> <td>착유우는 90일, 미경산우는 6개월</td> </tr> <tr> <td rowspan="2">산양</td> <td>식육</td> <td>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5개월)</td> </tr> <tr> <td>시유</td> <td>착유양은 90일, 미경산양은 6개월</td> </tr> <tr> <td>돼지</td> <td>식육</td> <td>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5개월 이상)</td> </tr> <tr> <td>육계</td> <td>식육</td> <td>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3주 이상)</td> </tr> <tr> <td>산란계</td> <td>알</td> <td>입식 후 3개월</td> </tr> <tr> <td rowspan="2">오리</td> <td>식육</td> <td>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6주 이상)</td> </tr> <tr> <td>알</td> <td>입식 후 3개월</td> </tr> <tr> <td>메추리</td> <td>알</td> <td>입식 후 3개월</td> </tr> <tr> <td rowspan="2">사슴</td> <td>식육</td> <td>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12개월)</td> </tr> <tr> <td>녹용</td> <td>녹용 성장기간 4개월</td> </tr> </tbody> </table>	축종	생산물	최소 사육기간	한우·육우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12개월 이상)	송아지식육	6개월령 미만의 송아지 입식 후 6개월	젖소	시유	착유우는 90일, 미경산우는 6개월	산양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5개월)	시유	착유양은 90일, 미경산양은 6개월	돼지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5개월 이상)	육계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3주 이상)	산란계	알	입식 후 3개월	오리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6주 이상)	알	입식 후 3개월	메추리	알	입식 후 3개월	사슴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12개월)	녹용	녹용 성장기간 4개월
축종	생산물	최소 사육기간																																					
한우·육우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12개월 이상)																																					
	송아지식육	6개월령 미만의 송아지 입식 후 6개월																																					
젖소	시유	착유우는 90일, 미경산우는 6개월																																					
산양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5개월)																																					
	시유	착유양은 90일, 미경산양은 6개월																																					
돼지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5개월 이상)																																					
육계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3주 이상)																																					
산란계	알	입식 후 3개월																																					
오리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6주 이상)																																					
	알	입식 후 3개월																																					
메추리	알	입식 후 3개월																																					
사슴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12개월)																																					
	녹용	녹용 성장기간 4개월																																					

심사 사항	구비 요건
	<p>2) 방목지·노천구역 및 운동장 등의 사육여건이 잘 갖추어지고 유기 사료의 급여가 100퍼센트 가능할 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위 전환기간 10퍼센트 내에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p> <p>3) 1)에 전환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축종은 해당 축종과 생육기간 및 사육방법이 비슷한 축종의 전환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생육기간 및 사육방법이 비슷한 축종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도 전환기간을 설정한다.</p> <p>4) 동일 농장에서 가축·목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가 동시에 전환 하는 경우에는 현재 사육되고 있는 가축에게 자체농장에서 생산된 사료를 급여하는 조건 하에서 목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의 전환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목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에서 생산된 사료는 1)의 해당 전환기간 동안만 급여하여야 한다.</p>
<p>바. 사료 및 영양 관리</p>	<p>1) 유기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에게는 100퍼센트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사료)을 급여하여야 한다.</p> <p>2) 유기축산물 생산과정 중 심각한 천재·지변, 극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른 사료급여가 어려운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일정기간 동안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일정 비율로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p> <p>3) 반추가축에게 사일리지(silage)만 급여해서는 안 된다. 비반추 가축에게도 가능한 조사료(粗飼料) 급여를 권장한다.</p> <p>4)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유래한 것이 함유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범위에서 비의도적인 혼입은 인정될 수 있다.</p> <p>5)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는 별표 1제 호나목의 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다.</p> <p>6)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  가) 가축의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화합물  나)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는 어떠한 경우에도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  다) 합성질소 또는 비단백태질소화합물  라)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딕제 및 호르몬제  마) 그 밖에 인위적인 합성 및 유전자조작에 의해 제조·변형된 물질</p> <p>7)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음수를 상시 급여할 수 있어야 한다.</p>
<p>사.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p>	<p>1) 가축의 질병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예방하여야 하며,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해서는 아니 된다.  가) 가축의 품종과 계통의 적절한 선택</p>

심사 사항	구비 요건
	<p>나) 질병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육장 위생관리  다) 비타민 및 무기물 급여를 통한 면역기능 증진  라)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나 기생충에 저항력이 있는 종 또는 품종의 선택</p> <p>2) 가축의 기생충 감염 예방을 위하여 구충제 사용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p> <p>3) 법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질병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4) 1)부터 3)까지에 따른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은(구충제를 사용한 가축을 포함한다)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나야 유기축산물로 인정할 수 있다.</p> <p>5) 약초 및 천연물질을 이용하여 치료를 할 수 있다.</p> <p>6) 생산성 촉진을 위해서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호르몬 사용은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p> <p>7) 가축에 있어 꼬리 부분에 점착밴드 붙이기, 꼬리 자르기, 이빨 자르기, 부리 자르기 및 뿔 자르기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 또는 축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가축의 건강과 복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이를 할 수 있다.</p> <p>8) 생산물의 품질향상과 전통적인 생산방법의 유지를 위하여 물리적 거세를 할 수 있다.</p> <p>9) 4) 또는 6)에 따른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 11조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p>
<p>아. 운송·도축·가공과정의 품질 관리</p>	<p>1) 생축의 수송은 조용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기 자극이나 대중요법의 안정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p> <p>2) 가축의 도축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오염방지 등을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p> <p>3) 도체 및 원유 등 해당 축산물은 가공공정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을 적용 통가에서 직접 가공하는 경우는 제외 하는 축산물 가공장에서 가공되어야 하고, 유기적 방법으로 생산된 원유는 별도 구분하여 집유 및 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p>

심사 사항	구비 요건
	<p>4) 생축의 저장 및 수송 시에는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p> <p>5) 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 동물용의약품이 잔류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 관리 하에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이를 허용 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p> <p>6) 유통 시 발생할 수 있는 유기축산물의 변성이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임의로 합성물질을 첨가할 수 없다. 다만, 물리적처리나 천연제제는 유기축산물의 화학적 변성이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p> <p>7) 유기축산물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 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p>
자. 가축분뇨의 처리	<p>1) 가축사육 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p> <p>2) 가축의 운동장에서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3) 가축분뇨의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제 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p> <p>4) 가축분뇨 퇴·액비는 표면수 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사용 하되, 장마철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 4. 유기가공식품

심사사항	구비요건
가. 일반요건	<p>1) 사업자는 유기식품의 취급 과정에서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문서화된 유기취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2) 사업자는 유기식품의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원료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p> <p>3) 사업자는 유기생산물과 유기생산물이 아닌 생산물을 혼합하지 않아야 하며, 접촉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p> <p>4) 사업자는 유기생산물이 오염원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나. 가공원료	<p>1) 유기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등은 모두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p> <p>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p>



심사사항	구비요건
	<p>나)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 인정을 받은 유기가공식품</p> <p>다) 법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자체 기준 또는 외국 기준에 따라 기준적합성을 확인한 제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내 생산 부족 등으로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유기가공식품 (외국에서 생산, 제조·가공된 것만 해당한다)</p> <p>2) 1)에도 불구하고 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 제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5% 이하의 비유기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중량비율에 관계없이 유기 원료와 동일한 종류의 비유기원료는 혼합할 수 없다.</p> <p>※ 유기원료 비율의 계산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math display="block">\frac{I_o}{G-WS} = \frac{I_o}{I_o+I_c+I_a} \geq 0.95</math> <p>G: 제품(포장재, 용기 제외)의 중량 (<math>G=I_o+I_c+I_a+WS</math>)  I<sub>o</sub>: 유기원료(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유기가공식품)의 중량  I<sub>c</sub>: 비유기 원료(유기식품인증 표시가 없는 원료)의 중량  I<sub>a</sub>: 비유기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 제외)의 중량  WS: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과 소금의 중량</p> </div> <p>3) 유전자변형 생물체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 유래의 원료를 사용 할 수 없다</p> <p>4) 물과 소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종 제품의 유기성분 비율 산정시 제외한다. 다만, 「먹는물 관리법」 제5조 및 「식품위생법」 제7조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p> <p>5) 1)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1호다목의 허용물질을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p>
다. 가공방법	<p>1)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되 모든 원료와 최종생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식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반응시키는 일체의 첨가물, 보조제, 그 밖의 물질은 사용할 수 없다.</p> <p>2) 유기식품의 가공 및 취급 과정에서 전리 방사선을 사용할 수 없다.</p> <p>3) 추출을 위하여 물, 에탄올, 식물성 및 동물성 유지, 식초, 이산화탄소, 질소를 사용할 수 있다.</p> <p>4) 여과를 위하여 석면을 포함하여 식품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p> <p>5) 저장을 위하여 공기, 온도, 습도 등 환경을 조절할 수 있으며, 건조하여 저장할 수 있다.</p>

심사사항	구비요건
라. 해충 및 병원균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하여 별표 1 제 1호가목 2에서 정한 물질을 제외한 화학적인 방법이나 방사선 조사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li> <li>2) 해충 및 병원균을 없애기 위하여 예방적 방법, 기계적·물리적·생물학적 방법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별표 1 제 1호가목 2)에서 정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li> <li>3) 해충과 병원균 관리를 위해 장비 및 시설에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나 금지된 방법으로부터 유기식품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 등의 충분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li> </ol>
마. 세척 및 소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기가공식품은 시설이나 설비 또는 원료의 세척, 살균, 소독에 사용된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li> <li>2) 사업자는 유기가공식품을 유기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나 해충, 병원균, 그 밖의 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li> <li>3)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기준에 적합한 먹는물과 별표 1 제 1호다목에서 허용하는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를 식품 표면이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표면의 세척제 및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다.</li> <li>4) 세척제·소독제를 시설 및 장비에 사용하는 경우 유기식품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li> </ol>
바. 포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포장재와 포장방법은 유기가공식품을 충분히 보호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도록 선정하여야 한다.</li> <li>2) 포장재는 유기가공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li> <li>3) 합성살균제, 보존제, 훈증제 등을 함유하는 포장재, 용기 및 저장고는 사용할 수 없다.</li> <li>4) 유기가공식품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물질 등과 접촉한 재활용된 포장재나 그 밖의 용기는 사용할 수 없다.</li> </ol>
사. 유기 원료 및 가공 식품의 수송 및 운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원료나 가공식품의 수송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수송 과정에서 유기식품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li> <li>2) 수송장비 및 운반용기의 세척, 소독을 위하여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li> <li>3) 수송 또는 운반 과정에서 유기가공식품이 유기가공식품이 아닌 물질이나 허용되지 않은 물질과 접촉 또는 혼합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li> </ol>
아. 기록·문서화 및 접근 보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별표 4 제2호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li> </ol>

심사사항	구비요건
	<p>2) 사업자는 제조·가공 및 취급의 전반에 걸쳐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문서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하며, 문서화된 계획은 인증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3) 사업자는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가공 및 취급에 필요한 모든 유기원료,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세척제, 그 밖의 사용 물질의 구매, 입고, 출고, 사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p> <p>4) 사업자는 제조·가공, 포장, 보관·저장, 운반·수송, 판매, 그밖에 취급에 관한 유기적 관리지침을 문서화하여 실행하여야 한다.</p> <p>5) 사업자는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유기식품의 제조·가공에서부터 취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한 모든 기록 및 관련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건없이 보장하여야 한다.</p>

## 5. 비식용유기가공품

### ○ 유기사료

심사사항	구비요건
가. 일반요건	<p>1) 사업자는 유기사료의 취급 과정에서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문서화된 유기취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2) 사업자는 유기사료의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원료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p> <p>3) 사업자는 유기생산물과 유기생산물이 아닌 생산물을 혼합하지 않아야 하며, 접촉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p> <p>4) 사업자는 유기생산물이 오염원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나. 가공원료	<p>1) 유기사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와 보조사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p> <p>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p> <p>나)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p> <p>다) 별표 1 제1호나목1)·2)의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 (사용 가능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p> <p>2) 유전자변형 생물체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 유래의 원료를 사용할 수 없다.</p> <p>3)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p> <p>가) 가축의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화합물</p> <p>나)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 (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 한 어떠한 경우에도 첨가해서는 아니 됨)</p>

심사사항	구비요건
	<p>다) 합성 질소 또는 비단백태 질소화합물</p> <p>라)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듐제 및 호르몬제</p> <p>마) 그 밖에 인위적인 합성 및 유전자조작에 의해 제조·변형된 물질</p>
다. 가공방법	<p>1)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되 모든 원료와 최종 생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원료의 속성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반응시키는 일체의 첨가물, 보조제, 그 밖의 물질은 사용할 수 없다.</p> <p>2) 유기사료의 가공 및 취급 과정에서 전리 방사선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전리 방사선을 조사한 물질을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p> <p>3) 추출을 위하여 물, 에탄올, 식물성 및 동물성 유지, 식초, 이산화탄소, 질소를 사용할 수 있다.</p> <p>4) 여과를 위하여 석면을 포함하여 생산물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p>
라. 제조시설 기준	<p>1) 제조시설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 6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2) 유기사료 생산을 위한 원료와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 (이하 일반 사료 라 한다) 생산을 위한 원료는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p> <p>3) 유기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생산라인은 일반사료 생산라인과 별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사료 생산 후 생산라인이 세척(flushing) 관리 되는 경우에는 일반사료 생산라인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유기사료를 생산할 수 있다.</p>
마. 해충 및 병원균 관리	<p>1)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하여 별표 1 제 1호가목 2)에서 정한 물질을 제외한 화학적인 방법이나 방사선 조사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p> <p>2) 해충 및 병원균을 없애기 위하여 예방적 방법, 기계적·물리적·생물학적 방법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표 1 제 1호가목 2)에서 정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p> <p>3) 해충과 병원균 관리를 위해 장비 및 시설에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나 금지된 방법으로부터 유기사료를 보호하기 위해 격리 등의 충분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p>
바. 세척 및 소독	<p>1) 유기사료는 시설이나 설비 또는 원료의 세척, 살균, 소독에 사용된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사업자는 유기사료가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나 해충, 병원균, 그 밖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p>

심사사항	구비요건
	3) 같은 시설에서 유기사료와 일반 사료를 함께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유기사료를 생산하기 전 설비의 청소를 충분히 실시하고 청소 상태를 점검·기록하여야 한다. 4) 세척제·소독제를 시설 및 장비에 사용하는 경우 유기사료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포장	1) 포장재와 포장방법은 유기사료를 충분히 보호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 포장재는 유기사료를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합성살균제, 보존제, 훈증제 등을 함유하는 포장재, 용기 및 저장고는 사용할 수 없다. 4) 유기사료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물질 등과 접촉한 재활용된 포장재나 그 밖의 용기는 사용할 수 없다.
아. 유기원료 및 가공된 사료의 수송 및 운반	1) 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원료나 사료의 수송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수송 과정에서 유기사료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송 장비 및 운반용기의 세척, 소독을 위하여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 3) 수송 또는 운반과정에서 유기사료가 다른 물질이나 허용되지 않은 물질과 접촉 또는 혼합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4) 제품을 벌크 형태로 운반하는 경우 유기사료 전용차량을 이용 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차량이 일반 사료 운반 후 세척(flushing)관리되는 경우 같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자. 기록·문서화 및 접근보장	1) 별표 4 제2호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업자는 제조·가공, 포장, 보관·저장, 운반·수송, 판매 등 취급의 전반에 걸쳐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문서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하며, 문서화된 계획은 인증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자는 유기사료의 제조·가공 및 취급에 필요한 모든 원료, 보조사료, 가공보조제, 세척제, 그 밖의 사용자재의 구매, 입고, 출고, 사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제조·가공, 포장, 보관·저장, 운반·수송, 판매, 그 밖에 취급에 관한 유기적 관리지침을 문서화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유기사료의 제조·가공에서부터 취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한 모든 기록 및 관련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건 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 6.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심사사항	구비요건
가. 경영관리	1) 별표 4 제2호에서 규정한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심사를 위하여 인증품의 취급과정을 기록한 인증품 취급계획서와 필요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작업장 시설 기준	1) 작업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중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에 대한 작업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되, 축산물판매업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중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시설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은 업종에 해당하는 작업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원료관리	1) 유기식품이 아닌 식품(인증이 취소되었거나 인증표시 사용이 정지된 인증품을 포함한다)을 인증품의 원재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재료 입고 시 유기식품등의 표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별표6 제2호에 따라 공급자가 제공하는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라. 취급방법	1) 유기식품이 아닌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 저장·포장·운송·수입 등 취급과정에서 유기식품에 유기식품이 아닌 식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급시간 또는 취급구역을 달리하여야 한다. 2) 유기식품이 아닌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 유기식품을 취급하기 이전에 취급 작업장을 충분히 세척하여야 한다. 3) 저장·포장·운송·수입 등 취급과정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한 취급과정이 취급자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다목 1)에도 불구하고 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기농축산물을 무농약농산물등과 혼합할 수 있다. 이 경우 혼합된 유기농축산물은 무농약농산물등으로 간주하며 최종 제품은 무농약농산물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취급과정에서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6) 농축산물 세척 등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심사사항	구비요건
	<p>7) 작업장에 취급하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입고 및 출하에 관한 기록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는 등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p> <p>8) 병해충관리 및 방제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p> <p>가) 병해충 서식처의 제거,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p> <p>나) 예방책이 부적합한 경우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p> <p>다) 병해충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표 1 제 1호가목 2외 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으나 친환경농축산물에는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사용</p>
<p>마. 저장·포장 ·운송·수송</p>	<p>1) 생산물의 저장 및 수송 시 저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p> <p>2) 저장구역 또는 수송컨테이너에 대한 병해충 관리방법으로 물리적 장벽, 소리·초음파, 빛·자외선, 텃(페로몬 및 전기유혹 텃을 말한다), 온도 조절, 대기조절(탄산가스·산소·질소의 조절을 말한다) 및 구조토를 이용할 수 있다.</p> <p>3) 저장장소와 컨테이너가 별표 1 제 1호가목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약이나 다른 처방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p> <p>4) 생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일반농축산물과 함께 저장 또는 수송하는 경우에는 그 구별을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다른 농축산물과의 혼합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5)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p>
<p>바. 생산물의 품질관리등</p>	<p>1) 생산물이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인 경우 잔류농약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임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하고, 같은 고시에서 해당 농산물·임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고시에서 설정된 다른 농산물·임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중 최저인 농산물·임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한다.</p> <p>2) 유기축산물의 유해잔류물질 기준은 이 표 제 3호아목 5) 및 별표 11제 3호사목5)를 적용한다.</p> <p>3) 인증품에는 로트번호(인증품 관리번호를 말한다), 표준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를 표시하여야 한다.</p>

## 7. 거래인증에 관한 기준

심사사항	구비요건
가. 경영관리	<p>1) 사업자는 거래하려고 하는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취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p> <p>가) 해당 인증품을 생산, 제조·가공, 취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p> <p>나) 해당 인증품을 생산, 제조·가공, 취급한 날짜[생산의 경우 파종·식재일자 또는 입식일자, 수확일자 또는 집란(集卵)·집유(集乳)·도축일자, 포장일자를 포함한다]</p> <p>다) 해당 인증품을 생산, 제조·가공, 취급한 수량</p> <p>라) 해당 인증품을 구매하려는 사업자의 업체명과 주소 및 거래관련 계약서</p> <p>2) 1)의 자료는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의 기록내용 및 인증신청 시 제출한 인증품 생산계획서,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와 일치하여야 한다.</p>
나. 수량관리	<p>1) 인증품 출고량은 인증품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p> <p>2) 인증품 출고량은 인증품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실적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p>



[별표 4]

경영 관련 자료(제10조제2호 관련)

경영 관련 자료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자

가. 농산물·임산물

- 1) 재배포장의 재배 사항을 기록한 자료: 품목명, 파종·식재일, 수확일
- 2) 농산물·임산물 재배포장에 투입된 토양개량용 자재, 작물생육용 자재, 병해충관리용 자재 등 농자재 사용 내용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사용가능한 자재임을 증명하는 서류
- 3) 농산물·임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을 기록한 자료: 품목명, 생산량, 출하처별 판매량
- 4) 유기합성 농약 및 화학비료의 구매·사용·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구매량, 사용처별 사용량·보관량, 구매 영수증
- 5) 1)부터 4)까지의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2년간으로 하되(무농약농산물은 최근 1년간으로 한다) 재배품목과 재배포장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나. 축산물

- 1) 가축입식 등 구입사항과 번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일자별 가축 구입 마리수·번식 마릿수, 가축 연령 및 가축 인증 사항
- 2) 사료의 생산·구입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사료명, 사료의 종류, 일자별 생산량·구입량·급여량, 사용가능한 사료임을 증명하는 서류
- 3) 예방 또는 치료목적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자재구매 영수증

- 4) 동물용의약품 구매·사용·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약품명, 일자별 구매·사용량·보관량, 구매영수증
- 5) 질병의 진단 및 처방에 관한 자료: 수의사 처방전 또는 수의사 처방매뉴얼
- 6) 퇴비·액비의 발생·처리 사항을 기록한 자료: 기간별 발생량, 처리량, 처리방법
- 7) 축산물의 생산량·출하량, 출하처별 거래 내용 및 도축·가공업체에 관하여 기록한 자료: 일자별 생산량, 일자별·출하처별 출하량, 일자별 도축·가공량, 도축·가공업체명
- 8) 1)부터 7)까지의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1년간으로 한다.

## 2. 제조·가공 및 취급자

- 가. 원료로 사용한 농축산물·가공식품의 입고·사용·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원료명, 일자별 입고량·사용량·보관량, 공급자 증명서
- 나. 제조·가공 및 취급에 사용된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사용 내용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사용가능한 물질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다. 인증품의 생산 및 출하처별 판매량: 품목명, 일자별 생산량, 일자별·거래처별 판매량
- 라. 인증품의 취급(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 대한 자료
- 마.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3개월간으로 함

[별표 5]

유기식품등의 유기표시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유기표시 도형

가.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임산물, 유기가공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Name of Certifying Body:  
Certificate Number:

나. 제1호 가목의 표시 도형 내부의 “유기농”의 글자는 품목에 따라 “유기식품”,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 “비식용유기가공품”으로 표기할 수 있다.

다. 작도법

1) 도형 표시방법

가) 표시 도형의 가로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 길이는  $0.95 \times W$ 의 비율로 한다.

나)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 부분에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 \times W$ 로 한다.

다)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 \times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 \times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2) 표시 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 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3) 표시 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 색상으로 하되,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랑색, 빨강색 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4) 표시 도형 내부에 적힌 “유기식품”, “(ORGANIC)”, “ORGANIC”의 글자 색상은 표시 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MAFRA KOREA”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 5)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랑색 C100+M70, 빨강색 M100+Y100+K10으로 한다.
- 6) 표시 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7) 표시 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8) 표시 도형 밑 또는 좌·우 옆면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 2. 유기표시 문자

구 분	표시문자
가. 유기농축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식품, 유기재배농산물 또는 유기농</li> <li>• 유기재배○○(○○은 농산물의 일반적 명칭으로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유기축산○○, 유기○○ 또는 유기농○○</li> </ul>
나. 유기가공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가공식품, 유기농 또는 유기식품</li> <li>• 유기농○○ 또는 유기○○</li> </ul>
다. 비식용유기 가공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사료 또는 유기농 사료</li> <li>• 유기농○○ 또는 유기○○(○○은 사료의 일반적 명칭으로 한다. 다만, “식품”이 들어가는 단어는 사용할 수 없다.</li> </ul>

## 3. 별표 3 제4호나목1)다)에 따른 원료를 사용한 유기식품의 경우

- 가. 제1호가목의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없다.
- 나. “유기”, “유기농”, “organic” 등의 표현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다. 표시 장소는 주 표시면 등 제품의 어느 장소에도 표시할 수 있다.
- 라. 원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별표 3 제4호나목1)다)에 따른 원료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6]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제18조제2항 관련)**

**1.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용기에 표시하는 방법**

가. 표시사항은 해당 인증품을 포장한 사업자의 인증정보와 일치하여야 하며, 해당 인증품의 생산자가 포장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자의 인증번호를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각 항목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인증서에 기재된 명칭대로(단체의 경우 단체명) 표시하되, 단체로 인증 받은 경우로 개별 생산자명을 표시하려는 경우 단체명 뒤에 개별 생산자명을 괄호로 표시 할 수 있다.
- 2) 전화번호: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소비자 상담이 가능한 판매원의 전화번호를 표시한다.
- 3) 포장작업장 주소: 해당 제품을 포장한 작업장의 주소를 번지까지 표시한다.
- 4) 인증번호와 인증기관명: 해당 사업자의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번호와 해당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명을 표시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명은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 5) 생산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한다.

**2.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표시하는 방법**

인증품을 포장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산물로 거래하는 경우 및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자가 발행하는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1)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표시사항
- 2) 공급하는 자의 명칭과 공급받는 자의 명칭
- 3)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거래일

### 3. 표시판 또는 풋말로 표시하는 방법

가.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 판매대의 표시판 또는 풋말에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방법에 따라 표시하려는 경우 인증품이 아닌 제품과 섞이지 않도록 판매대, 판매구역 등을 구분하여야 한다.

### 4. 그 밖의 표시사항

천연, 무공해 및 저공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7]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제18조제3항 관련)**

**1. 제한적 유기표시의 일반원칙**

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포함되는 원재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 2)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 인정을 받은 유기가공식품

나.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를 할 수 있는 제품인 경우에도 다음 1) 또는 2)에 해당되는 사항을 표시 또는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 1) 해당 제품에 별표 5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표시
- 2) 유기라는 용어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

**2.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

가. 70퍼센트 이상 유기농축산물이인 제품

- 1)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원재료(정제수와 염화나트륨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70퍼센트 이상이 유기농축산물이어야 한다.
- 2)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다.
- 3) 표시장소는 주 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 4)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을 사용한 제품

- 1)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만을 사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 2) 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 3) 표시장소는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만 표시할 수 있다.
- 4)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제한적 유기표시 사업자의 준수사항**

제한적 유기표시를 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식품, 비식용가공품)에 사용된 유기농축산물의 원료 또는 재료의 함량 등 표시와 관련된 자료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8]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제19조, 제37조, 제41조제2항, 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인증취소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인증번호 전체(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품목, 인증면적 및 인증종류 전체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로 인증받은 경우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해서만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자의 수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 누적하여 계산한다.

- 1) 구성원이 15가구 이하인 경우로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이 5가구 이하인 경우
- 2) 구성원이 16가구 이상 99가구 이하인 경우로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이 10가구 이하인 경우
- 3) 구성원이 100가구 이상인 경우로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이 15가구 이하인 경우

다.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정지·변경 처분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인증품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라. 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해당 인증품 및 해당 제품(이하 이 목에서 “인증품등”이라 한다)은 다음 1) 및 2)와 같다. 다만, 해당 인증품등에 다른 인증품등이 혼합되어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는 해당 인증품등과 그 혼합된 다른 인증품등 전체를 처분대상으로 한다.

- 1) 위반사항이 발생한 인증품등
- 2) 위반사항이 발생한 인증품등과 생산자, 품목, 생산시기가 동일한 인증품등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가.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호 (법 제 34조제4항)	인증 취소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호 (법 제34조제4항)	인증 취소
<p>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1) 공통기준</p> <p>가)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기록하는 경우</p> <p>나) 경영 관련 자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p> <p>다)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경우</p> <p>2)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p> <p>가) 화학비료 또는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한 경우</p> <p>나)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로 출하되는 농산물·임산물에서 잔류농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임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p> <p>3) 유기축산물</p> <p>가) 축사의 밀도조건을 위반한 경우</p> <p>나) 전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p> <p>다)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급여한 경우 (별표3 제3호바2)의 경우는 제외)</p> <p>라)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되는 물질을 첨가한 경우</p> <p>마) 수의사의 처방전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문서를 비치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를 지키지 않고 출하한 경우</p> <p>바)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생산성 촉진을 위해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사용한 경우</p> <p>사) 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의 3분의 1 이상이 검출된 경우</p> <p>4)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p> <p>가) 가공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를 사용한 경우 (별표 3제 4나목 2)외 경우는 제외)</p>	법 제24조제1항제2호 (법 제34조제4항)	인증 취소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p>나) 가공과정에서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을 사용하거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p> <p>5) 무농약농산물</p> <p>가) 무농약농산물의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한 경우</p> <p>나) 무농약농산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p> <p>6) 무항생제축산물</p> <p>가) 축사의 밀도조건을 위반한 경우</p> <p>나) 전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p> <p>다)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 되는 물질을 첨가한 경우</p> <p>라) 수의사의 처방전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문서를 비치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를 지키지 않고 출하한 경우</p> <p>마)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생산성 촉진을 위해 성장촉진제 또는 호르몬제를 사용한 경우</p> <p>바)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 이상이 검출된 경우</p> <p>7) 취급자</p> <p>가)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에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등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p> <p>나) 취급자·수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농산물·임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을 초과한 인증품을 판매한 경우</p> <p>다) 취급과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물질을 사용한 경우</p>		
<p>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4조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p>	<p>법 제24조제1항 제5호 (법 제34조제4항)</p>	<p>인증취소</p>
<p>마.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p>	<p>법 제24조제1항 제6호 (법 제34조제4항)</p>	<p>인증취소</p>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바. 잔류 물질이 검출되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법 제31조제4항 전단 (법 제34조제5항)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
사. 그 밖의 인증품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법 제31조제4항 전단 (법 제34조제5항)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정지
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증품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때	법 제31조제4항 전단 (법 제34조제5항)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의 변경
자.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 방법을 위반하였을 때	법 제31조제4항 전단 (법 제34조제5항)	해당 제품의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차.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 또는 광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법 제31조제4항 전단 (법 제34조제1항)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

### 3. 행정처분절차

가. 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위반사항을 확인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다만, 해당 인증품에 대한 인증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인증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자료를 그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한다.

[별표 9]

##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

### 1. 조직 및 인력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가 정한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ISO/IEC Guide 170 65)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 가. 조직

- 1)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고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 2)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인증기관(대표, 인증심사원 등 소속 임직원을 포함 한다)은 유기농업자재의 제조·유통·판매나 유기식품등 인증,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위한 컨설팅 또는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등을 행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 될 우려가 없을 것

#### 나. 인력

- 1) 인증심사원을 2명 이상을 갖출 것. 다만, 인증기관 지정 이후에는 인증 업무량 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인증심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
- 2) 인증심사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증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법 제29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수료한 자일 것

### 2. 시설

가. 인증기관이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공인시험 연구기관지정기준에 따른 검정실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공인시험연구 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나. 외부에 위탁하여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검정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이 그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이 해당 분야의 공인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았는지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비치할 것

2)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다음의 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기관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을  
중지할 것

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계측 및 분석을 실시  
한다는 사항

나) 계측 및 분석 관련 자료와 해당 시료를 보관하고 인증기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 인증기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수탁기관이 검사 관련 기록을 위조·변조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  
하거나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검사성적  
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에 위탁을 중지할 것

### 3. 인증업무규정

인증업무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인증업무 실시방법

나. 인증의 사후관리방법

다. 인증 수수료

라. 인증심사원의 준수사항 및 인증심사원의 자체관리·감독 요령

마.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 바. 인증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지침과 이에 대한 시행절차, 내부 감독 등을 포함한 매뉴얼
- 사.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 절차와 조치 방법에 관한 사항
- 아. 인증심사, 인증 결정, 인증활동 등 인증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 자. 모든 신청자가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인증의 승인·유지·확대·취소 등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상업적이나 재정적 등의 압력으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항
- 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다음 사항
  - 1) 가목부터 자목까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 2)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최근 3년간 업무정지처분 2회를 받고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 각 위반행위가 같은 위반행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3호	지정 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 19조 제 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등을 인증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 20조에 따른 인증심사·재심사의 처리 절차·방법 또는 법 제 21조에 따른 인증 갱신·인증품의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6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 24조 제 1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7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아.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8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자.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9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준(제40조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재배포장”이란 작물을 재배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나. “화학비료”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중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무농약농산물**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 경영 관리 및 단체관리	1)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심사를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생산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생산자단체로 인증 받으려는 경우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요건을 모두 이행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가)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를 제공 하여야 한다. 나) 소속 농가에게 최신의 인증기준과 인증농가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 다) 소속 농가의 인증품 생산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생산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나. 재배 포장·용수·종자	1) 재배포장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지역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잔류농약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정을 실시하여 토양 비옥도가 유지·개선되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하천·호소의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p>생활환경기준 중 총 인 및 총 질소 항목과 지하수의 수질기준 중 질산성 질소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하천·호소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항목은 해당 작물 생육기의 평균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을 기준으로 하며,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와 콩나물 및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의 재배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5) 재배포장 주변에 공동방제구역 등 오염원이 있는 경우 이들로부터 적절한 완충지대나 보호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재배포장 입구나 인근 재배포장과의 경계지 등 잘 보이는 곳에 무농약농산물 재배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p> <p>6)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다목의 재배방법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한 토양이어야 하며,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재배지가 아니어야 한다.</p>
다. 재배 방법	<p>1)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3분의 1 이하를 사용하여야 한다.</p> <p>2)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3)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따른 두과작물·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한다.</p> <p>4) 가축분뇨 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의 과도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5) 병해충 및 잡초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방제·조절하여야 한다.</p> <p>가) 적합한 작물과 품종의 선택</p> <p>나) 적합한 윤작체계</p> <p>다) 기계적 경운</p> <p>라) 포장 내의 혼작·간작 및 공생식물의 재배 등 작물체 주변의 천적 활동을 조장하는 생태계의 조성</p> <p>마) 멀칭·예취 및 화염제초</p> <p>바) 포식자와 기생동물의 방사 등 천적의 활용</p> <p>사) 식물·농장퇴비 및 돌가루 등에 의한 생체역학적 수단</p> <p>아) 동물의 방사</p> <p>자) 덫·울타리·빛 및 소리와 같은 기계적 통제</p> <p>차) 병해충 등이 기계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2)의 물질만을 사용</p>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등	<p>1) 무농약농산물은 무농약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임산물과 혼합하여서는 아니 되며, 무농약농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일반농산물·임산물과 함께 저장 또는 수송하는 경우에는 그 구별을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다른 농산물·임산물과의 혼합 또는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 하여야 한다.</p> <p>2) 병해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p> <p>가) 병해충 서식처의 제거 및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p> <p>나) 예방책이 부적합한 경우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p> <p>다) 병해충 등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2)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무농약농산물에는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사용</p> <p>3) 저장구역 또는 수송컨테이너에 대한 병해충 관리방법으로 물리적 장벽, 소리·초음파, 빛·자외선, 덩(페로몬 및 전기유혹 덩을 말한다), 온도조절, 대기조절(탄산가스·산소·질소의 조절을 말한다) 및 구조토를 이용할 수 있다.</p> <p>4) 저장장소와 컨테이너가 전적으로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 또는 무농약농산물만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전에 별표 1제 1호가목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약이나 다른 처방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p> <p>5)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p> <p>6)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가부터 다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만 허용하되, 그 허용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하고 같은 고시에서 해당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고시에서 설정된 다른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 중 최저인 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한다.</p> <p>가) 인근 관행농업의 포장으로부터 바람에 의한 비산</p> <p>나) 관개 또는 이웃 포장의 배수 등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p> <p>다)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요인</p>
마. 그 밖의 사항	<p>1) 수경재배 농산물 및 양액재배 농산물은 나목 1)·2)와 다목 1)·3)·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2) 수경재배 및 양액재배의 방식은 순환식 등으로 하여 양액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어야 한다.</p>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3) 수경재배 농산물 및 양액재배 농산물 중 콩나물과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은 그 원료가 무농약농산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무농약농산물 이상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에틸렌은 키위, 바나나와 감의 숙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 3. 무항생제축산물

심사사항	구비요건
가. 경영관리 및 단체관리	1) 별표 4 제1호나목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를 위하여 축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 생산계획서와 필요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생산자단체로 인증 받으려는 경우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요건을 모두 이행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가)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소속 농가에게 최신의 인증기준과 인증농가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 다) 소속 농가의 인증품 생산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생산관리자를 1명 이상의 지정하여야 한다.
나. 축사 및 사육 조건	1) 축사 조건 가) 축사는 다음과 같이 가축의 생물적 및 행동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1) 사료와 음수는 접근이 용이할 것 (2) 공기순환, 온도·습도, 먼지 및 가스 농도가 가축건강에 유해하지 아니한 수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고, 건축물은 적절한 단열·환기 시설을 갖출 것 나) 축사의 밀도와 관련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축사·농기계 및 기구 등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소독함으로써 질병 감염체의 증식을 억제하여야 한다.

심사사항	구비요건
	<p>라) 축사의 바닥과 깔짚은 청결 및 건조하여야 하며,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p> <p>2) 무항생제 사육 가축과 일반가축의 병행 생산은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p> <p>가) 무항생제 사육 농장의 가축은 일반가축과 같은 한 축사에서 사육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나) 무항생제 사육 가축, 사료 취급,약품 투여 등은 일반가축과 구분하여 정확히 기록을 관리·보관하고 있어야 한다.</p> <p>다) 무항생제 사육 가축은 일반 가축사료, 금지물질 저장, 사료 공급·혼합 및 취급지역에서 안전하게 격리되어야 하며 사육장 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무항생제 축산물 사육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p>
<p>다. 가축의 입식 및 번식 방법</p>	<p>1) 교배는 종축을 사용한 자연교배를 권장한다.</p> <p>2)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기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번식호르몬 처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p> <p>3)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 가축은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이어야 한다. 다만, 이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일반 가축을 입식할 수 있다.</p> <p>가) 이유 직후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인 경우(원유 생산용, 알 생산용과 녹용 생산용 가축의 경우 육성축 및 성축 입식 가능)</p> <p>나) 번식용 수컷이 필요한 경우</p> <p>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폐사로 새로운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p>
<p>라. 전환기간</p>	<p>일반농가가 무항생제축산으로 전환하거나 다목 3외 단서에 따라 무항생제가축이 아닌 가축을 무항생제농장에 입식하여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 제3호다목1) 본문의 전환기간 이상을 이 호의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여야 한다.</p>
<p>마. 사료 및 영양관리</p>	<p>1)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은 항생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사료를 급여하여야 한다.</p> <p>2) 무항생제축산물 생산과정 중 심각한 천재지변, 극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른 사료 급여가 어려운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일정 기간 일반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p> <p>3)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가)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딕제 및 호르몬제</p> <p>나)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를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p>

심사사항	구비요건
	4)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 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음수를 상시 줄 수 있어야 한다.
바.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p>1) 가축의 질병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예방하여야 하며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가) 가축의 품종과 계통의 적절한 선택</p> <p>나) 질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육장 위생관리</p> <p>다) 비타민 및 무기물 등 급여를 통한 면역기능 증진</p> <p>2) 가축의 기생충 감염 예방을 위하여 구충제 사용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p> <p>3) 법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질병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4) 1)부터 3)까지에 따른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할 경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 치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은(구충제를 사용한 가축을 포함한다)은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나야 무항생제축산물로 인정할 수 있다.</p> <p>5) 약초 및 천연물질을 이용하여 치료를 할 수 있다.</p> <p>6) 생산성 촉진을 위해서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호르몬 사용은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p> <p>7) 4)에 따른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p>
사. 운송·도축·가공 과정의 품질관리	<p>1) 생축의 수송은 조용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p> <p>2) 가축의 도축은 오염방지 등을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p> <p>3) 도체 및 원유 등 해당 축산물은 가공공정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을 적용 농가에서 직접 가공하는 경우는 제외 하는 축산물 가공장에서 가공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생산된 원유와 별도 구분하여 집유 및 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p> <p>4) 생축의 저장 및 수송 시에는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p> <p>5)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 동물용의약품이 잔류되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 관리 하에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동물용의약품의 잔류 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p>

심사사항	구비요건
	<p>6) 유통 시 발생할 수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의 변성이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임의로 합성물질을 첨가할 수 없다. 다만, 물리적 처리나 천연제제는 무항생제축산물의 화학적 변성이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p> <p>7) 무항생제축산물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 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p>
<p>아. 가축 분뇨의 처리</p>	<p>가축분뇨의 처리는 별표 3 제3호자목1)부터 4)까지를 준용한다.</p>

4.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별표 3 제6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은 “무농약농산물등”으로 본다.

5. 거래인증서: 별표 3 제7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생산, 제조·가공, 취급”은 “생산 또는 취급”으로 본다.

[별표 12]

## 무농약농산물등의 표시 기준(제45조제1항 관련)

### 1. 표시 도형

#### 가. 무농약농산물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Name of Certifying Body:

Certificate Number:

#### 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Name of Certifying Body:

Certificate Number:

#### 다. 작도법

##### 1) 도형 표시

가) 표시 도형의 가로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 길이는  $0.95 \times W$ 의 비율로 한다.

나)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 부분에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 \times W$ 로 한다.

다)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 \times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 \times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 2) 제1호나목의 표시 도형 내부의 “무항생제”의 글자는 품목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로 표기할 수 있다.
- 3) 표시 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 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4) 표시 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랑색, 빨강색 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5) 표시 도형 내부의 “무농약”, “무항생제”, “(NON PESTICIDE)”, “(NON ANTIBIOTIC)”의 글자 색상은 표시 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MAFRA KOREA”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 6)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랑색 C100+M70, 빨강색 M100+Y100+K10으로 한다.
- 7) 표시 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8) 표시 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9) 표시 도형 밑 또는 좌·우 옆면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 2. 표시문자

구 분	표시 문자
무농약농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농약, 무농약 농산물 또는 무농약 ○○</li> <li>• 무농약재배 농산물 또는 무농약재배 ○○</li> </ul>
무항생제축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항생제, 무항생제 축산물, 무항생제 ○○ 또는 무항생제 사육 ○○</li> </ul>

### 비고

1. 천연·무공해 및 저공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
2. 토양이 아닌 시설 및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외부에서 공급하거나 외부에서 공급하지 않고 자연용수에 용존(溶存)한 물질에 의존하여 재배한 농산물은 양액재배 농산물 또는 수경재배 농산물로 별도로 표시할 것

[별표 13]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또는 품질인증 기준(제47조제1항 관련)**

**1. 공시기준**

가. 현장기준

심사사항	검토기준
1) 경영관리	가)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재의 경영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공시등기관의 장이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공시등기관의 장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재의 오염방지, 환기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제조설비	가)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재의 생산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제품 및 원료 등의 보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공정 및 품질관리	가)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재를 생산, 제조 또는 가공에 필요한 작업표준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유지하여야 한다.
5) 기록 및 이력관리	가)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재의 원료 및 제품의 입출고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사항	가) 친환경농업 관련 기준에 따라 국제기구나 그 기구로부터 지정받은 인증기관 또는 수입국가나 그 국가가 공인한 인증기관에서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임을 확인받은 수입완제품은 2부터 4까지의 구비요건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4) 중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비요건 생략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원료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

심사 사항	검토 기준
1) 원료	가)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재에 사용한 원료는 별표 1의 허용물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보조제는 천연에서 유래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1 제3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다음의 원료는 유기농업자재에 혼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인체·식물·동물에 해롭게 할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 원균 등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심사 사항	검토 기준
	2)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추출물을 포함한다)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3) 항생제·합성항균제 및 합성호르몬 등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4)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된 물질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5) 「식물방역법」 제10조에서 정한 병해충 또는 이들 병해충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6)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도축이 금지된 가축과 그 가축의 사체·축산물 및 부산물 7) 석면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2) 원료의 특성 및 유래	가)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재에 사용된 원료에 대한 특성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재에 사용된 원료별로 출처가 명확하여야 한다.
3) 제조조성비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재에 사용된 원료명, 유효성분의 종류 및 함량 투입비율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 이화학(미생물검정) 검사성적서

심사사항	검토기준
1) 유효성분 검사	가)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유효성분 검사성적은 다음의 사항이 적합하여야 한다. 1)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에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 2) 병이나 해충에 대하여 활성을 나타내는 성분 또는 대표성분 나) 미생물 자재의 경우 신청인이 제시한 미생물명, 보증균 수, 검사방법 등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 천적 자재의 경우 신청인이 제시한 천적명, 보증 수, 동정방법 등과 일치하여야 한다. 라) 키토산을 원료로 사용한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재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유해성분 검사	가) 유해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재가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비료공정규격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비료의 종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같은 고시에서 정한 유해성분 최대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퇴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외에서 정한 유해성분의 2분의 1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그 외의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재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병원성미생물과 항생물질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라.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심사사항	검토기준
1) 유식물 등에 대한 비해(肥害)·약해(藥害) 시험	가) 다섯 가지 작물 이상에 대하여 적합하게 시험한 성적이어야 한다. 나) 약해(藥害)·비해(肥害)의 정도는 시험성적 모두가 기준량에서 0이하이거나, 배량에서 1 이하이어야 한다.

마.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

심사사항	검토기준
1) 공통조건	가) 독성시험은 별표 1의 병해충 관리를 위한 허용물질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물질이 함유된 유기농업자재를 시험대상으로 한다. 다만 사용 물질 또는 유기농업자재의 특성상 일부의 독성평가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독성 시험성적서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가)의 본문에 해당하지 않은 유기농업자재 중 국내외에서 사람 또는 동물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우려될 경우에는 시험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 살아있는 미생물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에서는 해당 시험동물의 병원성에 대하여 검토된 것이어야 한다.
2) 독성	가) 인축독성은 급성경구 독성 시험성적서, 급성경피 독성 시험성적서 안점막 자극성 시험성적서 및 피부자극성 시험성적서 평가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 환경독성은 급성어류독성 시험성적서, 물벼룩류에 대한 급성유영저해 시험성적서(논벼용 유기농업자재) 및 꿀벌에 대한 급성접촉독성 또는 영향 시험성적서 평가결과 환경생태계에 대한 확보되어야 한다.

바. 제조공정, 품질관리 등에 대한 자료

심사사항	검토기준
1) 제조공정	가) 화학적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고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재의 생산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화학합성물질이나 다른 원료 등이 혼입·오염이 되지 않아야 한다.
2) 품질관리	가)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나)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재는 품질규격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사. 포장지 표시사항에 관한 자료

심사사항	검토기준
1) 포장지 표기방법	유기농업자재의 포장지 표시 도안이 별표 1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표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품질인증 기준

가. 공통기준

심사사항	검토기준
1) 품질인증 대상 조건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시를 받은 자재 중 그 유효기간 동안 농림 산업에서 사용한 결과 인체 또는 식물 등에 대하여 피해 등의 부작용이 없어야 하며, 품질인증제품하자 등의 처리에 대한 자체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 공통조건	제1호의 공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원료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

심사사항	검토기준
1) 원료	별표 1에서 정한 퇴구비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무항생제 또는 유기축산으로부터 유래한 허용물질이어야 한다.

다. 이화학(미생물검정) 검사성적서

심사사항	검토기준
2) 유효성분 검사	유효 보증성분, 성분량 및 분석방법. 다만, 「농약관리법」이나 「비료관리법」에서 분석방법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 분석방법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라.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심사사항	검토기준
1) 비효(肥效)·비해(肥害) 시험성적	가)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유기농업자재 중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대상 자재에 적용하며 동일 작물에 대하여 적합하게 시험한 2개 이상의 포장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작물의 범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1개의 시험성적만으로도 검토할 수 있다. 나) 시험 결과 무시비구(無施肥區) 대비 효과가 인정되어야 하고, 기준량과 배량 모두에서 비해(肥害)가 없어야 한다.
2) 약효(藥效)·약해(藥害) 시험성적	가)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유기농업자재 중 병해충관리 대상자재에 적용하며 동일 작물·병해충에 대하여 적합하게 시험한 2개 이상의 포장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1개의 시험성적만으로도 검토할 수 있다. 나) 약효(藥效) 시험 결과 무처리 대비 방제효과가 인정되어야 하며 기준량과 배량 모두에서 약해(藥害)가 없어야 한다.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등 신청, 심사 절차와 방법(제49조제4항 관련)

**1. 현장심사**

- 가. 공시등기관의 장은 공시등 신청서류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현장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 나. 인증심사원은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2. 제품심사**

공시등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시료와 제1호나목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유효성분[대표 물질의 정성(定性)·정량(定量)분석, 유해성분(유해미생물을 포함한다)], 농약성분, 항생물질 등을 분석 할 수 있다.

**3. 서류심사**

- 가. 공시등기관의 장은 제48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 신청이나 그 갱신 신청을 위하여 제출된 붙임의 서류 및 그 밖의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등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갱신 신청의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나. 공시등기관의 장은 제출서류 중 독성 시험성적서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
- 다. 공시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의 독성시험성적 심사결과를 수용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4. 종합심사

가. 공시등기관은 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공시 및 품질인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공시등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요청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그 밖의 사항

가. 공시등기관의 장은 심사결과 공시등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제출 서류 등을 보완하려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서 요청하여야 한다.

나.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기한 내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신청 및 갱신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토양개량·작물생육		병해충 관리	
	공시	품질인증	공시	품질인증
1. 원료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	○	○	○	○
2. 이화학(미생물검정) 검사성적서				
가. 유효성분				
① 유효성분 검사성적서 및 분석방법	○	○	○	○
② 미생물동정 검사성적서	○	○	○	○
③ 천적 검사성적서	○	○	○	○
④ 유효성분에 대한 보증 성분량		○		○
나. 유해성분				
① 유해중금속 검사성적서	○	○		
② 병원성미생물 검사성적서	○	○	○	○
③ 항생물질 검사성적서	○	○		
3.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가. 유식물 비해(肥害) 시험성적서	○	○		
나. 비효·비해 시험성적서		○		
다. 유식물 약해(藥害) 시험성적서			○	○
라. 약효·약해 시험성적서				○
4.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				
가. 인축독성시험서	△	△	○	○
나. 환경독성시험성적서	△	△	○	○
5. 제조공정, 품질관리 등에 대한 자료 (원료 및 제품)				
가. 제조공정	○	○	○	○
나. 품질관리	○	○	○	○
6. 포장지 표기사항에 관한 자료	○	○	○	○
7. 시료 500g(ml). 다만, 병해충관리 시료는 100g(ml)	○	○	○	○
8.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및 시험성적서	○	○	○	○

○: 신청시 제출, △: 필요시 제출



[별표 15]

##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1. 시험·분석 업무범위

가.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미생물 분석, 식물시험, 잔류시험, 독성시험 등 분야별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나. 시험 분야별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시험 분야별로 적합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2. 인력

가. 시험연구기관의 관리와 운영에 책임을 지는 운영책임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 분야별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험책임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시험책임자는 시험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시험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 또는 서류 등에 대하여는 보존하여야 한다.

### 3. 시설

가.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검정실 및 보관실 등을 확보하여 시약 또는 시료가 오염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나. 시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약품 등의 폐기물은 폐기물의 취급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4. 장비

- 가.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작물재배시험이나 농자재의 주성분 또는 유해 성분 등 성분종류별 분석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나. 장비는 항상 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5. 시험관리 규정

- 가. 시험에 필요한 시험물질과 대조물질에 대하여는 오염, 변질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나. 시험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험 수행에 필요한 표준작업지침서와 시험실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다. 시험 수행을 완료 하였을 경우에는 시험의뢰자에게 제출한 시험결과 보고서와 동일한 보고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6]

**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기준**(제55조, 제57조, 제66조 및 제6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다목4)의 경우 3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 다. 같은 날 생산한 같은 품목의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본다. 다만, 생산자의 자체 기준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를 모집단별로 구분한 경우에는 그 모집단에 속하는 부분만 하나의 위반행위로 본다.
- 라.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행위의 정도, 그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시험연구기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1조 제3항제1호	지정취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가부터 마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법 제41조 제3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시험성적서 나)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 다) 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 라) 중금속 및 이화학적 분석 결과를 적은 서류 마) 그 밖에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시험·분석과 관련된 서류				
3)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41조 제3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4)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41조 제3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1조 제3항제5호	지정취소		

나. 공시등사업자 또는 유기농업자재 유통업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시등을 받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1호	공시등 취소		
2)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2호 법 제49조 제4항	판매금지	공시등 취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9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3호	판매금지	공시등 취소	
4) 전업·폐업 등으로 인하여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4호	공시등 취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5)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품질 관리 지도 결과 다음과 같이 공시등의 제품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5호			
가) 허용물질 외의 물질을 사용하였거나 검출된 경우		공시등 취소		
나) 공시등을 받은 원료와 다른 원료를 사용하거나 제조조성비를 다르게 한 경우		판매금지	공시등 취소	
다) 유기농업자재에 혼입된 유해중금속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 10퍼센트 미만		판매금지	공시등 취소	
(2) 10퍼센트 이상		공시등 취소		
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중 주성분의 검사 결과가 보증 성분함량 미만으로 검출되거나 효과가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1) 1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이거나 미생물의 보증균수가 100분의 1 이상		경고	판매금지	공시등 취소
(2)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이거나 미생물의 보증균수가 1000분의 1 이상 100분의 1 미만		판매금지	공시등 취소	
(3) 30퍼센트 이상이거나 미생물의 보증균수가 1000분의 1 미만		공시등 취소		
6)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업자재에 법 제42조에 따른 공시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4항 전단	공시등의 표시 변경	판매금지	

다. 공시 또는 품질인증 기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공시등기관이 파산, 폐업 등으로 인하여 공시등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	지정취소		
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공시등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3호	지정취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시등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공시등을 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5호 법 제50조 제2항제1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8조에 따른 공시등 심사 및 재심사의 처리 절차·방법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공시등 갱신의 절차·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6호 법 제50조 제2항제1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7)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7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8)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등 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8호 법 제50조 제2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9)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정 조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9호	지정취소		
10) 법 제45조에 따른 공시등 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50조 제2항제3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별표 17]

## 유기농업자재의 표시기준(제56조 관련)

### 1. 표시 도형

가. 표시 도형: 품질인증 유기농업자재에 대해서만 필요시 사용할 수 있다.



나. 작도법(도형 표시)

- 1) Grid System(격자구조)에 맞게 표시 도형을 도안한다.
- 2) 유기농업자재 인증마크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 3) 문자의 글자체는 나눔 명조체, 글자색은 연두색(PANTONE 376C)으로 표기한다. 다만, 인증기관명은 청록색(PANTONE 343C)으로 표기한다.
- 4) 인증마크 상단부에는 제2호에서 정한 글자를 병행 표시하여야 하고, 인증마크 하단부의 유기농업자재의 종류에는 공시등을 받은 구분을 표기한다.
- 5) 인증기관명란에는 해당 자재를 공시 및 품질인증을 한 인증기관명을 표기한다.

- 6) 인증마크 바탕색은 흰색이고, 인증마크의 가장 바깥쪽 원은 연두색 (PANTONE 376C)이며, 유기농업자재라고 표기된 글자의 바탕색은 청록색(PANTONE 343C), 태양, 햇빛 및 잎사귀의 둘레 색상은 청록색 (PANTONE 343C), 유기농업자재의 종류라고 표기된 글자의 바탕색과 네모 둘레는 청록색(PANTONE 343C)이다.
- 7) 배색 비율은 청록색 (PANTONE 343C, C:98/M:0/Y:72/K:61), 연두색 (PANTONE 376C, C:50/M:0/Y:100/K:0)으로 한다.
- 8) 각 모서리는 약간 둥글게 한다.
- 9) 표시 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2. 표시 문자

가. 유기농업자재 공시: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

나. 유기농업자재 품질인증: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유기농업자재

## 3. 공시등 내용

가. 공통사항

유기농업자재의 포장 또는 용기에 제49조에 따라 발급한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 1) 업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2) 유기농업자재 공시등 번호
- 3) 자재의 명칭 및 구분과 상표명
- 4) 제조장 소재지 또는 수입원산지(국가, 제조사)
- 5) 제조 또는 수입 연월일
- 6) 유통기간
- 7) 주성분(원료)명 · 함량, 실중량, 사용방법



- 8)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독성시험결과에 따른 표시문구 및 그림 문자
- 9) 보관·사용 시 주의사항

나. 공시품

공통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 1) “이 자재는 효과와 성분함량 등을 보증하지 아니 하고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 여부만 검토한 자재입니다.”
- 2) 약해(藥害) 또는 비해(肥害) 시험을 실시한 작물명

다. 품질인증품

공통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 1) 효능[적용대상 작물명, 병해충명, 약효(藥效), 비효(肥效) 등] 관련 사항
- 2) 비효(肥效)·비해(葑薺) 시험성적에 따른 작물명 또는 약효(藥效)·약해(藥害) 시험성적에 따른 작물명 및 병해충명

[별표 18]

## 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제59조제1항 관련)

### 1. 조직

가. 법인으로서 공시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나. 공시등기관의 장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 공시등기관의 장과 인증심사원은 각각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시 및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법인체를 말한다)을 갖추고 공시등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공시 및 품질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공시등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 2. 인력

가. 공시등의 업무는 최근 1년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교육(보수 교육을 포함한다)을 이수한 심사원(이하 “공시등 심사원”이라 한다)만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시등 심사원은 해당 전문분야 각 1명 이상씩 6명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시등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에는 업무량 등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공시등 심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 공시등 심사원은 다음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최근 1년 이내에 법 4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

2)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

3) 수수료를 받고 공시등을 위한 컨설팅을 하거나 공시등의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시등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있는 업무

### 3. 시설 및 장비

가. 공시등기관은 공시등 업무 수행에 필요사항이 충족되도록 적절한 크기 및 구조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나. 공시등기관의 장은 공시등에 필요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시험·분석을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 다. 신청자료와 시료의 보관을 위한 보관실을 갖추어야 하며, 보관실은 보관물이 보관기간 중에 손상·분실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4. 공시등 업무규정

공시등 업무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공시등기관의 장은 공시등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시등 심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가. 공시등 업무의 실시방법

나. 공시등의 사후관리방법

다. 공시등의 수수료

라. 공시등 심사원의 준수사항 및 자체관리·감독 요령

마. 공시등 심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바. 공시등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지침과 이에 대한 시행절차, 내부감독 등을 포함한 매뉴얼

사. 공시등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 절차와 조치방법에 관한 사항

아. 공시등의 심사, 결정, 활동 등 공시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자. 모든 신청자가 공시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공시등의 승인·유지·확대·취소 등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상업적이나 재정적 등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항

차.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공시등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별표 19]

## 수수료(제71조제1항 관련)

### 1. 공통기준

가.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를 신청인이 부담한다.

나. 출장비

- 1) 공무원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 2) 출장기간은 인증심사 또는 공시등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한다.

다. 심사관리비

- 1)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생산과정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촌진흥청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농촌진흥청장은 1)에 따른 심사관리비에 대한 표준관리비를 정하여 고시·징수하고, 인증기관에게 권장할 수 있다.

라. 그 밖의 사항

- 1)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수질 및 생산물 등에 대한 각종 검사비용은 공인 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수수료로 하되, 인증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 2) 공시등의 심사에 필요한 주성분·유해중금속 등의 분석 및 시험비용은 공인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수수료로 하되, 공시등의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 2. 개별기준

납부 대상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가.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갱신·연장하려는 자	5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4만5천원)	공통기준 적용	공통기준 적용
나.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갱신하려는 자	30만원	공통기준 적용	공통기준 적용
다. 동등성을 인정 받으려는 외국의 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금액 (상호주의에 따라 면제 가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금액 (상호주의에 따라 면제 가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금액 (상호주의에 따라 면제 가능)
라.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10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9만원)	공통기준 적용	없음
마. 공시등 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공시등 기관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40만원	공통기준 적용	없음

## 3. 납부기간 등

가. 수수료는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비와 심사관리비는 인증심사, 공시등 심사 또는 사후관리가 실시된 이후에 납부할 수 있다.

나.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인증심사 또는 공시등 심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신청을 포기한 경우 출장비와 심사관리비는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은 예산에서 반환비용을 처리할 수 있다.

다. 수수료의 납부는 지정된 계좌로 납부 받아야 하며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앞쪽)

제 호

**농업자원과 농업환경  
실태조사 공무원증**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mm×90mm[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란색)

(뒤쪽)

**농업자원과 농업환경  
실태조사 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따른 농림축업 자원과 농림축업 환경의 실태조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직인

- 이 증을 소지한 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실태조사를 위한 사업장의 출입조사
  2. 조사·평가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 채취

## 인증신청서(생산자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b>접수번호</b>	<b>접수일자</b>	처리기간 2개월 (국외심사에 소요되는 체류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b>신청인</b>	신청단위 [ ] 개인, [ ] 법인, [ ] 단체	
	성명(단체명)	생산자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b>신청내용</b>	인증구분 [ ]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 [ ] 유기축산물, [ ] 무농약농산물, [ ] 무항생제축산물
	신청구분 [ ] 최초 신청, [ ] 갱신 신청, [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업장 소재지
	신청면적(m <sup>2</sup> )
	신청품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제3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제10조, 제16조,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인증기관의 장**

<b>첨부 서류</b>	1.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생산 계획서 1부 2. 규칙 별표 4의 경영 관련 자료 1부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1부 4. 생산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 수 료 규칙 제71조 및 별표 19에 따른 수수료
------------------	-------------------------------------------------------------------------------------------------------------------------------------------------------------------	-------------------------------------

### 동 의 서

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인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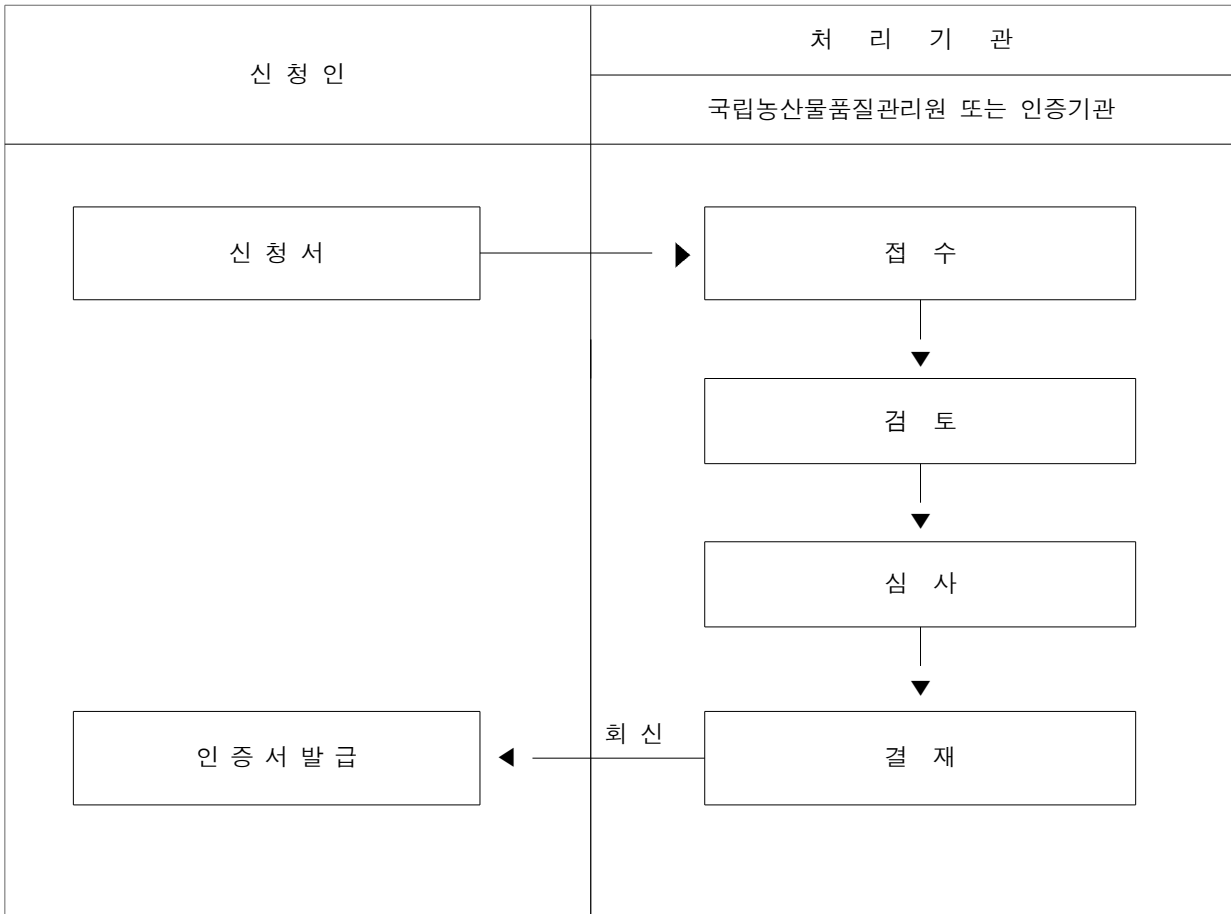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 작성 방법

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신청단위는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에 따라 개인, 법인, 단체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개인과 법인은 생산자 수를 1로 적고, 단체는 인증 신청한 집단의 소속 생산자 수(1가구를 1로 계산합니다)를 적습니다.
5.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단체, 농어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6. 사업장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신청품목은 인증 신청한 품목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8.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인증품 생산계획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합니다.
9. 첨부서류 중 제3호 및 제4호는 갱신신청 또는 연장신청을 할 때에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인증신청서(제조·가공 또는 취급자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개월 (국외심사에 소요되는 체류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	------	------------------------------------------

신청인	신청단위 <span style="margin-left: 20px;">[ ] 개인, [ ] 법인, [ ] 단체</span>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60%; border: none;">성명(단체명)</td> <td style="width: 40%; border: none;">취급자 수</td> </tr> <tr> <td style="border: none;">대표자 성명</td> <td style="border: none;">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td> </tr> </table>	성명(단체명)	취급자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단체명)	취급자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인증구분 제조·가공자: [ ] 유기가공식품, [ ] 비식용유기가공품 취급자: [ ] 저장자, [ ] 포장자, [ ] 운송자, [ ] 수입자, [ ] 판매자
	신청구분 [ ] 최초 인증 신청, [ ] 갱신 신청, [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업장 소재지
	신청면적(m <sup>2</sup> )
	신청품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제3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제10조, 제16조,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가공 또는 취급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인증기관의 장

첨부서류	1.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 1부 2. 규칙 별표 4의 경영 관련 자료 1부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1부 4. 제조·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규칙 제71조 및 별표 19에 따른 수수료
------	-----------------------------------------------------------------------------------------------------------------------------------------------------------	-----------------------------------

### 동 의 서

1.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육성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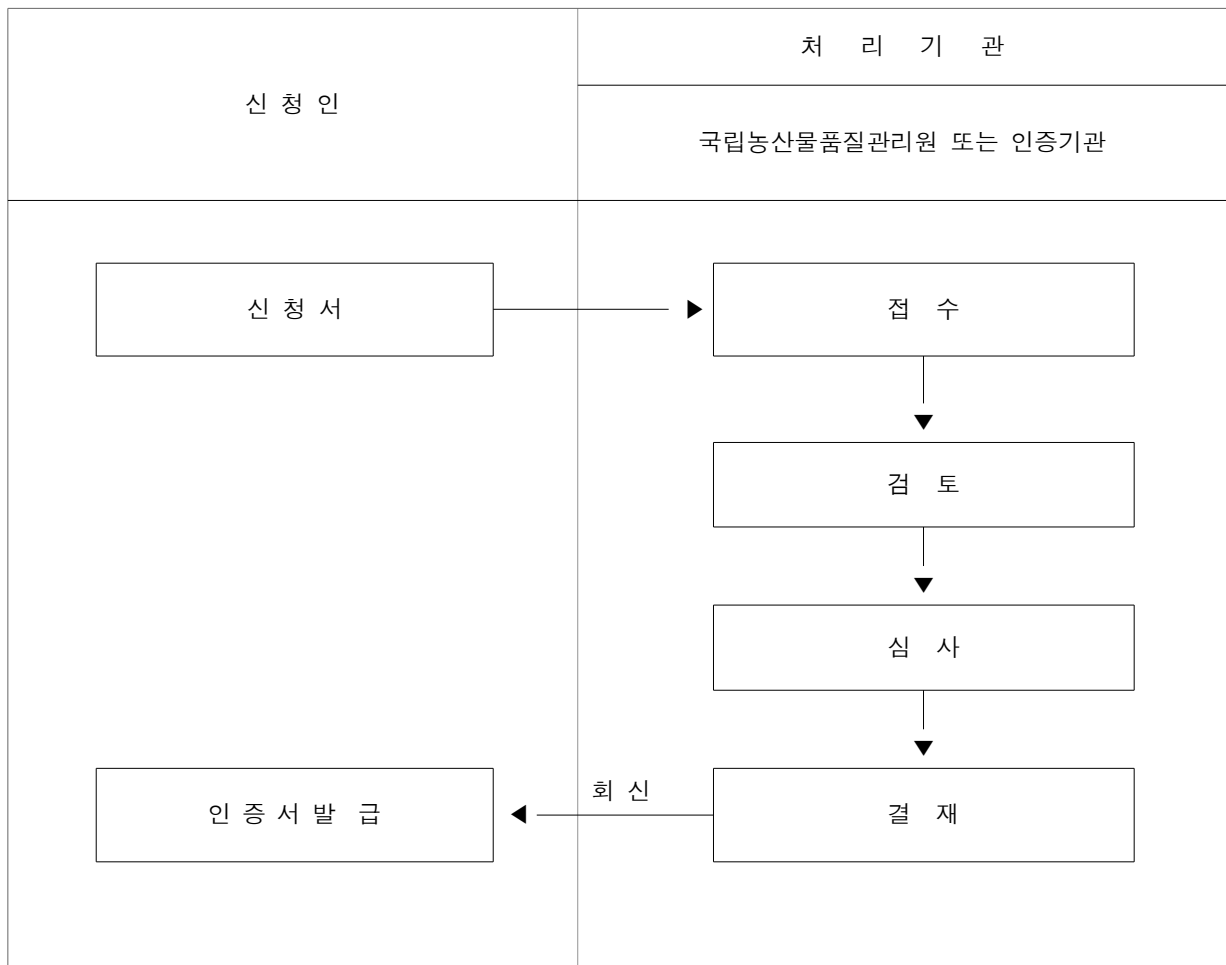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 작성 방법

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신청 단위는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에 따라 개인, 법인, 단체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개인과 법인은 생산자 수를 1로 적고, 단체는 인증 신청한 집단의 소속 생산자 수(1가구를 1로 계산합니다)를 적습니다.
5.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유통업자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6. 사업장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신청품목은 인증 신청한 품목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다만, 여러 농축산물 동시에 취급하는 취급자의 경우 곡류·과실류·채소류·특작류·서류(고구마, 감자를 뜻하는 것임)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인증품 취급계획서는 취급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9. 첨부서류 중 제3호 및 제4호는 갱신신청 또는 연장신청을 할 때에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인증품 생산계획서(농산물·임산물)

### 1. 신청인

신 청 인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인)		

### 2. 신청 내용

재배포장			재배품목	생산계획량 (kg)
소 재 지	지번	면적(m <sup>2</sup> )		

### 3. 재배 작기(作期)

파 종 일	수확기간	판매기간

### 4. 경영관리

### 5. 재배포장·용수·종자

### 6. 재배방법

### 7. 생산물의 품질관리

※ 제4호부터 제7호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3(유기식품등) 또는 제40조 및 별표 11(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

※ 난이 부족할 때는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인증품 생산계획서(축산물)

### 1. 신청인

신 청 인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인)		

### 2. 신청 내용

구 분	사 육 시 설			비 고
	소재지	지 번	면적(m <sup>2</sup> )	
사 육 장 목 초 지 사 료 포 분뇨처리시설 기타시설 등				

### 3. 사육규모

품 목 별	사육규모			
	계	성축	육성축	자축

4. 일반원칙 또는 경영관리
5. 사육장 및 사육조건
6. 자급사료 기반
7. 가축의 선택, 번식방법 및 입식
8. 전환기간
9. 사료 및 영양관리
10.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11. 운송·도축·가공과정의 품질관리
12. 가축분뇨의 처리 등

※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3(유기식품등) 또는 제40조 및 별표 11(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

※ 난이 부족할 때는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

### 1. 신청인

신 청 인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인)		

### 2. 신청 내용

구 분	작업장 시설			비 고
	소재지	지 번	면적(m <sup>2</sup> )	

### 3. 제조·가공 또는 취급방법

### 4. 원료 및 첨가물 관리

### 5. 해충 및 병원균 관리

### 6.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3(유기식품등) 또는 제40조 및 별표 11(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

※ 난이 부족할 때는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인증 재심사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생산자 수 (취급자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재심사 신청항목	
	재심사 신청사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제34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 인증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인증기관의 장**

첨부자료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

### 작성방법

1.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재심사 신청항목은 인증기관에서 부적합 사유로 통보한 사항 중 재심사가 필요한 항목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인증번호: 제        호

# 인 증 서

《생산자용》

인증 구분		유효기간	
생 산 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사업장 소재지			
인증 품목		인증 면적	
인증 부가조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산물·임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증기관의 장

직 인

인증번호: 제      호

# 인 증 서

《제조·가공 및 취급자용》

인증 구분		유효기간	
제조·가공자 (취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 소재지			
취급 농축산물의 산지	※ 취급자에게 발급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품목			
인증 부가조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식품등의 제조·가공 또는 취급기준(무농약농산물등의 취급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증기관의 장





발급번호: 제 호

## 거래인증서 (Transaction Certification)

공급자	업체명	
	주소	
구매자	업체명	
	주소	
거래내역	품목	인증종류
	수량	인증번호
	롯데번호	송장번호 선하증권번호
	그 밖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의 거래 내용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증기관의 장



##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인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변경내용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구 분	당 초	변 경
	<input type="checkbox"/> 인증 품목 변경		
	<input type="checkbox"/> 사업장 규모 축소		
	<input type="checkbox"/>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제34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인)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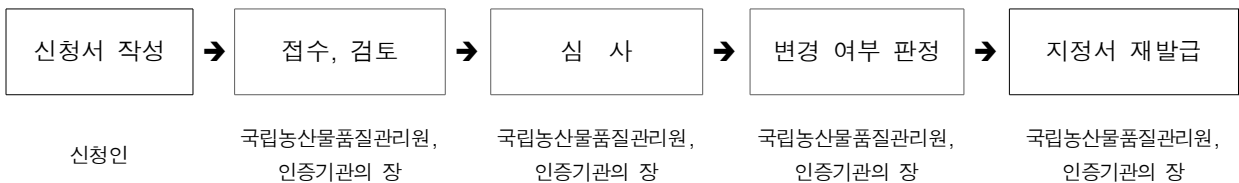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인증기관의 장**

첨부서류	1. 인증서 원본 2.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이유를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 처 리 절 차



## 인증품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 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제4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제출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인증기관의 장**

신고인	법인(조직)명	생산자 수		
	대표자 성명	인증번호		
	연락처	제출일		
출하 내용	출하기간			
	주요 출하처			
	품 목	출하량(kg)	품 목	출하량(kg)

## 인증기관 [       ] 지정 갱신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국적(외국인만 해당)	
		전화번호	

설립목적	
설립연월일	
인증업무의 범위	<input type="checkbox"/> 유기농축산물 <input type="checkbox"/> 유기가공식품 <input type="checkbox"/> 비식용유기가공품 <input type="checkbox"/> 무농약농산물등 <input type="checkbox"/> 국내(                    ) <input type="checkbox"/> 국외(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3항·제5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제26조, 제30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관의 지정(지정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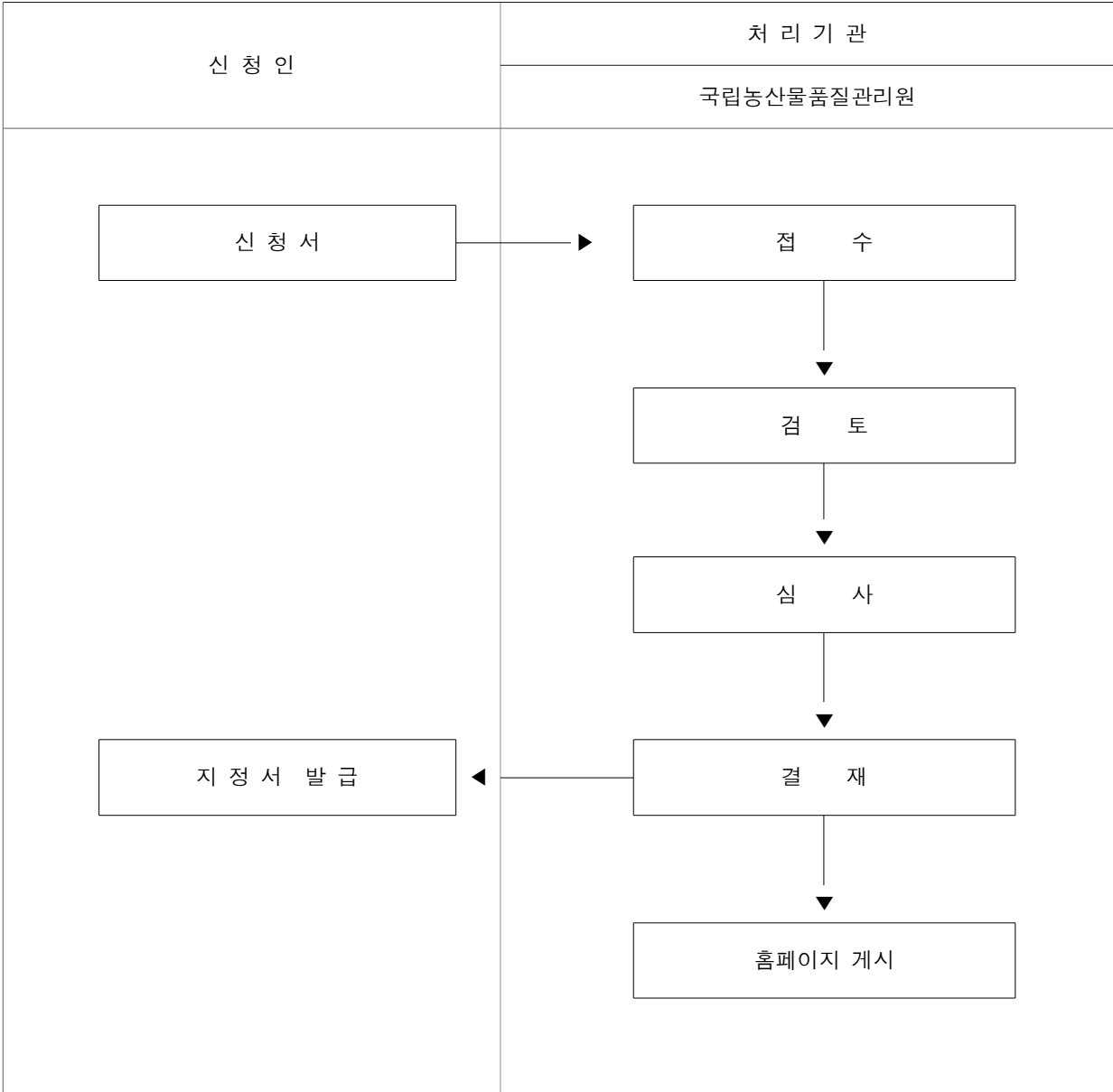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2. 규칙 제27조(제4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 지정서(갱신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p style="text-align: center;">수수료</p> 규칙 제71조 및 별표 19에 따른 수수료
------	----------------------------------------------------------------------------------------------------------------------------	----------------------------------------------------------------

### 작성방법

1.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2. 법인등록번호란에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외국인인 국적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소재지란에는 기관의 주사무소 및 지방사무소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번역(음역을 하여야 하며, 훈역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한 신청인의 기관명 및 대표자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로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인증업무의 범위란에는 규칙 제28조(제43조)의 인증업무의 범위 중 수행하려는 범위를 업무와 지역으로 각각 표시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지정번호: 제 호

## 인증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3. 소재지:
4. 인증업무의 범위:
5. 유효기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및 제44조에 따라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변경승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기관명	지정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변경 내용 (※ 별 지 로 작성 할 수 있음)	구 분		당 초	변 경
	승인 신청	<input type="checkbox"/> 인증업무의 범위 <input type="checkbox"/> 인증업무규정		
신고	<input type="checkbox"/> 인증기관 명칭, 인력 및 대표자 <input type="checkbox"/> 주된 사무소 및 지방 사무소의 소재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제35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변경승인 신청)를 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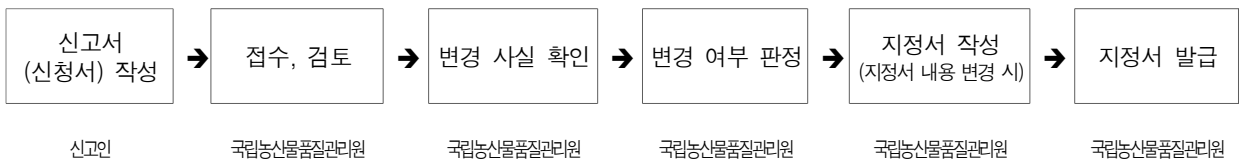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신고의 경우: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변경내용이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

### 처리절차



# 인증기관 [ ] 휴업 신고서 [ ] 폐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기관명	지정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업·폐업 연월일	휴업기간: ~
-----------	---------

사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5조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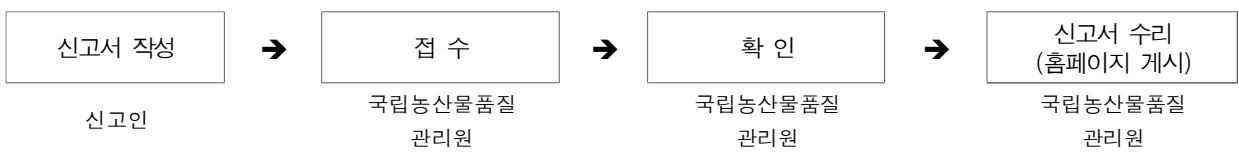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인증기관 지정서 원본	수수료 없음
------	-------------	-----------

### 처 리 절 차





##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개월
------	------	----------

승계인 [ ] 개인 [ ] 법인 [ ] 단체	성명(개인사업자인 경우)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 법인, 단체의 주소	생산자(제조·가공 또는 취급자) 수

승계 내용	인증 번호
	사업장 소재지
	인증 면적
	인증 품목
	승계 사유      [ ] 상속    [ ] 양수(讓受)    [ ] 합병    [ ] 그 밖의 사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제5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제38조제1항 또는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인증기관의 장**

첨부서류	1.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나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 1부 2. 인증사업자 승계 사실 증명자료 1부 3. 승계받은 유기식품인증서 또는 무농약농산물등 인증서 1부	수수료 없음
------	-----------------------------------------------------------------------------------------------------------------------------------------------------	-----------

### 동 의 서

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 인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사업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홈페이지에 공개 하고, 친환경농업육성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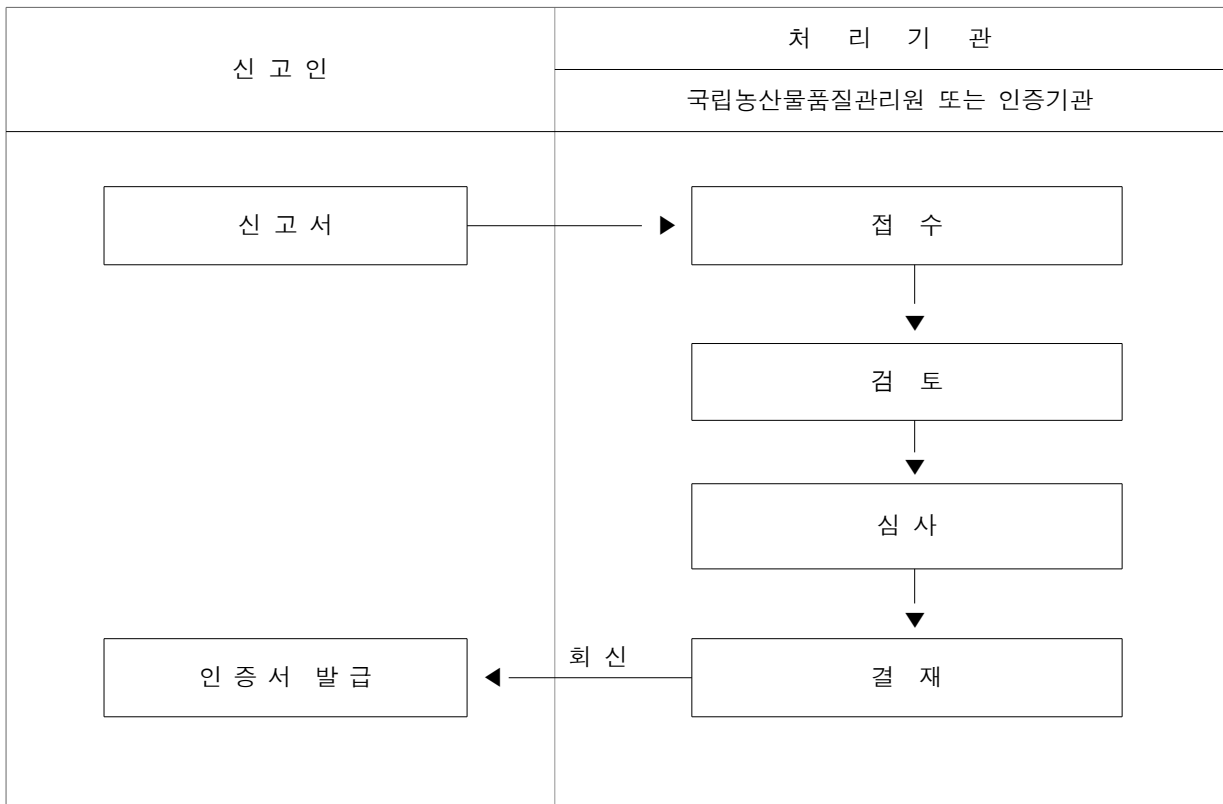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작성 방법

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신청단위는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에 따라 개인, 법인, 단체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생산자(제조·가공 또는 취급자) 수는 개인과 법인의 경우 생산자 수를 1로 적고, 단체는 인증 신청한 집단의 소속 생산자 수를 가구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5.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단체, 농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6. 인증번호란에는 승계받은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7. 사업장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8. 인증 품목은 승계받은 인증 품목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9. 승계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 제조·가공 취급 계획서는 생산자 또는 취급자별로 작성합니다.

###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인증기관 승계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개월
승계인	기관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국적(외국인만 기재합니다)	
		전화번호	

설립 목적	
승계 연월일	
인증업무의 범위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승계 사유	<input type="checkbox"/> 양수(讓受) <input type="checkbox"/> 합병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제5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제38조제3항 또는 제4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관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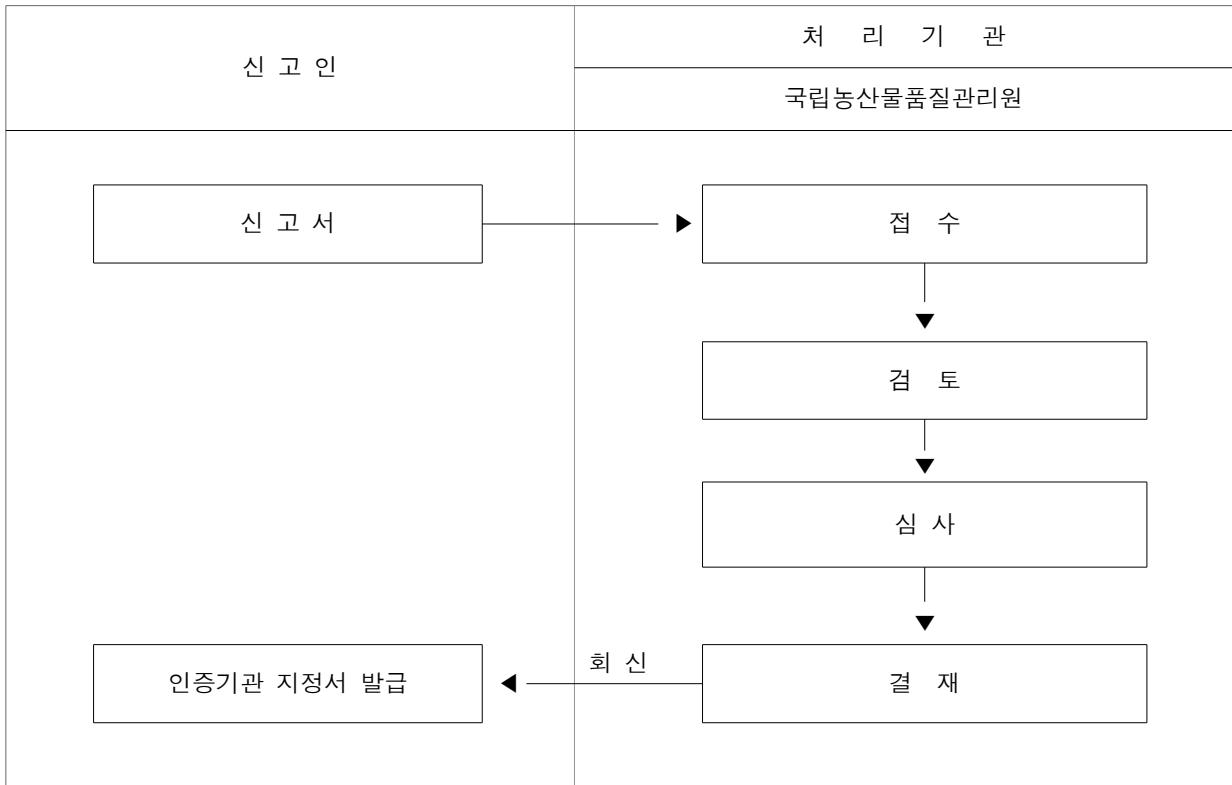
제출서류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2. 규칙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 승계사실 증명자료 1부 4. 승계받은 인증기관 지정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작성 방법

1.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2. 법인등록번호란에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외국인은 국적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3. 소재지란에는 기관의 주사무소 소재지와 및 지방사무소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적어야 합니다.
4. 승계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소리나는 대로 국어로 번역(소리나는 대로 번역해야 하며, 뜻도 훈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한 승계인의 기관명 및 대표자명을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해당 국가의 언어로 원어로 함께 적어야 합니다.
5. 인증업무의 범위란에는 승계 받은 인증업무의 범위를 적습니다.
6. 인증기관 지정번호란에는 승계받은 인증기관의 지정번호를 적습니다.
7. 승계 사유란은 해당 승계 사유에 √표시를 합니다.

###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유기농업자재 [ ] 공시 [ ] 품질인증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개월
------	------	------	-----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본 사	(전화번호 )	
		제 조 장 및 보 관 창 고	(전화번호 )	

신청내용	자재의 명칭				
	생 산 구 분	[ ] 국내			
		[ ] 수입	수입국:		
			제 조 회 사 명:		
			제 조 장 주 소:		
			수 입 상 표 명:		
		인 증 기 관:			
	주 성 분 (원료)	성분(원료)명			
		함량(%)			
	상 표 명				
자재의 구분		[ ]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 ] 병해충관리			
세부 내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첨부서류	1.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생산계획서 2. 규칙 별표 14에 따른 제출서류 및 시험·검사 성적서 3. 시료 500g(ml). 다만, 병해충관리 시료는 100g(ml)	수수료 규칙 제71조 및 별표 19에 따른 수수료
------	----------------------------------------------------------------------------------------------------------------------	--------------------------------

### 작성 방법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업체명란에는 법인체명 또는 사업체명을 기재하되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자 성명란에는 업체의 대표자 성명 또는 개인의 성명을 기재하며,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증상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4. 주소란의 본사란에는 업체 또는 개인의 주소를, 제조장 및 보관장고란에는 제조장 및 보관장고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5. 자재의 명칭란에는 사용하는 원료의 이름을 가나다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원료명 사이에는 “.”을 사용합니다.
6. 생산구분란에는 수입은 수입완제품 및 수입완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이며, 인증기관란에는 수입국의 유기농업자재 인증기관명을 기재합니다.
7. 주성분(원료)란에는 성분(원료)명의 종류별 함량(투입)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8. 상표명란에는 상표명을 기재합니다.
9. 자재의 구분란에는 신청하려는 자재의 용도에 “√” 표시를 하면 됩니다.
10. 세부 내용란에는 자재의 이화학적 특성, 적용대상, 사용시기 또는 사용적기, 사용방법, 사용량, 안전사용시기, 효과 및 효능, 사용시 주의사항 등 관련정보를 요약하여 기재하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유기농업자재 [ ] 공시  
[ ] 품질인증 생산계획서

1. 신청 업체명: (서명 또는 인)
2. 자재의 명칭:
3. 자재별 생산시설(㎡):
4. 자재별 생산설비:
5. 자재별 생산 계획량(kg/년):
6. 원료에 대한 수급계획 및 가격:
7. 원료 품질관리 계획:
8. 자재별 제조공정:
9. 품질관리 인력·시설·장비 등 확보 계획:
10. 품질관리 주기 및 방법 계획: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는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유기농업자재 [ ] 공시 [ ] 품질인증 재심사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개월
------	------	----------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사	(전화번호 )	
		제조장 및 보관창고	(전화번호 )	

이전신청 내용	자재의 명칭			
	생산 구분	[ ] 국내		
		[ ] 수입	수입국	
			제조회사명	
			제조장주소	
			수입상표명	
		인증기관		
	주성분 (원료)	성분(원료)명		
		함량(%)		
	상표명			
자재의 구분		[ ]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 ] 병해충관리		
세부 내용				

재심사 신청 사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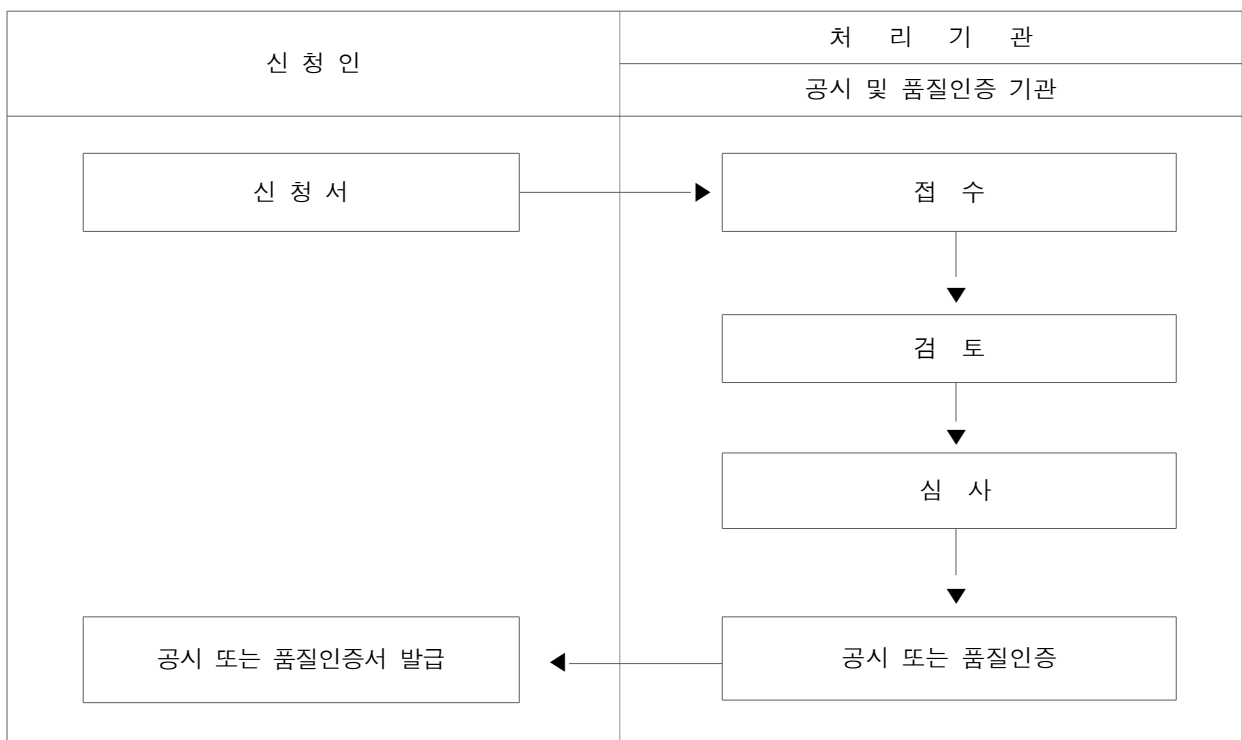
제출서류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 작성 방법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업체명란에는 법인체명 또는 사업체명을 기재하되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자 성명란에는 업체의 대표자 성명 또는 개인의 성명을 기재하며,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증상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4. 주소란의 본사란에는 업체 또는 개인의 주소를, 제조장 및 보관창고란에는 제조장 및 보관창고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5. 자재의 명칭란에는 사용하는 원료의 이름을 가나다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원료명 사이에는 “·”을 사용합니다.
6. 생산구분란에는 수입은 수입완제품 및 수입완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이며, 인증기관란에는 수입국의 유기농업자재 인증기관명을 기재합니다.
7. 주성분(원료)란에는 성분(원료)명의 종류별 함량(투입)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8. 상표명란에는 상표명을 기재합니다.
9. 자재의 구분란에는 신청하려는 자재의 용도에 “√” 표시를 하면 됩니다.
10. 세부 내용란에는 자재의 이화학적 특성, 적용대상, 사용시기 또는 사용적기, 사용방법, 사용량, 안전사용시기, 효과 및 효능, 사용시 주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요약하여 기재하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11. 재심사 신청사유란에는 자재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유기농업자재 [ ] 공시 품질인증 변경승인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개월
------	------	----------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본사	(전화번호 )
		제조장 및 보관창고	(전화번호 )

공시등 내용	공시(품질인증)번호		
	자재의 명칭		
	상표명		
	자재의 구분		
	유효기간	20 . . . . .	~ 20 . . . . .

변경신청 사항	변 경 신 청 사 항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사항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 2. 변경 사유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시험·검사성적서 4. 시료 500g(ml) 1점. 다만, 병해충관리 시료는 100g(ml) 1점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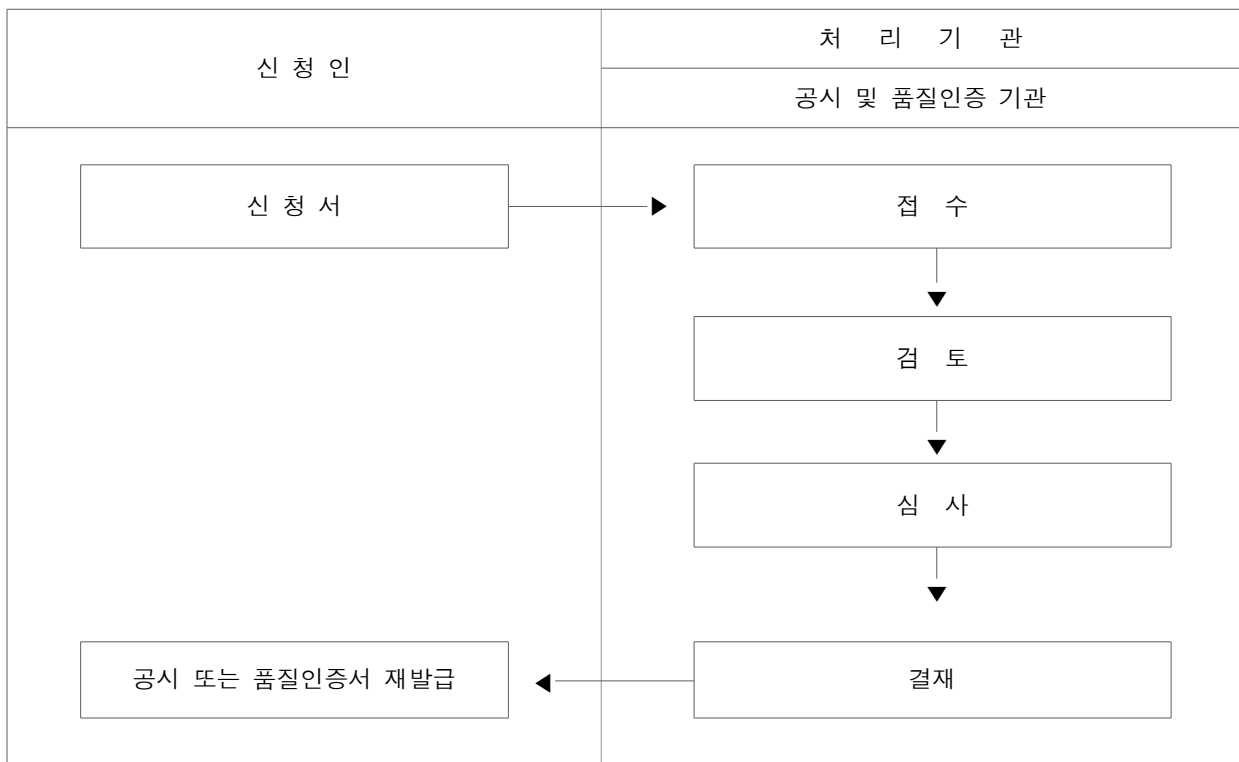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작성 방법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업체명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업체명을 기재하되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 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자 성명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며,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증상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 합니다.
4. 주소란의 본사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주소를, 제조장 및 보관창고란에는 제조장 및 보관창고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합니다.
5. 공시(품질인증)번호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에 기재된 공시(품질인증)번호를 기재 합니다.
6. 자재의 명칭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자재의 명칭을 기재하되 원료의 이름을 가나다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원료명 사이에는“·”를 사용합니다.
7. 상표명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등에 등록된 상표명을 기재 합니다.
8. 자재의 구분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자재의 종류를 기재 합니다.
9. 유효기간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기재 합니다.
10. 변경신청 항목란에는 변경사항이 있는 해당 항목을 기재 합니다.
11. 변경 전 및 변경 후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하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 합니다.
12. 사유란에는 변경하려는 사유를 기재 합니다.

###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사항

○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연월일	사용방법				비료등록 사항	원료종류별 투입비율	비고
	적용대상 (작물명)	사용 시기	사용량	처리 방법			

○ 병해충관리

연월일	사용방법					농약 등록사항	원료 종류별 투입비율	비고
	적용대상 (작물명)	적 용 병해충	사용시기 (횟수)	사용량	처리 방법			

※ 적용 병해충: 품질인증서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유기농업자재 [ ] 공시  
 [ ] 품질인증 관리대장

(앞쪽)

공시번호(품질인증번호)		최초 공고일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자재의 명칭					
자재의 구분					
상 표 명					
주성분(원료)의 종류 및 함량(%)					
유효기간 20 . . . . ~ 20 . . . .					
사용방법	적용대상	적용병해충	사용시기(횟수)	사용량	처리방법
원료종류별 투입비율(%)					
최초 공시등기관					
제조장 주소 또는 수입원산지(국가, 제조사)					
보관창고 소재지			면적 m <sup>2</sup>		
변 경 신 고 사 항					
연월일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록자(인)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 행정처분사항

(뒤쪽)

연월일	문서번호	위반사항	처분 내용 및 기간	기록자(인)

## 유기농업자재 [ ] 공시 [ ] 품질인증 공고사항

### ○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공고일	업체명	공시번호 (품질인증)	자재의 명칭 (원료)	자재의 구분	상표명	주성분 (원료)의 종류 및 함량(%)	사용방법				비료 등록여부	유효 기간	주소	가격
							적용 대상 (작물 명)	사용 시기	사용 량	처리 방법				

### ○ 병해충 관리

공고일	업체명	공시번호 (품질인증)	자재의 명칭 (원료)	자재의 구분	상표명	주성분 (원료)의 종류 및 함량(%)	사용방법				농약 등록여부	유효 기간	주소	가격
							적용 대상 (작물 명)	적용 병해 충	사용 시기 (횟수)	사용 량				

※ 적용 병해충: 품질인증인 경우에만 해당함



## 유기농업자재 [ ] 공시 [ ] 품질인증 갱신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개월
------	------	------	-----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사	(전화번호 )
		제조장 및 보관창고	(전화번호 )

공시등 내용	공시(품질인증)번호		
	자재의 명칭		
	상표명		
	자재의 구분		
	유효기간		

성분 (원료)	성분(원료)명		
	함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제5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의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장 귀하

첨부 서류	1.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생산계획서 2.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 3. 규칙 별표 14에 따른 제출서류 및 시험·검사성적서 4. 시료 500g(ml). 다만, 병해충관리 시료는 100g(ml)	수수료 규칙 제71조에 따른 수수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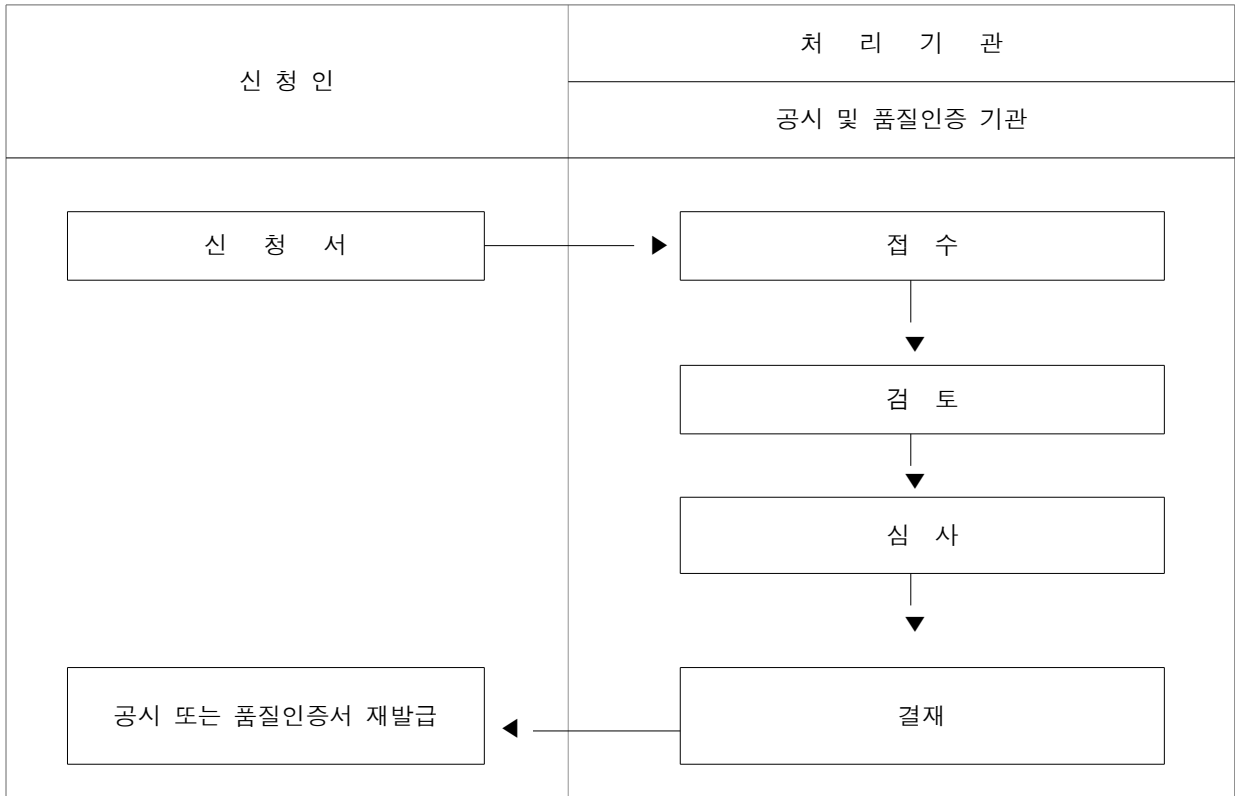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작성 방법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업체명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업체명을 기재하되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자 성명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며,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증상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4. 주소란의 본사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주소를, 제조장 및 보관창고란에는 제조장 및 보관창고의 주소로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5. 공시(품질인증)번호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공시(품질인증)번호를 기재합니다.
6. 자재의 명칭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자재의 명칭을 기재하되 원료의 이름을 가나다 순서에 따라 기재합니다. 원료명 사이에는 “·”을 사용합니다
7. 상표명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상표명을 기재합니다.
8. 자재의 구분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자재의 구분을 기재합니다.
9. 유효기간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기재합니다.
10. 주성분(원료)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주성분(원료)의 종류별 함량(사용량)을 기재합니다.

###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상 호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유기농업자재 생산·수입 및 판매실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생산·수입 및 판매실적을 제출합니다.

(단위: 톤)

유기농업 자재의 종류	제품명 (상표명)	생산량(수입량)				판매량			재고량 (A-B)
		전년 이월	상반기	하반기	계(A)	상반기	하반기	계(B)	

끝.

발 신 업 체 명

직인

시행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유기농업자재**    [   ] **공시**  
                          [   ] **품질인증**            **원료 수급대장**

공시번호(품질인증)		최초 공고일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주소(사업장)					
자재의 명칭					
자재의 구분					
주성분(원료)의 종류 및 함량(%)					
공시·품질인증의 유효기간					
<b>원 료 구 입 내 역</b>					
연월일	원료종류	구입량	구입처		비 고
			업체명(이름)	주소(전화번호)	
<p><b>【작성방법】</b>                      공시(품질인증)번호부터 공시등의 유효기간까지의 작성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기재하고, 원료 구입내역의 연월일은 원료를 구입한 일자 기재, 원료의 이름, 원료를 구입한 량을 현물 중량 단위로 기재(부피단위를 병행하여 기재할 수 있음), 원료를 구입한 업체명과 소재지(시·도 시·군·구), 전화번호를 기재. 비고란에는 원료구입 또는 사용과 관련된 특이사항 기재                      * 원료 구입서류는 별도 보관</p>					

##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지정 항목	이화학적분석, 미생물분석, 식물시험([ ]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 ] 병해충관리용), 잔류시험, 독성시험
-------	--------------------------------------------------------------

인 력	지정신청 분야	이화학적 분석	미생물 분석	식물시험	잔류시험	독성시험
		인원수				
지정 기준	시설명 (㎡)	이화학적 분석				
		미생물 분석				
		식물시험				
		잔류시험				
		독성시험				
장비대수 (명세 별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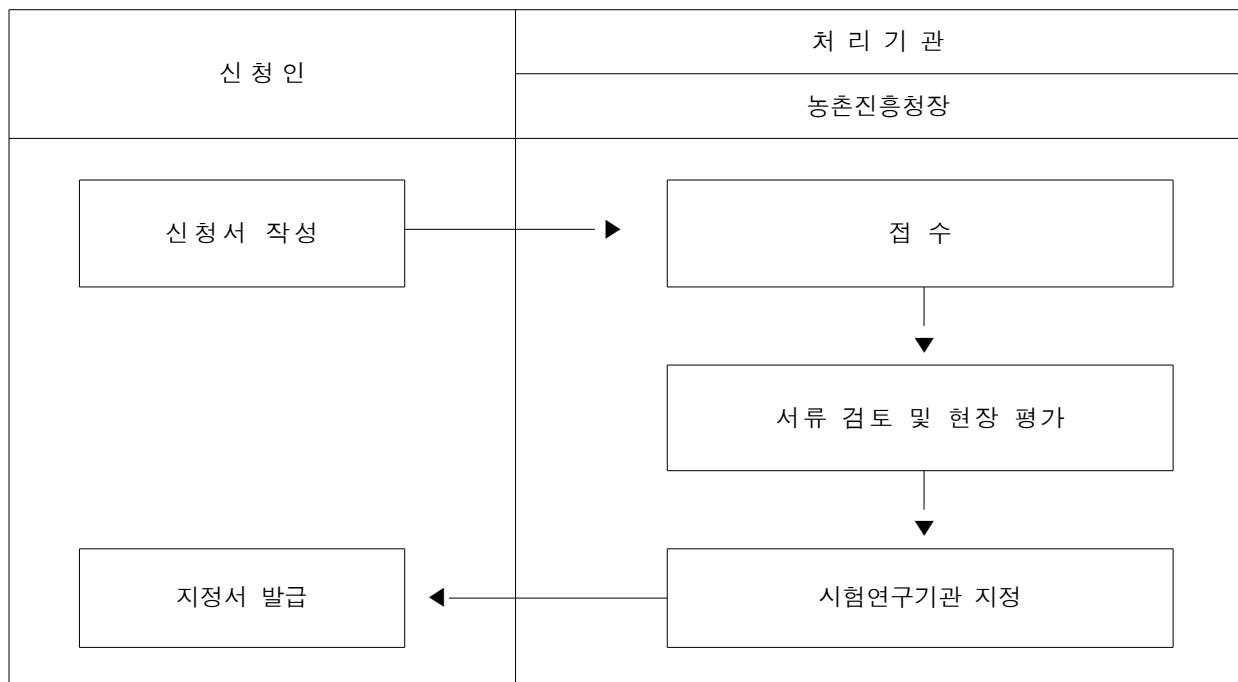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조직 및 인력 현황 2. 시설 및 장비 현황	수수료 없음
------	--------------------------------	--------

### 작성 방법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기관명란에는 법인체명 또는 사업체명을 기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표자 성명란에는 법인 또는 사업체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4. 주소란에는 기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합니다
5. 지정항목란에는 시험연구기관이 수행하려는 지정항목에 “√”를 표시합니다.
6. 인력란에는 지정 받으려는 시험분야별 시험연구기관이 채용한 시험가능 인력을 적습니다.
7. 시설명란에는 시험분야별 시험연구기관이 확보한 시험장소, 시험포장 등을 기재합니다.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8. 장비대수란에는 시험분야별 시험연구기관이 확보한 시험 기자재의 종류 및 대수를 기재합니다.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지정번호: 제       호

##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표자 성명:
3. 주 소:
4. 지정분야:
5. 최초 지정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

직인

##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 ○ 시험연구의 지정분야별 인력

자재분야	이화학분석	미생물분석	식물분석	잔류시험	독성시험
인원수					

### ○ 시설

사무실	실험실	시료보관실	시험포장

### ○ 장비

장비명	모델명	규격	제조업체	비고



##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개월
신고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 소		
변경신고 내 용			
지정서 분실 사유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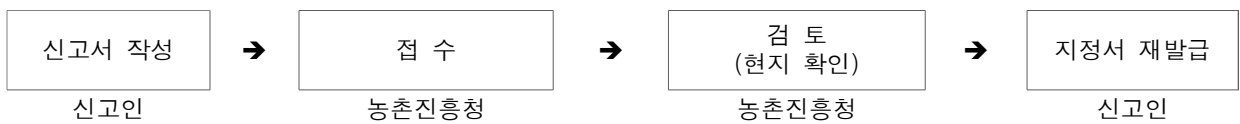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농촌진흥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2.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 처 리 절 차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 ] 지정 [ ] 갱신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개월
------	------	------	-----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공시등 분야	[ ] 토양개량·식물생육, [ ] 병해충관리		
--------	--------------------------	--	--

인력	자재 분야	토양개량·식물생육	병해충 관리	그 밖의 사항
	인원수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3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조직 및 인력 현황 2. 시설 및 장비 현황 3. 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규정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공시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 관한 서류 5.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서(갱신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규칙 제71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사업자등록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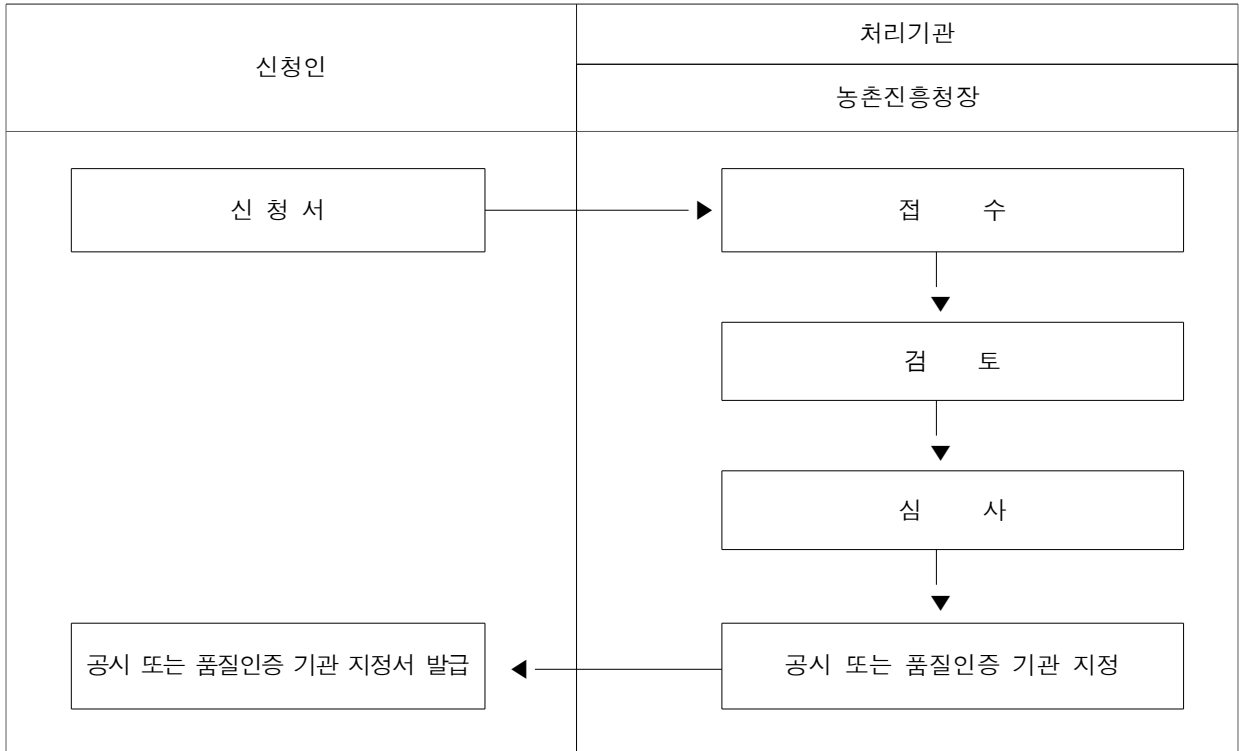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작성 방법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기관명란에는 법인체명 또는 사업체명을 기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표자 성명란에는 법인체 또는 사업체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며,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증상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4. 주소란에는 기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5. 공시등분야란에는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이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하려는 유기농업자재의 분야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인력란에는 지정받으려는 분야별로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을 기재합니다.
7. 설립 목적란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른 법인체 또는 사업체 설립목적을 기재합니다.
8. 설립 연월일란에는 사업자등록증상 법인체 또는 사업체 설립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지정번호: 제       호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표자 성명:
3. 주 소:
4. 공시등 분야:
5. 유효기간:
6. 최초 지정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

직인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사항

### ○ 조직

부서명							
인원							

### ○ 공시등 분야별 인력

자재 분야	토양개량·식물생육	병해충 관리	비고
인원			

### ○ 시설

시설 종류					
규모(m <sup>2</sup> )					

### ○ 장비

장비명	모델명	규격	제조업체	비고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사항

[ ] 변경신고서  
 [ ] 변경승인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개월
------	------	----------

신고인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span style="float: right;">(전화번호 )</span>	

지정내용	지정번호
	공시등 분야
	유효기간 20 . . . . ~ 20 . . . . 까지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유
변 경 신 고 (신청)사항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 사항 변경을 신고(승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서 2. 변경사유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규정(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분야(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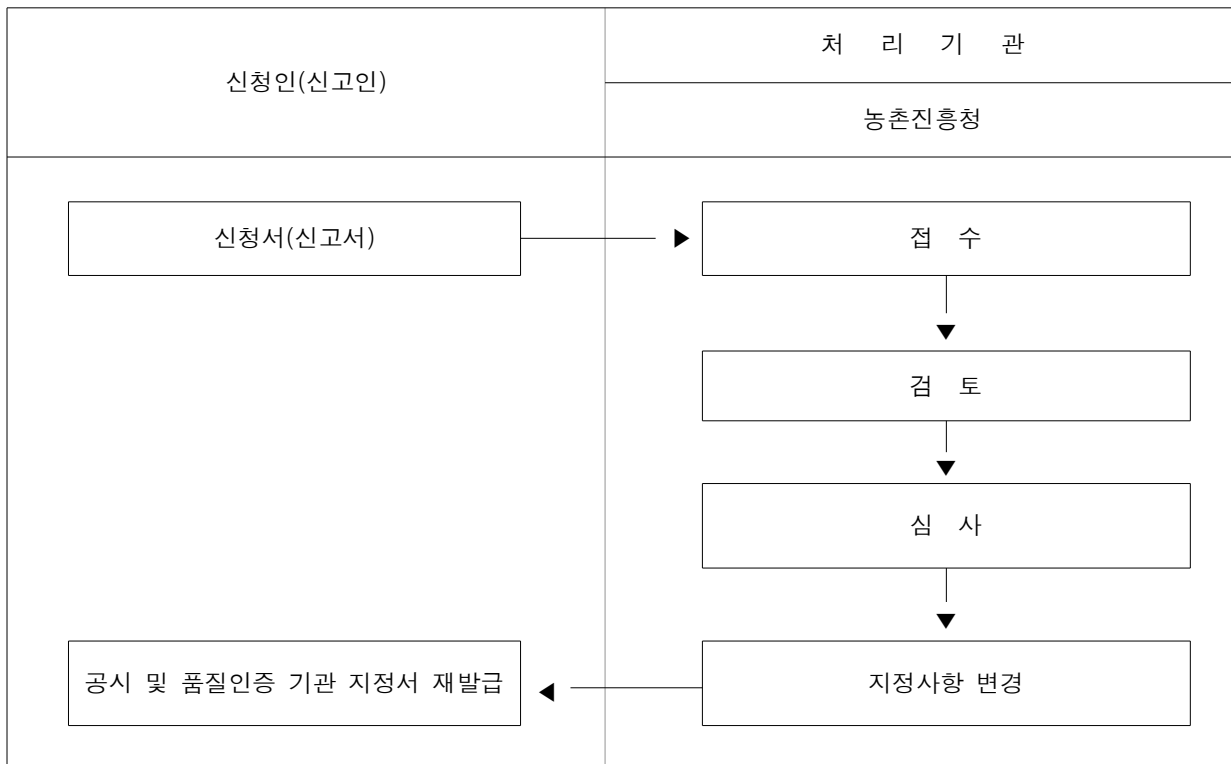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 작성 방법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합니다.(필요한 경우 예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기관명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기관명을 기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표자 성명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을 기재 하며,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증상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4. 주소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주소로 기재하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5. 지정번호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지정번호를 기재합니다.
6. 공시등 분야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공시등을 하려는 자재의 대상 분야를 기재 합니다.
7. 유효기간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기관의 유효기간을 기재합니다.
8. 항목란에는 변경사항이 있는 해당 항목을 기재합니다.
9. 변경 전 및 변경 후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하되, 분량이 많은 경우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10. 사유란에는 변경하려는 사유를 기재합니다.

###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 ] 휴업 [ ] 폐업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지정내용	지정번호		
	공시등 분야		
	유효기간	20 . . . . ~ 20 . . . .까지	
신고사항	휴업·폐업기간	20 . . . . ~ 20 . . . .까지	
	사 유		
	제출서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의 신청·심사 및 유기농업자재의 거래에 관한 자료(폐업할 때는 원본을 제출하고, 휴업할 때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2. 공시등기관의 지정서(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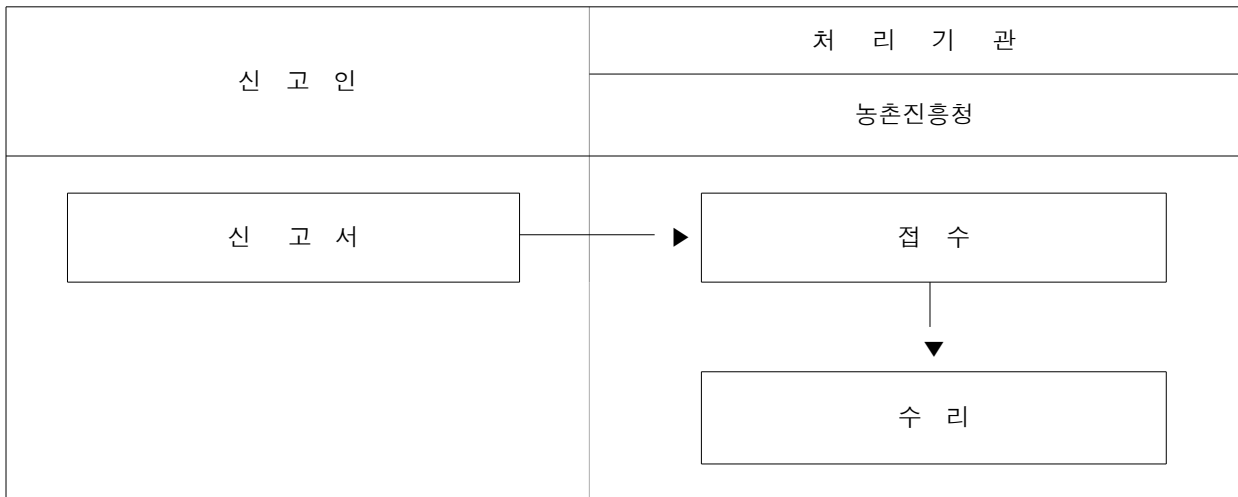


### 작성 방법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합니다.(필요한 경우 예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기관명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기관명을 기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표자 성명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며,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증상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4. 주소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주소로 기재하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5. 지정번호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지정번호를 기재합니다.
6. 공시등 분야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공시등을 하려는 자재의 대상 분야를 기재합니다.
7. 유효기간란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지정서에 기재된 기관의 유효기간을 기재합니다.
8. 휴업·폐업기간란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휴업 기간을 기재하며,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려는 날짜를 기재합니다.
9. 사유란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사유를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10. 제출서류란에는 휴업 또는 폐업에 따라 공시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되어 농촌진흥청에 제출할 문서, 서류 또는 정보의 목록을 기재합니다.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앞쪽)

제 호

## 유기농업자재 조사 공무원증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  
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mm×90mm[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란색)

(뒤쪽)

## 유기농업자재 조사 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조사·확인을 위한 조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직인

이 증을 소지한 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시판품조사
2. 유기농업자재의 생산·유통 과정 확인 및 공시등 기준 적합성 조사
3. 조사에 필요한 시료 채취 및 자료 제출 요구

## 유기농업자재 [ ] 공시 [ ] 품질인증 승계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개월
------	------	------	-----

신고자 (승계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본사	(전화번호 )	
		제조장 및 보관창고	(전화번호 )	

승계사항	승 계 전	승 계 후	승계 연월일
업체명			
대표자			

구 분	공시(품질인증) 번호	자재의 명칭	상표명	최초공고일	유효기간
유기농업 자재 (승계대상)	공 시				
	품질인증				
	승계사유	[ ]양도 [ ]상속 [ ]기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제6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장(농촌진흥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생산계획서 2. 공시등의 승계사실 증명자료 3. 승계받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을 합병한 경우 에만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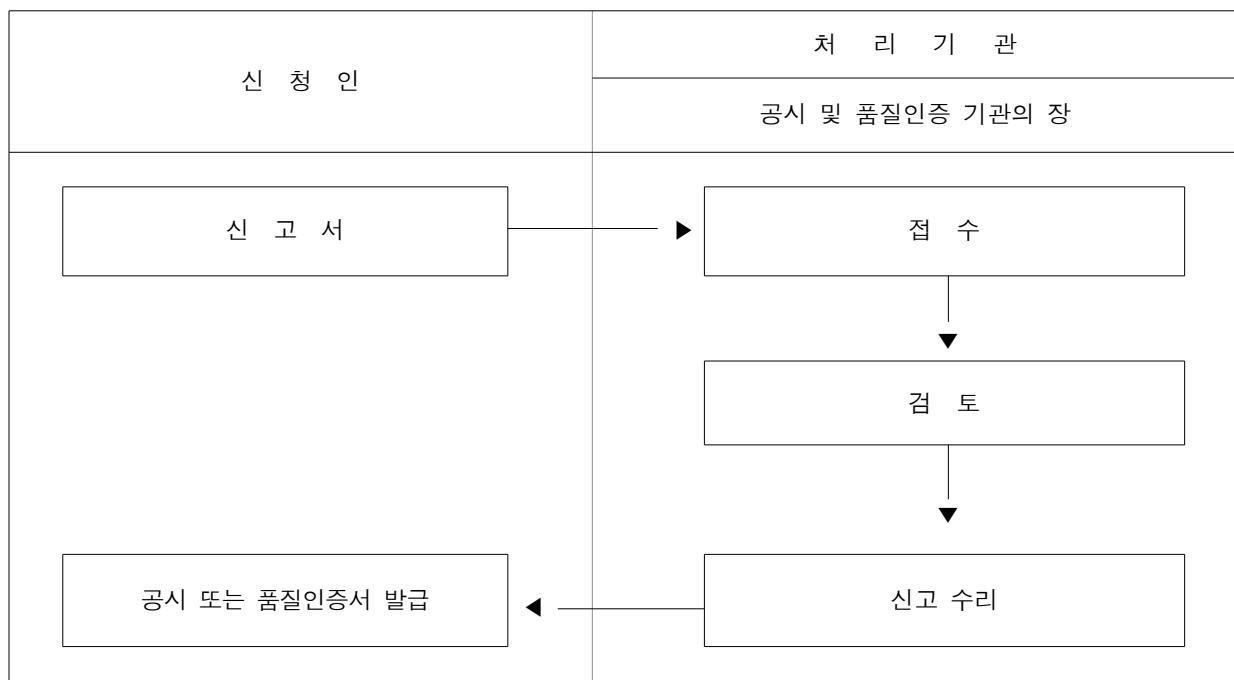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작성 방법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합니다(필요한 경우 예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고인(승계인)란에는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업체명란에는 법인체명 또는 사업체명을 기재하되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자 성명란에는 업체의 대표자 성명 또는 개인의 성명을 기재하며,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증상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4. 주소란의 본사란에는 업체 또는 개인의 주소를, 제조장 및 보관창고란에는 제조장 및 보관창고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5. 승계 전 및 승계 후란에는 승계전·후의 업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6. 유기농업자재(승계대상)란에는 승계를 받고자 하는 공시등이 된 유기농업자재의 종류별로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등에 기재된 의 공시번호, 자재의 명칭, 상표명, 최초공고일 및 유효기간을 적습니다.
7. 승계사유란에는 해당 승계사유에 "√"를 표시합니다.

###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승계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개월
신 고 자 (승계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승계사항	승 계 전	승 계 후	승계 연월일
기 관 명			
대 표 자			
승계사유	[ ]양도 [ ]상속 [ ]그 밖의 사유(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제6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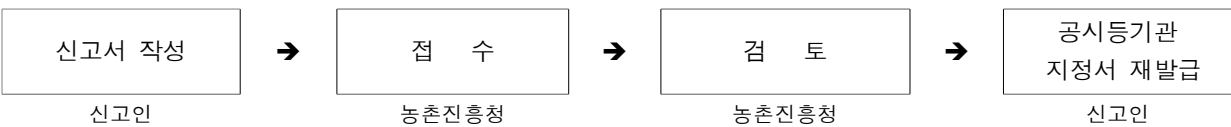
**농촌진흥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규칙 제59조에 따른 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을 승계한 사실 증명자료 3. 승계받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을 합병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작성 방법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고자(승계인)란에는 승계를 받는 자와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4. 승계사항란에는 승계 전후의 기관명과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며, 승계사유란에는 해당 승계사유에 “○”표시를 합니다.

### 처리 절차



## II. 관련고시 및 기준 등

1.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업무 위임 규정 ..... 279
2.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 282
3.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 303
4.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 387
5.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기준 ..... 421
6.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 440
7. 목초액의 규격과 품질 ..... 454
8. 토양·수질기준 등 ..... 461



# 1.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업무 위임 규정

개정 2013. 7.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3-19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2. “사무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원장과 사무소장(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은 지원장에 한한다)에게 위임한다.

1.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
2. 법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심사, 인증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3.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의 갱신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4. 법 제22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에 대한 보고 수리
5. 법 제23조제2항(법 제3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 표시의 권고
6. 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명령



7. 법 제24조제2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 취소의 통지
8. 법 제27조제2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접근 및 정보·자료 제공의 요청
9. 법 제27조제4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에 대한 보고의 수리
10. 법 제27조제5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불시(不時) 심사 및 그 결과의 기록·관리
11. 법 제31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조사,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검사 시료의 무상 제공 요청과 검사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12. 법 제31조제4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 및 인증품의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 명령 및 인증기관에 필요한 조치 요청
13. 법 제32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14. 법 제33조제2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15.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에 대한 인증
16.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시판품조사, 공시등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검사 시료의 무상 제공 요청과 검사 및 공시등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의 요구
17.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사업자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 명령 및 공시등기관에 조치 요청
18.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19.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법 제20조제5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2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제23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행위를 포함한다), 제26조제5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6조(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의 부과·징수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7월 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2.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개정 2013. 7.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3-21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2항, 제29조제5항 및 제44조에 따라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관”이라 함은 법 제26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규칙 제29조 및 제4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유기농산물등의 인증을 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외국인증기관”이라 함은 인증기관 중 인증업무를 총괄하는 주된 사무소가 대한민국의외의 국가에 소재한 기관을 말한다.
3. “인증업무”라 함은 법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유기농산물등의 인증과 인증을 위한 인증심사, 인증의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4. “인증품”이라 함은 제3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농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을 말한다.
5. “인증심사원”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 및 그 사업장 등에 대하여 규칙 제9조 및 제40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자를 말한다.
6. “인증사업자”라 함은 법 제20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유기농산물등”이라 함은 유기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을 말한다.

8. “원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을 말한다.
  9. “지원장”이라 함은 직제규칙 제25조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10. “사무소장”이라 함은 직제규칙 제26조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현장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장을 포함한다)
  11.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구축한 유기농산물등을 관리하는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http://www.enviagro.go.kr>)과 유기가공식품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우수식품정보시스템(<http://www.Goodfood.go.kr>)을 말한다.
  12. “인증기관협회”라 함은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및 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법인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협회(농림축산식품부허가 제449호)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 영,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 제2장 인증기관의 지정

- 제4조(지정 신청)** ① 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 ② <삭 제>
- ③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갱신)신청서에 규칙 제26조제2항제1호와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기준)** 규칙 제27조제2항 및 제44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지정심사)** ① 원장은 규칙 제26조 및 제30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갱신)신청을 받은 때에는 2인 이상으로 심사반을 편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규칙 제26조 및 이 고시 제4조에 의한 구비서류 및 그 내용의 적정 여부
2. 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

② 심사결과 제1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③ 원장은 신청서의 구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2(지정심사 평가업무 위탁)** ① 원장은 규칙 제31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갱신)을 위한 평가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영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1개소를 선정하여 평가업무의 범위, 평가기간 등 위탁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평가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삭 제>

②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인증관리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규칙 제2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그 부적합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2. 지정기준 이외의 사항으로 단시일 내에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그 사항과 시정기한을 정하여 통보

④ 인증기관 지정번호 부여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⑤ 원장은 외국인인증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약정사항)** ① 원장은 외국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29조 제3항에 따라 법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인증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인증기관과 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증기관과의 약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로 수입하는 유기농산물등을 생산하는 인증농장 및 인증품의 보관·수송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원장이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의 확인에 관한 사항
2. 수입 유기농산물등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에는 외국인증기관이 수입업자로 하여금 당해 농산물에 대하여 유기농산물등 표시(마크, 문자 등)의 말소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유기농산물등의 인증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유기농산물등의 국내외 판매에 따른 손실보상이나 또는 소송 등에 대한 외국인증기관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증기관이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배상의 책임이 없음에 관한 사항
5. 수입 유기농산물등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원인이 외국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인증기관지정 취소, 일정기간 업무정지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9조 <삭 제>

### 제3장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10조(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칙 제9조 및 제40조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2. 규칙 제10조 및 제41조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증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재배지 및 이미 인증을 받은 재배지(갱신 신청, 인증종류 변경신청 제외)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규칙 제11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4. 인증승인 이후에는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생산과정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5. 인증 받은 자의 인증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법 제24조 및 규칙 제19조에 따라 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6. 법 제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소 제지 관할 지원장에게 과태료부과를 의뢰하여야 한다.
7. 규칙 제27조 및 이 고시 제5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8. 인증사업계획서 및 품질관리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9. 기타 법, 영, 규칙, 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등)** ① 지원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인증기관의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인증품을 대상으로 검사 또는 생산·유통과정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조사과정에서 인증기준 위반 등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조사과정에서 관할지역 이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지원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인증기관의 행정처분)** ① 원장은 인증기관이 법 제29조 및 제3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규칙 제35조 별표 10에 따라 처분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인증관리 정보 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인증기관은 처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하여 준 인증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1. 인증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일자
2. 인증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지대상 업무명, 정지기간

## 제4장 인증심사원의 관리

**제13조(인증심사원 관리)** ① 원장은 인증기관협회장에게 다음과 같은 인증심사원의 등록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유기가공식품 인증심사원 관리는 별도의 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인증심사원의 자격관리
2. 인증심사원의 교육관리
3. 인증심사원의 심사이력관리
4. 기타 원장이 인증심사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 관리를 하는 인증기관협회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관 지정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인증기관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인증심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인증심사원은 이 고시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6년 7월 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제5조 관련)**

**1. 조직 및 인력**

심사사항	구비요건
가. 조직	1)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가 정한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ISO/IEC 1706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인증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서 제3자 인증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문서화된 조직구조를 보유하여야 한다. 3) 법인체임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4) 최소 6개월 이상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인증심사원 등의 임금 사무실 운영경비 등)을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가) 법인통장에 보유하고 이를 항상 유지 나) 인증기관 지정취소, 부도 및 해산, 인증기관 지정 반납 시 인증사업자 사후관리비, 인증심사 부실로 인한 인증사업자 피해 등을 보상할 수 있는 관련보험 가입 다)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보유 및 제시 5) 인증기관(대표, 이사, 감사, 인증심사원 등 임직원을 포함 한다)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인증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농자재의 제조·가공·유통 및 판매 나) 유기농산물등의 유통·판매 다) 유기농산물등의 인증을 위한 컨설팅 또는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6) 인증기관의 내부 부서별 인증 활동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7) 인증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배상책임 등의 규정을 보유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8) 인증기관은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공정하여야 하며, 인증의 승인·갱신 유효기간연장, 정지 및 취소와 인증 범위의 확대 등과 관련된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인증기관의 조직, 사업내용, 재무구조 등 인증업무의 공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0)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증기관 대표, 인증심사원, 인증심의관, 인증심의위원은 각 각 독립하여 운영하고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인증기관의 대표와 인증심의위원은 겸직할 수 있다.

심사사항	구비요건
	<p>11) 인증기관은 인증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기타 일체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없어야 한다.</p> <p>12)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인증심사원, 인증심의위원 및 임직원이 인증활동 중에 입수한 정보를 인증을 받은 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제외한다)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p> <p>13) 인증업무에 참여하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격, 훈련 및 경험에 관한 아래의 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가) 성명 및 주소  나) 조직 내에서의 소속 및 직위  다) 입사 및 퇴사일자  라) 학력 및 전문 자격 현황  마)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실무 경력 및 교육 훈련 상황</p> <p>14) 기관의 설립취지, 설립목적, 현황, 기관의 주요업무 추진내용, 조직도, 자금 확보 및 활용계획, 법인의 결산자료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p> <p>15) 인증기관은 1)부터 14)까지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인증기관 지정(갱신)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p>
나. 인력	<p>1) 상근 인증심사원 2명 이상(농축산물 인증업무 외 유기가공식품 또는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업무 수행 시에는 해당 분야 인증심사원을 1명 이상 추가 확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 지정 이후 인증사업자 수가 1,000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인증심사원 확보기준에 따라 추가로 인증심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p> <p>가) 상근 인증심사원 1인당 연간(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500농가 이하를 심사하고, 관리농가수는 상시 500농가 이하여야 한다.</p> <p>나) 단체신청 건의 경우 1개 단체가 500농가 이상인 경우에는 상근 인증심사원 1인이 심사·관리할 수 있다.</p> <p>다) 비상근 인증심사원의 경우에는 위 상근 인증심사원의 심사 관리농가수 기준의 1/2을 적용한다. 다만, 비상근 인증심사원이 심사 관리하는 농가수 합계는 다른 인증기관의 농가수를 합하여 250농가 이내이어야 한다.</p> <p>2)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상근 인증심사원의 경우 원장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가) 농자재의 제조·유통·판매  나) 유기농산물등의 유통·판매  다) 유기농산물등의 인증을 위한 컨설팅 또는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라) 기타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있는 업무</p>

심사사항	구비요건		
3)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과정명	양성교육	보수교육
	교육대상	심사원 지정 희망자	심사원 양성교육 이수자
	교육시기	심사원 지정 이전	2년마다 1회 이상
	교육시간	2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교육기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사단법인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협회, IOIA,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사단법인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협회, IOIA,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교육내용	관련법령 및 관련고시, 인증기준, 심사의 절차와 방법,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요령 등	관련법령 및 관련고시 등
4)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심사원에 대해 3)항에 준하는 교육을 인증기관 또는 인증기관지정 신청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교육계획 및 결과를 원장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 2. 시설

심사사항	구비요건
가. 사무실 등	<p>1) 인증의 상담, 서류의 보관, 인증업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무실과 사무관련 장비 등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p> <p>2) 인증서류의 분실, 도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3) 인증사무실 내에 농자재를 홍보·진열·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4) 규칙 및 1)부터 3)까지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원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p>
나. 검정실	<p>1) 인증기관이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검정실을 설치하고 2)에 따른 공인시험연구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p> <p>2) 공인시험연구기관이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 및 사무소,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와 다음 각 호의 시험연구기관을 말한다.</p> <p>가) 「농수산물관리법」 제64조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같은 법 제 99조에 따른 검정기관(검사·검정기관으로 지정된 분야에 한함)</p>

심사사항	구비요건
	<p>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축산물의 검사에 한함)</p> <p>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토양오염물질의 검사에 한함)</p> <p>라)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재배용수의 검사에 한함)</p> <p>마) 「식품위생법」 제24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과 「농약관리법」 제17조의4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생산물 및 토양의 잔류농약 검사에 한하고, 2013년 12월31까지만 인정한다.)</p> <p>바) 「비료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른 퇴비원료분석기관 및 시험연구기관(퇴비의 검사에 한함)</p> <p>사) 「사료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사료의 검사에 한함)</p> <p>아) ISO/IEC 17025에 따라 공인을 받은 기관(공인된 분야에 한함)</p> <p>자) 관련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p> <p>차) 외국인증기관의 경우 ISO/IEC 17025에 따라 공인을 받았거나, 해당 국가의 관련법령에 따라 분석기관으로 지정·승인된 기관</p> <p>3) 인증기관이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2외 공인시험연구기관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하여야 한다.</p> <p>가) 인증기관이 요청하여 실시한 검사의 원본자료(raw data)를 2년 이상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항</p> <p>나) 검사시료는 검사성적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상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항</p> <p>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실태 조사 또는 검사기관 평가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사항</p> <p>라) 시험연구기관의 업무정지, 지정취소 시 인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사항</p> <p>마) 위탁업무의 범위, 계측 및 분석방법, 분석기간, 수수료, 기밀유지, 협약의 유효기간, 계약해지 조건, 책임의 소재 등에 관한 사항</p> <p>바) 위탁기관이 검사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지 아니한다는 사항</p> <p>사) 위탁기관이 지정기관으로부터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인증기관에 통보한다는 내용</p> <p>4) 위탁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p> <p>가) 농림산물: 토양, 용수, GMO, 잔류농약</p>

심사사항	구비요건
	<p>나) 축산물: 토양, 용수, 사료, 항생물질</p> <p>다) 가공식품: 용수, 잔류농약, GMO, 항생물질, 첨가물</p> <p>5) 분석방법은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농관원 고시 제2012-46, 2012.9.1.)에 따라야 한다.</p> <p>6) 분석기간은 14일 이내이어야 한다.</p> <p>7) 인증기관은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위탁기관의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p> <p>8) 인증기관은 위탁기관이 공인시험연구기관 지정이 취소되거나 검사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고 위탁계약을 중지하여야 한다.</p>

### 3. 인증업무 규정

심사사항	구비요건
가. 일반원칙	<p>1) 인증업무 규정은 가목에서부터 타목까지의 내용과 구비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상시 준수하여야 한다.</p> <p>2) 인증업무 규정은 법, 영, 규칙 개정 시에는 갱신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갱신할 경우 지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3)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지정서, 인증수수료, 인증기준, 사후관리 규정,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정보를 인증기관 홈페이지 및 인증정보관리 시스템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p> <p>4)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인의 인증신청 규모 또는 특정 협회나 단체의 회원이어야 한다는 조건 등으로 불공정하게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p>
나. 인증의 기준 및 인증업무 범위	<p>1) 인증기준은 규칙 제9조 또는 제40조의 인증기준 및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 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을 적용한다. 다만,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2) 인증대상 지역범위 및 인증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가) 국내 인증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업무 수행 지역(전국 시·도, 시·군)을 규정하여야 한다.</p> <p>나) 국외 인증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대상 국가를 규정하여야 한다.</p>

심사사항	구비요건
	<p>다) 인증업무의 범위는 유기농립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비식용 유기가공품,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취급자 중 인증업무를 정하여야 한다.</p>
<p>다. 인증 심의관 또는 인증심의회 운영방법</p>	<p>1)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심의하여야 한다.</p> <p>가) 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춘 자로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인증심의관’이라 한다)에 의한 심의</p> <p>나)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인증품 유통업체, 인증기관에 소속된 관련 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인증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의한 심의</p> <p>2) 인증기관은 인증심의관 또는 인증심의위원의 준수사항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p> <p>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하여야 한다.</p> <p>나) 인증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p> <p>다) 신청인과 친족관계인 경우,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p> <p>라) 신청인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목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p> <p>마) 인증심의 과정에서 인증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해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p> <p>3) 인증기관은 인증심의관 또는 인증심의위원에 대하여 준수사항 위반 시 자체 처분규정을 제정하고 실천하여야 한다.</p> <p>4) 인증기관은 인증심의관 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p> <p>5) 인증기관은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및 의결방법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p>
<p>라. 인증업무 실시방법</p>	<p>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 법, 영, 규칙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을 적용한다. 다만,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위 관련규정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마.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p>	<p>1)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인증을 받은 자의 농장소재지 또는 작업장소재지를 방문하여 인증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p>

심사사항	구비요건																																												
	<p>2) 사후관리의 조사방법, 조사주기는 원장이 정한 요령을 따라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p> <p>3) 사후관리 담당자 및 조사시기, 횟수 등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p> <p>4) 인증기관 지정반납, 지정취소 등으로 인증기관의 지위가 상실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심사관리비 반환 등 인증의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한다.</p> <p>5) 사후관리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 인증취소, 표시정지, 표시변경 고발 등 해당 조치방법별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p> <p>6) 사후관리조사 결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 24조 제1항 및 제34조제4항에 따라 인증취소 등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p> <p>7) 인증기관은 소속 인증사업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인증기준,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8)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별로 사후관리 일시, 조사자, 확인사항, 조사자 의견 등 사후관리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문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p>																																												
<p>바. 인증 수수료</p>	<p>1) 인증수수료는 규칙 제71조에 따라 신청비,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인증심사관리비 항목으로 나누어 부과하고 수납 시 신청인에게 부과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2)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산정을 위한 출장기간과 출장인원 산정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p> <p>3) 인증신청비 및 출장비는 규칙 별표 19 수수료 기준과 동일하여야 한다.</p> <p>4) 규칙 제71조제1항 별표 19 제1호다목에 따른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 보고서 작성, 생산과정조사 등에 소요되는 표준 심사관리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가) 농산물</p> <table border="1" data-bbox="395 1653 1401 1809"> <tr> <td>농가수 \ 금액</td> <td>1~5</td> <td>6~15</td> <td>16~24</td> <td>25~35</td> <td>36~48</td> <td>49~63</td> <td>64~80</td> <td>81~99</td> <td>100~120</td> <td>121 이상</td> </tr> <tr> <td>천원/농가</td> <td>157</td> <td>118</td> <td>112</td> <td>108</td> <td>105</td> <td>102</td> <td>100</td> <td>98</td> <td>97</td> <td>95</td> </tr> </table> <p>나) 축산물</p> <table border="1" data-bbox="395 1886 1401 2042"> <tr> <td>농가수 \ 금액</td> <td>1~5</td> <td>6~15</td> <td>16~24</td> <td>25~35</td> <td>36~48</td> <td>49~63</td> <td>64~80</td> <td>81~99</td> <td>100~120</td> <td>121 이상</td> </tr> <tr> <td>천원/농가</td> <td>208</td> <td>149</td> <td>139</td> <td>132</td> <td>127</td> <td>123</td> <td>119</td> <td>117</td> <td>114</td> <td>110</td> </tr> </table>	농가수 \ 금액	1~5	6~15	16~24	25~35	36~48	49~63	64~80	81~99	100~120	121 이상	천원/농가	157	118	112	108	105	102	100	98	97	95	농가수 \ 금액	1~5	6~15	16~24	25~35	36~48	49~63	64~80	81~99	100~120	121 이상	천원/농가	208	149	139	132	127	123	119	117	114	110
농가수 \ 금액	1~5	6~15	16~24	25~35	36~48	49~63	64~80	81~99	100~120	121 이상																																			
천원/농가	157	118	112	108	105	102	100	98	97	95																																			
농가수 \ 금액	1~5	6~15	16~24	25~35	36~48	49~63	64~80	81~99	100~120	121 이상																																			
천원/농가	208	149	139	132	127	123	119	117	114	110																																			



심사사항	구비요건						
	<p>다)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 취급자</p> <table border="1" data-bbox="395 300 1402 470"> <thead> <tr> <th data-bbox="395 300 710 400">구 분</th> <th data-bbox="710 300 1054 400">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th> <th data-bbox="1054 300 1402 400">취급자</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95 400 710 470">천원/업체</td> <td data-bbox="710 400 1054 470">510</td> <td data-bbox="1054 400 1402 470">342</td> </tr> </tbody> </table> <p>5) 인증기관은 4)의 표준관리비를 참고하여 부과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p> <p>6) 인증수수료는 인증신청 시 납부 받아야 한다. 다만, 인증심사관리비 중 일부를 인증이후에 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갖추어야 한다.</p> <p>7) 인증수수료 중 출장비 및 인증심사관리비는 출장인원 축소, 인증신청 취하, 인증취소, 심사결과 부적합 등 반환사유별 문서화된 반환규정을 갖추고,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의 잘못으로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p> <p>8) 인증기관은 인증심사관리비를 인증기관운영 및 인증업무 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p> <p>9) 인증수수료 징수실적을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p>	구 분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	취급자	천원/업체	510	342
구 분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	취급자					
천원/업체	510	342					
<p>사. 인증 심사원 준수사항 및 자체관리· 감독</p>	<p>1)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의 준수사항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p> <p>가) 인증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한다.</p> <p>나)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으로 설정된 모든 항목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누락 없이 사실대로 기재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다)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p> <p>라) 인증심사원은 신청인과 친족관계인 경우,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인증 건에 대한 심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마) 인증심사원은 자신이 심사한 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거나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바)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서는 아니 된다.</p> <p>사) 인증심사원은 제1호가목5)의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2)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체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자격정지 등의 자체 처분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p>						

심사사항	구비요건
<p>아. 인증 심사원 교육</p>	<p>1) 인증기관은 소속 인증심사원에 대해 제1호나목 3), 4)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p> <p>2) 인증기관은 소속 인증심사원에 대해 연 1회 4시간 이상 자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p> <p>3) 인증기관은 신규로 지정된 인증심사원에 대해 숙련된 인증심사원과 함께 3건 이상을 심사한 후 단독 심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자. 불만 및 분쟁 처리절차 및 조치방법</p>	<p>1)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사례별 처리기간, 처리담당자, 처리체계, 조치방법 등)</p> <p>2) 인증과 관련한 모든 이의 제기, 불만, 분쟁 및 그에 대한 해결 조치 결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p> <p>가) 소속</p> <p>나) 성명</p> <p>다) 내용(이의제기, 불만, 분쟁 등)</p> <p>라) 조치결과</p> <p>마) 기타</p>
<p>차. 인증 업무의 독립적 수행체계</p>	<p>1)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의 자료를 모두 제출한 자에 대하여 인증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p> <p>가) 법, 영,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규정한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 및 관련 자료</p> <p>나) 인증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p> <p>다) 인증자의 준수사항 및 인증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신청자의 동의서</p> <p>2)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인증심사 준비 및 인증심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p> <p>가) 인증심사원 편성</p> <p>나) 서류심사 절차</p> <p>다) 현장심사 계획 수립 및 통보</p> <p>라) 현장심사 절차</p> <p>마)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기한 등</p> <p>3)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에서 정한 처리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p>4)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의 심사 및 인증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신청농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심사사항	구비요건
	5) 인증심의관 및 인증심의위원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인에 대하여 인증심의를 참여할 수 없다. 6) 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인증기관의 독립적 운영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카. 인증의 승인·갱신 ·연장· 변경·취소 등의 결정	1) 인증의 승인·갱신·연장·변경·취소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인증의 승인·갱신·연장·변경·취소 등의 권한을 외부인 또는 외부 기관에 위임할 수 없다. 3) 인증의 승인·갱신·연장·변경·취소 등의 결정과정에서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어야 한다.
타. 기타	1) 인증기관은 인증 받은 자의 포장재(인증라벨 포함) 제작 및 사용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 명칭 등의 변경으로 인증품 표시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사항을 인증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1년 이내에 표시사항을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인증기관은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와 구비서류, 인증심사 보고서와 심사자료,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관한 자료 등을 인증유효기간이 끝난 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인증기관 신규지정 신청기관은 현장심사 전까지 1건 이상 인증신청부터 인증심의 완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인증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중 연도별 인증업무 추진계획, 인증확대 계획 자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인증의 신청·심사·승인·갱신·연장·생산계획변경 사후관리 및 행정처분 실적, 수수료 징수실적, 교육·홍보실적 등 인증관련 사항을 인증관리 정보 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8) 그 밖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9) 인증기관은 가목부터 타목까지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인증기관 지정(갱신)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4. 품질관리매뉴얼

심사사항	구비요건
가. 품질관리 방침	인증의 품질을 보장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품질에 대한 목표 및 의지	인증기관은 품질에 대한 목표와 의지를 문서화하고 모든 직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 고객불만 처리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의제기, 불만 및 분쟁사항에 대한 처리담당자, 처리기한 등 처리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li> <li>2) 고객 불만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li> <li>3) 고객 불만사항에 대한 예방조치 및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li> <li>4) 이의제기, 불만 및 분쟁처리 결과를 문서화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li> </ol>
라. 인증업무 추진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증의 승인, 갱신, 유효기간 연장, 생산계획 변경 업무의 처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li> <li>2)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사항별 처리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li> </ol>
마. 인력 채용 및 확충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증심사원 등 인력수급 및 채용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li> <li>2) 인증심사원 자격 및 확충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li> </ol>
바. 검사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증심사를 위한 시료채취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li> <li>2) 시료분석의뢰 절차 및 조치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li> </ol>
사. 품질문서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서번호 부여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li> <li>2) 문서결재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li> <li>3) 문서접수 및 발송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li> <li>4) 문서종류별 보관기간을 설정하고 문서이관 및 폐기절차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li> <li>5) 문서의 열람 및 공개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li> </ol>
아. 기타	인증기관은 품질관리매뉴얼을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2]

**인증기관 지정번호 부여방법**(제7조제4항 관련)

**1. 일반원칙**

- 가. 인증기관 지정일자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나. 인증업무 범위에 관계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다. 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포기 등으로 결번이 생길 경우 그 번호는 영구 결번으로 한다.

**2. 이 고시 개정 이전에 유기가공식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인증기관 지정번호는 다음과 같다.**

기 관 명	중전 기관번호	개정 기관번호
한국식품연구원	1	91
(유)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2	2
글로벌유농인영농조합법인	3	9
Control Union Certifications	4	62
ECOCERT SA	5	92
오씨케이	6	13
(주)한국친환경유기인증센터	7	40
ACO(Australian Certified Organic)	8	68
BCS(BCS Oeko-Garantie GmbH)	9	69
한국농식품인증원(주)	10	1
(주)우리농인증원	11	60
사)제주농림수산식품인증센터	12	75
(주)에코리더스인증원	13	87
(재)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식품 산업연구센터	14	93

## **Certificate of Certification Authority Designation**

---

Number of Designation:

Name of Institute:

Representative:

Location:

scope of work:

Date of Expiry:

---

In line with Article 26.1 of the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e Fosterage Act and Articles 29.2 and 44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NAQS hereby designates the above-named institute as Certification Authority for organic food and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 . .

Director of th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sign)  
Management Service



### 3.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개정 2013. 7.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3-20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36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이라 함은 법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과 법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말한다.
2. ‘인증품’이라 함은 제1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농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을 말한다.
3. “신청인”이라 함은 규칙 제10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4. “단체신청”이라 함은 5인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의 단체가 규칙 제10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5.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규칙 제11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인증기준”이라 함은 규칙 제9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인증기준을 말한다.
7. “인증사업자”라 함은 규칙 제13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를 말하고, 인증사업자 중 제4호에 따른 단체신청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단체인증”이라 한다.



8. “사후관리”라 함은 법 제31조 또는 제34조제5항에 따라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하거나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인증기준에 맞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9. “조사원”이라 함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0. ‘단순 처리’라 함은 농축산물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도정하거나 건조하거나 냉동하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가열하는 것을 말하며,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분쇄하는 등 가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11. “지원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12. “사무소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현장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11호의 지원장을 포함한다.)
13. “인증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29조제2항 또는 제44조에 따라 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 영,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 제2장 인증

**제4조(인증신청 안내)** ①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기재요령, 수수료, 인증기준, 처리절차 등을 안내한다.

② 사무소장은 인증을 받으려는 신청인에게 인증기관 지정내역을 안내하고 인증기관에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사무소장은 담당 인력과 인증 농가수를 고려하여 인증 및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기관에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제5조(인증대상)** ①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인증대상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 :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 중이거나 생육 중인 농산물로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농산물(이 경우

생육기간은 파종일부터 수확완료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되, 다년생 작물 중 사과, 배와 같이 매년 수확하는 작물은 직전 수확이 완료된 날부터 다음 수확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적용한다)

2.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 중이거나 사육 중인 축산물

3. 유기가공식품·유기사료 :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 중이거나 생산 중인 가공식품·양축(養畜)용 사료

4. 취급자 인증품 : 인증품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단순 처리하여 포장한 인증품(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인증품과 판매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원하는 수량만큼 덜어서 구매하는 인증품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품목은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품목이어야 한다.

**제5조의2(인증의 신청)** ① 신청인은 규칙 제10조에 따라 인증신청서,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경영관련자료,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이하 “인증신청 서류”라 한다)을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인증을 받으려는 자와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개인 또는 단체)는 인증종류별(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로 신청하고, 제조·가공 또는 취급자는 업체별로 신청한다.

③ 단체신청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인증신청서는 단체별로 생산관리자가 작성

2.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및 경영관련자료는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별로 작성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벼에 한하여 생산관리자가 주요 재배시기에 연 4회 이상 신청인을 면담하고 면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경영관련자료와 인증품 생산계획서를 일괄 등록하여 작성 가능

④ 인증신청 서류 중 규칙 별지 제4호, 제5호 및 제6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및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 내용과 방법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재배 품목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작성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인증신청서 접수 등)** ①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인증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http://www.enviagro.go.kr>)에 등록하여 접수한다. 이때 처리기간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②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 접수 시 신청인의 과거 인증내역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 처리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청 제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2. 인증을 받은 농장(포장)을 인증 유효기간 내에 중복하여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만, 갱신신청 또는 연장신청을 하거나 인증종류를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인증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6조의2(인증기준)** 규칙 제9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인증심사)** ①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제11조에 따라 문서, 구술,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심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문서통지를 원하는 경우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의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표 3 인증번호 부여

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사업자가 수출 등의 목적으로 영문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고지)**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인증사업자에게 규칙 제17조 및 기타 인증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인증 변경승인 등)** ① 인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를 해당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인증 사업장 규모를 축소하려는 경우
3. 인증 사업자의 주소, 업체명, 또는 인증 부가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7조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제8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하는 때에 인증 사업장 규모의 축소, 인증 사업자의 주소 또는 업체명 변경 등 현장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인증의 갱신 등)** ① 인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규칙 제16조에 따라 해당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인증갱신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 제조·가공 및 취급하기 위해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 인증 갱신
  2. 인증갱신을 하지 않으려는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인증품이 있어 그 인증품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
- ②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7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고 제8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신청에 따른 인증심사는 경영관리와 생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심사한다.
- ③ 제1항제2호의 신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인증서의 인증 부가조건란에 인증품 출하 가능량을 기재한다.

### 제3장 인증의 표시

- 제12조(인증품의 표시)** ① 인증사업자가 인증품을 출하하려는 때에는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규칙 제18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인증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세부적인 사항 등은 별표 4와 같다.
- ② 인증사업자는 인증 받은 농장·작업장 소재지에 인증 받은 내용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인증 받은 내용을 사실대로 광고할 수 있다.

### 제4장 사후관리

제13조 <삭 제>

- 제14조(인증품의 사후관리 조사)** ① 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주기와 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 인증품 사후관리 조사요령은 별표 5와 같다.
- ② 사무소장은 조사과정에서 관할지역 이외 지역의 생산·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사무소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지역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조사원은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이상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조사원은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무소장은 조사결과 관할지역 이외에서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품을 유통하는 자 중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필요한 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 사실과 관련 자료를 해당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인증기관이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지정취소·폐업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인증사업자에 대한 생산과정조사 등 사후 관리는 생산지 관할 사무소장이 실시한다.

**제15조(조사결과 조치)**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하였거나 통보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 및 제31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등은 규칙 제19조, 제37조, 제41조제2항, 제42조의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2. 법 제60조 벌칙에 해당하는 자는 위반행위 발생지 관할지역 사법 기관에 고발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따라 관할지역 사무소장이 처리한다.

3.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영 제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지원장이 실시한다.

4. 기타 행정지도 사항은 해당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제16조(저농약농산물 행정처분의 적용 기준)** 법 부칙 제2조 및 종전 「친환경 농업육성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한 저농약농산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는 별표 6과 같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과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생산관리자의 예비심사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환경농산물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유기농식품표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저농약농산물표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6년 7월 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

##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제6조의2 관련)

1.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인증부가기준”이라 한다)은 규칙 제9조 및 제40조 관련 별표 3 및 별표 11에 규정된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일반농산물”이라 함은 관행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나. “병행생산”이라 함은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품목과 같은 품목의 일반농산물 또는 인증종류가 다른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된 종자”라 함은 종자를 소독하기 위해 유기합성 농약으로 분의(紛依), 도포(塗布), 침지(浸漬) 등의 처리를 한 종자를 말한다.

라. “배지(培地)”라 함은 버섯류, 양액재배농산물 등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거나 작물체가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성된 토양이외의 물질을 말한다.

마.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이라 함은 종실(種實)의 싹을 틔워 일정기간 재배하여 종실, 어린싹, 어린줄기, 어린뿌리를 먹는 농산물을 말한다.

(예 : 발아농산물, 콩나물, 숙주나물, 새싹채소 등)

바. “유전자변형농산물”이라 함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사. “계획(개선대책)을 세워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해당사항에 대한 문서화된 이행계획서를 세우고 이행계획에 따라 실천함을 의미한다.

아. “완충지대”이라 함은 인접지역에서 사용한 금지물질이 인증을 받은 지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인증을 받은 지역을 두르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자. “인증품의 표시기준”이라 함은 규칙 제18조 및 제45조에 따른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산물등의 표시기준을 말한다.

차. “인증을 받으려는~”으로 규정된 요건은 인증을 받은 이후에는 “인증을 받은~”을 의미한다.



## 2. 유기농산물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 경영관리 및 단체 관리	<p>1)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은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최근 2년 이상으로 하되, 재배품목과 재배포장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p> <p>가)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과 버섯류로 생육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작물은 경영관련 자료를 최근 6개월 이상 기록하여야 한다.</p> <p>나) 매년 수확하지 않는 다년생 작물(예 : 인삼)을 2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 경영관련 자료를 파종일 이후부터 기록하여야 한다.</p> <p>2)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 중 일부만을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농산물의 재배과정에서 사용한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량과 해당농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병행생산에 한함)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3) 소속농가가 5농가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신청의 경우 소속 농가가 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생산지침서를 작성하여 소속 농가에게 배부하고, 1인 이상의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 대한 지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p> <p>4) 생산관리자는 인증신청 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15농가 이하로 구성된 단체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예비심사를 면제한다.</p>
나. 재배 포장 ·용수·종자	<p>1) 버섯류 등 토양이 아닌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재배에 사용된 배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p> <p>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류농약의 검출한계는 0.01ppm으로 한다.</p> <p>나)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 또는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 및 그 부산물로 조성되어야 한다. 다만, 작물의 적절한 영양공급을 위해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1)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p> <p>2) 토양검정결과 토양비옥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적정치 이하이거나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集積)된 경우 개선대책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p> <p>3) 재배포장의 토양에서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류농약의 검출한계는 0.01ppm으로 한다.</p> <p>4) 재배포장의 전환기간은 인증기관의 감독이 시작된 시점부터 인정되며, 전환기간을 생략하거나 그 일부를 단축 또는 연장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p>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p>가) 생략대상 : 토양에서 직접 재배하지 않는 농산물(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버섯류에 한함)</p> <p>나) 단축대상 : 재배포장에 최근 2년간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토양검정결과 염류가 적정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전환기간을 단축하여도 최소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다) 연장대상 : 재배포장에 과거에 사용한 농약과 화학비료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p> <p>5) 하천·호소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항목은 최근 1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환경부 등에서 일정주기(월별 또는 분기별)로 검사한 검정치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한다. 다만, 신청일 이전의 정기적인 검사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검정치를 적용한다.</p> <p>6) 일반종자를 사용하는 경우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로 최종 생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7) 모종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종자 및 육묘과정이 유기인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p> <p>8) 재배포장 주변의 오염원 차단을 위해 완충지대를 설정한 경우 해당구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구분관리 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p>
다. 재배방법	<p>1) 인증을 받으려는 모든 재배포장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장기간의 윤작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 등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용식물의 포장의 경우와 배지에 재배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가) 최소 3년 주기로 두과작물, 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일정기간 이상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還元) 한다.(다만, 매년 수확하지 않는 다년생 작물(예 : 인삼)은 파종 이전에 두과작물 등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한다.)</p> <p>나) 최소 2년 주기로 식물분류학상 “과(科)”가 다른 작물을 재배하되 재배작물에 두과작물, 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포함한다.</p> <p>다) 최소 2년 주기로 담수재배작물과 원예작물을 조합하여 담전윤환재배(畓田輪換栽培)한다.</p> <p>라) 매년 두과작물, 녹비작물, 심근성작물을 이용하여 초생재배 草生栽培한다.</p> <p>2)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및 병해충 관리를 위해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규칙별표 1 제1호가목1)·2)의 자재에 한해 사용하되, 사용가능한 자재임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고 사용하여야 한다.</p>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p>1) 유기농산물의 저장, 수송, 포장 과정에서 일반농산물 또는 인증종류가 다른 농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2) 유기농산물을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 1호다목 1) 허용물질 중 오존수, 이산화염소(수), 차아염소산수를 사용 할 수 있다.</p> <p>3)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로 규칙 별표 3 제2호라목8) 단서의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p> <p>4) 인증품 출하 시 인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p> <p>5)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마. 기타	<p>1) 산림 등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용식물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p> <p>가) 채취지역은 뚜렷이 구분될 수 있도록 채취예정구역도(축척 1/1000분의 1부터 1/2000분의 1까지의 임야도 또는 위성항법장치에 채취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를 작성하여 해당지역에서 채취하여야 한다.</p> <p>나) 채취예정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채취예정수량 조사서를 제시하여야 한다.</p> <p>다) 채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p> <p>라) 채취과정에서 해당지역 내 자생환경의 안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종의 유지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채취한다.</p> <p>마) 인증을 받으려는 채취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같은 품목을 채취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p> <p>2) 병행생산의 경우 유기농산물과 일반농산물 또는 인증종류가 다른 농산물의 구분 관리 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p> <p>3) 인증을 받으려는 농장(포장) 내에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4)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유기농립산물의 인증기준은 인증 유효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p> <p>5)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유기농립산물의 인증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p>

### 3. 유기축산물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 일반원칙 및 단체관리	<p>1)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은 규칙 별표 4 제1호나목에 따라 최근 1년으로 한다.</p> <p>2) 사육하고 있는 축산물 중 일부만을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축산물의 사육과정에서 사용한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량과 해당축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병행생산에 한함)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3) 소속농가가 5농가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신청의 경우 소속 농가가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생산지침서를 작성하여 소속 농가에게 배부하고, 1인 이상의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 대한 지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p> <p>4) 생산관리자는 인증신청 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15농가 이하로 구성된 단체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예비심사를 면제한다.</p>																																																																			
나. 사육장 및 사육조건	<p>1) 유기가축 1마리당 갖추어야 하는 가축사육시설의 소요면적 (단위 :m<sup>2</sup>)은 다음과 같다.</p> <p>가) 한·육우</p> <table border="1" data-bbox="402 1211 1406 1301"> <thead> <tr> <th>시설형태</th> <th>번식우</th> <th>비육우</th> <th>송아지</th> </tr> </thead> <tbody> <tr> <td>방 사 식</td> <td>10m<sup>2</sup>/마리</td> <td>7.1m<sup>2</sup>/마리</td> <td>2.5m<sup>2</sup>/마리</td> </tr> </tbody> </table> <p>① 성우 1마리=육성우 2마리            ② 성우(14개월령 이상), 육성우(6개월~14개월 미만), 송아지(6개월령 미만)            ③ 포유중인 송아지는 마리수에서 제외</p> <p>나) 젖소 (m<sup>2</sup>/마리)</p> <table border="1" data-bbox="402 1543 1399 1751"> <thead> <tr> <th rowspan="2">시설형태</th> <th colspan="2">경 산 우</th> <th rowspan="2">초 입 우 (13~24월령)</th> <th rowspan="2">육 성 우 (7~12월령)</th> <th rowspan="2">송아지 (3~6월령)</th> </tr> <tr> <th>착유우</th> <th>건유우</th> </tr> </thead> <tbody> <tr> <td>깔 질</td> <td>17.3</td> <td>17.3</td> <td>10.9</td> <td>6.4</td> <td>4.3</td> </tr> <tr> <td>후리스틀</td> <td>9.5</td> <td>13.2</td> <td>8.3</td> <td>6.4</td> <td>4.3</td> </tr> </tbody> </table> <p>다) 돼지 (m<sup>2</sup>/마리)</p> <table border="1" data-bbox="402 1823 1399 2047"> <thead> <tr> <th rowspan="3">구 분</th> <th rowspan="3">용돈</th> <th colspan="4">번 식 돈</th> <th colspan="4">비 육</th> </tr> <tr> <th rowspan="2">임신돈</th> <th rowspan="2">분만돈</th> <th rowspan="2">종부 대기돈</th> <th rowspan="2">후보돈</th> <th colspan="2">자돈</th> <th rowspan="2">육성돈</th> <th rowspan="2">비육돈</th> </tr> <tr> <th>초기</th> <th>후기</th> </tr> </thead> <tbody> <tr> <td>소요 면적</td> <td>10.4</td> <td>3.1</td> <td>4.0</td> <td>3.1</td> <td>3.1</td> <td>0.2</td> <td>0.3</td> <td>1.0</td> <td>1.5</td> </tr> </tbody> </table>										시설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방 사 식	10m <sup>2</sup> /마리	7.1m <sup>2</sup> /마리	2.5m <sup>2</sup> /마리	시설형태	경 산 우		초 입 우 (13~24월령)	육 성 우 (7~12월령)	송아지 (3~6월령)	착유우	건유우	깔 질	17.3	17.3	10.9	6.4	4.3	후리스틀	9.5	13.2	8.3	6.4	4.3	구 분	용돈	번 식 돈				비 육				임신돈	분만돈	종부 대기돈	후보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소요 면적	10.4	3.1	4.0	3.1	3.1	0.2	0.3	1.0	1.5
시설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방 사 식	10m <sup>2</sup> /마리	7.1m <sup>2</sup> /마리	2.5m <sup>2</sup> /마리																																																																	
시설형태	경 산 우		초 입 우 (13~24월령)	육 성 우 (7~12월령)	송아지 (3~6월령)																																																															
	착유우	건유우																																																																		
깔 질	17.3	17.3	10.9	6.4	4.3																																																															
후리스틀	9.5	13.2	8.3	6.4	4.3																																																															
구 분	용돈	번 식 돈				비 육																																																														
		임신돈	분만돈	종부 대기돈	후보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소요 면적	10.4	3.1	4.0	3.1	3.1	0.2	0.3	1.0	1.5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p>① 자돈초기(20kg 미만), 자돈중기(20 ~30kg 미만), 육성돈30 ~60kg 미만, 비육돈(60kg 이상)</p> <p>② 포유중인 자돈은 마리수에서 제외</p> <p>라) 닭</p> <table border="1" data-bbox="400 441 1406 647"> <thead> <tr> <th>구 분</th> <th>소요면적</th> </tr> </thead> <tbody> <tr> <td>산란 성계, 종계</td> <td>0.22m<sup>2</sup>/마리</td> </tr> <tr> <td>산란 육성계</td> <td>0.16m<sup>2</sup>/마리</td> </tr> <tr> <td>육계</td> <td>0.1m<sup>2</sup>/마리</td> </tr> </tbody> </table> <p>① 성계 1마리 = 육성계 2마리 = 병아리 4마리</p> <p>② 병아리(3주령 미만), 육성계(3주령 ~18주령 미만), 성계(18주령 이상)</p> <p>마) 오리</p> <table border="1" data-bbox="400 817 1406 974"> <thead> <tr> <th>구 분</th> <th>소요면적</th> </tr> </thead> <tbody> <tr> <td>산란용 오리</td> <td>0.55m<sup>2</sup>/마리</td> </tr> <tr> <td>육용 오리</td> <td>0.3m<sup>2</sup>/마리</td> </tr> </tbody> </table> <p>① 성오리 1마리 = 육성오리 2마리 = 새끼오리 4마리</p> <p>② 산란용: 성오리(18주령 이상), 육성오리(3주령 ~18주령 미만), 새끼오리(3주령 미만)</p> <p>③ 육용오리: 성오리(6주령 이상), 육성오리 : 3주령 ~6주령 미만, 새끼오리 : 3주령 미만</p> <p>바) 양</p> <table border="1" data-bbox="400 1301 1406 1408"> <thead> <tr> <th>구 분</th> <th>소요면적</th> </tr> </thead> <tbody> <tr> <td>면양, 산양</td> <td>1.3m<sup>2</sup>/마리</td> </tr> </tbody> </table> <p>사) 사슴</p> <table border="1" data-bbox="400 1482 1406 1688"> <thead> <tr> <th>구 분</th> <th>소요면적</th> </tr> </thead> <tbody> <tr> <td>꽃사슴</td> <td>2.3m<sup>2</sup>/마리</td> </tr> <tr> <td>레드디어</td> <td>4.6m<sup>2</sup>/마리</td> </tr> <tr> <td>엘크</td> <td>9.2m<sup>2</sup>/마리</td> </tr> </tbody> </table> <p>2) 반추가축은 축종별 생리 상태를 고려하여 1) 축사면적의 2배 이상의 방목지 또는 운동장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는 축사구조의 경우 축사시설면적의 2배 이상을 축사 내에 추가 확보하여 방목지 또는 운동장을 대신할 수 있다.</p> <p>3) 축사 및 축사의 주변에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4) 같은 축사 내에서 유기가축과 비유기가축을 번갈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p>	구 분	소요면적	산란 성계, 종계	0.22m <sup>2</sup> /마리	산란 육성계	0.16m <sup>2</sup> /마리	육계	0.1m <sup>2</sup> /마리	구 분	소요면적	산란용 오리	0.55m <sup>2</sup> /마리	육용 오리	0.3m <sup>2</sup> /마리	구 분	소요면적	면양, 산양	1.3m <sup>2</sup> /마리	구 분	소요면적	꽃사슴	2.3m <sup>2</sup> /마리	레드디어	4.6m <sup>2</sup> /마리	엘크	9.2m <sup>2</sup> /마리
구 분	소요면적																										
산란 성계, 종계	0.22m <sup>2</sup> /마리																										
산란 육성계	0.16m <sup>2</sup> /마리																										
육계	0.1m <sup>2</sup> /마리																										
구 분	소요면적																										
산란용 오리	0.55m <sup>2</sup> /마리																										
육용 오리	0.3m <sup>2</sup> /마리																										
구 분	소요면적																										
면양, 산양	1.3m <sup>2</sup> /마리																										
구 분	소요면적																										
꽃사슴	2.3m <sup>2</sup> /마리																										
레드디어	4.6m <sup>2</sup> /마리																										
엘크	9.2m <sup>2</sup> /마리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p>5) 유기가축과 비유기가축의 병행사육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가) 유기가축과 비유기가축은 서로 독립된 축사(건축물)에서 사육하고 구별이 가능하도록 각 축사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입식시기가 경과한 비유기가축을 유기가축 축사로 입식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다) 유기가축과 비유기가축의 생산부터 출하까지 구분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p> <p>6) 산란계의 경우 자연일조시간을 포함하여 총 14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공광으로 일조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p>
다. 자급사료 기반	<p>1) 초식가축의 경우 가축 1마리당 확보하여야 하는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 재배지는 다음과 같다. (사료작물재배지는 임차 하거나 계약재배가 가능하다.)</p> <p>가) 한·육우 : 목초지 2,475m<sup>2</sup>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825m<sup>2</sup></p> <p>나) 젖소 : 목초지 3,960m<sup>2</sup>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1,320m<sup>2</sup></p> <p>다) 면·산양 : 목초지 198m<sup>2</sup>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66m<sup>2</sup></p> <p>라) 사슴 : 목초지 660m<sup>2</sup>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220m<sup>2</sup></p> <p>다만, 축종별 가축의 생리적 상태, 지역 기상조건의 특수성 및 토양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외부에서 유기적으로 생산된 조사료를 도입할 경우,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면적을 일부 감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육우는 374m<sup>2</sup>/마리, 젖소는 916m<sup>2</sup>/마리 이상의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 재배지를 확보하여야 한다.</p>
라. 가축의 입식 및 번식방법	<p>1)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가축의 입식조건(입식시기 등)이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2) 일반가축을 유기축산으로 전환하려는 때에는 가축의 이유 직후 또는 부화 직후부터 전환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육성축 및 성축의 유기축산 전환을 시작할 수 있다.</p> <p>가) 최초 인증 시 현재 사육하고 있는 전체 가축을 전환하려는 경우</p> <p>나) 원유생산용·알생산용·녹용생산용 가축을 전환하려는 경우</p> <p>다) 번식용 수컷이 필요한 경우</p> <p>라)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폐사로 새로운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p>
마. 전환기간	<p>1) 전환기간은 인증기관의 감독이 시작된 시점부터 인정된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3 제3호마목1)에서 규정한 전환기간의 2/3 범위 내에서 유기 사육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p>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p>2) 전환기간의 시작일은 사육형태에 따라 가축 개체별 또는 개체군별 또는 축사별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p> <p>3) 전환기간이 충족되지 아니한 가축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바. 사료 및 영양관리</p>	<p>1) 가축에게 급여하는 사료가 유기사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한 후 급여하여야 한다.</p> <p>2) 반추가축에게 사일리지만 급여해서는 아니되며, 생초나 건초 등 조사료도 급여하여야 한다.</p> <p>3)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단미 및 보조사료는 규칙 별표 1 제 1호나목의 자재에 한해 사용하되 사용가능한 자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사용하여야 한다.</p> <p>4) 규칙 별표 3 제3호바목4)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유래한 것의 비의도적인 혼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요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의도적으로 혼입되어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함량의 1/10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 관리하였다는’ 증명서류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p>
<p>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p>	<p>1) 질병이 발생하여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수의사가 교부하는 처방전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처방매뉴얼을 농장 내에 비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사 또는 투약을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비치하거나 관련 고시를 기재하여야 한다.</p> <p>가) 처방매뉴얼은 수의사면허를 받은 수의사가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나) 처방매뉴얼의 대상 질병은 해당 가축의 사육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청인이 쉽게 진단이 가능한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한하며,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동물용의약품은 제외한다.</p> <p>다) 처방매뉴얼은 「수의사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처방전의 기재사항과 대상 질병 명을 기재하여야 한다.</p> <p>라) 처방매뉴얼은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동물용의약품의 사용기준이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p>2) 1)에 따른 처방매뉴얼의 예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p> <p>3) 1)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해당 축산물의 출하 시에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났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최초 출하 시 인증기관에 잔류물질 검사(출하 전 생체잔류검사 또는 도축 후 지육잔류검사 등)를 의뢰하고 그 검사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한다.</p>
아. 운송·도축·가공과정의 품질관리	<p>1) 유기축산물의 수송, 도축, 가공과정의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p> <p>가) 수송방법, 도축방법, 가공방법, 인증품 표시방법</p> <p>나) 인증을 받지 않은 축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는 구분 관리 방법</p> <p>2) 인증품 출하 시 인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p> <p>3)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축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할 수 없다. 다만, 1의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계약된 유통자에게 생축으로 판매하는 경우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p>
자. 가축 분뇨의 처리	<p>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대상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사육시설이 동 법령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차. 기타	<p>1)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유기축산물의 인증기준은 인증 유효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p> <p>2)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유기축산물의 인증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p>

#### 4. 유기가공식품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 일반요건	<p>1) 보관창고 내 유기생산물과 비유기생산물의 혼합방지를 위하여 구분관리하여야 한다.</p> <p>2) 원료의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유기생산물과 비유기생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관리 하여야 한다.</p>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나. 가공원료	<p>1) 규칙 별표 3 제4호나목2)의 본문 중 '동일한 종류의 비유기 원료로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 각 호와 같다.</p> <p>가) 가공되지 않은 원료에 대해서는 명칭이 같으면 동일한 종류의 원료로 판단할 수 있다.</p> <p>나) 단순 가공된 원료에 대해서는 해당 원료의 가공에 사용된 원료가 동일하면 명칭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원료로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옥수수분말과 옥수수전분, 토마토피레와 토마토페이스트는 동일한 원료로 볼 수 있다.</p> <p>다) 실제 사용되는 유기원료와 비유기원료의 동일성 여부는 인증기관의 판단에 따른다.</p> <p>2) 원료 또는 제품 및 시제품에 대한 검정결과 GMO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p> <p>3) 유기가공식품에 사용하는 물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별표 1에서 정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4) 유기가공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료가 '유전자변형 생물체 또는 유전자변형 생물체 유래의 원료'가 아니라는 것은 해당 가공원료의 공급자로부터 받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증빙서류로 확인한다.</p> <p>가) 거래당사자, 품목, 거래량, 롯데번호</p> <p>나) 유전자변형 생물체 또는 유전자변형 생물체 유래의 원료가 아니라는 사실</p> <p>5) 유기원료의 비율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가) 원료별로 단위가 달라 중량과 부피가 병존하는 때에는 최종 제품의 단위로 통일하여 계산한다.</p> <p>나)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식품첨가물은 유기원료에 포함시켜 계산한다.</p> <p>다) 계산 시 제외되는 물과 소금은 의도적으로 투입되는 것에 한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료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 물과 소금은 포함한다.</p> <p>라) 농축, 희석 등 가공된 원료 또는 첨가물은 가공 이전의 상태로 환원한 중량 또는 부피로 계산한다.</p> <p>마) 비유기원료 또는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유기가공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가공식품 중의 유기 비율만큼만 유기원료로 인정하여 계산한다.</p>
다. 가공방법	<p>1) 규칙 별표 3 제4호다목1)에서 정한 '기계적 물리적 방법은 절단, 분쇄, 혼합, 성형, 가열, 냉각, 가압, 감압, 건조, 분리(여과, 원심분리, 압착, 증류), 절입, 혼연 등을 말하며, '생물학적 방법'은 발효, 숙성 등을 말한다.</p>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2) 규칙 별표 3 제4호다목2)에서 정한 '전리 방사선'은 살균, 살충, 발아 억제, 성숙의 지연, 선도 유지, 식품 물성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사선을 말하며, 이물탐지용 방사선(X선)은 제외한다.
라. 해충 및 병원균관리	1) 규칙 별표 3 제4호라목2)에서 정한 해충 및 병원균을 없애기 위한 예방적 방법'은 서식처 제거, 접근 경로의 차단, 천적의 활용 등을 말하며, 기계적·물리적·생물학적 방법'은 물리적 장벽, 음파, 초음파, 빛, 자외선, 덫, 온도 관리, 성호르몬 처리 등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마. 포장	1)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생산하거나 재포장한 후 인증표시를 하여 출하된 인증품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그 인증 표시를 유지할 수 있다.

## 5. 무농약농산물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 경영관리 및 단체관리	<p>1)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은 규칙 별표 4 제 1호가목에 따라 최근 1년 이상으로 하되, 재배품목과 재배포장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p> <p>가)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과 버섯류로 생육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작물은 경영관련 자료를 최소 6개월 이상 기록하여야 한다.</p> <p>나) 1년 이상 휴경(休耕)한 재배포장과 산림 등을 개간하여 새로 조성한 재배포장은 경영관련 자료를 재배 시작일 이후 최근 6개월 이상 기록하여야 한다.</p> <p>다) 매년 수확하지 않는 다년생 작물(예 : 인삼)을 2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 경영관련 자료를 파종일 이후부터 기록하여야 한다.</p> <p>2)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 중 일부만을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농산물의 재배과정에서 사용한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량과 해당농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병행생산에 한함)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3) 소속농가가 5농가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신청의 경우 소속 농가가 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생산지침서를 작성하여 소속 농가에게 배부하고, 1인 이상의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 대한 지도·관리를 하여야 한다.</p> <p>4) 생산관리자는 인증신청 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15농가 이하로 구성된 단체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예비심사를 면제한다.</p>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나. 재배포장·용수·종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버섯류 등 토양이 아닌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재배에 사용된 배지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류농약의 검출한계는 0.01ppm으로 한다.</li> <li>2) 토양검정결과 토양비옥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적정치 이하이거나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集積)된 경우 개선대책을 세워 이행하여야 한다.</li> <li>3) 재배포장의 토양에서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류농약의 검출한계는 0.01ppm으로 한다.</li> <li>4) 하천·호소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항목은 최근 1년 동안 한국농어촌 공사, 환경부 등에서 일정주기(월별 또는 분기별)로 검사한 검정치의 산술 평균값을 적용한다. 다만, 신청일 이전의 정기적인 검사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검정치를 적용한다.</li> <li>5) 종자는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로 최종 생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li> <li>6) 모종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종자 및 육묘과정이 무농약인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li> <li>7) 재배포장 주변의 오염원 차단을 위해 완충지대를 설정한 경우 해당구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구분관리계획을 세워 이행하여야 한다.</li> </ol>
다. 재배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화학비료는 최근 2년 이내에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1/3이하의 범위 내에서 사용시기와 사용자재에 대한 계획을 세워 사용하여야 한다.</li> <li>2) 병해충 관리를 위해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별표 1 제 1호가목 2의 자재에 한해 사용하되, 사용가능한 자재임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고 사용하여야 한다.</li> </ol>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무농약농산물의 저장, 수송, 포장 과정에서 일반농산물 또는 저농약농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li> <li>2) 무농약농산물을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 1호다목 1) 허용물질 중 오존수, 이산화염소(수), 차아염소산수를 사용 할 수 있다.</li> <li>3)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로 규칙 별표 11 제 2호라목 6) 단서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li> <li>4) 인증품 출하 시 인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li> <li>5)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li> </ol>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마. 기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짝을 퇴위 직접 먹는 농산물 중 일반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생산자(농가) 단위 또는 최대 6톤 이내로 구성된 롯트 단위로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관련 자료를 비치·보관하여야 한다.</li> <li>2) 양액재배에서 발생하는 폐양액은 하천 또는 호소로 방류하여서는 아니 된다.</li> <li>3) 병행생산의 경우 무농약농산물과 일반농산물 또는 저농약농산물의 구분 관리 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li> <li>4) 인증을 받으려는 농장(포장) 내에 유기합성농약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li> <li>5)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무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은 인증 유효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li> <li>6)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li> </ol>

## 6. 무항생제축산물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 경영관리 및 단체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은 규칙 별표 4 제1호나목에 따라 최근 1년간으로 한다.</li> <li>2) 사육하고 있는 축산물 중 일부만을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인증신청하지 않은 축산물의 사육과정에서 사용한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량과 해당 축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병행생산에 한함)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li> <li>3) 소속농가가 5농가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신청의 경우 소속 농가가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생산지침서를 작성하여 소속 농가에게 배부하고, 1인 이상의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 대한 지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li> <li>4) 생산관리자는 인증신청 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15농가 이하로 구성된 단체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예비심사를 면제한다.</li> </ol>
나. 축사 및 사육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축사의 밀도 조건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서 정한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양과 사슴은 유기축산물의 축사밀도를 따르고 산란용 메추리는 다음기준에 따른다.</li> </ol>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구 분	소요면적
	산란용 메추리	0.0076㎡/마리
	<p>2) 축사 및 축사의 주변에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3) 같은 축사에서 무항생제 가축과 일반가축을 번갈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p> <p>4) 무항생제 가축과 일반가축의 병행사육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가) 무항생제 가축과 일반가축은 서로 독립된 축사 (건축물) 에서 사육하고 구별이 가능하도록 각 축사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입식시기가 경과한 일반가축을 무항생제 가축 축사로 입식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다) 무항생제 가축과 일반가축에 대하여 생산부터 출하까지 구분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p>	
다. 가축의 입식 및 번식방법	<p>1)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가축의 입식조건 (입식시기 등)이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2) 일반가축을 무항생제축산으로 전환하려는 때에는 가축의 이유 직후 또는 부화 직후부터 전환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육성축 및 성축의 무항생제축산 전환을 시작 할 수 있다.</p> <p>가) 최초 인증 시 현재 사육하고 있는 전체 가축을 전환하려는 경우</p> <p>나) 원유생산용·알생산용·녹용생산용 가축을 전환하려는 경우</p> <p>다) 번식용 수컷이 필요한 경우</p> <p>라)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폐사로 새로운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p>	
라. 전환기간	<p>1) 전환기간은 인증기관의 감독이 시작된 시점부터 인정된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3 제3호마목1)에서 정한 전환기간의 2/3 범위 내에서 무항생제 사육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2) 전환기간의 시작일은 사육형태에 따라 가축 개체별 또는 개체군별 또는 축사별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p> <p>3) 전환기간이 충족되지 아니한 가축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p>	
마. 사료 및 영양관리	<p>1) 가축에게 급여하는 사료가 무항생제 사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한 후 급여하여야 한다.</p> <p>2) 가축에게 합성착색제를 급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바.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p>1) 질병이 발생하여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수의사가 교부하는 처방전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처방매뉴얼을 농장 내에 비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사 또는 투약을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비치하거나 관련 고시를 기재하여야 한다.</p> <p>가) 처방매뉴얼은 수의사면허를 받은 수의사가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나) 처방매뉴얼의 대상 질병은 해당 가축의 사육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청인이 쉽게 진단이 가능한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한하며,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동물용의약품은 제외한다.</p> <p>다) 처방매뉴얼은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처방전의 기재사항과 대상 질병 명을 기재하여야 한다.</p> <p>라) 처방매뉴얼은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동물용의약품의 사용기준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2) 1)에 따른 처방매뉴얼의 예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p> <p>3) 1)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해당 축산물의 출하 시에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났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최초 출하 시 인증기관에 잔류물질 검사(출하 전 생체잔류검사 또는 도축 후 지육잔류검사 등)를 의뢰하고 그 검사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한다.</p>
사. 운송·도축 가공과정의 품질관리	<p>1) 무항생제축산물의 수송, 도축, 가공과정의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p> <p>가) 수송방법, 도축방법, 가공방법, 인증품 표시방법</p> <p>나) 인증을 받지 않은 축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는 구분 관리 방법</p> <p>2) 인증품 출하 시 인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p> <p>3)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축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할 수 없다. 다만, 1)의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계약된 유통자에게 생축으로 판매하는 경우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p>
아. 가축 분뇨의 처리	<p>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가축분뇨배출 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대상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사육시설이 동 법령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자. 기타	1)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은 인증 유효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2)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7. 저농약농산물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 경영관리	1) 경영관련 자료를 기록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경운(耕耘), 파종(播種), 재식(栽植), 시비(施肥), 잡초관리, 병해충 관리 등 주요 농작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날짜 나)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의 재배포장에 투입된 모든 영농자재의 사용량과 사용목적 및 영농자재 구입처 다)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 라) 최근 1년간의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구매량, 구매처, 사용량 및 보관량 2)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 중 일부만을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농산물의 재배과정에서 사용한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량과 해당농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병행생산에 한함)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소속농가가 5농가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신청의 경우 소속 농가가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생산지침서를 작성하여 소속 농가에게 배부하고, 1인 이상의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 대한 지도·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재배포장·용수·종자	1) 토양검정결과 토양비옥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걱정치 이하이거나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集積)된 경우 개선대책을 세워 이행하여야 한다. 2) 하천·호소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항목은 최근 1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환경부 등에서 일정주기(월별 또는 분기별)로 검사한 검정치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한다. 다만, 신청일 이전의 정기적인 검사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검정치를 적용한다.
다. 재배방법	1) 화학비료는 최근 2년 이내에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1/2이하 범위내에서 사용시기와 사용자재에 대한 계획을 세워 사용하여야 한다.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2) 유기합성농약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저농약 인증기준(살포횟수 및 사용시기 등)에 적합하게 사용 계획을 세워 사용하여야 한다.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1) 저농약농산물의 저장, 수송, 포장 과정에서 일반 농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잔류농약이 해당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분의 1이상 검출된 경우 인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없다. 3) 인증품 출하 시 인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4)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마. 기타	1) 양액재배에서 발생하는 폐양액은 하천 또는 호소로 방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병행생산의 경우 저농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구분 관리 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유기합성농약의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저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은 인증 유효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5)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저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8.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 경영관리	1)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은 규칙 별표 4 제 2호마목에 따라 최근 3개월 이상으로 하되, 신설된 사업장으로 농축산물의 취급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인증심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록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일반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경우 해당농산물의 취급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최근 1년 이상 기록하여야 한다. 3) 작업기록을 통해 입고량, 재고량, 출하량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기초재고량+입고량=기말재고량+출고량) 4)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재포장과정(취급자)의 인증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나. 작업장 시설 기준	1) 작업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중 해당업종에 해당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에 대한 작업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을 적용하되, 축산물판매업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중 해당업종에 해당하는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다. 원료관리	1) 원료 인증품을 구입하여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인증품의 품질과 순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농산물에 화학물질을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농산물을 재포장품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취급방법	1) 인증품을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1)의 허용물질 중 오존수, 이산화염소(수), 차아염소산수를 사용 할 수 있다. 2) 인증품과 일반농산물 또는 같은 품목에 인증종류가 다른 농산물을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작업공간에서 재포장 하거나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같은 공간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증종류가 다른 인증품을 혼합하여 낮은 단계의 인증종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인증품과 일반농산물을 같이 취급하는 경우 원료의 구매, 저장, 선별, 포장 등 취급 전 과정에서 구분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작업장의 소독을 위해 자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일자, 제품명, 방법, 목적 등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마. 저장·포장·운송·수송	1) 원료 인증품의 수송, 저장 등의 과정(재포장을 위해 인증품의 포장을 뜯어내기 이전의 전 과정)에서 인증표시가 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바. 생산물 등의 품질관리 등	1)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외 인증기준은 인증유효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2) 출하한 농산물의 롯데번호 또는 바코드 등 식별체계를 통해 농산물의 입고, 작업, 출하 등의 이력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별표 2]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제7조제3항 관련)

1. 인증심사 일반

가. 인증심사원의 지정

- 1)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인 이상의 인증심사원을 지정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인증심사원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자신이 신청인이거나 신청인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친족 관계인 경우
  - 나) 신청인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다) 기타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에 대해 공정한 인증심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인증심사원을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나. 서류심사

- 1)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이하 “서류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 2) 서류심사는 신청서류와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를 위해 요구한 서류로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전체(단체신청의 경우 구성원 전체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 3) 서류심사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신청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 나) 각 기재항목이 빠짐없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인증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
  - 다) 다른 신청인의 자료를 필사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료인지 여부
  - 라) 신청필지가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 받은 필지인지 여부
  - 마) 기타 현장 심사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의 점검
- 4) 서류심사를 통해 과거의 생산내역과 앞으로의 생산계획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5)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가 누락된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다. 현장심사

- 1) 인증심사원은 농장, 제조·가공 및 취급 작업장을 방문하고 신청인을 면담하여 생산, 제조·가공 및 취급 중인 농식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사(이하 “현장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 2) 현장심사는 작물이 생육 중인 시기, 가축이 사육 중인 시기, 인증품을 제조·가공 또는 취급 중인 시기(시제품 생산을 포함한다)에 실시하고 신청한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의 생산이 완료되는 시기에는 현장심사를 할 수 없다.
- 3) 현장심사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인증 신청한 내역과 생산 내역이 일치하는 지 여부
    - (1) 인증 신청한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는지, 재배면적이 일치하는 지
    - (2) 인증 신청한 가축이 사육되고 있는지, 축사면적 등이 일치하는 지
    - (3) 인증 신청한 제조·가공 또는 취급과정이 신청한 내역과 일치 하는 지
  - 나) 생산계획서 및 이행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을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
  - 다)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보관·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라) 규정된 인증기준의 각 항목에 대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마) 생산관리자가 예비심사를 하였던 지와 예비심사한 내역이 적정한지
- 4)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토양, 재배용수, 생산물(이하 생육 중인 ‘작물체’와 가공식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조사·분석(이하 ‘검사’라 한다)을 실시한다.
- 5)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가) 농립산물
    - (1) 재배포장의 토양·용수 :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토양(중금속 등 토양오염물질), 용수 : 공장폐수유입지역, 원광석·고철야적지 주변지역, 금속제련소 주변지역, 폐기물적치·매립·소각지 주변지역, 금속광산 주변지역, 신청이전에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포함된 자재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지역,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의 주변지역 등
      - ㉡ 토양(잔류농약) : (2)에 해당되거나 생산물을 채취 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생산물 검사보다 토양 검사가 실효성이 높은 경우(토양에 직접 사용하는 농약 등)
      - ㉢ 용수 : 최근 5년 이내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재배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개하거나 작물수확기에 생산물에 직접 관수하는 경우에 한함)
    - (2) 생산물 : 최근 1년 이내에 농약이 검출된 경우,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된 종자를 사용한 경우, 관행 재배지로부터 오염우려가 있는 경우, GMO의

혼입이 우려되는 경우,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결과 농약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유기합성농약을 구매한 내역이 있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 단체심사 시 선정된 표본농가, 신규 개인신청 농가

- (3) 퇴비 : 유기·무항생제 사료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사료를 먹인 농장 또는 경축순환농법에서 유래되지 아니한 농장에서 유래된 퇴비를 사용하는 경우(유기농산물에 한함)

나) 축산물

- (1) 토양·용수 검사 : 농림산물의 검사대상에 따름  
(2) 사료검사 : 사료에 동물용의약품이 포함되었음이 의심되는 경우  
(3) 축산물 : 사육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였거나 사용가능성이 있는 경우(동물용의약품을 구매한 내역이 있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 단체심사 시 선정된 표본농가, 신규 개인신청 농가 [인증심사 시 시료수거가 불가능한 경우는 인증 이후 최초 출하 시 출하 예정가축군의 오줌 또는 혈청을 검사(출하 전 생체잔류검사)하거나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를 실시한다]

다) 제조·가공 및 취급자

- (1) 용수 : 세척 또는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최근 5년 이내에 실시한 수질 검사성적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수도법」에 따른 수도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2) 생산물 : 취급시설에서 비 인증품을 병행하여 취급하는 경우(취급자), 전용 생산라인이 없이 일반가공품과 병행 가공하는 경우(가공식품), 기타 비인증품 또는 GMO의 혼입이 우려되는 경우

6)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농림산물

- (1) 재배포장의 토양  
①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설정된 성분 중 해당지역에서 오염이 우려 되는 특정 성분(특정성분을 한정할 수 없는 경우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 크롬, 아연, 니켈을 검정함),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5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분(해당 기준을 적용함)  
② 토양에 잔류되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성분  
(2) 용수 : 수역별로 농업용수(하천·호소의 경우 ‘IV’ 등급을 의미함) 또는 먹는 물 기준이 설정된 성분  
(3) 생산물 : 유기합성농약 성분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성분, GMO

(4) 퇴비 : 잔류항생 물질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성분, 퇴비의 중금속 검사성분(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나) 축산물

(1) 토양·용수 검사 : 농림산물의 기준에 따름

(2) 사료검사 : 사료공정규격에 따라 사료에 사용가능한 동물용의약품 성분

(3) 축산물 : 신청인이 사용한 내역이 있는 동물용의약품 성분, 신청인이 구매한 내역이 있는 동물용의약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동물용의약품 성분

다) 제조·가공 및 취급자

(1) 용수 :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먹는 물 기준이 설정된 성분

(2) 인증품 : 농축산물에 설정된 유기합성농약성분 또는 동물용의약품 성분, GMO

7) 재배포장의 토양, 용수, 퇴비 및 생산물에 대한 검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 및 사무소,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와 그 밖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시험연구기관(이하 “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성적으로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시험연구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4조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검정기관(검사·검정기관으로 지정된 분야에 한함)

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축산물 및 축산물가공식품의 검사에 한함)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토양오염물질의 검사에 한함)

라)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재배용수의 검사에 한함)

마) 「식품위생법」 제24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농약품목등록시험기관(생산물 및 토양의 잔류농약 검사에 한하고, 2013년 12월31까지만 인정한다.)

바) 「비료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른 퇴비원료분석기관 및 시험연구기관(퇴비의 검사에 한함)

사) 「사료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사료의 검사에 한함)

아) ISO/IEC 17025에 따라 공인을 받은 기관(공인된 분야에 한함)

자) 관련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차) 외국인증기관의 경우 ISO/IEC 17025에 따라 공인을 받았거나, 해당 국가의 관련법령에 따라 분석기관으로 지정·승인된 기관

8) 검사방법은 검사 대상별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공정시험방법을 따르며, 토양의 잔류농약검사는 농산물의 공정시험법을 준용한다. 다만, 분석능률 향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9) 시료수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재배포장의 토양은 대상 모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Z자형 또는 W자형으로 최소한 10개소 이상의 수거지점을 선정하여 채취한다.
  - 나) 생산물은 대상 모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작물 재배지 형태 또는 적재상태·진열형태 등을 고려하여 Z자형 또는 W자형으로 최소한 6개소 이상의 수거 지점을 선정하여 채취한다. 다만, 외관 및 냄새 등 기타 상황을 판단하여 이상이 있는 것 또는 의심스러운 것을 우선 수거할 수 있다.
  - 다) 시료수거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 가족 입회하에 인증심사원이 채취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시료수거 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증심사보고서에 첨부한다. 다만, 식육의 출하 전 생체잔류검사의 경우는 인증심사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채취할 수 있으며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의 경우에는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축산물검사원 또는 자체검사원이 채취할 수 있다.
  - 라) 시료수거량은 시험연구기관이 검사에 필요한 수량으로 한다.
  - 마) 시료수거 과정에서 시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료수거 기구 및 용기를 사용한다.
  - 바) 채취한 시료는 신청인 입회하에 봉인 조치한 후 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험연구기관에 송부한다.
- 10) 인증심사원은 현장심사과정에서 농장(포장)소재지 주소, 재배면적, 사육면적, 사육두수 등 인증신청 사항 중 변경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정사항을 기록하여 신청인의 확인을 받아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 라. 추가심사

- 1)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로 인증기준에 규정된 심사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추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나 재배여건, 생육시기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 나) 신청인이 제시한 이행계획 중 실제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다) 기타 인증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마. 심사결과보고

- 1)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에 인증심사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와 인증심사서류에 인증기준의 모든 구비요건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결과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확인한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 3) 현장심사 과정에서 검사를 실시한 경우 반드시 검사성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 바. 심사결과의 판정

- 1)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인증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 2)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춘 자로 인증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이상을 정하거나, 관련 전문가 5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제1호가목의2)와3)을 적용한다.
- 3)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결과보고를 통해 인증기준의 모든 항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 된 경우에만 적합판정을 할 수 있으며,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증심사원에게 추가심사를 하도록 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 2. 단체신청의 심사 방법

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는 전체구성원을 대상으로 제1호에 따라 실시한다.

나. 표본심사

- 1) 가목에도 불구하고 현장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다음의 표본농가 수 선정기준표에 따라 표본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구성원수 (호)	5~15	16~24	25~35	36~48	49~63	64~80	81~99	100~120	121 이상
표본농가	4 이상	8 이상	10 이상	12 이상	14 이상	16 이상	18 이상	20 이상	20% 이상

- 2) 1)에도 불구하고 단체 구성원의 전체 재배지에 대해 신청서상의 재배품목과 실제배면적의 일치 여부, 제초제 사용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3) 표본농가는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서류심사과정에서 잠재적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농가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

다. 심사결과보고는 제1호마목에 따라 실시하되, 심사결과 보고서에 첨부하는 인증심사 자료는 심사한 농가별로 작성하고, 전체 구성원에 대한 서류심사 내역과 나목2)의 전체 재배지에 대한 확인 자료를 추가하여야 한다.

라. 심사결과의 판정

- 1) 전체 구성원을 심사한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적합과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 2) 표본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대상자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단체에 대해 적합으로 판정하고 부적합 농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체에 대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표본심사 농가는 심사결과 모두 적합하였으나, 서류심사와 나목2)에 따라 전체 재배지를 확인한 결과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부적합 농가를 제외하고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인증번호 부여방법(제8조제1항 관련)**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인증한 경우**

- 가. 시·도별 지정번호(00) - 시·군별 지정번호(00) - 인증종류(0) - 해당 시·군별로 인증된 순위의 일련번호(0)를 결합하여 부여한다.(예 : 00-00-0-0)
- 나. 시도, 시·군의 번호는 아래와 같으며, 시·군이 없는 특별시·광역시는 시·군별 지정번호란을 “00”으로 한다.
- 다. 지정번호가 부여된 시·군 외에 시·군이 추가로 생기는 경우 시·도내 시·군의 마지막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시·군이 통합되는 경우 통합된 시·군 지정번호 중 선순위 지정번호를 사용한다.
- 라. 인증종류별 번호는 유기농림산물(1), 유기축산물(2), 무농약농산물(3), 저농약농산물(4), 무항생제축산물(5), 취급자(6), 수입자(7), 유기가공식품(8), 비식용유기가공품(9)로 한다.
- 마. 시·군별로 인증된 순위의 일련번호는 해당 시·군의 인증종류별 일련번호로 한다.

**2. 인증기관이 인증한 경우**

- 가. 국내산농산물은 인증기관 지정번호(0) - 인증종류(0) - 인증일련번호(0)를 결합하여 부여한다.(예 : 0 - 0 -0)
- 나. 인증종류별 번호는 제1호라목을 따르고, 인증일련번호는 해당 인증기관의 인증종류별 일련번호로 한다.

<시·도, 시·군별 코드번호표>

시·도별 지정번호	시·군별 지정번호	비고
서울특별시(01)		예) 서울시에서 유기농산물을 취득한 경우 인증받은 01-00-1-1
부산광역시(02)	기장군(01)	
대구광역시(03)	달성군(01)	
인천광역시(04)	강화군(01), 옹진군(02)	
광주광역시(05)		
대전광역시(06)		
울산광역시(07)	울주군(01)	




시·도별 지정번호	시·군별 지정번호	비고
경기도 (10)	수원시(01), 성남시(02), 의정부시(03), 안양시(04), 부천시(05), 광명시(06), 동두천시(07), 안산시(08), 고양시(09), 과천시(10), 구리시(11), 평택시(12), 남양주시(13), 오산시(14), 시흥시(15), 군포시(16), 의왕시(17), 하남시(18), 파주시(19), 이천시(20), 용인시(21), 양주군(22), 여주군(23), 화성시(24), 광주시(25), 연천군(26), 포천군(27), 가평군(28), 양평군(29), 안성시(30), 김포시(31)	예) 이천시에서 무농산물로 재배하는 첫 번째 인종은 경우, 10-20-3-1
강원도 (11)	춘천시(01), 원주시(02), 강릉시(03), 동해시(04), 태백시(05), 속초시(06), 삼척시(07), 홍천군(08), 횡성군(09), 영월군(10), 평창군(11), 정선군(12), 철원군(13), 화천군(14), 양구군(15), 인제군(16), 고성군(17), 양양군(18)	
충청북도 (12)	청주시(01), 충주시(02), 제천시(03), 청원군(04), 보은군(05), 옥천군(06), 영동군(07), 진천군(08), 괴산군(09), 음성군(10), 단양군(11), 증평군(12)	
충청남도 (13)	천안시(01), 공주시(02), 보령시(03), 아산시(04), 서산시(05), 논산시(06), 금산군(07), 세종특별자치 시에 소속된 읍·면·동(08), 부여군(09), 서천군 (10), 청양군(11), 홍성군(12), 예산군(13), 태안군 (14), 당진군(15), 계룡시(16),	
전라북도 (14)	전주시(01), 군산시(02), 익산시(03), 정읍시(04), 남원시(05), 김제시(06), 완주군(07), 진안군(08), 무주군(09), 장수군(10), 임실군(11), 순창군(12), 고창군(13), 부안군(14)	
전라남도 (15)	목포시(01), 여수시(02), 순천시(03), 나주시(04), 광양시(05), 담양군(06), 곡성군(07), 구례군(08), 고흥군(09), 보성군(10), 화순군(11), 장흥군(12), 강진군(13), 해남군(14), 영암군(15), 무안군(16), 함평군(17), 영광군(18), 장성군(19), 완도군(20), 진도군(21), 신안군(22)	
경상북도 (16)	포항시(01), 경주시(02), 김천시(03), 안동시(04), 구미시(05), 영주시(06), 영천시(07), 상주시(08), 문경시(09), 경산시(10), 군위군(11), 의성군(12), 청송군(13), 영양군(14), 영덕군(15), 청도군(16), 고령군(17), 성주군(18), 칠곡군(19), 예천군(20), 봉화군(21), 울진군(22), 울릉군(23)	
경상남도 (17)	창원시(01), 진주시(03), 통영시(05), 사천시(06), 김해시(07), 밀양시(08), 거제시(09), 양산시(10), 의령군(11), 함안군(12), 창녕군(13), 고성군(14), 남해군(15), 하동군(16), 산청군(17), 함양군(18), 거창군(19), 합천군(20)	
제주특별자치도 (18)	제주시(01), 서귀포시(02)	

[별표 4]

## 인증표시의 세부적인 사항 등(제12조제1항 관련)

### 1.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용기에 표시하는 방법

가. 생산, 제조·가공자의 표시(예시)

인증품의 표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자 : **작목반(김**)</li> <li>• 품목 : 유기채배 딸기</li> <li>• 생산지 : 안양시</li> <li>• 포장장소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2</li> <li>• 전화번호 : ***-****-****</li> </ul>
인증기관명 : *** 인증원 인증번호 : *--*	

비고 : 표시도형은 규칙 별표 5 및 별표 12의 작도법에 따라 인증 받은 종류에 맞게 표시하고 그 밖의 표시사항은 규칙 별표 6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른다.

나. 취급자의 표시(예시)

인증품의 표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급자 : *** 포장센터</li> <li>• 품목 : 유기채배 딸기</li> <li>• 생산지 : 안양시</li> <li>• 포장장소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2</li> <li>• 전화번호 : ***-****-****</li> </ul>
인증기관명 : *** 인증원 인증번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자 인증번호 : *--*</li> </ul>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div>	

비고 : 생산자 인증번호는 원료농산물의 인증번호를 표시하고, 원료농산물의 입·출고에 대한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롯데번호 또는 바코드 등의 식별체계를 표시 한다.

## 2.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표시하는 방법(예시)

거래명세서					
공 급 받 는 자	등록번호	***-**-*****		등록번호	***-**-*****
	업체명	**친환경유통		업체명	**친환경작목반 (인)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사업장주소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4		포장장소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2
거래일자	품목	규격	수량	인증번호	인증기관
2013.6.2	유기농 배추	포기	100	*-**-*	**인증원

비고 :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명칭, 거래품목, 거래수량, 거래일이 기재되어 있는 일반적인 거래명세서에 인증종류, 인증번호, 인증기관을 추가하여 기재한다.

## 3. 표시판 또는 풋말로 표시하는 방법(예시)은 제1호와 제2호의 표시방법(예시)을 준용한다.

## 4. 원재료 함량에 따라 유기농으로 표시하는 방법(예시)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인증품	비인증품(제한적 유기표시 제품)	
	유기농함량 95% 이상	유기농함량 70%이상	유기농함량 70%미만 (특정원료)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 인증로고 표시	O	X	X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유기농 표시	O	X	X
주 표시면에 유기농 표시	O	X	X
주 표시면 이외의 표시면에 유기농 표시	O	O	X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 유기농 표시	O	O	O

비고 : 유기농 함량은 규칙 별표 7 제1호가목의 원재료를 말하며 이 표에서 사용하는 제품명, 주 표시면, 원재료명의 정의 또는 의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한다.

## 5. 인증기관 및 인증번호의 변경에 따른 기존 포장재의 사용기간

가. 인증기관 또는 인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품의 포장에 변경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제작된 포장재 재고량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포장재 재고량 및 그 사용기간에 대해 해당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존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포장재의 사용기간은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련 증빙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 인증품 사후관리 조사요령(제14조제1항 관련)

### 1. 생산과정조사

가.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서 교부 이후 인증을 받은 자의 농장 소재지 또는 작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조사주기는 해당 인증 건의 과거 위반내역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 1) 인증 건별로 연1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를 실시한다.(단체의 경우 별표 2 제2호 표본농가 수 이상을 조사한 경우를 1회 조사로 간주 한다)
- 2) 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 건이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생산물에서 유해잔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규칙 제33조 제4항에 따라 불시 심사를 한 경우에는 생산과정 조사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 3) 농관원장의 특별조사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주기와 상관없이 생산과정 조사를 실시한다.

다. 조사시기는 해당 농산물의 생육기간(축산물은 사육기간) 또는 생산기간 중에 실시하고 가급적 인증기준 위반의 우려가 가장 높은 시기(일반재배에서 농약을 주로 사용하는 시기 등)에 실시한다.

라. 조사항목별 세부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경영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2) 인증품의 출하내역을 확인한다.
- 3)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한다.
- 4) 금지물질의 구입, 보관 및 사용여부를 확인한다.
- 5) 항목별 인증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 6) 인증심사 시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실행여부를 확인한다.
- 7) 제조·가공자 및 취급자의 경우 원료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표본을 선정하여 생산자가 실제 출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마. 조사원은 생산과정조사 중 필요한 경우 잔류농약 등 유해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물에서 유해잔류물질이 검출된 경우(다만, 저농약 농산물은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2를 초과하거나 해당농산물에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성분이 검출된 경우에만한다)

- 2) 합성농약 등 비 허용물질 사용흔적의 발견 등 인증기준 위반 개연성이 있는 경우
- 3) 검사대상에 해당되나 인증심사 시 생육 중인 가축으로 시료수거가 가능하지 않아 검사하지 않은 경우(축산물에 한함)

## 2. 유통과정조사

- 가. 사무소장은 인증품 판매장·취급작업장을 방문하여 인증품의 유통과정 조사를 실시한다.
- 나. 사무소장은 전년도 조사업체 내역, 인증품 유통실태 조사 등을 통해 관내 인증품 유통업체 목록을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한다.
- 다. 조사주기는 나목에 따라 등록된 유통업체 중 조사 필요성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라. 조사시기는 가급적 인증품의 유통물량이 많은 시기에 실시하고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인증품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업체가 인증품을 취급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유통과정 조사를 실시한다.
- 마. 항목별 세부조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한다.
  - 2) 인증품의 구매내역 및 판매내역이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 3) 취급 중인 인증품의 표본을 선정하여 산지에서 실제 출하여부를 확인한다.
  - 4) 인증이 취소된 인증품, 표시사용정지 중인 인증품이 유통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5)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 바. 조사원은 유통과정조사 중 필요한 경우 잔류농약 등 유해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최근 1년 이내에 해당업체에서 취급 중인 인증품에서 유해잔류물질이 검출된 경우(다만, 저농약농산물은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2를 초과하거나 해당농산물에 비적용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 한한다)
  - 2)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인증품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업체의 인증품을 취급하는 경우

[별표 6]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은 경우(제16조 관련)**

저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영농 또는 경영관련 자료를 기록하지 않거나 기록하여야 하는 중요 항목을 누락하는 경우
2. 영농 또는 경영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관하지 않는 경우
3. 영농 또는 경영관련 자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4.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인증품에 혼합하거나 인증종류가 다른 인증품을 혼합한 경우
5. 저농약농산물의 화학비료 및 유기합성농약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6.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품의 검사 등의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 인증품 생산계획서 (농산물용)

### 1. 신청인

#### 가. 신청인 정보

1) 성명		2) 연락처(전화번호)	
3)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4) 주소			
5) 인증신청단위	<input type="checkbox"/> 단체(단체명 : _____ ) <input type="checkbox"/> 개인		

\* 단체의 경우 생산자단체 공통사항을 별도 첨부하여 주십시오.

#### 나. 신청 내용

1) 신청종류	<input type="checkbox"/> 신규 신청 <input type="checkbox"/> 인증갱신 신청 <input type="checkbox"/>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신청
2) 인증종류	<input type="checkbox"/> 유기농립산물 <input type="checkbox"/> 무농약농산물 <input type="checkbox"/> 저농약농산물

\* 인증품 유효기간연장 신청은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합니다.

#### 다. 과거 인증 이력

1) 최근 1년간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또는 유기식품등의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습니까?

○ 친환경농축산물 또는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인증과 관련하여 법 규정(부정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함)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인증이 취소되었거나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인증품의 판매금지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인증을 신청하여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2. 신청내역

가. 인증신청하려는 재배포장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소재지	지번	면적(m <sup>2</sup> )	재배품목(1년간)		
			이전 작물	현 작물	이후 작물

나. 인증을 받으려는 품목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품목명	재배면적(m <sup>2</sup> )	생산계획량(kg)	전년도 생산량(kg)

## 3. 재배작기

가. 인증을 받으려는 품목의 재배작기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품목명	파종일	수확기간	판매기간

4. 경영 관리

가. 최근 2년간(무농약인증은 1년)의 경영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제출  미제출

나.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이 2년(무농약인증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다. 최근 2년간(무농약인증은 1년간)의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구매, 사용, 재고 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관행재배 농장에 사용한 내역을 포함)

자재명	구매일	구매처(연락처)	구매량	재고량	보관장소

자재명	사용일	사용장소(농장소재지)	사용량	대상품목

**5. 재배포장·용수·종자**

가. 재배포장이 중금속 등으로 오염되었거나 주변에 금속광산, 폐기물 매립지 등 오염원이 있습니까? (오염원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예( )  
 아니오

나. 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해 최근 2년간 실시한 토양검정 결과가 있습니까?

- 예  아니오

※ 토양검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다. 재배포장의 토양검정 결과 비옥도가 적정치 이하이거나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된 경우에는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

라. 재배포장에 마지막으로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이 투입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사용자재명	사용장소(농장소재지)	최종 사용일	비 고

마.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는 무엇입니까?

- 하천수  호소수  지하수  수돗물  자연빗물  기타( )

바. 최근 5년 이내에 실시한 재배용수에 대한 검정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검정결과 제출  검정결과 미제출

사. 종자의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종자명	사용량	구매처	종자종류
			<input type="checkbox"/> 유기 <input type="checkbox"/> 무농약 <input type="checkbox"/> 일반종자(무처리) <input type="checkbox"/> 일반종자(농약소독)

아. 종묘를 구입한 경우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종묘명	사용량	구매처	종묘종류
			<input type="checkbox"/> 유기 <input type="checkbox"/> 무농약 <input type="checkbox"/> 일반종묘

자. 유전자 변형농산물로 표시된 종자를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구매한 종자의 포장재 또는 공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아니요

차. 재배포장 주변에 농약방제 구역 등이 있어 인증필지가 농약으로 오염될 우려가 있습니까?

예  아니요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6. 재배방법**

가. 최근 2년간(무농약인증은 1년간) 인증 받으려는 재배지에 사용한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사용함  사용하지 않음

사용일자	사용자재 명	사용장소 (농장소재지)	사용량	자재종류
				<input type="checkbox"/> 합성농약, <input type="checkbox"/> 화학비료

나. (무농약·저농약에 한함) 화학비료의 연간 사용 내역(사용계획 포함)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자재명	성분함량	사용 가능량	사용시기	사용장소 (농장소재지)	사용한 양	사용할 양

다. (저농약에 한함) 합성농약의 연간 사용 내역(사용 계획 포함)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자재명	저농약 사용기준			사용시기 (농장소재지)	사용장소	사용한 양	사용할 양
	적용약제 여부	살포 가능회수	최종살포 가능일				

라. 잡초에 대한 관리계획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마. 병해충에 대한 관리계획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바. 적정 양분공급계획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사. 친환경농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계획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자재명	사용시기	사용장소 (농장소재지)	사용한 양	사용할 양	증빙자료
					<input type="checkbox"/> 공시 또는 품질인증자재 (등록번호:            ) <input type="checkbox"/> 별도제출

아. 윤작계획과 지금까지의 실천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자. 가축분뇨를 원료로 한 퇴비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사용함  사용하지 않음

퇴비명	사용량	구매처	분뇨 종류
			<input type="checkbox"/> 유기 <input type="checkbox"/> 무항생제 <input type="checkbox"/> 경축순환농법 <input type="checkbox"/> 일반

### 7.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가. 수확 이후 취급과정(포장, 저장, 세척, 절단, 건조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구분	작업내용	작업장소	위탁여부
포장	<input type="checkbox"/> 포장하여 출하		
	<input type="checkbox"/> 포장하지 않고 출하		
저장	<input type="checkbox"/> 저장 후 출하		
	<input type="checkbox"/> 저장하지 않고 출하		
세척	<input type="checkbox"/> 세척 후 출하		
	<input type="checkbox"/> 세척하지 않고 출하		
건조	<input type="checkbox"/> 건조 후 출하		
	<input type="checkbox"/> 건조하지 않고 출하		
기타	<input type="checkbox"/> 기타 작업 후 출하		
	<input type="checkbox"/> 기타 작업 없이 출하		
<절단 등 기타 취급과정>			

나. 취급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수탁자	위탁내용	연락처	위탁작업장	취급자 인증여부
				<input type="checkbox"/> 인증(인증번호: ) <input type="checkbox"/> 비인증
<계약서 제출>				
<input type="checkbox"/> 계약서 제출 <input type="checkbox"/> 계약서 미제출(그 사유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다. 수확 이후 취급과정에서 사용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사용계획을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자재명	사용시기	사용장소	사용 한 양	사용할 양	증빙자료
					<input type="checkbox"/> 공시 또는 품질인증자재 (등록번호:            ) <input type="checkbox"/> 별도제출

라.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인 인증 포장재 샘플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마. 인증품의 저장, 수송, 포장 등의 과정에서 비 인증품과 혼입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8. 기타

가. 양액재배 농산물인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1) 순환식 여부( 순환식,  순환식 아님) 및 설계도 등 입증서류
- 2) 폐양액의 발생량(연간) 및 처리계획

- 3) 양액조성표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나.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인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1) 원료 사용내역

원료명	연간소요량	구매한 량	구매할 량	구매처	원료종류
					<input type="checkbox"/> 유기 <input type="checkbox"/> 무농약 <input type="checkbox"/> 일반종자

2) 공급자 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일반 종자를 사용한 경우 잔류 농약검사성적서)     제출                                           미제출

다.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채취한 농산물 인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1) 채취예정구역도 :  제출,                 미제출
- 2) 채취예정수량 조사서 :  제출,                 미제출
- 3) 채취 관련 허가 또는 신고서 :  제출,                 미제출
- 4) 채취물의 자생환경 및 종의 유지를 위한 관리계획 등

라. 병행생산의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병행생산은 인증 받으려는 품목과 같은 품목을 관행재배 또는 인증종류가 다른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병행생산품의 생산·판매내역

품목명	생산장소	재배면적(m <sup>2</sup> )	생산계획량(kg)	판매처

2)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인 관행 생산품 포장재 샘플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3) 인증품과의 구분관리 계획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

**9. 제출자료 목록**

자료명	페이지 수	확인 후 반환 여부
		<input type="checkbox"/> 반환 필요, <input type="checkbox"/> 반환 불필요

**10. 신청인 확인 사항**

가. 인증품 생산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신청인( )이 직접 작성함
-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아래 대리인이 작성하였으며, 신청인( )이 확인함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 속

나. 인증신청인은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b>신청인 주의사항</b></p> <p>위에 작성된 내역은 사실 그대로 작성된 것이며, 만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인증취소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벌칙 처분(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p>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인증품 생산계획서 (축산물용)

### 1. 신청인

#### 가. 신청인 정보

1) 성명		2) 연락처(전화번호)	
3)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4) 주소			
5) 인증신청단위	<input type="checkbox"/> 단체(단체명 : _____ ) <input type="checkbox"/> 개인		

\* 단체의 경우 생산자단체 공통사항을 별도 첨부하여 주십시오.

#### 나. 신청 내용

1) 신청종류	<input type="checkbox"/> 신규 신청 <input type="checkbox"/> 인증갱신 신청 <input type="checkbox"/>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신청
2) 인증종류	<input type="checkbox"/> 유기축산물 <input type="checkbox"/> 무항생제축산물

\* 인증품 유효기간연장 신청은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합니다.

#### 다. 과거 인증 이력

1) 최근 1년간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또는 유기식품등의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습니까?

○ 친환경농축산물 또는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인증과 관련하여 법 규정(부정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함)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인증이 취소되었거나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인증품의 판매금지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인증을 신청하여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2. 신청내역**

가. 인증신청하려는 사육시설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구분	소재지	지번	면적(m <sup>2</sup> )	비고
사육장				
목초지				
사료포				
분뇨처리시설				
기타시설 등				

**3. 사육규모**

가. 인증을 받으려는 품목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품목명	사육규모(마리)			
	계	성축	육성축	자축

나. 인증을 받으려는 품목의 생산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품목명	사육기간	출하기간	출하계획량		전년도 출하량	
			마릿수·개수	물량(kg)	마릿수·개수	물량(kg)

**4. 일반원칙 및 경영 관리**

가. 최근 1년간의 경영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제출  미제출

나.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다. 최근 1년간의 동물용의약품의 구매, 사용, 재고 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관행생산 사용 내역을 포함함)

자재명	구매일	구매처(연락처)	구매량	재고량	보관장소

자재명	사용일	사용장소	사용량	대상가축

### 5. 사육장 및 사육조건

가. 사료와 음수의 공급방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사료 급여방법	
음수 급여방법	

나. 사육시설의 단열 및 환기시설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단열시설	
환기시설	

다. 축사의 밀도에 관한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축종 : \_\_\_\_\_ , ■ 시설형태 :

사육단계	축사면적(m <sup>2</sup> )	사육두수(마릿수)	1두당 평균면적 (면적/두수)	1두당 최저면적 (면적/두수)

\* 사육단계는 한우(송아지, 비육우, 번식우), 닭(산란성계, 산란육성계) 등 해당 축종의 축사 밀도 기준 산정방식에 따라 작성하고, 축사면적은 실제 사육공간만 해당됩니다.

라. 축사, 농기계 및 기구 등은 소독방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마. 축사의 바닥은 청결 및 건조하며,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바닥시설	
깔짚	
청소방법	

바. (유기 번식돈만 기재) 케이지 사육기간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모돈	
자돈	

사. (유기 가금류만 기재) 화의 크기, 수면공간 및 산란상자 설치여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화의 크기	
수면공간	
산란상자	

아. (유기 산란계만 기재) 인공 광 사용시간

인공광 사용시간	자연 일조시간	합계

자. (유기에 한함) 방목지 또는 운동장 조건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방목지·운동장 위치, 면적(m <sup>2</sup> )	방목지·운동장 접근 통로	방목지·운동장 접근 제한기간

차. 인증가축과 비인증가축 또는 인증종류가 다른 가축을 병행 사육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병행사육 하지 않음 )

축사(건축물)가 각각 구분되어 있으며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경영관련 자료는 각각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사용하는 사료와 약품 등은 각각 구분하여 보관·사용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병행사육 가축의 전년도 출하량과 출하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출하량 : _____ 출하처 : _____
병행사육 가축에 대한 구분관리계획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6. 자급사료 기반(유기축산물에 한함)**

가.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재배지의 인증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소재지	지번	면적(m <sup>2</sup> )	인증내역(인증 <input type="checkbox"/> , 비인증 <input type="checkbox"/> )		
			인증번호	인증종류	최초 인증일

나. (가의 비인증의 경우에만 기재)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지배지에 최근 1년간 투입된 모든 농자재의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사용일자	사용자재 명	사용장소	사용량	자재종류

### 7. 가축의 선택, 번식방법 및 입식

가. 인증을 받으려는 가축의 번식방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번식기법	개체식별번호
<input type="checkbox"/> 번식호르몬 처리	
<input type="checkbox"/> 수정란 이식기법	
<input type="checkbox"/> 유전공학을 이용한 번식기법	
<input type="checkbox"/> 자연교배, <input type="checkbox"/> 인공수정	

나. 현재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번식·구입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병행생산의 경우 일반축사에서 인증축사로 이동하는 것을 포함함)

개체식별번호	입식일(번식일)	마릿수	구입연령	구입이유	구분
					<input type="checkbox"/> 자가번식 <input type="checkbox"/> 외부입식(일반) <input type="checkbox"/> 외부입식(인증)

\* 개체번호식별번호로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개체군 관리번호 또는 축사번호별로 구분 (이하 같음)

### 8. 전환기간

가. 현재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인증 전환기간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개체식별번호	전환기 시작일	출하예정일	인증 사육기간

**9. 사료 및 영양관리**

가. 인증 받으려는 가축에게 급여한 사료급여 내역을 기재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사료명	구입량	급여량	공급자명	첨가물질명	사료종류
					<input type="checkbox"/> 유기사료 <input type="checkbox"/> 무항생제사료 <input type="checkbox"/> 일반사료

나. 가축에게 급여하는 음수가 「생활용수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최근 5년 이내의 검사성적서, 수도법에 따른 수돗물 이용내역서 등)

**10.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가. 인증 받으려는 가축에게 사용한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수의사 처방전 또는 처방매뉴얼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약품명	약품사용일	일반 휴약기간	해당가축 출하예정일	수의사 처방전 등 비치 유무

**11. 운송·도축·가공과정의 품질관리**

가. 최근 1년간의 인증품 출하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출하일	출하량(kg)	출하처	인증표시 여부

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증 포장재(샘플) 또는 표시사항과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포장재 제작일	제작수량	사용량	재고량

<인증포장재 샘플>



다. 인증품의 출하절차(운송·도축·가공, 집유·가공 등)와 관련 업체내역을 기재하고 해당 업체와의 계약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단계1( )	단계2( )	단계3( )	단계4( )
작업내역			

구 분	업체명	소재지	연락처(담당자)	작업내역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				
포장센터				

라. (가축을 도축·가공하는 경우) 최근 1년간 출하한 가축의 도축·가공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개체식별번호	출하일	HACCP 적용여부	
		도축장	가공장

마. (원유 등을 가공하는 경우) 최근 1년간 출하한 원유의 가공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납유처	납유기간	가공장	HACCP 적용여부

## 12. 가축분뇨의 처리

가. 최근 1년간 가축분뇨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축분뇨 처리일	가축분뇨 처리양	가축분뇨 처리방법	관련 업체명/연락처

나. 운동장 등에서 가축분뇨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있습니까?

- 가축분뇨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음  가축분뇨가 외부로 배출됨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 내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증  신고대상배출시설설치신고증  신고 또는 허가 면제

라. 가축분뇨 퇴·액비는 표면수 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사용하고, 장마철에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 환경오염 없음  환경오염 있음

**13. 제출자료 목록**

자료명	페이지 수	확인 후 반환 여부
		<input type="checkbox"/> 반환 필요, <input type="checkbox"/> 반환 불필요

**14. 신청인 확인 사항**

가. 인증품 생산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신청인( )이 직접 작성함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아래 대리인이 작성하였으며, 신청인( )이 확인함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나. 인증신청인은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의사항**

위에 작성된 내역은 사실 그대로 작성된 것이며, 만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인증취소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벌칙 처분(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 1. 신청인

#### 가. 신청인 정보

1) 성명		2) 연락처(전화번호)	
3)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4) 주소			
5) 인증신청단위	<input type="checkbox"/> 법인(법인명 : _____ ) <input type="checkbox"/> 개인		

#### 나. 신청 내용

1) 신청종류	<input type="checkbox"/> 신규 신청 <input type="checkbox"/> 인증갱신 신청 <input type="checkbox"/>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신청
2) 인증종류	<input type="checkbox"/> 취급자 <input type="checkbox"/> 유기가공식품 <input type="checkbox"/> 유기사료

\* 인증품 유효기간연장 신청은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합니다.

#### 다. 과거 인증 이력

1) 최근 1년간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또는 유기식품등의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습니까?

○ 친환경농축산물 또는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인증과 관련하여 법 규정(부정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함)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인증이 취소되었거나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인증품의 판매금지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인증을 신청하여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2. 신청내역

가. 인증을 받으려는 제조·가공 및 취급작업장 시설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구 분	작업장 시설			비 고
	소재지	지번	면적(m <sup>2</sup> )	

나. 인증을 받으려는 제조·가공 및 취급 품목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품목명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량(kg)	제조·가공 및 취급 농산물 산지	전년도 생산량(kg)

## 3. 제조·가공 및 취급 공정

가. 인증을 받으려는 제조·가공 및 취급 공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4. 경영 관리**

가. 최근 3개월간의 경영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제출  미제출

나. 입·출고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모든 자료의 명칭과 기록 방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자료명칭	기록하는 내용	기록방법	기록물 관리자
		<input type="checkbox"/> 수기록 <input type="checkbox"/> 전산	

**5. 작업기록 및 원료관리**

가. 입고(入庫)한 농산물의 인증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롯트번호 부여 등 입고한 농산물의 관리방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나. 최근 3개월간의 제조·가공 및 취급에 사용된 농산물 (일반농산물을 포함한다)의 입고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입고일자	품목	수량	구매처명	구매처 주소	인증번호	관리번호

\* 비인증품의 경우 인증번호란에 비인증으로 표시합니다.

다. 최근 3개월간의 취급한 농산물 또는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의 출고(出庫) 내역(일반농산물과 일반 가공식품을 포함한다)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출고일자	품목	물량	판매처명	판매처 주소	인증품 여부	관리번호

라. 제조·가공 및 취급하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현 재고내역(일반농산물과 일반가공식품을 포함한다)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품목	재고량	보관장소	인증번호	관리번호

마. 인증을 받으려는 가공식품에 사용한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의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유기가공식품에 한함)

물질명	구분	허용물질 여부	사용량	사용일자	사용목적
	<input type="checkbox"/> 식품첨가물 <input type="checkbox"/> 가공보조제	<input type="checkbox"/> 허용물질 <input type="checkbox"/> 허용물질 아님			

구매처명	구매처 주소	구매량	재고량	보관장소

바. 제품별 유기원료 비율을 기재하여 주십시오.(유기가공식품에 한함)

제품명	유기원료 중량( $I_o$ )	비유기 원료의 중량( $I_c$ )	비유기 식품첨가물의 중량( $I_a$ )	물과 소금의 중량( $WS$ )	제품중량 ( $G$ )	유기원료 비율

\*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frac{I_o}{G-WS} = \frac{I_o}{I_o+I_c+I_a} \geq 0.95$$

## 6. 해충 및 병원균 관리

가. 해충 및 병원균관리 방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나. 세척 및 소독과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해 사용된 물질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자재명	사용시기	사용장소	사용한 양	사용할 양	사용목적	증빙자료
						<input type="checkbox"/>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등록번호:                     ) <input type="checkbox"/> 별도제출

## 7. 생산물의 품질관리

가. 제조·가공 및 취급 과정에서 방사선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자재의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방사선 사용(사용목적:                                                             )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음

나. (수입농산물에 한함) 수입과정에서 훈증 처리를 한 경우 조치계획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다. 인증종류가 다른 농산물 또는 비인증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취급하는 경우 저장, 작업, 포장, 가공 등의 과정에서 인증종류가 다른 농산물 또는 비인증농산물 및 가공품의 구분 관리 계획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비인증품 취급  비인증품을 취급하지 않음

인증종류가 다른 농산물 취급  인증종류가 다른 농산물을 취급하지 않음

구분이 필요한 품목	
저장단계	
작업단계	
포장단계	
가공단계	
기타단계	

라. (취급자에 한함) 인증종류가 다른 농산물을 혼합한 경우 포장재 표시 계획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마. 제조·가공 또는 취급과정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수탁자	위탁내용	연락처	위탁작업장	취급자 인증여부
				<input type="checkbox"/> 인증(인증번호:            ) <input type="checkbox"/> 비인증
<계약서 제출> <input type="checkbox"/> 계약서 제출 <input type="checkbox"/> 계약서 미제출(그 사유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바. 작업장의 영업 허가·등록·신고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농산물 작업장	<input type="checkbox"/> 식품제조업 등록 <input type="checkbox"/> 식품소분판매업 등록 <input type="checkbox"/>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등록 <input type="checkbox"/> 기타 등록사항( )
축산물 작업장	<input type="checkbox"/> HACCP 적용 작업장 지정 <input type="checkbox"/> HACCP 적용 작업장 비지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등록사항( )
유기가공식품 작업장	<input type="checkbox"/> HACCP 적용 작업장 지정 <input type="checkbox"/> HACCP 적용 작업장 비지정 <input type="checkbox"/>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input type="checkbox"/> 식품제조보고서

### 8. 제출자료 목록

자료명	페이지 수	확인 후 반환 여부
		<input type="checkbox"/> 반환 필요, <input type="checkbox"/> 반환 불필요

### 9. 신청인 확인 사항

가. 인증품 생산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청인( )이 직접 작성함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아래 대리인이 작성하였으며, 신청인( )이 확인함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 생산자 단체 공통사항

단체 현 황	단체명		구성원 수	
	단체형태	<input type="checkbox"/> 영농조합법인, <input type="checkbox"/> 농업회사법인, <input type="checkbox"/> 임의단체(작목반,작목회)		
	설립일자		<input type="checkbox"/> 법인등록번호 또는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번호	
관 리 자 현 황	대표자 명		대표자 연락처	
	생산관리자 명		생산관리자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사무실 주소 또는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주소			
생 산 관 리 현 황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내부규약(규정)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내부규약 있음, <input type="checkbox"/> 내부규약 없음 (※ 내부규약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소속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를 보급한 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생산지침서 미 보급 <input type="checkbox"/> 생산지침서 보급 - 보급일 :                      , 보급수량: (※ 생산지침서를 보급한 경우 생산지침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소속농가에게 인증기준과 준수사항에 대해 교육한 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교육 미 실시 <input type="checkbox"/> 교육 실시 - 교육일 :                      , 교육장소 :                      , 참석자 수: (※ 교육을 실시한 경우 관련 교육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소속농가를 예비 심사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예비심사 미 실시 <input type="checkbox"/> 예비심사 실시 - 심사일 :                      , 심사자 :                      , 심사한 농가수: (※ 예비 심사한 경우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생산관리자가 교육받은 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생산관리자 교육 미 참여 <input type="checkbox"/> 생산관리자 교육 수료 - 교육일 :                      , 교육주관 : (※ 교육 수료한 경우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Certification No. :  <h1 style="margin: 0;">Certificate</h1>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 0;">《For Producer》</p>			
Type of Certification	<input type="radio"/> 유기농산물: ORGANIC, <input type="radio"/> 무농약농산물: NON-PESTICIDE, NON-ANTIBIOTICS <input type="radio"/> 저농약농산물: LOW-PESTICIDE	Expiration Date	
Name of Producer		Business Registration No. (Date of Birth)	
Address of Producer			
Location of Production Site			
Certified Item		Total Certified Area	
Additional Conditions of the Certification			
<p>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product complies with the certification standards for <input type="checkbox"/> Organic agricultural/forest products, <input type="checkbox"/> Organic livestock products, <input type="checkbox"/> Non-pesticide agricultural products, <input type="checkbox"/> Non-antibiotics livestock products pursuant to Article 20 (Article 34) of the Act on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Management and Support for Organic Foods and Article 13 (Section 1 of Article 41)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yyyy/mm/dd</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b>Administrator of Certification Body</b></p>			

Certification No. :

# Certificate

《For Manufacturer/Processor/ Handler》

Type of Certification		Expiration Date	
Manufacturer/Processor (Handler)		Business Registration No. (Date of Birth)	
Address			
Location of Business			
Place of Production of the Agricultural/Livestock Product Handled	※ Fill in this field only when issued to handler		
Item			
Additional Conditions of the Certification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product complies with the manufacturing, processing or handling standards (handling standards for non-pesticide agricultural products, etc.) for organic foods pursuant to Article 20 (Article 34) of the Act on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Management and Support for Organic Foods and Article 13 (Section 1 of Article 41)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yyyy/mm/dd

**Administrator of Certification Body**

Issuance No.:

# Transaction Certification

Supplier	Name of Business	
	Address	
Purchaser	Name of Business	
	Address	
Transaction	Item	Type of Certification
	Amount	Certification No.
	Lot No.	Invoice No. B/L No.
	Other Information	

This is to certify the above described transaction of organic foods, etc. (including non-pesticide agricultural products) pursuant to Section 2 of Article 13 (Section 1 of Article 41)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ct on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Management and Support for Organic Food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yyyy/mm/dd

**Administrator of Certification Body**

<b>확 인 서</b>			
상 호		허가(등록,인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p style="text-align: center;">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확인자    주 소 : _____</p> <p>          성 명 : _____ (인) (업주와의 관계 : _____ )</p> <p>조사원    소 속 : _____</p> <p>          직 : _____ 성명 : _____ (인)</p> <p>          직 : _____ 성명 : _____ (인)</p>			

<b>생산과정 조사결과 보고서(생산자용)</b>					
1. 조사일자/보고일자 :					
2. 조사자 :					
3. 조사대상					
인증번호		생산자			
4. 생산내역					
품목	재배면적(m <sup>2</sup> ) 사육규모	출하량(kg)/ 출하기간	품목	재배면적(m <sup>2</sup> ) 사육규모	출하량(kg)/ 출하기간
5. 조사 결과					
조사항목			조사결과		
경영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적정한 지 여부					
제초제 사용 여부					
농약·화학비료 사용 여부 또는 사용량의 적정성(동물용의약품 사용기준의 적정성)					
기타 인증기준 준수 여부 (생산물의 품질관리, 사료급여기준 등)					
잔류물질 조사 등을 위한 시료수거					
주요 이행계획서의 실행 여부					
6. 종합 의견 또는 부적격품 확인 시 세부 위반사항 및 조치의견					



## 생산과정 조사결과 보고서(제조·가공 및 취급자용)

1. 조사일자/보고일자 :

2. 조사자 :

3. 조사대상

인증번호

제조·가공,  
취급자

4. 생산내역

품목

출하량(kg)/출하기간

품목

출하량(kg)/출하기간

5. 조사 결과

조사항목

조사결과

경영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적정한 지 여부

산지 출하여부 확인을 위한 표본조사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

금지물질을 사용하는 지 여부

기타 취급기준 준수 여부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잔류물질 조사 등을 위한 시료수거

주요 이행계획서의 이행 여부

6. 종합 의견 또는 부적격품 확인 시 위반사항 및 조치의견

## 유통과정 조사결과 보고서

1. 조사일자/보고일자 :

2. 조사자 :

3. 조사대상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취급유형

진열·판매장

재포장 유통

수집·보관창고

기타(학교, 등)

4. 유통내역

품목	인증번호	수량(kg)	품목	인증번호	수량(kg)

5. 조사 결과

조사항목	조사결과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적정한 지 여부	
비인증품을 인증품으로 표시·광고하였는지 여부	
취소되었거나 표시사용정지 중인 인증품의 유통여부	
잔류물질 조사 등을 위한 시료수거	
산지 출하여부 확인을 위한 표본조사 (농산물의 이력추적 관리)	
기타 취급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6. 종합 의견 또는 부적격품 확인 시 위반사항 및 조치의견

## 예비심사 보고서(농산물용)

### 1. 심사대상자

단체명		전화번호	
생산자 성명		생년월일	
신청종류	<input type="checkbox"/> 신규 신청 <input type="checkbox"/> 인증갱신 신청		
인증종류	<input type="checkbox"/> 유기 <input type="checkbox"/> 무농약 <input type="checkbox"/> 저농약		

### 2. 경영관련 자료 확인내역

○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기간 :	
○ 재배포장별 재배내역(품목, 파종·식재일, 수확일)이 기록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재배포장별 자재 사용내역(자재명, 사용량)이 기록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농산물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이 기록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합성농약과 화학비료의 구매·사용·보관내역에 관한 자료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경영관련 자료 중 미비한 사항 또는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사항 :
---------------------------------------

### 3. 인증 신청한 재배포장의 현지 확인내역

소재지	지번	면적(㎡)	현재 재배작물	제초제 살포 흔적

#### 4. 인증 신청인과 면담한 내역

가. 신청인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사용 등 주요 인증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 인증기준을 알고 있음  
 인증기준을 알지 못함( )

나. 신청인은 인증기준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 인증기준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음  
 인증기준을 실천할 의지가 없음( )

다. 최근 1년간(유기인증 2년간) 인증 받으려는 재배지에 사용한 유기합성농약, 화학비료, 친환경농자재의 사용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사용자재 명	사용일자	사용장소 (농장소재지)	사용량	자재종류
				<input type="checkbox"/> 합성농약, <input type="checkbox"/> 화학비료, <input type="checkbox"/> 친환경자재

라. 최근 1년간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구매·사용·재고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관행재배 농장에 사용한 내역을 포함)

자재명	구매량	사용량	재고량	사용장소

#### 5. 위와 같이 예비 심사한 내역을 확인합니다.

예비심사일	신청인	생산관리자
	(서명)	(서명)

## 예비심사 보고서(축산물용)

### 1. 심사대상자

단 체 명		전화번호	
생산자 성명		생년월일	
신청종류	<input type="checkbox"/> 신규 신청 <input type="checkbox"/> 인증갱신 신청		
인증종류	<input type="checkbox"/> 유기 <input type="checkbox"/> 무항생제		

### 2. 경영관련 자료 확인내역

○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기간 :	
○ 가축구입 사항(마릿수 및 연령)과 번식내역이 기록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사료급여 내역(사료종류, 동물용의약품 첨가내역)이 기록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축산물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이 기록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동물용의약품의 구매·사용·보관내역에 관한 자료가 있는가? (수의사처방전, 수의사처방매뉴얼 포함)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경영관련 자료 중 미비한 사항 또는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사항 :	

### 3. 인증 신청한 사육포장의 현지 확인내역

축종명	계	성축	육성축	자축
현 사육규모(마리)				
사육장 면적(m <sup>2</sup> )				

#### 4. 인증 신청인과 면담한 내역

가. 신청인은 축사밀도, 사료·동물용의약품의 사용기준, 전환기간의 적용 등 주요 인증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인증기준을 알고 있음

인증기준을 알지 못함( )

나. 신청인은 인증기준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인증기준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음

인증기준을 실천할 의지가 없음( )

다. 최근 1년간 인증 받으려는 가축에 사용한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사용자재 명	사용일자	사용량	사용대상	자재종류	수의사처방전 (처방매뉴얼)
				<input type="checkbox"/> 항생제·합성항균제 <input type="checkbox"/> 호르몬제 <input type="checkbox"/> 구충제 <input type="checkbox"/> 항콕시등제	<input type="checkbox"/> 비치함 <input type="checkbox"/> 비치하지 않음

라. 최근 1년간 동물용의약품의 구매·사용·재고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관행사육 농장에 사용한 내역을 포함)

자재명	구매량	사용량	재고량	사용대상

## 처 방 매 뉴 얼

### 1.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 명

주 소

### 2. 수의사

성 명

면허번호

동물병원명칭

전화번호

동물병원 주소

### 3. 매뉴얼 내용

발급일

사용가능기간

가축종류

질병 명

진단방법

약의명칭

성분분량

용법·용량

보관방법

사용기간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b>인증심사 결과 보고서(농산물용)</b>			
<b>1. 신청내용</b>			
신청인	법인(조직)명		생산자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인증구분	[ ] 유기농산물, [ ] 무농약농산물, [ ] 저농약농산물	
	신청구분	[ ] 최초 신청, [ ] 갱신 신청, [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업장소재지		
	신청면적(m <sup>2</sup> )		
	신청품목		
<b>2. 심사결과</b>			
항목		평가	
		적합	부적합
①경영관리 및 단체 관리			
②재배포장, 용수, 종자			
③재배방법			
④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⑤기타			
<b>3. 심사의견</b>			
<p>붙임: 인증기준의 구비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심사한 내역서 1부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margin-right: 20px;">년</span> <span style="margin-right: 20px;">월</span> <span style="margin-right: 20px;">일</span> </p> <p> <span style="margin-right: 100px;">심사원 소속</span> <span style="margin-right: 20px;">직급</span> <span style="margin-right: 20px;">성명</span> <span style="float: right;">(서명 또는 인)</span> </p> <p> <span style="margin-right: 100px;"></span> <span style="margin-right: 20px;">직급</span> <span style="margin-right: 20px;">성명</span> <span style="float: right;">(서명 또는 인)</span> </p>			

<b>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축산물용)</b>			
<b>1. 신청내용</b>			
신청인	법인(조직)명		생산자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신청내용	인증구분	[ ] 유기축산물, [ ] 무항생제축산물	
	신청구분	[ ] 최초 신청, [ ] 갱신 신청, [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업장소재지		
	신청면적(m <sup>2</sup> )		
	신청품목		
<b>2. 심사결과</b>			
항목		평가	
		적합	부적합
①일반원칙(경영관리) 및 단체 관리			
②사육장(축사) 및 사육조건			
③자급 사료기반			
④가축의 선택, 번식 방법 및 입식			
⑤전환기간			
⑥사료 및 영양관리			
⑦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⑧운송·도축 및 가공과정의 품질관리			
⑨가축분뇨의 처리			
<b>3. 심사의견</b>			
붙임: 인증기준의 구비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심사한 내역서 1부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b>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제조·가공 및 취급자용)</b>				
<b>1. 신청내용</b>				
신청인	법인(조직)명		취급자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인증구분	[ ] 유기가공식품, [ ] 비식용유기가공품, [ ] 취급자:		
	신청구분	[ ] 최초 인증 신청, [ ] 갱신 신청, [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업장소재지			
	신청면적(m <sup>2</sup> )			
	신청품목			
<b>2. 심사결과</b>				
항 목		평 가		
		적 합	부 적 합	
①일반요건(취급자: 경영관리)				
②가공원료(취급자: 작업장 시설기준)				
③가공방법(취급자: 원료관리)				
④해충 및 병원균 관리(취급자: 취급방법)				
⑤세척 및 소독(취급자: 저장·포장·운송·수송)				
⑥포장(취급자: 생산물의 품질관리)				
⑦유기원료 및 가공식품의 수송 및 운반				
⑧기록·문서화 및 접근 보장				
⑨제조시설기준(유기사료에 한함)				
<b>3. 심사의견</b>				
불임: 인증기준의 구비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심사한 내역서 1부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심사원 소속	년	월	일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4.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제정 2013. 6.18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13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56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제4항, 제56조, 제71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신청, 심사, 유효기간의 갱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개량용 자재”란 토양에 처리하여 토양의 이화학성을 좋게 하거나 미생물의 활성에 도움을 주어 작물의 생육에 간접적으로 효과를 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
2. “작물생육용 자재”란 작물의 엽면이나 토양에 처리하여 작물의 생육에 효과를 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
3.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란 토양에 처리하여 토양의 이화학성을 좋게 하거나 작물에 직·간접적으로 영양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
4. “병해관리용 자재”란 작물에 발생하는 병을 직·간접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
5. “충해관리용 자재”란 작물에 발생하는 해충을 직·간접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
6. “병해충관리용 자재”란 작물에 발생하는 병과 해충을 동시에 직·간접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
7. “공시 및 품질인증 위원회(이하 “공시등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시 또는 품질인증(이하 “공시등”이라 한다.)을 신청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최종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심사원(이하 “공시등심사원”이라 한다)”이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심사원으로서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공시등을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구분)** 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사용 원료 및 품질 등을 평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을 할 수 있다.

1. 공시
2. 품질인증

② 공시등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등의 대상에 대하여 그 사용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공시등을 하여야 한다.

1. 토양개량용 자재
2. 작물생육용 자재
3.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4. 병해관리용 자재
5. 충해관리용 자재
6. 병해충관리용 자재

**제4조(유기농업자재 공시등에 관한 세부기준)** ① 법 제37조제4항,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등기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독성평가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주위사항 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공시등의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등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1. 법 제3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시등의 신청
2. 법 제3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공시등의 재심사 신청
3. 법 제3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48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의 변경승인 신청
4. 법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른 공시등의 갱신 신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공시등의 갱신신청시 해당 공시등 유기농업자재의 시험성적서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행규칙 제47조의 공시등 기준이 변경되거나 안전성 또는 민원 등으로 인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중 제4조제1항에 적합한 기 제출된 시험성적서
2.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 중 제4조제1항에 적합한 기 제출된 시험성적서
- ③ 동일한 업체 또는 동일 사람이 원료의 종류 및 조성이 같은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상표를 달리하여 공시등을 신청할 수 없다. 이 경우 공시 자재를 품질인증 자재로 신청하거나 품질인증 자재를 공시 자재로 신청할 때에도 같다.

**제6조(공시등의 신청서류 등의 심사)** ① 공시등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시등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및 제4조의 공시등의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별표 4의 유기농업자재 공시등 신청, 심사절차와 방법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시등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재심사 대상 사항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③ 공시등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변경승인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제1항 중 해당되는 기준을 준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4호를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종합심사를 거쳐야 하며 제2호 변경에 따른 독성심사는 제1항 중 해당되는 기준을 준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상표명·주소(제조장 또는 보관창고 포함)·대표자명·업체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적용대상 병해충, 농작물의 범위 또는 사용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되는 유기농업자재로서 사용원료의 변동 없이 원료 투입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
4. 제3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되는 유기농업자재로서 주원료 투입 비율의 변동 없이 제품의 효과 등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제를 변경하려는 경우

④ 공시등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시등의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⑤ 공시등기관의 장은 제출된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신청서류에 대하여는 심사용도 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청인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공시등기관의 장은 심사를 위해 시료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추가로 검사성적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검사 및 시험 성적서 등의 인정범위)**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위한 검사 및 시험성적서(이하 “성적서”라 한다) 인정범위는 법 제4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로 제8조의 검사 및 시험방법에 적합하게 수행한 성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적서는 공시등을 신청한 유기농업자재로 시험한 성적서이어야 한다. 다만, 유기농업자재 원료의 조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된 유기농업자재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공시등을 신청하는 유기농업자재로 수행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은 최초 성적서 발행년도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농약관리법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재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성적서는 시험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하며, 성적서가 2장 이상일 때는 매 장마다 간인 또는 천공이 되어야 한다.

**제8조(검사 및 시험 방법 등)**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검사 및 시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화학(미생물검사) 검사 : 비료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농약의 검사방법. 다만, 검사방법이 설정되지 않은 식물추출물 등의 유효성분(원료의 대표성분 포함)에 대한 분석방법은 최적의 조건에서 수행한 다른 법령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사방법
2. 식물에 대한 시험 :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 비료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에 따른 시험방법
3. 독성시험 :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에 따른 시험방법
4. 키토산(키토올리고당) 분석 방법 : 별표 5과 같다.
5. 기타 검사성적 : 다른 법령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사방법

**제9조(공시등위원회 운영 등)** ① 공시등기관은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심사등을 위하여 공시등위원회를 둔다.

② 공시등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공시등기관의 센터장 또는 본부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공시등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및 병해충관리 분야별 전문가 각 1명 이상
2. 유기농업자재의 생산자단체 및 사용자 단체의 임직원 각 1명 이상
3. 다른 공시등기관별 공시등심사원 각 1명

⑤ 공시등기관의 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의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시 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⑥ 공시등위원회는 위원장이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며 위원장의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공시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공시등기관은 공시등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결과와 통보)** ① 공시등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심사결과 공시등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11조에 따라 공시등번호를 부여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받은 자가 수출 등의 목적으로 영문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영문 공시(품질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공시등번호 부여)** ① 공시등기관의 장은 공시등을 할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시등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 공시등번호는 공시(품질인증) 구분-공시등기관번호-자재종류별 분류기호-일련번호를 결합하여 부여한다.
2. 공시(품질인증) 구분은 “공시”, “품질인증”으로 한다.
3. 공시등기관번호는 농촌진흥청 고시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별표3의 공시등기관 지정현황의 지정번호로 한다.
4. 자재종류별 분류기호는 토양개량용 자재 “1”, 작물생육용 자재 “2”,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3”, 병해관리용 자재 “4”, 충해관리용 자재 “5”, 병해충관리용 자재 “6”으로 한다.

5. 일련번호는 해당 공시등기관의 자재종류별 일련번호로 한다.

②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업자재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등으로 공시등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규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관리비 등)**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및 별표19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표준관리비는 별표 6과 같다.

**제13조(공시등의 삭제)** 공시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시등이 취소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삭제를 해야 한다.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유기농업자재
2.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갱신되지 않은 유기농업자재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이 취소된 유기농업자재

**제14조(그 밖의 사항)** 공시등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그 서류 등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공시등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보완 완료 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보완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17일 까지로 한다.

[별표 1]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1. 공시기준

가. 현장기준

심사사항	검토기준
1) 경영관리	가) 다음의 경영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공시등기관의 장이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1)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재의 원료 및 제품 수급, 생산시설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자료 (2)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재의 생산·수입 및 출하에 관한 자료 나) 공시등기관의 장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 20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품질인증 생산계획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나) 다른 원료나 유기농업자재와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이 용도별(원료처리·제조·포장 등)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다)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증기 등의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청소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여 작업장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제조설비	가) 제조설비는 시행규칙 별지 제 20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품질인증 생산계획서에 기재된 생산설비 등과 일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제조설비물이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제조·가공을 위해 적정하여야 하며, 주요 기계설비는 성능유지를 위하여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 보관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원료가 적정 환경조건에서 보관되어 있으며 입·출고 관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4) 공정 및 품질관리	가) 시행규칙 별지 제 20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품질인증 생산계획서에 기재된 제조공정 및 원료와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관리와 관련된 인력, 방법 등과 일치하여야 한다. 나) 작업표준(작업설비·작업방법·작업조건·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를 위한 기본 장비를 갖추고 유기농업자재는 해당 규격 및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를 위한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을 때에는 법 제 41조제 1항에 따른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5) 기록 및 이력관리	가) 유기농업자재는 적정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원료 및 유기농업자재의 입·출고에 관한 기록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유기농업자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에 따른 장부(비료의 제조원료 기재 장부)로 대체할 수 있다.

심사사항	검토기준
	<p>나) 기록장에는 다음의 필수기록 사항과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p> <p>(1) 입고이력: 입고일자, 물량, 자재명, 생산자 또는 수출자명 ·원산지 ·롯데번호 또는 생산일자</p> <p>(2) 출하이력: 출하한 판매처명 · 판매처 주소 · 날짜 · 제품명 · 물량 · 롯데번호 또는 생산일자</p>

### 나. 원료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

심사사항	검토기준
1) 원료	<p>가) 유기농업자재에 사용한 원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p> <p>(1)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 시행규칙 제 2조 및 별표 1 제 1호가목 1외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p> <p>(2) 병해충관리 : 시행규칙 제 2조 및 별표 1 제 1호가목 2외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p> <p>나)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의 유기농업자재 제조시 사용가능한 보조제 중 화학합성 보조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의 불가피성, 사용량의 적정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p>
2) 원료의 특성 및 유래	<p>가) 유기농업자재에 사용된 각각의 원료에 대한 특성은 다음의 사항이 적합하여야 한다.</p> <p>(1) 물질의 기원 및 분포</p> <p>(2) 유효 구성물질의 종류 및 함량</p> <p>(3) 제3조제2항의 사용용도를 뒷받침할 자료(학술자료, 연구논문, 시험성적 등)</p> <p>(4) 농업분야 사용현황 등</p> <p>2) 유기농업자재에 사용된 각각의 원료별로 생산지 · 제조사 · 구매경로 등 출처가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p> <p>3) 원료의 출처가 불명확할 때에는 그 출처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p>
3) 제조 조성비	<p>가) 원료명은 가공되기 전의 물질에 대한 일반적 명칭으로 시행규칙 별표1의 허용물질의 종류에서 정한 사용가능한 물질의 명칭이어야 한다.</p> <p>나) 유효성분은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에 도움을 주거나 병해충관리를 위하여 활성을 가지는 성분에 대하여 종류 및 그 함량을 나타내어야 한다.</p> <p>다) 원료의 투입비율은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를 모두 기입하여야 하며 합계가 100퍼센트이어야 한다.</p>

### 다. 이화학(미생물검정) 검사성적서

심사사항	검토기준
1) 유효성분 검사	<p>가)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유효성분 검사성적은 다음의 사항이 적합하여야 한다.</p> <p>(1)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한 자재는 비료관리법 제18조 및 24조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서 이화학적 검사방법이 설정된 주성분 및 기타성분에 대한 성적이어야 한다.</p>

심사사항	검토기준																																																															
	<p>(2) 병해충관리를 위한 자재는 병이나 해충에 대하여 활성을 나타내는 성분 또는 대표성분에 대한 성적이어야 한다.</p> <p>나) 살아있는 미생물을 주·부원료로 하는 유기농업자재에 대해서 다음의 사항이 적합하여야 한다.</p> <p>(1) 유효미생물의 분류학적 위치·일반명·학명</p> <p>(2) 유효미생물의 보증균수는 신청인이 제출한 보증균수 이상이어야 한다.</p> <p>(3) 생균수 검사방법은 신청인이 제출하거나 공인 또는 표준화된 검사방법이어야 한다.</p> <p>(4) 유효미생물 배양에 필요한 배지조성 자료는 해당 미생물 배양에 적절하여야 하며 인축에 위해한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p> <p>(5) 유효미생물의 동정은 균체 지방산 분석법, 전자동미생물 동정법 또는 현미경법 등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에 의한 분자 생물학적 방법에 의하며, 동정결과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속·종명이어야 한다.</p> <p>다) 천적을 이용한 유기농업자재는 다음의 사항이 적합하여야 한다.</p> <p>(1) 천적의 분류학적 위치·일반명·학명</p> <p>(2) 천적의 분류동정상의 특성</p> <p>(3) 천적의 보증수는 신청인이 제출한 보증수 이상이어야 한다.</p> <p>(4) 동정방법은 신청인이 제출하거나 공인 또는 표준화된 동정방법이어야 한다.</p> <p>(5) 천적의 동정(同定)검사성적서와 제출서류에 기록된 천적은 동일하여야 한다.</p> <p>(6) 보증한 천적 이외에 다른 천적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인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없어야 한다.</p> <p>(7) 천적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류</th> <th>항목</th> <th>품질 기준</th> <th>참고(IOBC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갈색만날개</td> <td>개체수</td> <td>라벨 표기된 생존 개체수</td> <td>-</td> </tr> <tr> <td>성 비</td> <td>≥ female 50%</td> <td>-</td> </tr> <tr> <td>산란력</td> <td>≥ 40 eggs/female/5days</td> <td>-</td> </tr> <tr> <td rowspan="4">굴파리좀벌</td> <td>개체수</td> <td>라벨에 표기된 생존 성충수</td> <td>라벨에 표기된 생존 성충수</td> </tr> <tr> <td>성 비</td> <td>≥ female 50%</td> <td>≥ female 45%</td> </tr> <tr> <td>사망률</td> <td>≤ 성충 사망률 3%</td> <td>≤ 성충 사망률 8%</td> </tr> <tr> <td>산란력</td> <td>≥ 70% 암컷이 7일 이내 산란</td> <td>≥ 70% 암컷이 7일 이내 산란</td> </tr> <tr> <td rowspan="3">담배가루이좀벌</td> <td>개체수</td> <td>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td> <td>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td> </tr> <tr> <td>성 비</td> <td>≥ female 50%</td> <td>≥ female 50%</td> </tr> <tr> <td>산란력</td> <td>≥ 12 eggs/female</td> <td>≥ 10 eggs/female</td> </tr> <tr> <td rowspan="3">담배장님노린재</td> <td>개체수</td> <td>라벨 표기된 생존 개체수</td> <td>-</td> </tr> <tr> <td>성 비</td> <td>≥ female 45%</td> <td>-</td> </tr> <tr> <td>산란력</td> <td>≥ 7 eggs/female/3days</td> <td>-</td> </tr> <tr> <td rowspan="2">무당벌레</td> <td>개체수</td> <td>라벨 표기된 생존 개체수</td> <td>-</td> </tr> <tr> <td>포식력</td> <td>≥ 25aphids/larva/day</td> <td>-</td> </tr> <tr> <td rowspan="2">벵커플랜트</td> <td>개체수</td> <td>라벨에 표기된 생존 진딧물수</td> <td>-</td> </tr> <tr> <td>병해충 발생</td> <td>없음</td> <td>-</td> </tr> </tbody> </table>	종류	항목	품질 기준	참고(IOBC 기준)	갈색만날개	개체수	라벨 표기된 생존 개체수	-	성 비	≥ female 50%	-	산란력	≥ 40 eggs/female/5days	-	굴파리좀벌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생존 성충수	라벨에 표기된 생존 성충수	성 비	≥ female 50%	≥ female 45%	사망률	≤ 성충 사망률 3%	≤ 성충 사망률 8%	산란력	≥ 70% 암컷이 7일 이내 산란	≥ 70% 암컷이 7일 이내 산란	담배가루이좀벌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성 비	≥ female 50%	≥ female 50%	산란력	≥ 12 eggs/female	≥ 10 eggs/female	담배장님노린재	개체수	라벨 표기된 생존 개체수	-	성 비	≥ female 45%	-	산란력	≥ 7 eggs/female/3days	-	무당벌레	개체수	라벨 표기된 생존 개체수	-	포식력	≥ 25aphids/larva/day	-	벵커플랜트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생존 진딧물수	-	병해충 발생	없음	-		
종류	항목	품질 기준	참고(IOBC 기준)																																																													
갈색만날개	개체수	라벨 표기된 생존 개체수	-																																																													
	성 비	≥ female 50%	-																																																													
	산란력	≥ 40 eggs/female/5days	-																																																													
굴파리좀벌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생존 성충수	라벨에 표기된 생존 성충수																																																													
	성 비	≥ female 50%	≥ female 45%																																																													
	사망률	≤ 성충 사망률 3%	≤ 성충 사망률 8%																																																													
	산란력	≥ 70% 암컷이 7일 이내 산란	≥ 70% 암컷이 7일 이내 산란																																																													
담배가루이좀벌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성 비	≥ female 50%	≥ female 50%																																																													
	산란력	≥ 12 eggs/female	≥ 10 eggs/female																																																													
담배장님노린재	개체수	라벨 표기된 생존 개체수	-																																																													
	성 비	≥ female 45%	-																																																													
	산란력	≥ 7 eggs/female/3days	-																																																													
무당벌레	개체수	라벨 표기된 생존 개체수	-																																																													
	포식력	≥ 25aphids/larva/day	-																																																													
벵커플랜트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생존 진딧물수	-																																																													
	병해충 발생	없음	-																																																													

심사사항	검토기준			
	종류	항목	품질 기준	참고(IOBC 기준)
	복숭아혹진디벌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
		성 비	≥ female 50%	-
		산란력	≥ 40/female/5day	-
	숨이애꽃노린재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생존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생존 개체수
		성 비	≥ female 50%	≥ female 50%
		산란력	≥ 50 eggs/female/14days	≥ 30 eggs/female/14days
	싸리진디벌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
		성 비	≥ female 50%	-
		산란력	≥ 40/female/5day	-
	쌀좁알벌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
		성 비	≥ female 50%	-
		수 명	최소 80% 암컷 5일 이상 생존	-
		산란력	≥ 55 eggs/female/7days	-
	아쿠레이퍼응애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생존 약, 성충수	-
		성 비	≥ female 50%	-
		산란력	≥ 7 eggs/female/7days	-
어비진디벌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성 비	≥ female 50%	≥ female 45%	
	산란력	≥ 40/female/2hour	≥ 35/female/2hour	
오이이리응애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생존 약, 성충수	라벨에 표기된 생존 약, 성충수	
	성 비	≥ female 50%	≥ female 50%	
	산란력	≥ 10 eggs/female/7days	≥ 7 eggs/female/7days	
온실가루이좀벌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성 비	≥ female 98%	≥ female 98%	
	산란력	≥ 8 eggs/암컷/1일/우화 후 2,3,4일차	≥ 7 eggs/암컷/1일/우화 후 2,3,4일차	
유럽애꽃노린재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생존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생존 개체수	
	성 비	≥ female 50%	≥ female 50%	
	산란력	≥ 50 eggs/female/14days	≥ 30 eggs/female/14days	
으뜸애꽃노린재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생존 개체수	-	
	성 비	≥ female 50%	-	
	산란력	≥ 50 eggs/female/14days	-	
앞굴파리고치벌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생존 성충수	라벨에 표기된 생존 성충수	
	성 비	≥ female 45%	≥ female 45%	
	사망률	≤ 성충 사망률 5%	≤ 성충 사망률 5%	
	산란력	≥ 45eggs/female/3days	≥ 40eggs/female/3days	
지중해이리응애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생존 약, 성충수	-	
	성 비	≥ female 50%	-	
	산란력	≥ 10 eggs/female/7days	-	
진디면충좀벌	개체수	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	
	성 비	≥ female 40%	-	
	산란력	≥ 20/female/2days	-	

심사사항	검토기준			
	종류	항목	품질 기준	참고(IOBC 기준)
2) 유해성분 검사	진디혹파리	개체수 성 비 우화율 산란력	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 female 50% ≥ 70%/7days ≥ 40eggs/female/3days	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 female 45% ≥ 70%/7days ≥ 40eggs/female/3days
	질레이리응애	개체수 성 비 수 명 산란력	라벨에 표기된 생존 약,성충수 ≥ female 75% 산란력 테스트시 ≥ 80% 생존/5days ≥ 12 eggs/female/5days	라벨에 표기된 생존 약,성충수 ≥ female 70% 산란력 테스트시 ≥ 80% 생존/5days ≥ 10 eggs/female/5days
	켈리포니쿠스응애	개체수 성 비 수 명 산란력	라벨에 표기된 생존 약,성충수 ≥ female 65% 산란력 테스트시 ≥ 80% 생존/5days ≥ 7 eggs/female/5days	라벨에 표기된 생존 약,성충수 ≥ female 60% 산란력 테스트시 ≥ 80% 생존/5days ≥ 7 eggs/female/5days
	플레마니진디벌	개체수 성 비 산란력	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 female 50% ≥ 45mummies/female/1 <sup>st</sup> day	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 female 45% ≥ 35 mummies/female/1 <sup>st</sup> day
	호랑풀잠자리	개체수 포식력	라벨 표기된 생존 개체수 ≥ 15aphids/larva/day	- -
	황온잠벌	개체수 성 비 산란력	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 female 45% ≥ 50 eggs/female/3days	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 female 45% ≥ 45 eggs/암컷/3일
		<p>라) 키토산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는 다음의 사항이 적합하여야 하며 별표6의 시험기준과 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이어야 한다.</p> <p>(1) 제품의 키토산(총 글루코사민) 또는 키토올리고당의 최소량(%) : 1.0%이상</p> <p>(2) 원료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가) 키토산의 점도(cps) : 1이상 100이하</p> <p>(나) 키토산의 순도 : 800mg/g 이상</p> <p>(다) 키토올리고당 순도 : 200mg/g 이상</p> <p>※ 키토산(글루코사민) 단당은 제외</p> <p>가) 유해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1)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중 시행규칙 별표 13제 호 다목 2)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유해중금속의 최대허용량 현물기준 중량 혼비소 20mg/kg, 카드뮴 2mg/kg, 수은 1mg/kg, 납 50mg/kg, 크롬 90mg/kg, 구리 120mg/kg, 니켈 20mg/kg, 아연 400mg/kg이며 제품이 액상인 경우에는 현물기준 중량으로 한다.</p> <p>나) 병원성미생물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1) 농장 및 가공류의 퇴구비, 퇴비화된 가축 배설물 등을 사용한 퇴비는 다음의 병원성미생물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p> <p>(가) 병원성대장균(Escherichia coli O157: H7)</p> <p>(나) 살모넬라(Salmonella spp.)</p> <p>(2) 살아있는 미생물을 주·부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나 발효 공정을 거친 유기농업자재는 다음의 병원성미생물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p>		

심사사항	검토기준
	<p>(가) 병원성대장균(<i>Escherichia coli</i> O157 : H7)</p> <p>(나) 살모넬라(<i>Salmonella</i> spp.)</p> <p>(다) 황색포도상구균(<i>Staphylococcus aureus</i>)</p> <p>(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i>Listeria monocytogenes</i>)</p> <p>(마) 바실러스 세레우스(<i>Bacillus cereus</i>)</p> <p>다) 가축분·혈분 등 가축의 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는 다음의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p> <p>(1) 테트라사이클린계(Tetracyclines)</p> <p>(2) 베타락탐계(Beta-lactams)</p> <p>(3) 설파계(Sulfonamides)</p> <p>(4) 마이크로라이드계(Macrolides)</p> <p>(5)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Aminoglycosides)</p> <p>라) 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키토산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의 유해 성분 기준은 다음의 사항이 적합하여야 한다.</p> <p>(1) 유해중금속의 최대허용량(건물기준 중량)은 비소 4mg/kg, 카드뮴 0.4mg/kg, 수은 0.2mg/kg, 납 20mg/kg, 크롬 20mg/kg, 니켈 20mg/kg이며 제품이 액상인 경우에는 현물기준 중량으로 한다.</p> <p>(2) 대장균(<i>Escherichia coli</i>)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p> <p>(3) 사용한 용제를 표시해야 하고 보존기간을 2년 이내로 해야 한다.</p>

### 라.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심사사항	검토기준												
1) 유식물 등에 대한 비해(肥害)·약해(藥害)시험	<p>가) 다섯 가지 작물 이상(배추·상추·고추·오이·콩 등)에 대하여 공시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유기농업자재를 포장시험하거나 비해(肥害)·약해(藥害)에 민감한 유식물체·신초 또는 종자에 신청인이 제시한 기준량과 배량을 처리한 후 일정기간을 두어 3회 이상 조사한 시험성적이어야 하며 시험 과정 및 시험결과에 대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절하여야 한다. 단, 일부 작물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유기농업자재의 경우에는 해당 작물에 시험한 성적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다.</p> <p>(1) 시험작물, 시험구 면적 및 배치방법</p> <p>(2) 시험물질의 처리시기 및 방법</p> <p>(3) 시험결과의 분석 및 판정</p> <p>나) 약해(藥害)·비해(肥害)의 정도는 시험성적 모두가 기준량에서 0이하이거나, 배량에서 1 이하이어야 한다.</p> <p>다) 비해(肥害)·약해(藥害)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정도</th> <th>판정기준</th> </tr> </thead> <tbody> <tr> <td>0</td> <td>육안으로 비해(肥害)·약해(藥害)가 인정되지 않음</td> </tr> <tr> <td>1</td> <td>아주 가벼운 비해(肥害)·약해(藥害)로서 작은 약반이 약간 인정됨</td> </tr> <tr> <td>2</td> <td>처리된 잎의 소부분에서 비해(肥害)·약해(藥害)가 인정됨</td> </tr> <tr> <td>3</td> <td>처리된 잎의 50퍼센트 정도 비해(肥害)·약해(藥害)가 인정됨</td> </tr> <tr> <td>4</td> <td>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으나 아직 건전한 부분이 남아 있음</td> </tr> </tbody> </table>	정도	판정기준	0	육안으로 비해(肥害)·약해(藥害)가 인정되지 않음	1	아주 가벼운 비해(肥害)·약해(藥害)로서 작은 약반이 약간 인정됨	2	처리된 잎의 소부분에서 비해(肥害)·약해(藥害)가 인정됨	3	처리된 잎의 50퍼센트 정도 비해(肥害)·약해(藥害)가 인정됨	4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으나 아직 건전한 부분이 남아 있음
정도	판정기준												
0	육안으로 비해(肥害)·약해(藥害)가 인정되지 않음												
1	아주 가벼운 비해(肥害)·약해(藥害)로서 작은 약반이 약간 인정됨												
2	처리된 잎의 소부분에서 비해(肥害)·약해(藥害)가 인정됨												
3	처리된 잎의 50퍼센트 정도 비해(肥害)·약해(藥害)가 인정됨												
4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으나 아직 건전한 부분이 남아 있음												

## 마.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

심사사항	검토기준
1) 공통조건	<p>가) 독성시험은 병해충관리를 위한 다음의 허용물질을 포함한 유기농업자재를 시험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식물과 동물의 추출물. 단, 식품등급의 오일은 제외</li> <li>(2) 미생물 및 미생물의 추출물</li> <li>(3) 미생물의 발효부산물</li> <li>(4) 구리염, 보르도액, 수산화동, 산화염화동, 보르고뉴액</li> <li>(5) 규산나트륨</li> <li>(6) 인산철, 파라핀오일,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과망간산칼륨</li> <li>(7) 황</li> <li>(8) 기계유</li> </ol> <p>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독성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기농업자재 또는 원료 각각에 대하여 과학적 (국내외 독성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으로 인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li> <li>(2) 물질의 특성상 시험수행이 불필요한 경우</li> <li>(3) 사용방법 등 유기농업자재의 특성상 불필요한 경우</li> <li>(4) 독성시험 항목별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li> </ol>
2) 인축독성	<p>가) 인축독성시험은 「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농약의 등록기준을 준용하되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급성경구·경피독성시험 결과는 Ⅲ급(보통독성)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미생물제제는 유기농업자재에 함유된 미생물의 단위 환산치로 평가한다.</li> <li>(2) 안점막자극성시험 평가결과에 따라 표시문구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li> <li>(3) 피부자극성시험 평가결과에 따라 표시문구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li> </ol>
3) 환경독성	<p>가) 환경독성시험은 「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농약의 등록기준을 준용하되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기농업자재의 환경독성시험은 주원료의 투입비율을 주성분으로 하여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살아있는 미생물이나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으로 등록된 성분과 동일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농약관리법에 따른 시험기준과 방법에 따른다.</li> <li>(2) 급성어류 독성시험은 Ⅲ급에 해당되어야 하고 독성노출비(Toxicity Exposure Ratio: TER)를 이용하여 산출하며 독성노출비는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살아있는 미생물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는 독성노출비가 100 이상이어야 한다.</li> <li>(3) 논벼용 유기농업자재인 경우는 물벼룩류에 대한 급성유영저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독성노출비를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독성노출비가 2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살아있는 미생물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는 독성노출비가 10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물벼룩류에 대한 급성유영저해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급성어류 독성시험성적의 반수치사농도(LC50)가 10ml/L 이상인 경우</li> <li>(나) 제품의 사용방법 및 특성상 물벼룩류에 노출가능성이 없는 경우</li> <li>(다) 생태계 생물에 위해성이 없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경우</li> </ol> </li> </ol>



심사사항	검토기준
	<p>(4) 꿀벌에 대한 급성접촉독성시험 또는 영향시험 평가결과에 따라 표시문구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꿀벌에 대한 급성접촉독성시험 또는 영향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p> <p>(가) 학술논문 등 시험물질이 독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p> <p>(나) 저장고 내에서 사용하는 것</p> <p>(다) 유묘나 종자·종구에 처리하는 것</p> <p>(라) 화분매개충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p> <p>(마) 그 밖에 유기농업자재의 사용방법 상 꿀벌에 대한 노출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p>

#### 바. 제조공정, 품질관리 등에 대한 자료

심사사항	검토기준
1) 제조공정	<p>가) 유기합성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고 화학적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한다. 단, 병해충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에서 천연추출물의 추출·분리 및 정제 과정상 불가피하게 유기합성용매를 사용한 경우에는 최종 원료에 잔류되지 않아야 한다.</p> <p>나) 제조공정은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생산에 적합하여야 한다.</p> <p>다) 미생물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 (토양미생물제제, 미생물제제 등 원료외의 다른 미생물에 의해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2) 품질관리	<p>가) 공시등을 받으려는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관리 규격이나 품질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p> <p>나) 공시등을 받으려는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관리 규격이나 품질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확인·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 4조 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p> <p>다) 공시등을 받고자 하는 유기농업자재가 「비료관리법」 제 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서 설정 또는 지정된 비료의 종류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비료의 종류별로 정하고 있는 공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보증 성분량은 「비료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규격에 맞도록 품질이 유지되어야 한다.</p> <p>라) 공시등을 받고자 하는 유기농업자재가 「농약관리법」 제 8조 또는 제 17조에 농약 또는 원제로 등록된 경우에 주성분의 함량은 등록된 규격에 맞도록 품질이 유지되어야 한다.</p>

#### 사. 포장지 표시사항에 관한 자료

심사사항	검토기준
1) 포장지 표기방법	<p>가) 별표2의 유기농업자재의 주의사항 표시기준에 따라 주의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p>

**아. 그 밖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심사사항	검토기준
1) 농약 또는 비료 등록에 관한 증빙 서류	가) 「농약관리법」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한다.
2) 책임보험 가입증서	가) 책임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자등록증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외국의 자재 인증 관련 자료	가) 수입완제품(수입완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유기농업 관련 기준에 따라 국제기구나 그 기구로부터 지정받은 인증기관 또는 수입국가나 그 국가가 공인한 인증기관에서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적절하여야 하며, 공시등의 유효기간동안 인증(공시) 관련 증명서의 유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1) 인증(공시)관련 증명서 발급기관의 신뢰성 (2) 해당 제품이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의 명시 여부 (3) 인증(공시)기간의 유효성 (4) 국내 공시등기준에 적합여부 나) 인증(공시)관련 증명서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인증(공시)관련 증명서가 명확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원료 공급 증명서	가) 유기농업자재에 사용된 원료별로 원료공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질인증 기준**

**가. 이화학(미생물검정) 검사성적서**

심사사항	검토기준
1) 유효성분 검사	가)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유기농업자재의 주요 유효성분에 대한 보증성분량 및 분석방법을 정립하여야 한다. 나) 유효성분 분석결과는 신청인이 제시한 보증성분량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심사사항	검토기준
1) 비효(肥效)·비해(肥害) 시험성적	가)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유기농업자재 중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용 자재에 적용한다. 나)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한 유기농업자재는 사용하려는 동일 작물에 대하여 2~3년간 또는 도 단위의 지역(50km 이상 격리된 장소)을 달리하여 실시한 2개 이상의 포장 시험성적으로 시험과정 및 시험결과에 대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절하여야 한다. 다만, 농작물의 범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1개의 시험성적만으로도 검토할 수 있다.

심사사항	검토기준
<p>2) 약효(藥效) · 약해(藥害) 시험성적</p>	<p>(1) 시험작물, 시험구 면적 및 배치방법 (2) 시험물질의 처리시기 및 방법 (3) 시험결과의 분석 및 효능평가</p> <p>다) 시험결과 무시비구(無施肥區) 대비 15퍼센트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효과가 인정되어야 하고, 기준량과 배량 모두에서 비해(肥害)가 없어야 한다.</p> <p>가)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유기농업자재 중 병해충관리용 자재에 적용한다. 나) 병해충관리를 위한 유기농업자재는 사용하려는 동일 작물에 대하여 2~3년간 또는 도 단위의 지역(50km 이상 격리된 장소)을 달리하여 실시한 2개 이상의 약효(藥效) 시험성적으로 시험과정 및 시험결과에 대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절하여야 한다. 단, 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을 달리하여 실시한 1개 이상의 약효(藥效) 시험성적을 제출할 수 있다.</p> <p>(1) 시험작물, 시험구 면적 및 배치방법 (2) 시험물질의 처리시기 및 방법 (3) 시험결과의 분석 및 효능평가</p> <p>다) 약효(藥效) 시험 결과 무처리 대비 60퍼센트(다만, 미생물제제는 50퍼센트)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방제효과가 인정되어야 하며 기준량과 배량 모두에서 약해(藥害)가 없어야 한다.</p>

[별표2]

유기농업자재의 주의사항 표시기준

1. 독성시험결과에 따른 표시문구

가. 피부자극성이 있는 유기농업자재

1) 피부자극성 강도 (피부 1차 자극지수(P.I.I.)가 5.1이상인 경우)

“이 유기농업자재는 강한 피부자극성이 있으므로 불침투성장갑, 고무장화, 불침투성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2) 피부자극성 중도 (피부 1차 자극지수(P.I.I.)가 2.1~5.0인 경우)

“이 유기농업자재는 피부자극성이 있으므로 고무장갑,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3) 피부자극성 정도 (피부 1차 자극지수(P.I.I.)가 1.1~2.0인 경우)

“이 유기농업자재는 약한 피부자극성이 있으므로 고무장갑,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나. 안점막자극성이 있는 유기농업자재

1) 안점막자극성 강도 (급성안점막자극지수(A.O.I))가 60이상인 경우)

“이 유기농업자재는 강한 안자극성이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2) 안점막자극성 중도 (급성안점막자극지수(A.O.I))가 30.1~60인 경우)

“이 유기농업자재는 안자극성이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3) 안점막자극성 정도 (급성안점막자극지수(A.O.I))가 10.1~30인 경우[입제의 경우 제외]

“이 유기농업자재는 약한 안자극성이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다. 환경생물에 대하여 독성이 있는 유기농업자재

1) 꿀벌의 급성독성값(LD<sub>50</sub>)이 11 $\mu$ g/bee(평가지수 50이상, 미생물제제의 경우 자재 추천사용농도의 10배) 미만인 자재 가운데 꿀벌엽상잔류독성시험 성적서 평가를 받지 않은 자재

“이 유기농업자재는 꿀벌에 대한 독성이 강하니 꽃이 피어 있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하지 마십시오.”

2) 꿀벌의 급성독성값(LD<sub>50</sub>)이 11 $\mu$ g/bee(평가지수 50 이상, 미생물제제의 경우 자재 추천사용농도의 10배) 미만인 자재 가운데 꿀벌엽상잔류독성시험 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자재

“이 유기농업자재는 꿀벌에 대한 잔류독성이 강하므로 꽃이 피기 ○일전 부터 꽃이 피어 있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하지 마십시오.”

2. 독성시험결과에 따른 그림문자

1. 피부자극, 안점막자극		2. 환경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스크 착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침투성방제복 착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꿀벌독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안경 착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침투성장갑 착용</li> </ul> 	

### 3. 독성시험결과에 따른 표시문구 등의 크기

가. 1.의 표시문구의 문자 크기는 자재의 명칭 표시 크기의 1/4이상  
이어야 한다.

나. 2.의 그림문자의 크기는 가로, 세로 직경 5mm 이상이어야 한다.

### 4. 기타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주의사항

가. 아주까리유박을 사용한 유기농업자재

- 1) 가축 등 동물이 먹음을 방지할 수 있는 사용상·보관상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별표 3]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도양개량·작물생육		병해충관리		비고
	공시	품질인증	공시	품질인증	
1. 원료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 가. 원료의 특성 나. 제조조성비 다. 물질의 유래 (구매경로 포함)	○	○	○	○	1. 미생물제제는 배지 조성 자료 포함 2. 수입 원료는 규격서(spec) 및 제조공정의 원본 및 번역본 포함
2. 이화학(미생물 검정) 검사성적서 가. 유효성분 ① 유효성분 검사성적서 및 분석방법	○	○	○	○	1. 자재의 유효성분(대표성분)에 대한 정성·정량 분석 성적서 2. 유기질비료: 원료별 유효성분 검사성적서 추가 3. 키토산을 원료로 사용한 자재의 경우 검사항목 - 원료: 키토산 점도(cps), 키토산 순도(mg/g), 키토올리고당 순도(mg/g) - 제품: 키토산(총 글루코사민 기준) 및 키토올리고당의 함유량(mg/g) 4. 목초액을 자재로 사용한 경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임업진흥원의 시험성적서 및 품질인증서
② 미생물동정 검사성적서 - 속명·종명, 균수 (CFU/g, ml)	○	○	○	○	1. 미생물을 사용한 자재에 한함(멸균된 추출물 또는 대사산물 및 퇴비에 첨가한 미생물의 경우 면제)

제출서류	도양개량· 작물생육		병해충 관리		비 고
	공시	품질인증	공시	품질인증	
③ 천적 동정(同定) 및 이종(異種)혼입 검사성적서	○	○	○	○	1. 천적에 한함
④ 유효성분에 대한 보증성분량		○		○	
나. 유해성분					
① 유해중금속 검사성적서	○	○			1. 비소, 카드뮴, 수은, 납, 크롬, 구리, 니켈, 아연 2. 키토산을 원료로 사용한 자재의 경우 크롬, 납, 카드뮴, 수은, 비소, 니켈 검사성적서
② 병원성미생물 검사성적서	○	○	○	○	1. 미생물을 사용한 자재에 한하여 병원성대장균, 살모 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리스 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및 바실러스 세레우스 검사성적서 (멸균된 추출물 또는 대사산 물을 포함한다) 2. 퇴비에 한하여 병원성 대장 균 및 살모넬라 검사성적서 3. 키토산을 원료로 사용한 자 재에 한하여 대장균( <i>Escherichia coli</i> ) 검사성적서
③ 항생물질 검사성적서	○	○			1. 가축분, 혈분 등 가축의 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자 재에 한하여 테트라사이클린 계, 베타락탐계, 설과계, 마크 로라이드계 및 아미노글리 코시드계 검사성적서



제출서류	토양개량· 작물생육		병해충 관리		비 고
	공시	품질인증	공시	품질인증	
3.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가. 유식물 비해(肥害) 시험성적서 나. 비효·비해 시험성적서 다. 유식물 약해(藥害) 시험성적서 라. 약효·약해 시험성적서	○	○  ○	○	○  ○	
4.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 가. 인축독성 (급성경구·급성 경피, 피부자극, 안점막자극)시험 나. 환경독성 (급성어류, 물벼룩류 급성유영저해, 꿀벌 급성접촉 (꿀벌영향 포함) 시험성적서	△  △	△  △	○  ○	○  ○	1. 논벼용 자재에 한하여 물벼룩류 급성유영저해시험성적서 2. 경엽처리제에 한하여 꿀벌 급성접촉 독성시험성적서 3.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자재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위해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해당 독성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5. 제조공정, 품질관리 등에 대한 자료(원료 및 제품) 가. 제조공정 나. 품질관리	○  ○	○  ○	○  ○	○  ○	1. 퇴비의 경우에는 부숙온도 및 뒤집기 자료 포함 2. 해당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항목 및 방법

제출서류	토양개량·작물생육		병해충관리		비고
	공시	품질인증	공시	품질인증	
6. 포장지 표기사항에 관한 자료	○	○	○	○	
7. 시료 500g(ml)(다만, 병해충관리 시료는 100g(ml))	○	○	○	○	
8. 그 밖의 제출 서류 가. 농약 또는 비료 등록에 관한 증빙서류 나. 책임보험가입 증서 다. 사업자등록증 라. 외국의 자재 인증 등 관련 서류 마. 원료공급 증명서 바. 유기농업 자재의 공시서	○ ○ ○ ○ ○	○ ○ ○ ○ ○	○ ○ ○ ○ ○	○ ○ ○ ○ ○	1. 농약 또는 비료로 등록된 자재에만 해당 2.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 3. 수입완제품 또는 수입완제 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에 한함 4. 투입원료별 각각의 자료 5. 공시 자재를 품질인증받고 자 하는 경우에 한함
※ 주(注) ○ : 신청시 제출, △ : 필요시 제출					

## [별표 4]

#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등 신청, 심사절차와 방법

## 1. 현장심사

- 가. 유기농업자재 공시등기관의 장은 별표 3에 따른 제출서류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현장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현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심사를 하는 공시등심사원은 증표를 제시 하여야 한다.
- 나. 공시등기관의 장은 별표1 제1호가목의 현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유효기간 갱신신청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현장 운영에 관한 기록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등심사원은 신청 시 제출한 완제품 시료와 동일한 시료 또는 원료를 현장에서 채취할 수 있다.
- 다. 공시등심사원은 나목에 따라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 불량 농약 처리요령에 따라 채취하여야 한다.

## 2. 제품심사

- 가. 공시등기관의 장은 공시등 신청시 제출한 시료와 제1호다목에 따라 채취한 시료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나. 가목의 시료에 대하여 유효성분 등을 분석할 경우에는 제8조의 검사 및 시험방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3. 서류심사

- 가. 공시등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시등 신청이나 그 갱신신청을 위하여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제3조의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나. 공시등기관의 장은 제출서류 중 독성시험성적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

- 1) 제조조성비에 관한 자료
- 2) 유효성분(대표성분) 및 함량에 관한 자료
- 3)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시험작물, 사용량 및 사용방법에 관한 자료
- 4) 독성시험성적서 또는 독성시험 일부·전부 생략시 관련 증빙서류

다.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나목에 따라 공시등기관의 장으로 부터 독성시험 성적에 대한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의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독성시험성적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공시등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주어야 한다.

#### 4. 종합심사

가. 공시등기관의 장은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심사보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공시등기관의 장은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가 적합한 때에는 공시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별표 5]

키토산(액상·입상)의 시험기준과 방법

1. 키토산 점도 측정법

가. 액상

점도는 300ml비이커에 액체시료 15ml를 취하고 증류수 285ml를 가하여 300ml(액체시료의 5%솔루션액)로 하여 30분간 교반후 시료의 온도를  $20\pm 0.5^{\circ}\text{C}$ 로 유지하여 Brook field형 점도계 No.1로터를 사용하여 30rpm에서 회전점도(cps)를 측정함

나. 입상

점도는 300ml비이커에 건조한 시료 1.5g을 채취하고, 여기에 증류수 297.0g을 가하여 시료를 교반 분산시킨 후 초산 1.5ml를 가하여 2시간 교반하여 용해하고 24시간을 방치 및 다시 30분간 교반후 시료용액의 온도를  $20\pm 0.5^{\circ}\text{C}$ 로 유지하여 Brook field형 점도계 No.1로터를 사용하여 30rpm에서 회전점도(cps)를 측정함

2. 키토산 함량(글루코사민으로 1%이상) 측정법

가. 검액제조

(1) 키토산

글루코스아민으로 0.04g(키토산 함량이 1.5%인 경우 약 2.66g, 2%인 경우 약 2g을 검체로 취함)의 검체를 정밀히 취하고 산성에서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여 검액으로 함

(2) 키토산 올리고당

글루코스아민으로 0.04g(키토산 올리고당 함량이 5%인 경우 약 0.8g을 검체로 취함)의 검체를 정밀히 취하고 액성이 산성인 경우는 중화(PH 7)시켜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여 검액으로 함

나. 시험방법

(1) 위 검액 10ml를 취하여 염산 7ml 및 물을 가하여 20ml로 하고 이 액 5ml를 시험관에 취하고 탈기밀봉하여  $105^{\circ}$ 에서 24시간(또는  $121^{\circ}$ 에서 5시간,

130°에서 3시간, 140°에서 90분)분해한 후 뚜껑을 열어 감압하에 염산 및 물을 제거한 다음 잔류물을 물 5ml로 녹이고 불용물이 있으면 여과함

(2) 이 여액 1ml를 마개있는 시험관에 취하고 아세틸 아세톤시액 2ml를 가하여 혼합한 후 96°에서 1시간 가열한 후 흐르는 물에서 냉각시키고 이에 96%(v/v)에탄올 20ml를 가하고 p-디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시액 2ml를 가하여 혼합하고 실온에서 2시간 방치 후 파장 53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함

(3) 따로 D-글루코오스아민 또는 N-아세틸 D-글루코오스아민을 100~500 $\mu$ g(D-글루코오스아민으로)/ml 함유한 용액 10ml를 취하여 앞에서의 검액 10ml를 취하여 이하에 따라 동일하게 조작하여 다음과 같이 총글루코오스아민의 함량을 구함

(4) 총 글루코오스아민(%) =

$$\text{표준용액의농도(글루코오스아민으로, } \mu\text{g/10ml)} \times \frac{Sa}{St} \times \frac{10}{\text{검체의 채취량(g)}} \times \frac{100}{10^6}$$

\* Sa : 검액의 흡광도, St : 표준용액의 흡광도

#### 다. 시액조제

(1) 아세틸아세톤시액 : 증류 정제한 무색 아세틸아세톤 (BP 138~140°)1.5ml에 1.2N 탄산나트륨용액을 가하여 50ml로 함

(2) p-디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p-Dimethylaminobenzaldehyde)시액 : p-디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 1.6g에 염산 30ml를 가하여 녹이고 96%(v/v)에탄올 30ml를 가하여 혼합함.

[별표 6]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표준관리비

구 분	심사관리비	부과기준
1. 현장심사비	50만원	작업장·제조설비·공정 및 품질관리·기록 및 이력관리 등 심사활동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등 현장심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2. 서류 및 종합심사비	100만원	서류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공시등위원회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사후관리비	공시등기관의 장과 공시등 신청인이 협의하여 별도 적용	공시등을 한 유기농업자재의 유효기간 동안 품질 관리 지도 및 교육, 품질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b>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amp; Organic Inputs Product</b>		<input type="checkbox"/> 공시서 (National Notice) <input type="checkbox"/> 품질인증서 (Quality Certification)	
Notice Number			
Company Name		Chief Executive Officer	
Company Address			
Factory Location			
Organic Inputs Type			
Brand name			
Applied Crop			
Applied Pest			
Expiration Date			
<p>In accordance with Article 37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PROMOTION ACT', I hereby certify that the product above is listed on the National Notice List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amp; Organic Inputs in the Republic of Korea.</p>			
Date of Issue :			
<b>The Name of Certification Body</b>			



# 현 장 심 사 보 고 서

상 표 명 :

신 청 인 :

심사장소 :

심사일자 :

20 년 월 일

공시등심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2. 현장 심사항목 및 판정기준

심사항목	평 가 구 분	배 점	평점
I. 작업장	(1) 다른 원료나 유기농업자재와의 혼입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작업장이 용도별(원료처리, 제조, 포장 등)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는가?		
	A. 작업장이 용도별로 분리되거나 구획되어 있어 혼입 및 오염방지가 효과적인 경우	15	
	B. 작업장이 용도별로 분리되거나 구획이 다소 미흡하나 혼입 및 오염방지가 가능한 경우	7.5	
	C. 작업장이 용도별로 분리되거나 구획되어 있으나 혼입 및 오염이 경미하게 우려되는 경우	5	
	D. 작업장이 용도별로 분리되거나 구획 등의 미흡으로 혼입 및 오염방지가 불가능한 경우	0	
	(2)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 유해가스, 증기 등의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은 충분한가?		
	A. 환기시설이 충분한 경우 및 환기시설이 불필요한 경우	10	
	B. 환기시설이 다소 미흡한 경우	5	
	C. 환기시설이 갖추었으나 제대로 작동 되지 않는 경우	2.5	
	D.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3) 작업장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A. 청소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작업장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 경우	5	
	B. 청소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나 작업장 청결 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3	
C. 청소와 점검에 대하여 관리자 또는 작업자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작업장의 청결 상태가 미흡한 경우	2		
D. "C"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심사항목	평 가 구 분	배 점	평점
II. 제조 설비	1)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제조·가공을 위해 적정한 제조설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기계설비는 성능유지를 위하여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가?		
	A.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제조·가공을 위한 제조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고, 주요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상태가 적절하며 제조설비 등을 전용으로 사용하여 다른 유기농업자재와 오염 및 혼입 가능성이 없는 경우	15	
	B.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제조·가공을 위한 제조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으나 주요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상태가 적절하며 제조설비 등을 병행하여 사용하나 다른 유기농업자재와 오염 및 혼입 가능성이 없는 경우	7.5	
	C.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제조·가공을 위한 제조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으나 주요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상태가 다소 미흡하고, 제조설비 등을 병행하여 사용하나 다른 유기농업자재와 오염 및 혼입 가능성이 없는 경우	5	
	D.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제조·가공을 위한 제조설비의 확보 또는 관리상태가 "C"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심사항목	평가구분	배점	평점
	2) 원료, 유기농업자재 등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보관시설 및 입·출고 관리 방법은 적절한가? A. 원료, 유기농업자재 등의 품질유지를 위한 시설확보와 오염과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구분, 구획, 표시 등) 및 입·출고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 경우 B. 원료, 유기농업자재 등의 품질유지를 위한 시설확보와 오염과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분리, 구획, 표시 등) 및 입·출고 관리를 위한 시스템 중 어느 하나가 미흡한 경우 C. 원료, 유기농업자재 등에 대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조건이나 입·출고 관리나 품질 유지가 전반적으로 다소 미흡한 경우 D. "C"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15 7.5 5 0	

심사항목	평가구분	배점	평점
III. 공정 및 품질관리	1) 제조작업표준(작업설비,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이 수립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는가? A. 제조작업표준이 마련되어 작업자의 정기적인 교육과 작업장에 비치되어 주요 공정별 관리항목을 작업자가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경우 B. 제조작업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경험에 의한 공정관리를 하고 있으나 주요 공정별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C. 제조작업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경험에 의한 공정관리를 하여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이 미흡한 경우 D. 공정이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경우	15 7.5 5 0	
	2) 최종 제품은 해당 규격 및 품질기준에 맞는지 확인·검사하고 있는가? A. 제품 생산단위별 주기적인 품질검사를 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 B. 제품 분기, 반기, 연간 등 기간을 정하여 검사하는 경우 C. "B"의 조건보다 미흡하게 비주기적으로 품질검사를 하고 있는 경우 D. 품질검사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	15 7.5 5 0	

심사항목	평가구분	배점	평점
IV. 기록 및 이력관리	원료 및 유기농업자재의 입출고에 관한 기록을 기재하고 비치하고 있는가? A. 원료 및 유기농업자재의 입출고에 관한 기록 관리 및 대장 등의 관리·비치를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B. 원료 및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입출고 기록을 하고 있으나 대장 등의 관리·비치가 다소 미흡한 경우 C. 원료 및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입출고 기록 관리나 대장 등의 관리·비치가 미흡한 경우 D. "C"에 미흡한 경우	10 5 3 0	

- 비고) 1. 평가한 결과 모든 항목에 "B"이상, 총평점이 60점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2. 수입완제품의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span style="font-size: 2em;">[ ]</span> <span style="font-size: 1.5em;">토양개량·작물생육용 병해충관리용</span> <span style="font-size: 1.5em;">심사결과보고서</span> </div>				
<b>1. 신청내용</b>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신청 제품명	
	주소	(전화번호: )		
생산계획	구분	공시( ) 품질인증( )		
	공장 소재지			
	원료 품질관리계획		품질관리 계획	
<b>2. 심사결과</b>				
항 목		평가		
		적합	부적합	
① 원료				
② 원료의 특성 및 유래				
③ 제조조성비				
④ 유효성분 검사				
⑤ 유해성분 검사				
⑥ 유식물 등에 대한 비해·약해시험				
⑦ 비효(肥效)·비해(肥害) 시험성적				
⑧ 약효(藥效)·약해(藥害) 시험성적				
⑨ 인축독성				
⑩ 환경독성				
⑪ 제조공정				
⑫ 품질관리				
⑬ 포장지 표기방법				
⑭ 농약 또는 비료 등록에 관한 증빙서류				
⑮ 책임보험가입증서				
⑯ 사업자등록증				
⑰ 외국의 자재 인증관련 자료				
⑱ 원료 공급증명서				
⑲ 기타				
<b>3. 심사의견</b>				
불임 :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또는 품질인증) 심사자료 1부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공시등심사원 소속		성명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5.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기준

개정 2013. 6.18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14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6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제59조, 제60조, 제61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제3항, 제65조제4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 휴업·폐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심사원(이하 “공시등심사원”이라 한다)”이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심사원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공시 또는 품질인증(이하 “공시등”이라 한다)을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시등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이하 “공시등기관”이라 한다)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공시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촌진흥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일로부터 신청시작일까지의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1. 지정 신청기간
2. 지정 신청자격
3. 지정 기관 수
4. 지정 신청서류
5.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

등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의 갱신신청 및 지정사항 변경신고(변경승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의 제출서류 이외에 인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자료를 신청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정 신청서류 등의 심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및 제3조의 공시등기관지정의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별표 3의 공시등기관의 지정절차와 방법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시등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시 제1항에 따른 심사에 부적합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정을 갱신하지 못 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재지정 날까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등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6조(심사결과에의 통보 및 지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공시등기관으로서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0조제3항에 따라 공시등기관으로 지정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공시등기관의 지정현황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공시등기관의 휴업·폐업 절차 등)** ① 공시등기관의 장이 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휴업·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때 폐업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서류 등을 제출한 후 관련 서류 또는 정보 등을 폐기하여야 한다.

1. 휴업·폐업 사유

2. 휴업·폐업 후 추진하여야 할 공시등의 업무현황

3. 휴업기간(1월 이상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휴업 할 수 있음)

4. 공시등기관의 지정서(폐업에 한함)

5. 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자료(휴업의 경우 사본제출)

6. 휴업·폐업에 따른 공시등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대행 공시등기관의 증빙서류

7.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등을 해준 자에게 휴업·폐업의 계획을 알려준 서류 사본 및 대행 공시등기관을 선택한 자료

② 법 제47조에 따라 공시등기관으로 자격을 상실하여 공시등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시등 업무와 관련된 제1항제2호·제4호·제5호·제7호의 자료를 1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는 휴업, 지정취소는 폐업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폐업의 신고가 있거나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가 있을 경우에는 공시등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공시등기관의 업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시등기관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이때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를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등 업무를 대행하는 공시등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시등기관의 장은 농촌진흥청장이 휴업·폐업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시등을 받은 자 및 공시등 업무를 대행하는 공시등기관에게 휴업·폐업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휴업을 한 공시등기관의 장은 공시등 업무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휴업이 종료되기 10일 전에 제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공시등 업무 재개를 위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그 밖의 사항)** 공시등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그 서류 등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공시등기관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보완 완료 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보완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9조(공시등심사원의 교육 및 자격)** ① 농촌진흥청장은 공시등심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30일 전까지 농촌진흥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기간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4. 기타 교육 이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시등심사원 교육신청서에 별표 5에서 정한 교육대상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교육을 종료한 후에는 피교육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하여 교육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시등심사원 교육 이수자명부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자 중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시등기관에 소속된 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시등심사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피교육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제1항에서 공고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17일까지로 한다.

[별표 1]

공시등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1. 조직**

가. 법인체임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최소 6개월 이상 공시등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원(공시등심사원의 임금, 사무실 운영경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공시등심사원 등에 대한 자격, 훈련 및 경험에 관한 아래의 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1) 성명 및 주소
- 2) 조직 내에서의 소속 및 직위
- 3) 입사 및 퇴사일자
- 4) 학력 및 전문 자격 현황
- 5) 공시등기관의 공시등 업무에 대한 실무 경력 및 교육 훈련 상황

라. 공시등 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사업 내용, 재무구조 등 농촌진흥청장이 공시등 업무의 공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인력**

가.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제9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공시등심사원으로 다음 각 호의 해당 전문분야 각 1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1) 이화학 분석 및 심사분야(항생물질을 포함한다)
- 2) 작물재배시험 및 심사분야
- 3) 미생물 분석 및 심사분야

나. 공시등심사원은 법 제4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지정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 시험 등을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공시등 신청 자재에 대하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이하 “공시등기준”으로 한다)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시험 등은 할 수 있다.

다. 공시등심사원은 매년 공시등심사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3. 시설 및 장비

#### 가. 사무실

- 1) 공시등의 상담, 서류의 보관, 공시등 업무의 처리를 위해 사무실과 사무 관련 장비 등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 2) 공시등 서류의 분실, 도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3) 공시등 사무실 내에 농자재를 홍보·진열·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검정실

- 1) 공시등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분석 및 시험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법 제4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지정 시험연구기관과 다음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하여야 한다.

가) 공시등기관이 요청하여 실시한 검사의 원본자료(raw data)를 2년 이상 보관하고 공시등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항

나) 검사시료는 검사성적서를 통보한 날로부터 1월 이상 보관하고, 공시등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 농촌진흥청의 검사, 실태조사 또는 검사기관 심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사항

라) 지정 시험연구기관의 업무정지, 지정취소 시 공시등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사항

#### 다. 보관실

가) 공시등 신청서, 심사보고서, 시험물질의 보관과 검색을 위한 독립된 보관실을 갖추어야 하며 분실, 도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보관실은 보관물이 보관기간 중에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 4. 공시등 업무규정

#### 가. 일반원칙

- 1) 공시등 업무규정은 법, 시행규칙 개정 시에 갱신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갱신할 경우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공시등 업무규정은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3)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일정·지도방법 등에 관한 계획 수립에 관한 보고양식,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4) 공시등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나. 공시등 업무 실시방법

- 1) 공시등기관은 공시등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규정에 따라 공시등 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공시등기관은 시행규칙 제47조의 유기농업자재 공시등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공시등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3) 공시등기관의 장은 공시등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공시 및 품질인증 위원회(“이하 공시등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4) 공시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다. 공시등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 1) 공시등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시등을 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품질관리 지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가)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받은 자에 대한 품질관리 지도방법 및 교육실시 계획
  - 나) 유기농업자재의 주성분(대표성분), 잔류농약 및 유해성분 등에 대한 품질검사 계획
  - 다) 공시등 유기농업자재의 사용되는 수입원료에 대한 이력관리, 품질검사 등 사후관리 계획
- 2) 1)에 따른 품질검사는 법 제39조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2회 이상 공시등을 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검사는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 받은 시험연구기관에서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 3) 품질검사는 농약관리법 제4조에 따른 검사방법 및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품질검사방법에 준한다. 다만 검사방법이 설정되지 않은 성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사방법에 따른다.
- 4) 공시등기관의 장은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받은 자의 사무실 또는 공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공시등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5) 사후관리의 조사방법, 조사주기는 1)부터 3)의 규정을 따르거나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6) 사후관리 결과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받은 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43조에 따른 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등 수수료

- 1) 공시등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신청비, 공시등심사원의 출장비, 심사관리비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부과하고 수납 시 신청인에게 부과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2) 공시등심사원의 출장비 산정을 위한 출장기간과 출장인원 산정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
- 3) 공시등 수수료는 공시등 신청시 납부 받아야 한다. 다만, 공시등기관의 심사관리비 중 사후관리비용, 생산계획변경 확인 비용은 공시등 이후 해당 사유발생 시에 수납할 수 있다.
- 4) 공시등 수수료 중 출장비 및 심사관리비는 출장인원 축소, 공시등 신청 취하 등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마. 공시등심사원의 준수사항

- 1) 공시등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한다.
- 2) 공시등심사원은 공시등기준으로 설정된 모든 항목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누락 없이 사실대로 기재하여 공시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공시등심사원은 공시등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4) 공시등심사원은 신청인과 친족관계인 경우,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인증 건에 대한 심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공시등심사원은 신청인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서는 아니 된다.

바. 자체관리·감독계획

- 1) 공시등기관의 장은 공시등심사원에 대한 자체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자격정지 등의 자체 처분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2) 공시등기관의 장은 공시등심사원에 대한 관리계획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사. 공시등심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 1) 공시등기관의 장은 모든 공시등심사원에 대해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2) 공시등기관의 장은 소속 공시등심사원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공시등기관의 장은 신규로 지정된 공시등심사원에 대해 숙련된 공시등심사원과 함께 3건 이상을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공시등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지침과 이에 대한 시행절차, 내부 감독 등을 포함한 매뉴얼

- 1) 공시등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지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품질관리 방침, 목표 및 의지

나) 업무의 종류, 범위 및 업무량에 대한 관리체계

다) 운영책임자 및 조직원의 성명, 자격, 경력 및 담당업무

라) 조직원의 권한, 책임 및 담당 업무의 계통을 알 수 있는 조직도

마) 문서관리를 포함한 행정절차

바) 내부심사 및 경영분석 절차

사) 이의제기, 불만 및 분쟁처리를 위한 방침 및 절차

아) 공시등의 승인, 유효기간 갱신, 변경승인, 공시등의 취소 등 행정 업무 규정 및 추진절차

자) 공시등심사원의 채용기준 및 확충계획

- 2) 공시등기관의 장은 1)의 관리지침에 대한 이행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에 따라 정기적인 내부심사 및 경영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공시등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내부심사 및 경영분석 실시

나) 내부심사 및 경영분석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시정조치

다) 내부심사 및 경영분석 결과의 작성 및 보관

자. 공시등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절차와 조치방법에 관한 사항

- 1) 공시등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 2) 공시등 업무와 관련한 모든 이의 제기, 불만, 분쟁 및 그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차. 공시등의 심사, 결정, 활동 등 공시등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 1) 공시등기관의 장은 공시등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심사 준비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2) 공시등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인에 대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카. 공시등의 승인·유지·확대·취소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1) 공시등의 승인·유지·확대·취소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2) 공시등의 승인·유지·확대·취소 등의 결정과정에서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어야 한다.

타. 기타

- 1) 공시등기관의 장은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받은 자의 포장재(인증라벨 포함) 제작 등에 대하여 확인·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2) 공시등기관의 장은 공시등기관 명칭 등의 변경으로 인증품 표시사항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사항을 유기농업자재 공시등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표시사항을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2]

공시등기관 지정신청 등의 제출서류

**1. 지정신청 및 지정 갱신신청**

가. 조직관련 서류

- 1)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계획
- 2) 공시등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활용계획
- 3) 유기농업자재 공시등 업무 외의 업무 수행사항 및 공시등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토서

나. 인력관련 서류

- 1)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등 심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 기술사 또는 기사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 2) 해당 전문분야 인증업무 관련 교육수료증

다. 시설 및 장비 관련 서류

- 1) 유기농업자재 공시등 업무에 필요한 규모·시설 및 장비 관련 서류
- 2) 보관실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서류
- 3) 기타 안전장비 관련 서류

라. 공시등 심사 등에 필요한 업무규정

**2. 변경신청**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제출서류는 제1호에 준한다.



[별표 3]

공시등기관의 지정절차와 방법

**1. 서류심사**

농촌진흥청장은 별표2에 따라 제출된 공시등기관의 지정신청서류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및 이 고시 제3조의 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 및 세부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2. 현장심사**

가. 농촌진흥청장은 현장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현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나. 농촌진흥청장은 현장심사시 공시등기관 신청인 및 공시등심사원과의 면담, 현장관찰, 관련기록 확인 등의 조사활동을 통하여 공시등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 현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종합심사**

가. 농촌진흥청장은 서류 및 현장 심사결과가 적합한 때에는 공시등기관으로 지정한다.

나. 공시등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의 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공고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4]

공시등기관 지정현황

지정 번호	기관명	공시업무분야	소재지	유효기간	지정일자	비고
1	농업기술실용 화재단	○ 토양개량·작물생육 ○ 병해충관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35번길22	2017.3.25	2012.3.26	
2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토양개량·작물생육 ○ 병해충관리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2017.3.25	2012.3.26	
3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토양개량·작물생육 ○ 병해충관리	전남 순천시 중앙로 255	2017.3.25	2012.3.26	

[별표 5]

공시등심사원의 교육 실시방법

1.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심사원의 교육 및 내용

과정명	공시등심사원 교육	
	신규교육	보수교육
교육 대상	제2항의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자	공시등기관의 공시등심사원, 공시등심사원 교육 이수자
교육 시기	공시등심사원 지정 이전	매년 1회 이상
교육 시간	12시간 이상	6시간 이상
교육 내용	- 유기농업자재 관련 법규 유기농업자재 공시등 기준 유기농업자재 심사방법 및 절차 등	
교육 평가기준	- 매과목 5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	없음

2.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심사원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

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 1)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2) 아래의 구분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전문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해당 전문분야 기사자격증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가) 이화학 분석 및 심사분야(항생물질을 포함한다): 화학·농화학·약학·화공학 분야와 관련된 학과
- 나) 작물재배시험 및 심사분야: 농화학·농생물학·미생물학·원예학·식물보호학·농학 분야와 관련된 학과
- 다) 미생물 분석 및 심사분야: 미생물학·농생물학·생명과학·농화학 분야와 관련된 학과

- 3) 2)의 구분에 따른 전문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전문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 4)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대학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 전문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 나. 국·공립 및 시험·검사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시험·검사업무를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b>공시등심사원 교육 신청서</b>		
성 명		사 진 (3×4cm)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최종학력		
<p>「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제 9조 제 2항에 따라 공시등심사원 교육을 이수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p>		
<b>농 촌 진 흥 청 장 귀 하</b>		
구비서류	공시등심사원 교육 대상자 자격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공시등심사원 교육 이수증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기준」제9조제3항에 따라 공시등심사원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농 촌 진 흥 청 장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제 호
<b>공시등심사원증</b>
사 진 3cm×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55mm × 85mm (PET-G카드, 연노랑)

(뒤 쪽)

<b>공시등심사원증</b>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심사업무범위:
위 사람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심사원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 니다.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 <input type="text" value="직인"/>



## 6.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제정 2013. 6. 18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15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부터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농업자재의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미생물 동정, 식물시험(肥效·肥害), 독성시험 및 잔류시험 등을 수행하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이하 “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이화학적 분석, 미생물 동정, 식물시험, 독성시험 등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을 말한다.
2. “유기농업자재의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이란 유기농업자재의 이화학 분석, 미생물동정, 식물이나 병해충에 대한 효과와 피해,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 및 환경생물독성 등에 관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실험실 조건에서 실시하는 시험이나 온실 또는 야외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제3조(지정기준)**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지정신청)** ①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현황 1부.
  2. 시설 및 장비현황 1부.
- ② 제1항의 서류에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험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내역
  2. 시설의 배치, 구조 및 면적
  3.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의 취급시설
  4. 시험작업구역

5. 자료보관시설
6. 관리용시설
7.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목록 및 관리기준

③ 농약관리법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에 따라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비료관리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비료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은 제1항의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시험분야로 지정된 경우로 제한한다.

**제5조(지정 신청서류의 검토)**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4조제1항에 의해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한다.

1. 지정신청서의 적정성
2. 첨부서류의 누락 및 구체성 여부

② 제1항의 신청서류 검토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완요구사항·보완사유 및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완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현지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서류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현장심사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운영책임자, 시험책임자 등 인력기준의 적합성
2. 시설 및 장비의 적정성
3. 기타 시험 수행 능력의 적합성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2의 현지점검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편성할 수 있다.

③ 농약관리법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에 따라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비료관리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비료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은 제1항의 현지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시험분야로 지정된 경우로 제한한다.

**제7조(지정서 발급 및 지정공고)**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류 검토 결과, 제6조에 따른 현지점검표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종합한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험연구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시험연구기관의 소재지
3. 시험분야
4. 시험연구기관 지정일

**제8조(지정사항의 변경)** ① 시험연구기관이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의 검토와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사후관리)**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위반에 대한 민원, 신고, 고발 또는 조사의뢰 등이 발생하여 사실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시험연구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
3.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농촌진흥청장은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시험·분석 능력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인을 위한 정도관리(精度管理)를 실시 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17일 까지로 한다.

[별표 1]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제3조 관련)

**1. 용어의 정의**

고시 본문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본 문서에도 적용되며 부가적으로 다음의 정의가 사용된다.

- 1.1 “운영책임자(Test facility management)”란 시험 수행의 총괄적인 관리와 운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하며, 대표자 또는 연구소장 등이 겸직할 수 있다.
- 1.2 “시험의뢰자(Sponsor)”란 시험연구기관에 시험을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 1.3 “시험책임자(Study Director)”란 시험기관에서 수행되는 시험에 관해 시험 계획, 시험 자료의 확인 및 관리, 자료의 분석 등 시험의 실질적인 수행자이며 책임자이다.
- 1.4 “표준작업지침서(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란 시험연구 기관이 시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험의 방법, 절차 및 순서 등에 대해 문서화된 지침서를 말한다.
- 1.5 “시험일정 총괄표(Master schedule)”란 시험연구기관에서 각 시험과정들을 추적 조사하고 업무량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전체 시험계획표를 말한다.
- 1.6 “시험계획서(Study plan)”란 시험에 대해 시험목적, 시험방법, 범위 및 실험계획을 규정하는 문서를 말한다.
- 1.7 “시험계획서의 변경(Study plan amendment)”이란 시험이 시작된 이후 시험계획서를 의도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1.8 “시험계획서의 이탈(Study plan deviation)”이란 시험이 시작된 이후 시험 계획서로부터 비의도적으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 1.9 “시험기초자료(Raw Data)”란 시험의 관찰이나 과정을 기록한 시험연구 기관의 기록이나 문서 또는 그 복사본을 말한다. 시험기초자료에는 사진,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시카피,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관찰결과의 구술, 자동기기로부터의 출력자료 또는 실험종료일까지 정보를 확실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인정받고 있는 기타 자료저장 매체가 포함될 수 있다.

- 1.10 “검체(Specimen)”란 검사나 분석 또는 보관을 위해 시험계로부터 얻어진 것을 말한다.
- 1.11 “실험개시일(Experimental starting date)”이란 시험 자료가 처음으로 수집된 날을 의미한다.
- 1.12 “실험종료일(Experimental completion date)”이란 시험으로부터 자료가 수집된 마지막 날을 의미한다.
- 1.13 “시험개시일(Study initiation date)”이란 시험책임자가 시험계획서에 서명한 날을 말한다.
- 1.14 “시험종료일(Study completion date)”이란 시험책임자가 최종보고서에 서명한 날을 말한다.
- 1.15 “시험물질(Test item)”이란 시험의 대상이 된 물질을 말한다.
- 1.16 “대조물질(Reference item)”이란 시험물질과 비교할 목적으로 시험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 1.16 “제조단위(Batch)”란 균질성을 갖도록 설계되고 동일한 제조공정으로 만들어진 시험물질, 대조물질의 특정 양 또는 로트(Lot)를 말한다.
- 1.17 “부형체(Vehicle)”란 시험물질 또는 대조물질이 시험계에 용이하게 적용 되도록 시험물질 또는 대조물질을 혼합, 분산, 용해시키는데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 2. 인력기준

시험연구기관은 시험연구기관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에 책임을 지는 운영 책임자와 해당 시험분야의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책임자를 시험분야별로 1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시험책임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1 시험책임자의 자격(다음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 (1)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2)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해당 전문분야가 아닌 타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는 3년 이상 경력자)

- (3)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대학 졸업 후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해당 전문분야 기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
- (4) 국·공립 및 기타 농업관련 시험·분석기관에서 해당 전문분야 시험·분석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2 해당 전문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화학분석 분야: 화학, 농화학, 화공학 분야와 관련된 학과
- (2) 식물시험 분야: 농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원예학, 식물보호학, 농약 등의 분야와 관련된 학과
- (3) 미생물분석 분야: 생물학, 미생물학, 생명과학, 농화학분야와 관련된 학과
- (4) 잔류시험 분야: 농화학, 화학, 생화학 등 분석과 관련된 학과
- (5) 독성시험 분야: 의학, 수의학, 약학 등 독성시험과 관련된 학과

## 2.3 해당 전문분야 자격증: 농림토양평가관리기사, 농화학기사, 식물보호기사, 시설원예기사, 유기농업기사, 생물분류기사, 생물공학기사 등

## 2.4 운영책임자의 책무

운영책임자는 시험연구기관을 대표하여 시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시험연구기관 운영 전반의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그 책무는 다음과 같다.

- (1) 적절한 시험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수의 유능한 담당자 및 적절한 시설, 장치 및 실험용 기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해당 시험의 관리자로서 그 시험의 전반적인 실시와 최종보고서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험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 (2) 표준작업지침서가 작성되고 준수되는지를 확인하며, 모든 표준작업지침서의 제정, 개정, 수정 및 폐기를 승인하여야 한다.
- (3) 시험책임자에 의해 시험계획서가 승인되도록 한다.
- (4) 시험일정총괄표가 작성되고 유지되도록 한다.

## 2.5 시험책임자의 책무

- (1) 시험책임자는 시험관리자로서 그 시험의 전반적인 실시와 최종보고서에 대해 책임을 진다.
- (2) 시험계획서 및 그 변경계획서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함으로써 승인한다.
- (3) 생성된 모든 시험 기초자료가 문서화되며 기록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4) 자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험이 시험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최종보고서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다.

### 3. 시설기준

3.1 시험연구기관은 시험에 필요한 적절한 크기, 구조 및 배치를 갖추어야 하며, 전처리시설과 분석시설 및 미생물시험 시설은 분리되어야 한다.

3.2 시험연구기관은 각각의 시험이 적절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3 물품이나 장비 보관을 위해 필요한 보관실이나 보관구역을 갖추어야 한다.

3.4 오염이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물질과 대조물질의 수령, 보관 및 부형제와 시험물질의 혼합을 위한 분리된 실험실 또는 구역을 마련해야 한다.

3.5 시험물질을 보관하는 실험실이나 구역은 시험물질의 화학적 동일성, 농도, 순도, 안정성을 유지하기에 적당해야 하고, 유해물질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 3.6 자료보관시설

시험계획서, 시험기초자료, 최종보고서, 시험물질 샘플 및 검체의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보관시설은 보관물이 보관기간 중에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3.7 폐기물 처리

폐기물의 취급과 처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적절한 폐기물 수집, 보관 및 처리시설, 오염방지 및 운반절차 등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4. 장비기준

4.1 시험연구기관은 지정받고자 하는 시험분야의 시험에 필요한 시험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2 시험에 이용되는 장비는 항상 최적의 작동이 가능하도록 자체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자체관리규정에는 시험장비의 도입, 정기점검, 보수, 교정, 검증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장비의 관리 및 사용 기록은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시험장비의 교정은 국내 또는 국제적인 측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4.3 시험장비 중 전자저울, 수소이온농도측정기, 마이크로피펫은 전문교정기관에 의뢰하여 교정을 받아야 한다.

## 5. 시험관리 기준

### 5.1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

- (1)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의 특성, 외관 및 물리화학적 성상, 수령날짜, 유효기간, 수령한 양과 시험에 이용된 양은 기록하고 그 기록은 보관하여야 한다.
- (2)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의 보관용기에는 식별에 필요한 정보, 유효기간, 특이한 보관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3) 모든 시험에 있어서 시험물질의 각 제조단위에서 분석용 샘플을 보관하여야 한다.

### 5.2 표준작업지침서

- (1) 시험연구기관은 생성할 자료의 신뢰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책임자가 승인한 문서화된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야 한다. 표준작업지침서의 제·개정 및 폐기는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시험연구기관은 시험의 수행과 관련된 최신의 표준작업지침서 사본을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구역에 비치해야 한다. 이들 표준작업지침서의 보조수단으로 출판된 교과서, 분석 방법, 문헌 및 매뉴얼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3)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최소한 아래의 표준작업지침서는 갖추어야 한다.
  - (a) 표준작업지침서 작성기준 및 관리(배포, 회수, 폐기 등)에 관한 사항
  - (b) 지정받고자 하는 시험분야의 시험 실시에 관한 세부절차와 방법

### 5.3 시험의 실시기준

- (1) 시험계획서의 작성기준
  - (a) 시험계획서는 각각의 시험개시 전에 작성되어야 한다. 시험계획서에는 시험책임자가 날짜를 명시한 서명을 하여야 하며 변경의 경우에도 같다.
  - (b) 시험계획서로부터 이탈된 경우에는 시험책임자가 적시에 이탈내용을 인식하고 서술 및 설명과 일자를 기록하여야 하며, 시험의 기초자료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2) 시험계획서의 내용
  - (a) 시험의 종류, 시험번호,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의 정보
  - (b) 시험의뢰자 및 시험연구기관 관련 정보



(c) 날짜

- ① 시험책임자, 운영책임자에 의한 시험계획서의 승인일
- ② 예정된 실험개시일 및 종료예정일

(d) 시험방법

시험에 사용할 시험 지침(기준과 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에 따른다.

(e) 시험의 순서에 따른 세부절차

(f) 기록(시험 종료 후 보관해야 할 문서 목록)

(3) 시험의 실시

(a) 각 시험마다 고유의 시험번호를 사용하며, 이 시험번호는 시험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시험기초 자료나 검체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험번호를 통해 시험 및 검체에 대한 추적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b) 시험은 시험계획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c) 시험 실시 중 생성된 모든 자료는 직접, 신속, 정확,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이 기록에는 기록한 사람의 서명과 날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d) 시험기초자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전 기록의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변경의 이유를 기재하고, 변경하는 개인의 서명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 5.4 시험결과의 보고(최종보고서)

(1) 일반사항

(a) 각 시험마다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b) 최종보고서는 자료의 정당성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시험책임자가 서명하고 날짜가 적어야 한다.

(c) 최종보고서가 정정 또는 추가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이나 추가 사유가 명확하게 나타나야 하며, 시험책임자가 서명하고 날짜를 명기하여야 한다.

(2) 최종보고서의 내용

(a) 시험제목,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에 대한 정보

(b) 시험의뢰자 및 시험연구기관에 관련한 정보

- ① 시험의뢰자의 명칭과 주소

- ② 관련된 모든 시험연구기관과 시험장소의 명칭과 주소
- ③ 시험책임자의 성명
- ④ 최종보고서의 작성에 기여한 외부전문가의 성명과 주소

(c) 날짜

실험개시일 및 실험종료일

(d) 시험재료와 시험방법

- ① 사용한 시험방법과 시험재료에 대한 기술
- ② 시험에 사용한 시험기준과 방법

(e) 결과

- ① 시험결과의 요약
- ② 시험계획서에 제시된 관련 정보 및 자료
- ③ 통계학적 유의성 결정 및 계산 결과
- ④ 결과의 평가와 고찰 및 결론

(f) 최종보고서의 제출

시험연구기관은 최종보고서를 시험의뢰자에게 제출할 때에는 사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의 원본은 시험연구기관의 자료보관시설에 보관한다.

(g) 시험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

시험계획서, 시험물질과 대조물질의 샘플, 검체, 시험기초자료 및 최종 보고서의 보관 장소

## 5.5 기록과 재료의 보관과 유지

(1) 아래의 사항은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또는 인증일로부터 3년간 시험 연구기관의 자료보관시설에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와 시험 물질은 최종보고서의 평가 종료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 (a) 각 시험의 시험계획서, 시험기초자료, 시험물질과 대조물질의 샘플, 검체, 최종보고서
- (b) 시험일정 총괄표
- (c) 시험담당자의 자격, 훈련, 경험, 업무분장의 기록
- (d) 기기의 보수, 교정의 기록과 보고
- (e) 과거의 모든 표준작업지침서
- (f) 환경 모니터링 기록

- (2) 자료보관실에 보관된 재료(자료)는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3) 시험연구기관이 업무를 정지하고 법정 후계자가 없는 경우, 그 보관 자료는 해당 시험의 시험의뢰자에게 이관되어야 한다.
- (4) 시험연구기관은 보관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시험의뢰자와 협의하여 해당 보관 자료를 폐기, 반환 또는 계속하여 보관 할 수 있다.

[별표 2]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평가기준표(제6조 관련)

1. 일반사항

명칭(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운영책임자	
지정번호		점검분류	<input type="checkbox"/> 지정 <input type="checkbox"/> 재지정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기타

2. 지정기준 평가

구 분	평가항목	결과
인력기준	자격을 갖춘 시험책임자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운영책임자는 그 책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시험책임자는 그 책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시설기준	시험에 필요한 적절한 크기, 구조 및 배치를 갖추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전처리실과 분석시설, 미생물실험실은 분리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각각의 시험이 적절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물품이나 장비의 보관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시험물질과 대조물질의 취급시설이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시험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을 위한 자료보관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폐기물의 관리와 처리를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장비기준	시험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시험장비의 자체관리규정을 갖추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시험장비의 관리 및 사용기록은 작성, 유지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시험장비의 교정은 국내 또는 국제적인 측정기준을 따르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전자저울, 수소이온농도측정기, 마이크로피펫은 전문 교정기관의 교정을 실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구 분	평가항목	결과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	시험물질과 대조물질의 정보 및 사용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시험물질과 대조물질의 보관용기에 표기사항이 적절히 표시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시험물질의 분석용 샘플을 보관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표준작업 지침서	표준작업지침서가 필요한 구역에 비치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표준작업지침서 작성기준 및 관리에 대한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해당 시험분야의 시험 실시에 관한 세부절차와 방법에 대한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시험의 실시기준	시험계획서의 작성기준이 마련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시험계획서의 내용은 적절하게 작성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시험번호를 사용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시험실시 중 생성된 모든 자료는 적절하게 기록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시험기초자료의 변경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시험결과 의 보고 (최종 보고서)	각 시험마다 최종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최종보고서에 시험책임자의 서명 및 날씨가 기재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최종보고서를 정정 또는 추가하는 경우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최종보고서의 내용은 적절하게 기술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최종보고서의 제출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기록과 재료의 보관 및 유지	지정된 기간까지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자료보관실에 보관된 자료의 목록이 작성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의 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합 계		
평 점		

<작성요령>

1. 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가. 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1점

2. 평점은 평가점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을 기재

가. 평점 = 각 항목별 평가점수 합계 × 가중치를 모두 더한 값

예; (인력기준 평가점수 합계 × 가중치) + (시설기준 평가점수 합계 × 가중치) +  
(장비기준.....) + .... + (기록과 재료의 보관 및 유지 평가점수 합계 × 가중치)

\* 가중치: 인력기준(0.5), 시설기준(0.5), 장비기준(0.4),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0.7), 표준  
작업지침서(0.8), 시험의 실시기준(0.7), 시험결과의 보고(최종보고서)(0.7),  
기록과 재료의 보관 및 유지(0.5)

3. 현지평가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함

가. 적합 : 평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나. 보완 : 평점이 70점 이상인 경우라도 평가항목 점수 중 1개 이상이 미흡 또는 불량  
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보완 후 재평가

다. 부적합 : 평점이 70점 미만인 경우. 다만, 지적사항이 1개월 이내에 시정될 수 있는  
사소한 오류인 경우에는 보완 후 재평가

## 7. 목초액의 규격과 품질

[제정] 1999. 5. 01.	임업연구원고시 제35호
[개정] 1999. 5. 25.	임업연구원고시 제36호
[개정] 2001. 7. 01.	임업연구원고시 제42호
[개정] 2004. 6. 22.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04-4호
[개정] 2010. 7. 15.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0-3호

**제1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초액(죽초액 포함)과 국외에서 수입되는 목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목초액”이라 함은 침엽수재 또는 활엽수재를 탄화할 때 발생하는 연기를 냉각시켜 얻은 액을 말한다.
2. “죽초액”이라 함은 대나무재를 탄화할 때 발생하는 연기를 냉각시켜 얻은 액을 말한다.
3. “정제(精製)”라 함은 조목초액을 정치(靜置), 여과(濾過), 증류(蒸溜) 및 흡착(吸着) 등의 방법으로 불안정한 물질을 제거하는 처리과정을 말한다.
4. “정치”라 함은 내산성(耐酸性) 용기에 담아 충격을 가하지 않고 일정기간 놓아두는 것을 말하며, 정치정제의 경우, 최소 6개월간 정치한다.
5. “여과”라 함은 필터 등으로 이물질을 걸러 내는 것을 말한다.
6. “증류”라 함은 가열하여 증기로 변화시킨 뒤에 그것을 냉각하여 응축시키는 것을 말한다.
7. “흡착”이라 함은 활성탄, 규조토, 점토 등의 흡착제를 사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8. “굴절률(屈折率)”이라 함은 빛의 굴절을 이용하여 액체내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물의 굴절률(20℃) 1.33299일 때를 0%Brix로 규정한다.

**제3조(사용원료)** 활엽수재, 침엽수재 및 대나무를 원료로 사용하며, 건설폐목재, 생활폐목재, 살충소독처리목재 및 방부처리목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제탄 설비)** 제탄 설비에는 크게 전통식 가마와 기계식 탄화장치가 있고, 그 특징은 각각 다음과 같다.

### 1. 전통식 숯가마

내부는 진흙, 돌, 내화벽돌 등을 사용하고, 외부를 동일 자재 또는 강재(鋼材)를 사용하여 축조한 숯가마로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으며, 전통식 목초액이 생산된다.

가. 가마형 : 흑탄가마(진흙 등을 사용하여 만든 것), 백탄가마(돌, 진흙 및 내화벽돌 등을 사용하여 만든 것)

나. 평가마형 : 천정이 개방된 형태의 가마

## 2. 기계식 제탄장치

목재 삭편, 톱밥, 대나무 등의 탄재를 밀폐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목초액을 생산하며,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다.

가. 직접가열형 : 탄화로 내의 탄재를 직접가열하는 방법으로 탄화하여 목초액을 생산하는 설비로 기계식 목초액이 생산된다.

나. 간접가열형 : 탄화로 외부에서 열을 가하여 탄화로 내의 탄재를 간접가열하는 방법으로 탄화하여 목초액을 생산하는 설비로 응용식 목초액이 생산된다.

**제5조(채취방법)** 제3조에 명시한 사용원료가 탄화될 때 발생하는 연기를 냉각시켜 얻는다.

### 1. 전통식 숯가마

지상부로 노출된 굴뚝 밑바닥에서 10~20cm 떨어진 부위의 배연(排煙) 온도가 80~150℃ 사이의 연기를 냉각하여 얻는다.

### 2. 기계식 제탄장치

연기가 배출되는 부위의 온도가 150℃ 이하의 것을 냉각하여 얻는다.

**제6조(목초액 분류)** ①조목초액은 원료가 탄화할 때 발생하는 연기(전통식 숯가마의 경우 배연 온도 80~150℃, 기계식의 경우 연기채취온도 150℃ 이하)를 냉각시켜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원료에 따라 구분한다.

1. 활엽수재를 원료로 한 것은 활엽수 조목초액이다.

2. 침엽수재를 원료로 한 것은 침엽수 조목초액이다.

3. 대나무를 원료로 한 것은 조죽초액이다.

②정제목초액은 조목초액을 2~3일간 정치하여 2층 또는 3층으로 분리한 후, 2층으로 분리된 경우는 상층부, 3층으로 분리된 경우는 중간층의 적갈색 수용성액을 6개월 이상 정치시킨 후, 이 정치한 액을 타르 제거용 필터 등으로 흡착이나 여과에 의해 목초액 중의 불안정한 성분을 제거시킨 맑고 투명한 적갈색 액체로서 원료에 따라 구분한다.

가. 활엽수 조목초액을 원료로 한 것은 활엽수 정제목초액이다.



나. 침엽수 조목초액을 원료로 한 것은 침엽수 정제목초액이다.

다. 조죽초액을 원료로 한 것은 정제죽초액이다.

③ 증류목초액은 조목초액 또는 정제목초액을 가열 또는 감압(減壓) 증류하여 얻은 담황색의 액으로 원료에 따라 구분한다.

가. 활엽수 목초액을 원료로 한 것은 활엽수 증류목초액이다.

나. 침엽수 목초액을 원료로 한 것은 침엽수 증류목초액이다.

다. 죽초액을 원료로 한 것은 증류죽초액이다.

**제7조(처리 및 보존방법)** 조목초액과 조죽초액을 정제 처리한 정제목초액 또는 정제죽초액은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

**제8조(용기재질)** 목초액의 채취, 정제 및 저장하는 용기의 재질은 부식방지를 위해 내산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품질기준 및 품질시험기준)** 품질기준 및 품질시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품질기준

품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품질시험기준

가. 보메비중

중(重)보메비중계(범위 : 0~10)를 사용하고, 측정시 온도는 약 20℃에서 측정한다.

나. 산량

산량은 초산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시료 1ml를 100배로 희석한다. 이 용액에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2~3방울 넣고 0.1N NaOH액으로 적정하여 중화점을 구하거나, pH측정기를 사용하여 pH가 8.15가 될 때까지 0.1N NaOH 용액을 뷰렛으로 서서히 떨어뜨려 그 때 소비량을 구하여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text{산량(\%)} = \frac{\text{NaOH소비 ml 수} \times 60.05 \times F \times 0.1}{1000} \times 100$$

여기서 F는 0.1N NaOH 규정용액의 팩터이고, 60.04는 초산(CH<sub>3</sub>COOH)의 분자량이다.

다. pH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읽을 수 있는 pH 측정기로 측정한다.

라. 용해타르

시료 20ml을 증발접시에 넣고 125±5℃로 조절한 건조기 내에서 24시간 이상 건조한 고형분의 무게를 측정하여 건조전 무게에 대한 백분비로 표시한다.

마. 굴절률(%Brix)

0점 조절계가 달린 브릭스 굴절계로 측정한다.

바. 육안판별

시료 100ml를 유리제품의 메스실린더 용기에 담아서 흰 종이에 올려놓고, 상부를 관찰하여 색, 탁도, 타르 미립자, 이물질 혼입 등의 품질을 육안으로 구별한다.

**제10조(품질표시 및 기재 방법)** 품질표시 및 기재방법은 별표 2와 같으며 표시위치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면에 표시한다.

## 부 칙

1. 이 목초액의 규격과 품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를 시행하는 날에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04-4호(2004.06.22.)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 목초액의 품질기준

종 류	원 료	보메비중 (°Be)	산량 (%)	pH	용해타르 (%)	굴절률 (%Brix)	육안 판별
전통식 목초액	침엽수	0.6~5.5	1.5~5.0	3.5이하	2.0이하	3.5이상	적갈색, 투명
	활엽수	0.6~2.5	3.0~6.5	3.5이하	1.5이하	3.5이상	적갈색, 투명
응용식 목초액	침엽수	1.0~5.5	2.0~5.0	3.5이하	2.0이하	5.0이상	적갈색, 투명
	활엽수	1.0~2.5	4.0~7.0	3.5이하	1.5이하	5.0이상	적갈색, 투명
기계식 목초액	침엽수	2.5~5.5	2.3~5.5	3.5이하	5.0이하	7.0이상	적갈색, 투명
	활엽수	2.5~5.5	4.5~9.0	3.5이하	5.0이하	7.0이상	적갈색, 투명
중류 목초액	침엽수	0.0~2.5	0.8이상	3.5이하	0.3이하	0.8이상	담황색, 투명
	활엽수	0.0~2.5	1.0이상	3.5이하	0.3이하	0.8이상	담황색, 투명

다만 대나무류를 원료로 하는 죽초액의 품질기준은 활엽수 목초액 기준에 준한다.

[별표 2]

## 품질표시 및 기재방법

### 1. 품질표시

#### 가. 품질표

목초액(죽초액) 품질		
목초액 종류	(      ml 또는 l )	
가    마    종    류		
원      료		
원    산    지		
품    질	보메비중(°Bé)	
	산량(%)	
	pH	
	용해타르(%)	
	굴절률(%Brix)	
생산자 또는 수입자	주    소	(전화번호            )
	성명(회사명)	
제    조    일    자	년    월    일	
※본 제품은 식용 및 의약품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음.		

#### 나. 제작 및 부착기준

- (1) 표의 크기는 포장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가로 2 : 세로 3의 비율은 유지되어야 한다.
- (2) 국내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포장단위별로 표시한다.
- (3) 포장재 표면에 직접 인쇄하거나 용지에 인쇄하여 부착할 수 있다.

## 2. 품질표의 기재 방법

목초액(죽초액) 품질		
목초액 종류	조목초액, 정제목초액, 증류목초액, 조죽초액, 정제죽초액, 증류죽초액으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 )내는 내용물의 용량을 ml 또는 l 단위로 표시한다.	
가 마 종 류	전통식, 응용식, 기계식으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원 료	침엽수, 활엽수와 대나무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원 산 지	생산된 국가를 기록한다.	
품 질	보메비중(°Bé)	품질기준의 해당 적합범위를 표시한다.
	산량(%)	품질기준의 해당 적합범위를 표시한다.
	pH	품질기준의 해당 적합범위를 표시한다.
	용해타르(%)	품질기준의 해당 적합범위를 표시한다.
	굴절률(%Brix)	품질기준의 해당 적합범위를 표시한다.
생산자 또는 수입자	주 소	생산된 주소를 표시한다.
	성 명(회사명)	대표자 성명(회사명)을 표시한다.
제 조 일 자	목초액이 생산된 년, 월, 일을 표시한다.	
※ “본 제품은 식용 및 의약품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음.” 이라는 문구는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게 포장지 외부에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표시한다.		

주) 품질 성적은 공공기관 품질시험 결과,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기재

## 8. 토양·수질기준 등

###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단위: mg/kg)

물질	1지역	2지역	3지역
카드뮴	4	10	60
구리	150	500	2,000
비소	25	50	200
수은	4	10	20
납	200	400	700
6가크롬	5	15	40
아연	300	600	2,000
니켈	100	200	500
블소	400	400	800
유기인화합물	10	10	3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	4	12
시안	2	2	120
페놀	4	4	20
벤젠	1	1	3
톨루엔	20	20	60
에틸벤젠	50	50	340
크실렌	15	15	45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800	2,0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8	4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4	25
벤조(a)피렌	0.7	2	7

#### ※ 비고

- 1지역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학교용지·구거(溝渠)·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 2지역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염전·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및 잡종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 3지역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부지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반환하거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의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반환 후 용도에 따른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5. 벤조(a)피렌 항목은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침묵을 사용한 지역 (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 환경기준(제2조 관련)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2.11.27>

### 3. 수질 및 생태계

#### 가. 하천

##### (2) 생활환경 기준

등급	상태 (캐릭터)	기준								
		수소 이온 농도 (pH)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mg/L)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mg/L)	총유기 탄소량 (TOC) (mg/L)	부유 물질량 (SS) (mg/L)	용존 산소량 (DO) (mg/L)	총인 (T-P) (mg/L)	대장균군 (균수/100mL)	
									총 대장균 군	분원성 대장균 군
매우 좋음	Ia 	6.5~8.5	1 이하	2 이하	2 이하	25 이하	7.5 이상	0.02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6.5~8.5	2 이하	4 이하	3 이하	25 이하	5.0 이상	0.04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6.5~8.5	3 이하	5 이하	4 이하	25 이하	5.0 이상	0.1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6.5~8.5	5 이하	7 이하	5 이하	25 이하	5.0 이상	0.2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6.0~8.5	8 이하	9 이하	6 이하	100 이하	2.0 이상	0.3 이하		
나쁨	V 	6.0~8.5	10 이하	11 이하	8 이하	쓰레기 등이 떠 있지 않을 것	2.0 이상	0.5 이하		
매우 나쁨	VI 		10 초과	11 초과	8 초과		2.0 미만	0.5 초과		

#### 비고

##### 1.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가. 매우 좋음 : 용존산소(溶存酸素)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나. 좋음 :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다. 약간 좋음 :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라. 보통 :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마. 약간 나쁨 :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바. 나쁨 :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않으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사. 매우 나쁨 :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 아. 용수는 해당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자. 수소이온농도(pH) 등 각 기준항목에 대한 오염도 현황, 용수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는 처리방법에 따라 용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 나. 호소

### (2) 생활환경 기준

등급	상태 (캐릭터)	기 준										
		수소이온 농도 (pH)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mg/L)	총유기 탄소량 (TOC) (mg/L)	부유 물질량 (SS) (mg/L)	용존 산소량 (DO) (mg/L)	총인 (T-P) (mg/L)	총질소 (T-N) (mg/L)	클로로 필-a (Chl-a) (mg/m <sup>3</sup> )	대장균군 (군수/100mL)		
										총 대장균 군	분원성 대장균 군	
매우 좋음	Ia 	6.5~8.5	2 이하	2 이하	1 이하	7.5 이상	0.01 이하	0.2 이하	5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6.5~8.5	3 이하	3 이하	5 이하	5.0 이상	0.02 이하	0.3 이하	9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6.5~8.5	4 이하	4 이하	5 이하	5.0 이상	0.03 이하	0.4 이하	14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6.5~8.5	5 이하	5 이하	15 이하	5.0 이상	0.05 이하	0.6 이하	20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6.0~8.5	8 이하	6 이하	15 이하	2.0 이상	0.10 이하	1.0 이하	35 이하			
나쁨	V 	6.0~8.5	10 이하	8 이하	쓰레기 등이 떠 있지 않을 것	2.0 이상	0.15 이하	1.5 이하	70 이하			
매우 나쁨	VI 		10 초과	8 초과		2.0 미만	0.15 초과	1.5 초과	70 초과			

### 비고

1.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 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그 비율이 16 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는 가목2) 비고 제1호와 같다.
3. 상태(캐릭터) 도안 모형 및 도안 요령은 가목2) 비고 제2호와 같다.
4.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기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다. 지하수

지하수 환경기준 항목 및 수질기준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수도법」 제26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및 항목은 적용하지 않는다.

## 지하수의 수질기준(제11조 관련)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4] <개정 2010.2.16>

1.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

2. 지하수를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단위: mg/L)

항목	이용목적별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
일반 오염 물질 (4개)	수소이온농도(pH)	5.8~8.5	6.0~8.5	5.0~9.0
	총대장균군	5,000 이하 (균수/100mL)	-	-
	질산성질소	20 이하	20 이하	40 이하
	염소이온	250 이하	250 이하	500 이하
특정 유해물질 (15개)	카드뮴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비소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시안	0.01 이하	0.01 이하	0.2 이하
	수은	0.001 이하	0.001 이하	0.001 이하
	유기인	0.0005 이하	0.0005 이하	0.0005 이하
	폐놀	0.005 이하	0.005 이하	0.01 이하
	납	0.1 이하	0.1 이하	0.2 이하
	6가크롬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이하	0.03 이하	0.06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15 이하	0.3 이하	0.5 이하
	벤젠	0.015 이하	-	-
	톨루엔	1 이하	-	-
	에틸벤젠	0.45 이하	-	-
크실렌	0.75 이하	-	-	

##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염소이온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어업용수

나. 지하수의 이용 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해수침입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염소이온 농도가 증가한 경우

2.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가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먹는물의 수질기준(제2조관련)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11.12.30>

### 1. 미생물에 관한 기준

- 가. 일반세균은 1mL 중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플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저온일반세균은 20CFU/mL, 중온일반세균은 5CFU/m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병에 넣은 후 4℃를 유지한 상태에서 12시간 이내에 검사하여 저온일반세균은 100CFU/mL, 중온일반세균은 20CFU/mL를 넘지 아니할 것
- 나. 총 대장균군은 100mL(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조제1항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 실시하는 총 대장균군의 수질 검사 시료(試料) 수가 20개 이상인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검출된 시료 수가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다. 대장균·분원성 대장균군은 10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라. 분원성 연쇄상구균·녹농균·살모넬라 및 쉬겔라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마.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은 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바. 여시니아균은 2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 가. 납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나. 불소는 1.5mg/L(샘물·먹는샘물 및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의 경우에는 2.0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다. 비소는 0.01mg/L(샘물·염지하수의 경우에는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라. 셀레늄은 0.01mg/L(염지하수의 경우에는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마. 수은은 0.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바. 시안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사. 크롬은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아. 암모니아성 질소는 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자. 질산성 질소는 10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차. 카드뮴은 0.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카. 보론은 1.0mg/L를 넘지 아니할 것(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타. 브롬산염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오존으로 살균·소독 또는 세척 등을 하여 음용수로 이용하는 지하수만 적용한다)
- 파. 스트론튬은 4mg/L를 넘지 아니할 것(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3.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 가. 페놀은 0.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나. 다이아지논은 0.02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다. 파라티온은 0.06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라. 페니트로티온은 0.04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마. 카바릴은 0.07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바. 1,1,1-트리클로로에탄은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사.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아.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자. 디클로로메탄은 0.02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차. 벤젠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카. 톨루엔은 0.7mg/L를 넘지 아니할 것
- 타. 에틸벤젠은 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 파. 크실렌은 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하. 1,1-디클로로에틸렌은 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 거. 사염화탄소는 0.002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너.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은 0.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더. 1,4-다이옥산은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4.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샘물·먹는샘물·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먹는해양심층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잔류염소(유리잔류염소를 말한다)는 4.0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나. 총트리할로메탄은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다. 클로로포름은 0.08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라. 브로모디클로로메탄은 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마.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바.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사.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은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아.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9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자.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04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차. 할로아세틱에시드(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 및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의 합으로 한다)는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카. 포름알데히드는 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5.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 가. 경도(硬度)는 1,000mg/L(수돗물의 경우 300mg/L,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1,200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다. 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 다만, 맛의 경우는 샘물, 염지하수,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라. 동은 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마.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바. 세제(음이온 계면활성제)는 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 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검출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사. 수소이온 농도는 pH 5.8 이상 pH 8.5 이하이어야 할 것. 다만, 샘물, 먹는 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pH 4.5 이상 pH 9.5 이하이어야 한다.

아. 아연은 3mg/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염소이온은 250mg/L를 넘지 아니할 것(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차. 증발잔류물은 수돗물의 경우에는 500mg/L,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 심층수의 경우에는 미네랄 등 무해성분을 제외한 증발잔류물이 500mg/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철은 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타. 망간은 0.3mg/L(수돗물의 경우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파.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및 전용상수도를 제외한 수돗물의 경우에는 0.5NTU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하. 황산이온은 200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먹는샘물 및 먹는물 공동시설의 물은 250mg/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 알루미늄은 0.2mg/L를 넘지 아니할 것

## 6. 방사능에 관한 기준(염지하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세슘(Cs-137)은 4.0mBq/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스트론튬(Sr-90)은 3.0mBq/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삼중수소는 6.0Bq/L를 넘지 아니할 것



##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식품위생별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13.3.23>

###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 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 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작업장은 폐기물·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라.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 마. 화장실

1)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 바. 창고 등의 시설

1)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 검사실

- 1)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 나) 같은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에 검사실을 갖추고 그 검사실에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 다) 같은 영업자가 설립한 식품 관련 연구·검사기관에서 자사 제품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식품관련 연구·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가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의 검사실에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 2) 검사실을 갖추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 아.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 자.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선박에서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만 설비할 수 있다.
  - 가) 작업장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창고 등의 시설 등  
냉동·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다)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두어야 한다.
- 2)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다.

- 3)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업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및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양곡가공업 등록을 한 업소의 시설 및 작업장도 또한 같다.
- 4)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5) 의약품제조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함께 허가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제조시설에 대하여 의약품이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어 식품의 제조·가공시설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생략)

## 3.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시설기준(생략)

## 4. 식품운반업의 시설기준(생략)

## 5.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 가. 공통시설기준

- 1) 작업장 또는 판매장(식품자동판매기영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 판매업을 제외한다)
  - 가)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나) 식품소분업의 소분실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2) 급수시설(식품소분업·식품등수입판매업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화장실(식품등수입판매업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제외한다)

가)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 나)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 시설기준에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업종별 시설기준

1) 식품소분업

가) 식품등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소분·포장하려는 제품과 소분·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제29조 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13.3.23>

**1. 도축업**

가. 포유류 가축의 도축업

(1) 공통시설기준

- (가) 도축장에는 계류장·생체검사장·격리장·작업실·검사시험실·소독준비실·폐수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가축수송차량의 세척 및 소독시설·탈의실·목욕실·휴게실 등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식당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나) 계류장·생체검사장·격리장·작업실의 바닥은 콘크리트·돌 등 내수성이 있고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미끄럼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100분의 1 정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 (다) 계류장은 가축의 종류별로 구획하여 개방식으로 설치하되, 가축을 하역할 수 있는 시설과 사람 및 가축의 출입통제가 가능한 출입문이 있어야 한다.
- (라) 계류장에는 가축의 몸통을 세척할 수 있는 샤워시설과 가축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마) 생체검사장은 작업실과 인접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생체검사에 편리한 보정틀·조명장치(밝기가 11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등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 (바) 생체검사장과 작업실 사이에는 가축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구획된 통로가 있어야 한다.
- (사) 작업실 안의 바닥과 벽,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벽과 벽 사이의 모서리는 곡선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타일·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시공하여 작업과 청소가 쉽도록 하여야 한다.
- (아) 작업실의 천정은 내수성재료를 사용하여 이물이나 먼지 등이 붙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천정에 설치하는 아이빔은 도체를 매달 때 도체가 바닥에 닿지 아니할 정도의 높이를 두어야 한다.
- (자) 작업실 안은 작업과 검사가 용이하도록 자연채광 또는 인공조명장치를 하고 환기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밝기는 220룩스 이상(검사장소의 경우에는 540룩스 이상을 권장한다)이 되어야 하며, 조명장치는 파열시 식육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망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차) 작업실은 도살실·지육처리실·내장처리실로 구획하여 설치하고, 창은 방충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배수구에는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 (카) 작업라인에는 일정간격으로 83℃ 이상의 온수가 나오는 설비를 하여 해체작업과 검사에 사용되는 칼을 소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타) 작업실은 가축이 들어가는 입구를 제외하고는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소·돼지 도축장의 경우 출입문은 공기스크린 장치를 하거나 자동 또는 반자동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파) 도체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기구류는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하고 부식이 되지 않는 스테인리스철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 (하) 검사시험실은 검사관실과 시험실을 구획하여 설치하되, 검사관실에는 서류보관함·옷장·신발장·검사기구상자 등이 있어야 하고, 검사기구상자에는 체온계·청진기·해부기·검인기 등이 있어야 하며, 시험실에는 냉·온수가 나오는 급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 (거) 소독준비실 바닥은 내수성재료로 시공하여야 하며, 소독준비실에는 소독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 등이 있어야 한다.
- (너) 급수시설은 수도물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더) 배수구는 암거를 원칙으로 하며, 실내에서 실외로 통하는 배수구는 트랩(U자관)을 설치하여 냄새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실내의 배수구 덮개는 스테인리스철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상부 개폐식으로 설치하고 덮개의 구멍은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 (러) 화장실은 작업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고 수세설비와 방충·방서설비를 하여야 하며, 수도꼭지는 반자동 또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하여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머) 도축장의 진입로·주차장 및 건물과 건물 사이는 포장을 하여야 한다.
- (버) 폐수처리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한다.
- (서)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폐기물을 퇴비로 활용하는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 (어) 탈의실은 작업실과 인접한 곳에 구획하여 설치하고 탈의실 안에는 종업원 개인별로 옷·신발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있어야 한다.
- (저) 도축장의 주위는 외부에서 도축장의 내부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담장 등 차단시설을 하여야 한다.

(2) 개별시설기준

(가) 소 도축업

- 1) 각 시설의 배치는 별도 4를 기준으로 한다.
- 2) 도축장 부지는 2천㎡ 이상이어야 한다.
- 3) 도축장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따른 시설 외에 원피처리실, 냉장·냉동실, 계량시설 등이 있어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은 퇴비화시설 또는 동물성 폐기물소각로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4) 영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도축장 안에 발골정형실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 발골정형실은 작업실과 구획하여 설치하되,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그 안에는 도체현수시설·발골작업대 및 83℃ 이상의 온수가 나오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5) 각 시설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시설명	면적	시설명	면적
계류장	150㎡ 이상 (1두당 3.3㎡이상)	냉장·냉동실	41.25㎡ 이상 (평면 3.3㎡당 4두 기준)
생체검사장	15㎡ 이상	탈의실 등	도축능력 및 종업원의 이용에 적정한 면적
작업실	100㎡ 이상	부대시설	
검사시험실	20㎡ 이상		
원피처리실	30㎡ 이상		

- 6) 작업실과 냉장·냉동실에는 아이빔을 설치하여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이빔의 높이와 간격은 도체가 바닥이나 벽에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7) 작업실 또는 냉장·냉동실의 아이빔은 식육운반차량의 상차대까지 연결하여 설치하되 자동이송장치의 설비를 권장한다.
- 8) 작업실에는 도체를 매다는 라인별로 지육검사대와 내장검사대가 있어야 하며, 검사대는 2명 이상이 동시에 서서 검사하기에 편리한 크기로 하되, 지육과 내장을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검사자가 검사위치를 자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9) 작업실에는 도체를 절단하는 전기톱과 지육세척장치가 있어야 한다.
- 10) 작업실은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냉방시설의 설비를 권장한다.
- 11) 도살실에는 소가 매달린 상태에서 충분히 방혈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하며, 피를 식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 12) 내장처리실은 작업실 안에 구획하여 설치하거나 도축장 안에 따로 설치하되, 내장검사대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하고, 내장처리실에는 내장처리대·내장운반구 및 세척용수조가 있어야 하며, 그 재질은 스테인리스철재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 13) 냉장·냉동실은 평면 3.3㎡당 우지육 4두를 초과할 수 없는 면적으로 하되, 냉장을 하는 경우에는 입고 후 냉장실 내부온도가 10℃ 이하가 되는 성능이어야 하고, 냉장·냉동실 벽면의 재질은 내수성·무독성 재료로 시공되어야 한다.
- 14) 냉장·냉동실은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시공하되, 문을 열지 않아도 온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온도계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냉장·냉동실 안의 현수시설은 도체가 서로 닿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15) 가축수송차량세척·소독시설은 가능한 한 해당차량이 가축을 하역한 후 차량을 돌리지 아니한 상태로 진행하면서 세척·소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말 도축업(생략)

(다) 양 도축업(생략)

(라) 돼지 도축업

- 1) 각 시설의 배치는 별도 4를 기준으로 한다.
- 2) 도축장의 부지면적은 3천㎡ 이상이어야 한다.
- 3) 도축장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따른 시설 외에 원피처리실(박피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냉장·냉동실 등이 있어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은 퇴비화시설 또는 동물성폐기물소각로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4) 영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도축장 안에 발골정형실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 발골정형실은 작업실과 구획하여 설치하되,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그 안에는 도체현수시설·발골작업대 및 83℃ 이상의 온수가 나오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5) 각 시설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시설명	면적	시설명	면적
계류장	100㎡ 이상 (1두당 0.83㎡ 이상)	냉장·냉동실	61.88㎡ 이상 (평균 3.3㎡당 8두 기준)
생체검사장	15㎡ 이상	탈의실 등	도축능력 및 종업원의
작업실	200㎡ 이상	부대시설	이용에 적정한 면적
검사시험실	20㎡ 이상		
원피처리실	30㎡ 이상		

- 6) 작업실과 냉장·냉동실에는 아이빔을 설치하여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이빔의 높이와 간격은 도체가 바닥이나 벽에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7) 작업실 또는 냉장·냉동실의 아이빔은 식육운반차량의 상차대까지 연결하여 설치하되 자동이송장치의 설비를 권장한다.
- 8) 작업실에는 도체를 매다는 라인별로 지육검사대와 내장검사대가 있어야 하고, 검사대는 2명 이상이 동시에 서서 검사하기에 편리한 크기로 하되, 지육과 내장을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검사자가 검사위치를 자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9) 작업실에는 도체를 절단하는 전기톱과 지육세척장치가 있어야 한다.
- 10) 작업실은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냉방시설의 설비를 권장한다.
- 11) 도살실에는 돼지가 매달린 상태에서 충분히 방혈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하며, 피를 동물의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팀처리시설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 12) 내장처리실은 작업실 안에 구획하여 설치하거나 도축장 안에 따로 설치하되 내장검사대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하고, 내장처리실에는 내장처리대·내장운반구 및 세척용수조가 있어야 하며, 그 재질은 스테인리스 철재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 13) 냉장·냉동실은 평면 3.3㎡당 돈지육 8두를 초과할 수 없는 면적으로 하되, 냉장을 하는 경우에는 입고 후 냉장실 내부온도가 10℃ 이하가 되는 성능이어야 하고 냉장·냉동실 벽면의 재질은 내수성·무독성 재료로 시공되어야 한다.
- 14) 냉장·냉동실은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시공하되, 문을 열지 않아도 온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온도계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냉장·냉동실 안의 현수시설은 도체가 서로 닿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15) 가축수송차량세척·소독시설은 가능한 해당차량이 가축을 하역한 후 차량을 돌리지 아니한 상태로 진행하면서 세척·소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그 밖에 포유류 가축의 도축업

- 1) 공통시설기준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소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 2) 도축장의 위치·구조·규모·시설배치 등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이 해당 가축과 그 식육의 국내수급상황·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나. 가금류 가축의 도축업

### (1) 공통시설기준

- (가) 도축장에는 계류장·도살방혈실·작업실·검사시험실·포장실(지육을 포장하여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소독준비실·폐수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가금수송차량세척소독시설·탈의실·목욕실·휴게실 등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식당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나) 계류장·도살방혈실·작업실의 바닥은 콘크리트·돌 등 내수성이 있고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미끄럼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100분의 1 정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 (다) 계류장은 도축장 안에 설치된 가금의 투입라인에 연결하여 개방식구조로 설치하되, 차광·송풍 및 물뿌림시설이 있어야 하고, 가금수송차량 또는 가금수송용기를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하여야 하며, 조명장치의 밝기는 최소한 11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라) 도살방혈실은 작업실과 차단하여 설치하되, 방혈대에서 작업실의 탕지시설까지의 라인은 도체의 방혈이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길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마) 생체검사대는 도살방혈실 옆에 설치하되, 조명장치의 밝기는 최소한 11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바) 작업실 안의 바닥과 벽,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벽과 벽 사이의 모서리는 곡선으로 처리하고 타일·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내수성 재료로 시공하여 작업과 청소가 쉽도록 하여야 한다.
- (사) 작업실의 천정은 내수성재료를 사용하여 이물이나 먼지 등이 붙지 아니하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 (아) 작업실 안에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도체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기구류는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하고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스테인리스철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 2) 탕지시설·탈모시설·잔모처리시설·내장적출시설·도체절단기 및 냉각시설로 구획하여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내장적출라인별로 도체검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작업실 안은 작업과 검사가 용이하도록 자연채광 또는 인공조명장치를 하고 환기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밝기는 220룩스 이상(검사장소의 경우에는 540룩스 이상을 권장한다)이 되어야 하며, 조명장치는 파열시 식육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망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4) 작업실의 창은 방충설비를 하고 배수구에는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 5) 작업라인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83℃ 이상의 온수가 나오는 설비를 하여 가금의 해체작업과 검사에 사용되는 칼을 소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6) 작업실의 출입구는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자동 또는 반자동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7) 탕지시설은 콤베어식 연속탕지조 또는 자동탕지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 8) 탈모시설은 콤베어식·이동식탈모기 또는 자동식탈모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 9) 내장적출시설 안에는 콤베어식내장운반기 또는 작업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충분한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0) 냉각시설은 냉풍냉각·수냉각 또는 빙수냉각장치로 설치하여야 한다.
  - 11) 내장처리시설은 충분한 면적으로 설치하고 내장처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자) 검사시험실은 책임수의사실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검사시험실 안에는 심부온도계·시료채취기 등 시험기구류와 해부기구세트, 청진기, 기구보관상자, 색소·검인기보관상자(지육을 포장하여 반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냉장고 등 검사에 필요한 기구와 장비가 있어야 하고, 냉·온수가 나오는 급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 (차) 소독준비실의 바닥은 내수성재료로 시공하여야 하며, 소독준비실에는 소독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 등이 있어야 한다.
- (카)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타) 배수구는 암거를 원칙으로 하고, 실내에서 실외로 통하는 배수구는 트랩(U자관)을 설치하여 냄새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실내의 배수구 덮개는 스테인리스철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상부 개폐식으로 설치하고, 덮개의 구멍은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 (파) 화장실은 작업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수세 설비와 방충·방서설비를 하여야 하며, 수도꼭지는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로 하여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하) 도축장의 진입로·주차장 및 건물과 건물사이는 포장을 하여야 한다.
- (거) 폐수처리시설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한다.

- (너)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또는 폐기물을 퇴비 등으로 활용하는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 (더) 탈의실은 작업실과 인접한 곳에 구획하여 설치하고, 탈의실 안에는 종업원 개인별로 옷·신발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있어야 한다.
- (러) 도축장의 주위는 외부에서 도축장의 내부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담장 등 차단시설을 하여야 한다.

(2) 개별시설기준

(가) 닭 도축업

- 1) 각 시설의 배치는 별도 5를 기준으로 한다.
- 2) 도축장 부지면적은 2천백㎡ 이상이어야 한다.
- 3) 도축장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따른 시설 외에 냉장·냉동실, 가축수송용기 세척·소독시설이 있어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은 동물성폐기물소각로 시설 또는 렌더링시설의 설비를 권장한다.
- 4) 각 시설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시설명	면적	시설명	면적
냉장·냉동실 작업실 검사시험실	100㎡ 이상 200㎡ 이상 20㎡ 이상	탈의실 등 부대시설	도축능력 및 종업원의 이용에 적절한 면적

- 5) 작업실은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도축기계를 자동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냉방시설의 설비를 권장한다.
- 6) 탕지시설은 도체의 이동방향과 반대로 온수가 공급되어 깨끗한 온수가 나오는 곳에서 도체를 꺼낼 수 있도록 자동탕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7) 향문제거기, 허파제거기, 기도·식도인출기, 내외부세척기·내장적출시설은 자동설비를 권장한다.
- 8) 검사시험실에는 (1)공통시설기준 중 (자)의 시설·장비 외에 현미경과 혈청검사 또는 잔류물질검사에 필요한 간이검사기구류가 있어야 한다.
- 9) 냉장·냉동실은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시공하되, 문을 열지 않아도 온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온도계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 10) 가축수송차량세척·소독시설은 해당차량이 가축을 하역한 후 차량을 돌리지 아니한 상태로 진행하면서 세척·소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닭 수송용기의 세척·소독시설은 작업실과 구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1) 영업자가 도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모·내장 등 동물성폐기물을 이용하여 사료의 원료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축장 안에 렌더링설비를 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가금류 가축의 도축업

- 1) 공통시설기준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닭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 2) 도축장의 위치·구조·규모·시설배치 등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이 해당 가축과 그 식육의 국내수급상황·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 공동사용시설의 설치생략 등

- (1) 도축업의 영업자가 같은 도축장에서 2종류 이상의 가축을 도살하거나 같은 작업장 안에서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다른 종류의 가축을 도살하려는 경우 검사시험실, 소독준비실, 원피처리실, 내장처리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탈의실, 목욕실, 휴게실, 냉장·냉동실, 가축수송차량세척·소독시설 등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냉장·냉동실의 면적은 가축의 지육별 수용기준을, 도축장의 부지면적은 가축별 면적기준을 각각 합산한 면적이 되어야 한다.
- (2)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외국으로 수출하는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도축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수출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의 요구기준에 적합한 식육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2. 집유업

가. 집유장은 원유취급실 및 검사실 등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나. 집유장의 주위환경은 매연·먼지 및 악취 등이 없어야 하며, 위생적으로 원유를 받거나 저장할 수 있도록 다른 목적의 시설과 격리되어야 한다.

다. 주차장·차도 등은 먼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라. 원유취급실에는 다음 설비를 하여야 한다.

- (1) 저유조 및 밀크펌프 등이 있어야 하고 유량기 및 냉각기는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며, 원유와 직접 접촉되는 부분은 스테인리스철재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서 세척·분해·조립이 쉬운 것으로 설치하되 법 제5조에 따른 용기등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저유조와 밀크펌프는 차량에 부착된 것을 이용할 수 있다.

- (2) 면적은 작업에 충분하도록 하여야 하며, 바닥·내벽·천정 및 출입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가) 바닥은 타일·콘크리트·돌 등 내수성자재를 사용하고 청소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나) 내벽은 내수성자재를 사용하고 바닥에서 최소한 1.5미터까지는 타일·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자재로 사면을 축조하고 청소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작업실의 창은 방충설비를 하고 배수구에는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 (라) 천정은 내수성재료를 사용하여 이물이나 먼지 등이 붙지 아니하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 (마) 출입구는 개폐식으로 하고 그 입구에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채광·조명이 충분하여야 하고 환기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 (4) 사용이 편리한 위치에 위생적인 수세설비 및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5) 저유조는 뚜껑이 있어야 하고 8시간 이상 원유를 저장할 수 있도록 보냉 또는 냉각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6) 계량기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마. 검사실

- (1) 검사실은 30m<sup>2</sup> 이상의 면적으로 하고 원유검사에 필요한 기구·기계 및 시약을 비치하여야 하며, 집유장의 소독 및 악취제거 등을 위한 기구·약품을 상비하여야 한다.
- (2) 원유검사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유성분검사기·세균수검사기 및 체세포검사기는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1. 우유비중계	5개 이상	28. 알콜시험관 또는 알콜시험관	5개 이상
2. 원통실린더	5개 이상	29. 온도계	2종 이상
3. 주정계	5개 이상	30. 냉장고	
4. 진액검사기		31. 집락계산기	
5. 산도측정장치		32. 페트리디쉬	20개 이상
6. 증류수 제조장치		33. 가스버너 또는 전기풍로	2개 이상
7. 젤베르 유지계		34. 비이커(대·중·소)	각 5개 이상
8. 유지방 원심분리기		35. 삼각플라스크(대·중·소)	각 5개 이상
9. 피펫 10ml(황산용)	5개 이상	36. 메스플라스크(대·중·소)	각 3개 이상
10. 피펫 11ml(우유용)	5개 이상	37. 피펫(0.01-10ml 5종)	10개 이상
11. 피펫 1ml(아밀알콜용)	5개 이상	38. 자불소독기	3개 이상
12. 향온수조	2개 이상	39. 뷰우렛	3개 이상
13. 건열멸균기(드라이오븐)		40. 갈때기	2개 이상
14. 고압멸균기		41. 메스실린더	5개 이상
15. 원심분리기		42. 시험관	필요량

16. 화학천평	1대 이상	43. 평량병	10개 이상
17. 교반기		44. 시약병(대·중·소)	각 10개 이상
18. pH메타 또는 pH페이퍼		45. 스탠드	3개 이상
19. 부란기(인큐베이터)		46. 클램프	2개 이상
20. 데시케이터	1대 이상	47. 시험관꽂이	10개 이상
21. 시약스푼	2개 이상	48. 삼발이	2개 이상
22. 가위	2개 이상	49. 진열장(시약보관용)	
23. 핀셋	2개 이상	50. 현미경	
24. 솔	2개 이상	51. 유성분 검사기	
25.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약		52. 세균수 검사기	
26. 시험대(세척대를 포함한다)		53. 체세포수 검사기	
27. 알콜램프	2개 이상		

(3) 검사실 안은 검사가 용이하도록 자연채광 또는 인공조명장치를 하고 환기 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밝기는 220룩스 이상(검사장소의 경우에는 540룩스 이상을 권장한다)이 되어야 한다.

(4) 검사실은 실내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냉·온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5) 검사실 안의 온도계와 습도계는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바. 위생·편의시설

종업원이 이용하기에 충분한 면적의 탈의실 및 휴게실이 있어야 하며 수세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사.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아. 하수구는 암거 또는 상부개폐식으로 하여야 한다.

#### 자. 화장실

(1) 화장실은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위생적인 수세설비를 하여야 한다.

(2) 화장실의 바닥·벽 및 천정은 타일·콘크리트 등 내수성자재로 시설되어야 하고 방충·방서시설을 하여야 한다.

차. 「수질환경정보전법」에 적합한 폐수처리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카. 그 밖의 시설

(1) 집유에 필요한 기계 및 도구 등을 보관하여야 하고 집유탱크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있어야 한다. 다만, 타인과 시설사용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동 시설·장비를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집유장의 주위는 외부에서 집유장의 내부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담장 등으로 차단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 공동사용시설의 설치생략 등

- (1) 허가관청은 집유업의 영업자가 집유한 원유를 유가공업의 작업장에서 처리·가공하는 경우 제3호 축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검사실(검사시험기구 및 장비를 포함한다)·창고·급수시설·화장실·위생편의시설 등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2) 허가관청은 집유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농가에서 집유한 원유를 집유장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유가공업의 작업장 안에 있는 집유시설로 직송하는 경우 원유의 위생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3. 축산물가공업(생략)

### 4. 축산물보관업(생략)

### 5. 식육포장처리업(생략)

### 6. 축산물운반업

가. 운반시설

- (1)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박이 있어야 한다.
- (2) 냉동 또는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문을 열지 아니하고도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외부에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적재고는 혈액·오수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4) 도축장에서 지육을 운반하는 냉장차량의 경우 지육을 매달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나. 세차시설

세차장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적합한 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세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 영업자가 공동으로 세차장을 설치하거나 타인의 세차장을 사용계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다. 차고

축산물운반용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전용차고를 두어야 한다. 다만, 전용차고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타인의 차고를 사용계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라. 영업장

영업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7. 축산물판매업

####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가)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 2) 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일정 장소(백화점·마트 등의 건물 내부에 위치한 식품매장 등으로 한정한다)에서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축산물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축산물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식육판매업의 작업실에 관하여는 제3호가목(2)를 준용한다. 다만, 포장육·수입육을 가공(절단·분쇄·포장을 말한다)없이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 등에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로서 소비자에게 직접 진열하여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급수시설(우유류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장을 제외한다)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4호가목을 준용한다. 다만, 식육판매업(식육을 절단·분쇄 등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제5호가목을 준용한다.

#### (4)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축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통한 가격 안정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 내에 특정장소에서 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나. 개별시설기준

##### (1) 식육판매업

(가) 영업장의 면적은 26.4㎡ 이상을 권장한다.

(나) 영업장에는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포장육·수입육을 가공(이 목에서는 절단·분쇄·포장을 말한다)없이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 등에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육판매업소와 같은 시·군·자치구에 위치한 축산물보관업 영업장의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식육을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 등과 같은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전문적으로 납품만 하는 경우로서 직접 진열·판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진열상자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식육을 자기업소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스스로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호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마) 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장을 두고 식육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만 식육을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식육의 위생 및 유통질서 등을 고려하여 이동판매 장소별로 판매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1) 판매차량은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 2) 판매차량에는 칼·도마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물탱크, 진열상자, 판매대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진열상자는 식육을 10℃ 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 4) 판매차량의 세차 및 차고에 대해서는 제5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 5) 판매차량의 외부에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소 명칭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바) 공동사용시설의 설치 생략

신고관청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포장처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가) 세척시설·보관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세척시설은 부식성이 없고 내수성 재질이어야 한다.
- (다) 보관시설은 10℃ 이하의 전기냉장 또는 영하 18℃ 이하의 전기냉동이 가능하여야 하고,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 (라) 진열상자는 식육부산물을 종류별로 진열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 (마) 진열상자는 내부에 온도계를 비치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되어야 하며, 진열한 식육부산물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 (바) 식육부산물을 채취·수집·운반하는 기구는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3) 우유류판매업

- (가) 판매장에는 우유류를 10℃ 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우유류 전용의 전기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그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 (나) 소비자에게 배달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인 운반용기가 있어야 한다.

(4) 축산물수입판매업

-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 (나)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실온에서 보관할 수 없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냉장·냉동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축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6) 식용란수집판매업

(가) 영업장에는 식용란을 검란·선별(검란·선별이 된 계란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포장·운반하기 위한 장비 및 식용란의 표면과 포장에 날짜를 인쇄할 수 있는 장비(인쇄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나) 영업장에는 직사광선이 차단되어야 하며, 방서·방충시설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영업장의 내부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냉장된 식용란을 처리하는 작업실인 경우에는 실내 온도를 15℃ 이내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식용란을 구입하거나 운송하기 위해 직접 운반하는 경우 운반차량을 갖추어야 한다. 운반차량은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냉장된 식용란을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마) 공동사용시설의 설치 생략

신고관청은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알가공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Ⅲ.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법률 해설



### Ⅲ-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연혁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연혁(요약)

법 률	시 행 령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li> <li>– 제정 2012.6.1 법률 제11459호</li> <li>– 시행 2013.6.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li> <li>– 개정 2013.3.23 법률 제11705호</li> <li>* 정부조직법 부칙에서 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li> <li>– 제정 2013.5.31 대통령령 제24560호</li> <li>– 시행 2013.5.3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li> <li>– 제정 2013.6.1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호</li> <li>– 시행 2013.6.12</li> </ul>

# 1. 법 률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2012.6.1 법률 제11459호, 시행 2013.6.2)】

## ◇ 제정 이유

- 친환경 인증제도의 다원화로 사업자 및 인증기관이 이중으로 지정되고, 인증사업자와 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인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며, 인증제도에 대한 동등성(Equivalence) 규정이 없어 통상문제가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바, 외국의 유기 가공식품 인증에 대해서는 동등성을 인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원화된 인증제도를 일원화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관련 제품의 인증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 임

## ◇ 주요 내용

- 법 제명 「친환경농어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친환경농식품 인증제도를 통합·일원화하여 유기식품 등 인증제도와 무농약농수산물 등 인증제도로 체계화함(안 제명, 제19조 및 제34조)
-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인증사업자가 부정 행위 시 인증취소 외에 인증표시 정지·제거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추가함
-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이 법에 따른 인증제와 동등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기가 공식품 인증에 대해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부정행위 금지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사업장 불시검사, 무상 시료 채취 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인증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및 인증기관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3.3.23 법률 제11705호, 시행 2013.6.2)】

####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항만 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을 친환경농업 육성계획과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으로 분리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 2. 시행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2013.5.31, 대통령령 제24560호, 시행 2013.5.31)】

###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고,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는 친환경 농수산물 등에 대한 각종 인증제도를 유기(Organic)식품등 인증제도, 무농약농산물등 인증제도 및 유기농어업자재 공시·품질인증제도로 통합·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1459호, 2012.6.1 공포, 2013.6.2 시행)됨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하는 경우 유기식품등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농산물·축산물·임산물과 유기수산물의 비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하도록 그 소관을 분명하게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한 위임·위탁 범위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3.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 2013.6.1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호, 시행 2013.6.12)】

####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고,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는 친환경 농수산물 등에 대한 각종 인증제도를 유기(Organic)식품등 인증제도,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제도 및 유기농어업자재 공시·품질인증제도로 통합·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1459호, 2012. 6. 1 공포, 2013. 6. 2 시행)됨에 따라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축산물등의 인증을 위한 기준, 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인증품의 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을 위한 기준 및 신청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Ⅲ-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요





## 1. 목 적

친환경인증제도가 농산물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수산물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유기가공식품은 「식품산업진흥법」에 각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어 인증제도의 다원화로 인한 사업자의 이중 인증, 인증기관의 이중 지정 등 불편이 따르고 인증사업자(농가, 업체)와 민간 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부정유통사례 등으로 인한 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인증제도에 대한 동등성(Equivalency) 규정이 없어 통상문제가 제기되고, 양식수산물 및 비식용유기제품 등은 인증대상에 미포함되어 있는 등 현행 친환경 관련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률 명칭을 개정하여 다원화된 인증제도를 일원화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식품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친환경관련 제품의 인증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2. 연혁

- 2010년 8월 13일 송훈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12. 1)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 2010년 12월 16일 유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4. 13)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 2011년 10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1. 17)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 2011년 12월 21일 정범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이미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중인 법률안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므로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바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2. )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2. 2. 9.)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3. 구성

- 이 법률은 총 7장 62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농림축산식품부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있음

### 4. 주요내용

#### 가. 친환경농업육성계획(7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는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함.
- 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나가기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게 되며, 농업환경의 오염실태와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등을 강구하고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의 추진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게 됨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친환경농업육성계획 5개년 계획(2001~2005년),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06~2010년)을 수립하여 분야별로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해왔으며, 2011년 1월에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11~2015년)을 수립하여 2차 5개년 계획까지의 양적성장을 바탕으로 생산·유통·소비·가공 등을 연계한 질적성장을 추구

## 나. 농어업 자원과 농어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11조~12조)

- 농업의 기본환경인 토양과 수자원의 오염현황을 파악하여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 자료로 활용해 나가기 위해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토록 함.
- 실태조사 평가는 주기적으로 실시하되, 농경지의 비옥도, 농업용수 수질 등 농업의 환경오염 내용뿐만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도 조사항목에 포함함.
- 실태조사 및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의 소유자 등은 조사행위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시료는 필요한 최소량만 채취토록 하여 타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였음.
- 또한, 농업환경실태조사 및 평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에 위임하며, 관련 민간단체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함

## 다.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또는 친환경농산물,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유기농업자재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라.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제(19조~20조, 26조, 34조)

- 인증은 유기식품등(유기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농산물등(무농약농산물, 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이라 한다)로 분류하고, 인증을 받고자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민간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등임을 인증받아 포장·용기 등에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등 표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증품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 또는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등 인증을 받으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임) 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음

-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인증 기준·표시방법 및 허용되는 물질 등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관리함
-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등을 인증한 경우나 인증심사, 재심사의 처리 절차·방법 또는 인증 갱신 및 인증품의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할 수 있도록 함
-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나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여 인증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함

#### 마. 유기농업자제의 공시 및 품질인증(37조~51조)

- 유기농업자제 제품의 개발촉진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공시제도와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도록 함
- 유기농업자제에 대한 시험·분석등을 수행하는 시험연구기관을 지정 운영 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등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함
-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을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5년마다 재지정을 받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공시등 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

- 유기농업자재 제품의 생산 및 수입자에게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받은 경우 또는 공시등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공시등기관이 공시등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지정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공시등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시등사업자 또는 공시등기관이 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한 경우 등에는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승계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임)에게 신고하도록 함

**바. 「농약관리법」등의 적용배제(52조)**

-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는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사.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등의 우선구매(55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증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함

**아. 청문 등(57조)**

-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의 취소, 공시등 기관의 지정 및 공시등 지정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함

**자.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58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 산림청, 시·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식품연구원의 장이나 민간단체의 장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

#### 차. 별칭 등(60조~61조)

-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등)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업무를 하거나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지났거나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인증업무를 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를 한 경우,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경우, 인증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여 주는 경우,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유기농업자재) 공시등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시등업무를 한 경우, 공시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공시등업무를 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등을 받거나 공시등 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공시등을 받지 아니한 자재에 공시등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한 경우,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업자재에 공시등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경우, 공시등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공시등을 받지 아니한 자재에 공시등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것임을 알거나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업자재에 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것임을 알고도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업자재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공시등이 취소된 자재임을 알고도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업자재로 판매한 경우, 공시등을 받지 아니한 자재를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업자재로 광고하거나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이나 공시등 기준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물질 등을 유기농업자재에 섞어 넣은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인증 또는 공시등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인증 또는 공시등 업무를 한 경우, 인증품 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업자재의 표시 제거·정지·변경 또는 판매금지,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명령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5. 기타

- 이 법의 관계법령으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산업진흥법, 환경정책기본법, 토양환경보전법, 행정절차법, 형법 등이 있음.





### Ⅲ-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별 해설



##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해설>

-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이 다수확 등 생산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짐으로써 농약·화학비료 등의 과다사용과 축산분뇨 등의 발생으로 농경지, 농업용수 등의 오염문제가 대두
- 또한, 일부 농경지에는 특정 양분함량이 증가하고 유기물 함량이 저하되는 등 지력이 약화되어 농업환경의 지속성이 우려됨
- 국제적으로는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되면서 지구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농업환경무역의 연계 논의가 점차 강화되고 관련 국제규범이 제정됨으로써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농업환경기반을 유지·보전하고, 국민들의 안전농산물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며 향후 유기농산물의 국제교역 증대에 적극 대비해 나가기 위하여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부각됨.
- 이에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증대와 친환경농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어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이하“농어업”이라 한다)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유기농수산물
  - 나.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수산물(이하 “무농약농수산물등”이라 한다)
3. “유기”[Organic]란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4. “유기식품”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0제7호의 식품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비식용유기가공품”이란 사람이 직접섭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용기·포장,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
6. “유기농어업자재”란 유기농수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7. “허용물질”이란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수산물등 또는 유기농어업 자재를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8. “취급”이란 농수산물, 식품, 비식용가공품 또는 농어업용자재를 저장·포장[소분(小分)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9. “사업자”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제조·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해 설>

- “친환경농업”을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하여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농업형태로 명확히 함.
- 친환경농업의 범위에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 뿐 만아니라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농법도 포함되도록 함
- 또한,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을 말하며, 유기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을 “유기”라 하며,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유기식품”으로 정의 함
- “비식용유기가공품”은 사람이 직접섭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을 말하며 「식품위생법, 약사법, 화장품법」에 따른 기구, 용기·포장, 의약품 및 화장품은 제외 함
- 유기농산물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를 “유기농업자재”로 정의 하고,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 또는 유기농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물질을 “허용물질”로 정의 함
- 농산물, 식품, 비식용가공품 또는 농업용자재를 저장·포장·운송·수입 또는 판매하는 활동을 “취급”이라 하며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 등, 무농약농산물등 또는 유기농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사업자”로 정의 함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에 관한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에 관한 육성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훈련·기술개발·경영지도 등을 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한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표시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해 설>

-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등에 대한 산업발전을 적극 육성·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농업인 등 각 주체별 역할분담이 중요하므로, 정부 뿐 아니라 친환경농업관련 민간단체 및 농업인, 제조·가공업체 등 각각의 역할과 책무를 부여하여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등의 관련 산업도 효율적으로 육성해 나갈.
- 정부는 친환경농업 등에 대한 기본계획 등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친환경농업 시책을 추진하며, 민간단체는 그 회원들과 농업인등에게 필요한 교육·훈련·기술개발에 노력하도록 함.
- 또한, 농업인은 화학비료·유기합성농약 등의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법을 실천하여 오염을 줄여나감으로써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해 나가는 책무를 수행토록 함.

## 2. 제2장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육성·지원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어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4.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보급·교육 및 지도 방안
5. 친환경농어업의 시범단지 육성 방안
6. 친환경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유기식품등의 생산·유통·수출 활성화와 연계강화 및 소비 촉진 방안
7. 친환경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8.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강화 방안
9. 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10.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육성 방안
11.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운 육성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①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도실천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군·자치구 실천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해 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 5년마다 친환경농업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는 친환경농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 제1단계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은 2000년 12월에 수립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분야별 육성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제2단계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은 2006년 2월에 발표되어 2010년까지 분야별 과제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제3단계(2011~2015) 계획은 2011년 1월에 발표하여 친환경농업육성대책을 분야별로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제3단계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과제별로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는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가축분뇨, 폐농어업자재 및 폐수 등 농어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 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가축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폐농어업자재의 투기(投棄) 방지 및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해 설>

- 농업활동으로 인한 주요 오염원은 유기합성농약, 화학비료, 축산분뇨 등으로 농업환경 오염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폐비닐농약빈병폐농기계 등과 같은 폐영농자재로 인해 농촌환경이 오염되어 가고 있음.
- 따라서 농업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이들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내용을 본 법에서 종합적으로 나열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업의 규제사항을 포괄적으로 정함.
- 다만, 시책추진에 있어서 환경관련 법률에 규정한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이러한 기준을 초과하여 농업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토록 함.

**제10조(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농어업 용수, 대기 등 농어업 자원을 보전하고 토양 개량, 수질 개선 등 농어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어업 용수 오염 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와 제16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 <해 설>

- 농업생산의 근본요소인 농경지, 농업용수 및 농촌대기를 보전하는 것이 친환경농업 추진의 기본임.
- 따라서 이들 농업자원을 보전하고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토양개량 사업, 농업용수 수질개선, 농업활동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등의 농촌 대기 보전대책을 추진하도록 본 법에서 종합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함.
- 시책추진에 있어서 환경관련법률에 규정한 기준을 준수토록하고, 이러한 기준을 초과하여 농업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토록 규정함.

**제11조(농어업 자원과 농어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자원보전과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1. 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 농어업 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3. 농약·비료·항생제 등 농어업투입재의 사용 실태
4. 수자원 함양(涵養), 토양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실태
5. 축산분뇨 퇴비화 등 해당 농어업 지역에서의 자체 자원 순환사용 실태
6. 그 밖에 농어업 자원 보전 및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평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장에 대한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농어업 자원과 농어업 환경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잇닿

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게 하거나 조사 및 평가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 대상 사업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해 설>

- 농업의 기본환경인 토양과 수자원의 오염현황을 파악하여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자료로 활용해 나가기 위해 농업환경의 실태 조사 및 평가를 실시토록 함.
- 실태조사 및 평가는 주기적으로 실시하되, 농경지오염도, 농업용수 수질 등 농업의 환경오염 내용뿐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도 조사 항목에 포함
- 실태조사 및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다른사람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의 소유자 등은 조사행위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시료는 필요한 최소량만 채취토록 하여 타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였음.
- 또한 농업환경실태조사 및 평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에 위임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교육·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거나 교육·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친환경농수산물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제15조(친환경농어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사업자는 친환경농어업의 기술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또는 친환경농수산물
2.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

### <해 설>

- 친환경농업의 기초확립 및 확산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의 기술연구 개발 및 보급이 매우 중요하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환경농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기술보급, 교육훈련 및 홍보시책을 강구토록 함.
- 이와 아울러 친환경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위한 대대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저변을 확대하도록 함.
- 국가 및 지자체와 농업인간에 친환경농업기술을 교류해 나가고, 친환경농업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확산발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함.
-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교육훈련, 기술교류, 홍보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친환경농업 관련 민간단체에 위임·위탁(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 또한, 유기식품등·친환경농산물 또는 유기농업자재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친환경농업기여도에 따라 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17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친환경농어업 관련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 공동조사, 연구·개발 등에서 서로 협력하며, 환경을 위해(危害)하는 농어업 활동이나 자재 교역을 억제하는 등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18조(국내 친환경농어업의 기준 및 목표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 여건, 국내 자원, 환경 및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국내 친환경농어업의 기준 및 목표를 세워야 한다.

### <해 설>

-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 환경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농업환경무역을 연계 논의하고자 하는 그린라운드가 점차 가시화 됨에 따라 친환경농업관련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국제기준 및 협약과 국내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내 친환경농업의 기준 및 목표를 수립하도록 함.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제협약의 정신을 도입하여 친환경농업육성 및 제도를 보완하고 국제화 시대에 적극 대비함.

### 3. 제3장 유기식품 등의 인증 및 관리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해설>

-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은 유기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유기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자,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제조·가공하는 자와 그 품목을 취급하는자 까지 인증대상자로 함
- 유기식품등의 유기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및 취급자 등의 경영관리 및 단체관리기준, 재배포장·용수·종자의 기준, 재배방법 기준, 생산물의 품질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준과 차별화 함

**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① 유기식품등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 또는 제31조제4항에 따라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인증품의 판매금지 명령을 받아서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6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 19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에 맞는지 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을 해 주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심사를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 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인증을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그 밖에 인증의 신청, 제한, 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등에 필 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한다.

### <해 설>

- 유기식품등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 인증을 받은 유기 식품등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가 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기식품등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않았거나 인증 표시의 제거·정지등의 처분기간 중 이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 하지 못하도록 함
-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이나 정부가 지정한 민간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토록 하였으며, 인증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은 그 인증 신청이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서를 교부토록 함
- 인증신청인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 으로부터의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재심사신청서를 해당 인증심사를 실시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기관의 인증심사 오류에 의한 인증신청인의 피해를 방지토록 하였음.

**제21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제20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제 20(조제 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인증을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갱신신청을 하여 그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다른 인증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을 하지 아니 하려는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내에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인증품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인증품에 대하여만 그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하된 인증품은 그 제품의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그 인증표시를 유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제3항에 따른 인증품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 <해 설>

- 유기식품등의 인증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였으며, 인증의 유효기간내 출하를 종료하지 못한 인증품이 남아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또한 유효기간 종료후에도 계속하여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 갱신신청을 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 인증사업자는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매년 1월 2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인증관리 정보시스템(<http://www.enviagro.go.kr>)에 등록하는 한편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2년간 보관하여 인증품의 신뢰성 향상을 높이고자 함

**제23조(유기식품등의 표시 등)** ① 인증사업자는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이하 “포장등”이라 한다)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시판 또는 풋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에게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면서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에 대하여는 사용한 유기농수산물의 함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기표시에 필요한 도형이나 글자, 세부 표시 사항 및 표시방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 설>

-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유기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및 비식용 유기가공품에 대하여 유기식품등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증번호, 품목 및 생산지 등의 관련 정보를 함께 표시하도록 함

**제24조(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전업(轉業),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인증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처분의 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해 설>

-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와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기준 또는 유기식품등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때, 전업(轉業),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도록 함.
- 유기식품등의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등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8로 정함

**제25조(동등성 인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체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 인증과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품목 범위, 동등성을 인정한 국가 또는 인증기관의 의무와 사후관리 방법, 유기가공식품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해 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 정부와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고, 이 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체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증을 거친후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하여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유기식품등의 인증업무를 계속하려는 인증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 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업무와 제3항에 따른 지정갱신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기관 지정 및 갱신 관련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은 지정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업무의 범위, 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 관련 절차, 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과 인증기관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인증업무의 휴업·폐업)** 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인증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인증사업자에게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 <해 설>

- 유기식품등의 인증 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외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 일정요건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토록 함.

-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함
-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구비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갱신 받도록 하며, 갱신 심사결과 인증능력 미달자는 인증기관 갱신에서 제외함으로써 민간인증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였고
- 인증기관 지정업무 및 지정갱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위임 할 수 있도록 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식품연구원, 대학교 또는 그 소속법인, 한국농수산대학,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고하고, 인증유효기간(1년)이 끝나지 아니한 인증사업자에게는 인증기관의 휴업·폐업내용을 알리도록 하여 인증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등을 인증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방법 또는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인증품의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6조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9.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해 설>

- 부실인증품으로 인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 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방법 등을 위반했을 경우, 해산·부도 등으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업무정지 기간중에 인증을 한 경우 등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할 수 있도록 함

- 부정행위 등으로 지정취소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인증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0로 정함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을 받거나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는 행위
2.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3.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여 주는 행위
5.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6.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에 따른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7.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8.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하는 행위

### <해 설>

- 비인증품이 인증품으로 둔갑 판매될 경우 인증품의 신뢰성 저하 및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비인증품이 인품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위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관으로 지정받는 행위, 비인증품의 혼합판매, 인증품의 허위표시, 인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외국어 표시를 하는 행위,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인증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 함

**제31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하게 하거나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인증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23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때에는 인증사업자 또는 그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정지·변경, 인증품의 판매금지,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증품에 대한 인증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 후단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이 제20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지,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는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9조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인증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6조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3.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 <해 설>

-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하게 하거나, 인증사업자가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고 있는 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결과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인증기관이 유기식품등의 인증신청 및 심사, 지정기준, 인증과정에서 얻은 정보 등을 인증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 또한, 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업무,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제33조(인증기관 등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인증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제품 등을 계속하여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려는 상속인
2. 인증사업자나 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인증사업자나 인증기관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인증심사를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의 장(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에 한 제24조제1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해 설>

-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이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합병시 인증을 받은 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함.
- 다만,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자격을 갖춘 자가 승계를 받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위승계가 이루어진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토록 함.

## 4. 제4장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제34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대상과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무농약농수산물등을 생산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 35조제 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제한,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사업자의 준수 사항,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 20조부터 제 22조까지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수산물등”으로 본다.

⑤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 식품등”은 “무농약농수산물등”으로 본다.

### <해 설>

-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대상을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및 그 품목을 취급하는 자로 하고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경영관리 및 단체관리 기준, 재배·포장·용수 및 종자기준, 재배방법 기준, 생산물의 품질관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인증의 신청, 제한,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유효기간,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 정지등에 관한 사항 등은 “유기 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등”으로 보며
- 인증 부정행위의 금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승계 등에 대한 사항은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등”으로 봄

**제35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유효기간·갱신·지정변경, 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인증업무의 휴업·폐업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수산물등”으로 본다.

<해설>

-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이외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 일정요건을 갖춘 자를 무농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토록 함
  -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임)
-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유효기간·갱신·지정변경,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인증업무의 휴업·폐업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대하여는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등”으로 봄

**제36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①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무농약농수산물등에 직접 또는 그 포장 등에 무농약, 무항생제(축산물 또는 수산물만 해당한다), 활성처리제 비사용(해조류만 해당한다)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를 표시(이하 “무농약농수산물등표시”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시판 또는 풋말에 표시할 수 있다.  
 ②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생산방법 등에 관한 정보의 표시, 그 밖에 표시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표시”는 “무농약농수산물등표시”로 본다.

<해설>

-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에 무농약이나 무항생제 도형과 문자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코자 할 때에는 표시판 또는 풋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인증번호, 품목 및 생산지 등의 관련 정보를 함께 표시하도록 함

## 5. 제5장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37조(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농어업자재가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농어업자재의 개발을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효능이 우수한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시 또는 품질인증(이하 “공시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등을 하기 위한 공시등의 대상 및 공시등에 필요한 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해설>

- 유기농어업자재를 공시품과 품질인증품으로 분류하고, 공시품은 효과와 효능을 보증하지 않으나 품질인증품은 효과와 효능을 보증하는 것으로 효능에 관한 사항과 인증마크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시 및 품질인증에 대한 기준과 신청방법 등을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정함

**제38조(유기농어업자재 공시등의 신청 및 심사 등)** ①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공시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이하 “공시등기관”이라 한다)에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발급한 시험 성적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시등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1항 또는 제49조제4항에 따라 판매금지 또는 공시등의 표시 제거·정지 또는 사용정지의 명령을 받아서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6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공시등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 37조제 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에 맞는지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고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공시등을 해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시등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공시등을 받은 자(이하 “공시등사업자”라 한다)가 공시등을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기관 의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등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그 밖에 공시등의 신청, 제한, 심사, 재심사 및 공시등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시등의 유효기간 등)** ① 공시등의 유효기간은 공시등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공시등사업자가 공시등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공시등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공시등을 한 공시등기관에 갱신 신청을 하여 그 공시등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등을 한 공시등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공시등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시등의 갱신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해 설>

- 유기농업자재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에 신청하도록 하고, 공시등이 취소된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경우 또는 판매금지 등의 처분기간중에 있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고
- 공시등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심사를 한 공시등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하도록 함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간의 유효기간은 유기농업자재공시등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제51조(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신청)에서 정함

**제40조(공시등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공시등사업자는 공시등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시등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등 심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 <해 설>

- 공시등사업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업자재의 생산·수입 및 판매한 실적을 공시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한편, 공시등의 신청 및 심사, 갱신, 표시에 관한 자료 또는 서류 등을 생산연도 다음 해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하여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신뢰성 향상에 기여 함

**제41조(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학 및 민간연구소 등을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시험을 수행 할 수 있는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 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가. 시험성적서

나. 원제(原劑)의 이화학적(理化學的)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  
다. 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

라. 중금속 및 이화학적 분석 결과를 적은 서류

마. 그 밖에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시험·분석과 관련된 서류

3.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 ④ 그 밖에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해 설>

-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일정한 시설 및 장비등 갖춘 법인을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하여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시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기관지정에 대한 기준을 시행규칙 별표 15로 정함
  -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임)
- 거짓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 등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였거나 지정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지정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업무실적이 없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지정을 취소 함

**제42조(공시등의 표시 등)** 공시등사업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포장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등을 나타내는 도형 또는 글자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등의 번호, 유기농어업자재의 명칭 및 사용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해 설>

- 유기농업자재를 공시품과 품질인증품으로 분류하고, 공시품은 효과와 효능을 보증하지 않으나 품질인증품은 효과와 효능을 보증하는 것으로 효능에 관한 사항과 인증마크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기농업자재의 표시기준은 시행규칙(별표 17)으로 정함



**제43조(공시등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등기관은 공시등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시등을 취소하거나 판매금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공시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시등을 받은 경우
2.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전업·폐업 등으로 인하여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 지도 결과 공시등의 제품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등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시등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공시등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공시등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공시등기관의 장은 직접 공시등을 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관리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시등의 취소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처분의 기준,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해 설>

-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시등을 받은 때와 공시등 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표시사항 위반, 판매금지, 공시등의 표시 제거·정지·변경 또는 사용정지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전업·폐업 등으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공시등을 취소하도록 함
- 공시등사업자 또는 유통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6로 정함

**제44조(공시등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시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공시등기관으로 지정하여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공시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등의 업무를 계속하려는 공시등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공시등기관은 지정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신청, 지정갱신 및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해 설>

-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공시등 업무를 농촌진흥청 및 민간인증기관에서 전담해 왔으나 이를 민간인증기관으로 일원화하였고, 공시등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자를 공시등 기관으로 지정하여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등 업무를 수행토록 함
  - 공시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임)
- 공시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자에 대하여 자격조건, 구비조건을 정기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공시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공시등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갱신을 받도록 하였으며, 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신청, 지정 갱신 및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함

**제45조(공시등기관의 준수사항)** 공시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시등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공시등의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할 때에는 공시등기관의 사무소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거나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것
3. 공시등의 신청·심사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거래에 관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것
4.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등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5. 공시등사업자가 공시등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등사업자에 대하여 불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할 것

**<해 설>**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으로 지정된 후 공시등 심사 과정에서 얻은 개인 또는 법인 정보·자료 등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한 필요한 자료등을 요청할 시에는 제출해야 하며, 공시등의 신청·재심사 또는 변경승인 신청 및 공시등사업자가 생산·수입 판매한 실적등 자료 및 서류 등을 공시등의 유효기간 종료후 3년 동안 보관하도록 함

**제46조(공시등업무의 휴업·폐업)** 공시등기관은 공시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공시등기관이 공시등을 하여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공시등사업자에게는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해 설>**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은 공시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촌진흥청장(시행령 제5조 위임)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공시등 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를 의무화 함

**제47조(공시등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시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공시등기관이 파산, 폐업 등으로 인하여 공시등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중에 공시등의 업무를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시등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공시등을 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8조에 따른 공시등 심사 및 재심사의 처리 절차·방법 또는 제39조에 따른 공시등 갱신의 절차·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9.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시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공시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공시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공시등을 받거나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기관으로 지정받는 행위
2. 공시등을 받지 아니한 자재에 제42조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등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3.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4.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시등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여 주는 행위
5.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에 따른 자재임을 알고도 그 자재를 판매하는 행위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6. 공시등이 취소된 자재임을 알고도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판매하는 행위
7. 공시등을 받지 아니한 자재를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광고하거나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를 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8.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 또는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물질 등을 유기농어업자재에 섞어 넣는 행위

### <해 설>

- 유기농업자재 공시등기관의 지정이나 유기농업자재공시등의 업무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기농업자재 공시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공시등기관이 파산, 폐업등으로 인해 공시등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공시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 유기농업자재 공시등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등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없도록 함
- 유기농자재 공시등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시행규칙(별표16)에 정함
- 유기농업자재 생산·유통·판매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금지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 법률 제43조에 따라 공시등을 취소하도록 하고, 제6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제49조(유기농어업자제 및 공시등사업자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제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하게 하거나 공시등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유기농어업자제의 생산·유통 과정을 확인하여 제 37조 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공시등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 또는 제 42조에 따른 공시등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공시등사업자 또는 유기농어업자제의 유통업자에게 해당 유기농어업자제의 판매금지, 공시등의 표시제거·정지·변경 또는 사용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시등을 한 공시등 기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 후단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공시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공시등기관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시등기관이 제 38조에 따라 공시등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제 44조 제 5항에 따른 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지, 제 45조에 따른 공시등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는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조사결과 공시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 47조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 38조에 따라 공시등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 44조 제 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3. 제 45조에 따른 공시등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 <해 설>

-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시판품 조사나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생산·유통 과정이 공시등기준에 맞는지 여부등을 조사하여 공시등기준이나 표시 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판매금지, 표시 제거·정지·변경 또는 사용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공시등기관이 공시등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지정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공시등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 조치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제51조(공시등기관 등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시등사업자 또는 공시등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1. 공시등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기농어업자재를 계속하여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상속인
2. 공시등사업자나 공시등기관이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공시등사업자나 공시등기관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공시등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기관의 장(그 공시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을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공시등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공시등기관 또는 공시등사업자에게 한 제43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 내에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해 설>

-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받은 자나 공시등기관이 양도, 사망,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상속인·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여 연속적으로 사업을 수행가능하도록 하고, 지위를 승계한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진흥청장) 또는 공시등기관에 그 사실을 각각 신고하도록 함.
-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받은 자 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등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까지 승계되도록 함

**제52조(「농약관리법」 등의 적용 배제)** ①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하여는 「농약관리법」 제8조 및 제17조, 「비료관리법」 제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공시등을 받았을 때에는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해 설>

- 공시등 유기농업자재에 대해서는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에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유기농업자재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다 쉽게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기농업자재 시장 활성화와 산업화를 적극 유도



## 6. 제6장 보칙

**제53조(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인증기관 지정·등록, 인증 현황, 수입증명서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인증품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업무
3. 인증품 등의 사업자 목록 및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관련 정보제공
4. 인증받은 자의 성명, 연락처 등 소비자에게 인증품 등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
5. 인증기준 위반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인증취소 등의 정보 공표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해 설>

-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제도 관리 효율화를 위해 인증기관의 지정·등록, 인증현황, 인증품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현황 등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기 위해 인증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54조(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인증제도의 홍보에 관한 사항
2.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계획서의 건본문서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품질관리체제 구축 또는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사업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또는 민간단체
2. 제품 등의 인증사업자, 공시등사업자,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
3. 인증제도 관련 교육과정 운영자
4. 인증품 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관련 표준모델 개발 및 기술 지원 사업자

**제55조(우선구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장 및 농어업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그 인증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농어업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설>**

-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도홍보, 교육·훈련 및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계획서의 견본 문서 개발 보급 추진과 품질관리체제 구축,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사업을 친환경농업 민간단체, 인증사업자·인증기관(공시등), 인증품 관련 표준모델 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인증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 관련단체의 장에게 인증품 우선구매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농업 관련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56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 또는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
2. 제21조제2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을 갱신하려는 자
3. 제21조제3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
4.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
5.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시등을 갱신하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
  2. 제26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3. 제44조에 따라 공시등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공시등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해 설>

-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등, 유기농업자재 공시등 수수료는 인증기관(공시등기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인증·공시등을 신청하는 자가 수익자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인증·공시 등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인증기관,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 또는 갱신의 경우에도 신청자가 수수료를 부담토록 하였으며, 수수료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9에서 규정함.

**제57조(청문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9조제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 47조제 1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이 제 24조제 1항(제 34조제 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 43조제 1항에 따라 인증이나 공시등을 취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줄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 22조제 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으로 본다.

### <해 설>

- 인증기관, 공시등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등 그 지정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등 인증,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공시등을 받은 때 등 그 인증, 공시등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기관 및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등 인증을 받은 자, 공시등을 받은 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부여함.

**제5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식품연구원의 원장 또는 민간단체의 장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은 그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거나 민간단체에 재위탁 할 수 있다.

### <해 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한국식품연구원의 원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친환경 관련 민간단체의 장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함

**제59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6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2.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시등기관의 임직원
3. 제26조제4항 또는 제5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임직원

### <해 설>

-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민간 인증기관의 임직원,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임직원,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별칙을 적용

## 7. 제7장 벌칙 등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업무를 하거나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시등업무를 한 자
2. 제26조제3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인증업무를 하였거나 제44조제3항에 따라 공시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공시등업무를 한 자
3. 제29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인증업무를 하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공시등업무를 한 자
4. 제30조제1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등을 받거나 공시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5. 제30조제2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등을 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 등을 한 자
6. 제48조제2호를 위반하여 공시등을 받지 아니한 자재에 공시등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 등을 한 자
7. 제30조제3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제3호를 위반하여 인증품 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인증 또는 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8. 제30조제4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또는 공시등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9. 제30조제5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10. 제30조제6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것임을 알거나 인증품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것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11.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공시등을 받지 아니한 자재에 공시등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것임을 알거나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 자재에 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것임을 알고도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12. 제30조제7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제6호를 위반하여 인증이 취소된 제품 또는 공시등이 취소된 자재임을 알고도 인증품 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판매한 자
13. 제30조제8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14. 제48조제7호를 위반하여 공시등을 받지 아니한 자재를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광고하거나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15. 제48조제8호를 위반하여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이나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물질 등을 유기농어업자재에 섞어 넣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7조에 따른 인증 또는 공시등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인증 또는 공시등 업무를 한 자
2. 제31조제4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제4항에 따른 인증품 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표시 제거·정지·변경 또는 판매금지,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해 설>

-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않고 유기식품등 인증 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수행하거나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5년) 또는 공시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5년) 지났음에도 인증 또는 공시등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경우 등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등 인증품,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 함
-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이 업무정지 기간중에 인증 또는 공시등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증품 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업자재의 표시제거·정지·변경 또는 판매금지,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품 및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함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행위자의 처벌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채택함.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5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 또는 공시등을 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2. 제22조제1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품 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2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제3호 또는 제5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0조제2항, 제45조제3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관련 서류·자료 등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제하여 재포장한 후 제23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자
5. 제23조, 제36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6. 제26조제5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7. 제27조제4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5조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또는 공시등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8. 제28조(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증업무 또는 공시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1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1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0. 제33조(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를 위반하여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이나 인증사업자 또는 공시등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해 설>

-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공시등을 받은 자가 공시등을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인증기관의 장 또는 공시등기관의 장으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고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등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함.

## 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농약농산물의 유효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친환경농업육성법」(법률 제9623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저농약농산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4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의 유효기간을 계속 연장하더라도 그 유효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저농약농산물에 대한 인증의 표시, 승계, 보고, 별칙 등은 종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 <해 설>

- 친환경농산물 인증, 우수농산물 인증 등 다양한 농산물 인증표시제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로 분류되는 친환경농산물 중 저농약농산물을 2010년부터 폐지하여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로 하되, 종전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2015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제3조(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이 법 부칙 제 조제 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법 부칙 제 6조제 2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인증 또는 공시등을 받은 사업자는 제20조, 제34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인증 또는 공시등을 받은 사업자로 본다. 이 경우 인증 또는 공시등의 유효기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또는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부여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은 제 26조제 1항, 제 35조제 1항 또는 제 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으로 본다. 다만,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의 인증업무 또는 공시등업무의 범위는 당초 지정받은 범위로 한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부여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등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종전의 제17조 또는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 23조 또는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 21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또는 친환경수산물의 인증기준은 제 19조제 2항 및 제 34조제 2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으로 본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처분·절차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 및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다.

#### <해설>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공시등을 받은 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인증, 수산물품질인증, 유기식품등인

증, 무농약농수산물등인증,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등을 받은 사업자로 보며 또한 유효기간 등이 부여된 것으로 간주하여 범 시행으로 인한 업무혼란을 최소화 함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889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통식품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식품의 인증”을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으로,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을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2호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식품의 인증”을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전통식품이나 유기농식품으로”를 “우수식품으로”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1호의2 및 제2호 중 “제22조제2항이나 제23조제3항”을 각각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3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 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 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② 법률 제1088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 한다.

제4조제2호 중 “수산물품질인증·친환경수산물인증”을 “수산물품질인증”으로 한다.

제2장제4절(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중 “품질인증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을 각각 “품질인증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품질인증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을 각각 “품질인증품”으로 한다.

제113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114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품질인증품·친환경수산물인증품”을 “품질인증품”으로 한다.

제119조제1호 중 “품질인증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을 각각 “품질인증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라목을 삭제한다.

③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유기 가공식품 인증”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식품산업진흥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 등 인증을 받은 제품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 및 제7조”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⑦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⑧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8호다목 및 제6조제25호다목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각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법률 제11098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친환경농업육성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해설>

-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유기가공식품인증,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친환경수산물인증,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농산물인증업무를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등 인증업무로 통합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 함
- 각 개별법에서 인용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유기식품등, 무농약 농수산물등 인증제품으로 하고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은 유기농업 자재로 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2013년 7월 인쇄

2013년 7월 발행

발행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편집인 : 소비과학정책관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완수  
사무관 최동수

발행처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339-201)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044) 201-2432

<http://www.mafra.go.kr>

인쇄처 : 고려문화 ☎(043) 238-5676